#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융합적 지식재산 인재양성 방안: 한일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2014. 12.


(사) 한국지식재산학회

(사) 기술과 법 연구소

책임연구원 손 경 한

공동연구원 윤 선 희 공동연구원 계 승 균

공동연구원 육 소 영 공동연구원 박 진 아

공동연구원 유 지 혜 공동연구원 심 현 주

연구보조원 이 홍 기

# 융합적 지식재산 인재양성 방안을 위한 연구

## 최종보고서

## < 목 차 >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표 ····· 1
I. 연구의 필요성 ····· 1
II. 연구의 목표: 융합적 지식재산 인재 양성 방안 제시 ····· 1
제2절 본연구에서의 지식재산 인재상 ····· 1
I. 한국 정부의 지식재산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연혁적 고찰 ····· 1
II. 바람직한 지식재산 인재상 ····· 6

제2장 대학의 융합적 지식재산 인재양성방안 ····· 7
제1절 개설-대학교육의 의미 ····· 7
제2절 대학의 지식재산권 교육 현황 ····· 8
I. 한국 대학의 지식재산권 교육 현황 ····· 8
1. 전문가육성형 교육프로그램의 현황 ····· 8
2. 교양형 교육프로그램 ····· 17
3. 실무연계 내지 실무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 18
4. 대학교육기관 이외의 교육프로그램 ····· 31
5. 교재개발현황 ····· 31
II. 일본 대학의 지식재산권 교육 현황 ····· 32
1. 일본정부의 지식재산정책의 방향 ····· 32
2. 일본대학의 지식재산 교육 ····· 34
3. 일본대학에서의 지식재산교육의 특징 ····· 41
4. 교재개발현황 ····· 44
5. 한국과 일본대학의 지식재산교육 비교 및 시사점 ····· 45
Ⅲ. 결어 ····· 46
제3절 대학교수 대상의 지재교육 현황 ····· 46
I. 우리나라에서의 대학교수 지식재산교육 현황 ····· 46
Ⅱ. 일본에서의 대학교수 지식재산교육 현황 ····· 47
제4절 대학의 융합적 지재인재양성제도의 개선방안 ····· 47
I. 한국 대학의 융합적 지식재산인재양성방안 ····· 47

1. 전체적인 분석 ····· 47
2. 개별과정에 대한 평가 ····· 50
3. 대학의 융합적 지식재산인재양성제도 개선방안 ····· 54
II. 융합적 지식재산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수 대상의 지재교육 개선방안 ····· 57

**제3장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자격사제도 정비방안 ····· 58**
**제1절 변리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 58**
I. 변리사제도의 현황 ····· 58
1. 변리사의 업무영역 ····· 58
2. 변리사에 대한 자격 부여 ····· 60
II. 변리사에 대한 교육제도 ····· 61
1. 변리사시험전 교육제도 ····· 61
2. 변리사실무수습제도 ····· 62
3. 기등록 변리사 보수교육제도 ····· 72
III. 변리사 제도 개선방안 ····· 86
1. 지식재산서비스 세부전문영역별 전문변리사제도의 도입 ····· 86
2. 변리사시험제도의 개선 ····· 87
IV. 변리사 교육제도 개선 방안 ····· 88
1. 변리사시험전 교육제도의 개선 ····· 88
2. 변리사시험합격후의 교육제도의 개선 ····· 89
3. 소결 ····· 91
**제2절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식재산권 교육 개선방안 ····· 92**
I.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식재산권 교육 현황 ····· 92
1.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식재산교육정책 ····· 92
2.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식재산권 교육 현황 ····· 93
3.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재교육에 대한 평가 ····· 114
II. 일본 로스쿨의 지식재산권 교육 현황 ····· 117
1. 일본 로스쿨의 지식재산권 교육정책 ····· 117
2. 일본 로스쿨의 지식재산권 과목 개설현황 ····· 120
3. 일본 로스쿨의 지재교육에 대한 평가 ····· 124
III.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식재산교육 활성화방안 ····· 125
1. 지식재산법과 타 법률전공과목과의 연계의 개선방안 ····· 125
2. 세부 커리큘럼에 대한 개선방안 ····· 126
3. 교재 개발 및 보급 등에 대한 개선방안 ····· 127
**제3절 변호사에 대한 지식재산 계속교육 개선방안 ····· 128**
I. 한국의 변호사에 대한 지식재산 계속 교육 현황 ····· 128
1. 변호사단체의 소속변호사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프로그램의 현황 ····· 128

2. 변호사단체 내 지식재산법 연구모임의 현황 ····· 130
3. 변호사의 한국지식재산학회 등 학술단체에서의 활동 현황 ····· 131
4. 변호사의 지식재산관련 사회단체에서의 교육 및 활동 현황 ····· 132
5. 해외 교육기관에의 파견과 유학, 해외직장에서의 OJT기회부여 현황 ····· 133
II. 일본의 변호사에 대한 지식재산 계속 교육 현황 ····· 134
1. 변호사단체의 소속변호사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프로그램의 현황 ····· 134
2. 변호사단체 내 지식재산법 연구모임의 현황 ····· 135
3. 변호사의 일본지식재산학회 등 학술단체에서의 활동 현황 ····· 137
4. 변호사의 지식재산관련 사회단체에서의 교육 및 활동 현황 ····· 139
5. 해외 교육기관에의 파견과 유학, 해외직장에서의 OJT기회 부여 현황 ····· 140
III. 변호사에 대한 지식재산 계속교육 개선방안 ····· 142

**제4장 기업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 ····· 144**
**제1절 개설 ····· 144**
**제2절 우리나라 기업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현황 ····· 144**
I. 기업의 실무인력 보유 및 양성현황 ····· 144
1. 지식재산 담당인력 운영현황 ····· 144
2. 지식재산 담당인력 교육현황 ····· 146
3. 기업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교육사례 ····· 148
II. 연수기관을 통한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현황 ····· 149
1.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149
2. 한국발명진흥회 ····· 156
3. 지역지식재산센터 ····· 163
4. 한국지식재산협회 ····· 167
5.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170
6. 사설기관 - WIPS IP교육센터 ····· 172
III. 분석 및 시사점 ····· 172
1. 기업사내교육 ····· 172
2. 위탁교육 ····· 173
**제3절 일본 기업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현황 ····· 174**
I. 기업의 지재인재육성에 관한 정책 및 제도 ····· 174
1. 개요 ····· 174
2. 인재양성 및 공급에 관한 정책 ····· 174
3. 인재양성을 위한 추진기구 운영 ····· 175
II. 기업의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현황 ····· 175
1. 대기업의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현황 ····· 175
2. 지식재산관련 기관의 기업 실무인력 관련 교육현황 ····· 177

가. 지식재산연구소 ····· 177
나. 일본지재학회 ····· 179
다. 일본지식재산협회(JIPA) ····· 182
라. 발명추진협회 ····· 206
마. 공업소유권 정보·연수관 ····· 209
바. 특허청 ····· 211
사. 일본변리사회 지재경영아카데미 ····· 212
**제4절 기업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교육프로그램의 제시 ····· 214**
I. 일본 민간영역 기업실무인력 교육현황 분석을 통한 설계방향 ····· 214
1. JIPA 교육 시스템 분석 ····· 214
2. 설계방향 ····· 216
가.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 ····· 216
나. 교육과정 이수의 실효성 제고 ····· 218
II. 기업의 지재인재 양성 프로그램 제안 ····· 218
1. 개요 ····· 218
2. 단계별 교육모델의 제안 ····· 219
3. 보론 ····· 229

**제5장 지식재산 금융 및 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 … 230**
**제1절 서론 ····· 230**
Ⅰ. 지식재산 금융의 의의 ····· 230
Ⅱ. 지식재산 금융의 역할 ····· 232
Ⅲ. 우리나라 지식재산금융의 현황 ····· 232
1. 지식재산금융의 법적 근거 ····· 232
2. 지식재산금융의 현황 ····· 235
3. 현행 지식재산금융의 문제점 ····· 237
**제2절 지식재산 금융 및 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및 과정 ····· 239**
I. 서론 ····· 239
1.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의의 ····· 239
2.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 인력 육성의 필요성 ····· 241
3. 한국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 인력 육성 현황 개관 ····· 243
II. 한국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관련 민간자격의 유형과 현황 ····· 244
1. 기업·기술가치 평가사(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 244
2. 기업가치평가사(한국기업평가원) ····· 248
3. 기술평가사(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 251
III. 한국의 지식재산 가치평가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문 인력 육성 프로그램 ·· 253
1.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의 프로그램 ····· 253

2.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가치평가원의 프로그램 ····· 255
3. 기술보증기금의 프로그램 ····· 258
4. 기타 금융기관의 프로그램 ····· 262
Ⅳ. 일본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 인력 육성 현황 ····· 263
1. 일본의 지식재산 인력구분 ····· 263
2. 지식재산 분석사(특허·콘텐츠) 제도 ····· 263
3. 지식재산 관리 기능사(IP기능사)의 육성프로그램 ····· 267
4. 지식재산 가치평가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문 인력 육성 프로그램 ····· 272
Ⅴ.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 인력 육성 프로그램 개선방안 ····· 276
1. 현행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의 한계 ····· 276
2.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 인력 육성 교육의 개선방안 ····· 279
**제3절 가치평가인력 및 평가결과에 대한 품질관리체계 및 품질관리 ····· 281**
Ⅰ. 개설 ····· 281
Ⅱ. 지식재산의 가치평가에 사용되는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 281
Ⅲ. 지식재산평가실무를 감시하는 조직 등 ····· 293
Ⅳ. 일본과의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 294

**제6장 결론 ····· 297**

**[참고문헌] ····· 301**

[본문]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표

### I. 연구의 필요성

삼성-애플분쟁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식재산전문가 특히 기업의 전방위적인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융합적 지식재산전문가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동안 특허청을 비롯한 정부기관에서 지식재산전문가 양성제도의 수립과 집행에 힘써 왔으나 실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는 인재는 아직도 태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화와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래 지식재산 마인드에 덧붙여 혁신에 기초한 국제 전략을 수행하는 인재육성이 중시되고 있는바, 이러한 능력을 겸비한 지식재산활용인재, 즉 지식재산 경영인재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융합적 지식재산인재양성을 위하여는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이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 지재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조금 더 일찍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나라이므로 일본과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Ⅱ. 연구의 목표: 융합적 지식재산 인재 양성 방안 제시

본 연구는 지식재산의 창출, 취득, 관리, 보호, 활용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지식재산전문가의 양성을 목적으로 우리보다 한발 앞서 제도를 연구하고 실시하고 있는 일본과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융합적 지식재산 인재양성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정립하여 글로벌 경쟁체제하에서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융합적 글로벌 지식재산인재 양성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제2절 본연구에서의 지식재산 인재상

### I. 한국 정부의 지식재산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연혁적 고찰

한국은 한미 FTA 체결 등 글로벌 기업경쟁시대를 맞아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지식재산 법학중심의 인력공급 및 관

련 직무교육이 미흡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 제1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08~2012)을 수립한데 이어 2013년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3∽2017)을 수립하였다.[1)]

한국의 지재인재양성이 본격적으로 체계화되고 정비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에 마련된 "제1차 국가지적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통해서다. 1차 계획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재인재 양성을 위한 지재환경을 정비하고, 관련된 실무인력의 양적·질적 제고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던바 구체적으로는 (i)지식재산에 강한 연구인력의 양성, (ii)기업 등의 지식재산 실무인력의 양성, (iii)지식재산서비스 분야 인적자원의 역량의 강화 및 (v)지식재산 교육 인력의 양성에 초점을 두었다.

이 제1차 계획은 지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초적인 지재교육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반면, 한편으로는 그에 따른 교육의 체계성과 다양성이 떨어지고, 교육내용의 수준도 미흡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또한 지식재산 교육 인력의 양성이 매우 미흡하였으며 실무형 지재인재의 양성과 국제적 지식재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제적 지재인재의 양성 측면에서도 많은 한계가 있었음이 지적되었다.

---

1) 일본은 2002년 지적재산기본법을 입법화하여 그 이후 매년 지식재산추진계획을 수립, 이에 따라 지식재산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06년 「지적재산 인재 육성 종합전략」 이후 2012년 「지적재산인재 육성플랜」을 수립하여 정부 차원에서 지식재산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즉,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요구되는 이노베이션 시스템이 변화하는 가운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표준이나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지식재산매니지먼트 인재)나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는 지식재산 인재(글로벌 지식재산 인재) 육성·확보가 급선무임을 감안하여 2012년 1월에 「지적재산인재 육성플랜」을 책정하고, 사업전략적인 지식재산관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나 지식재산관리 전략연구거점 정비, 지식재산인재 저변확충에 이르기까지의 시책을 명확히 밝혔다. 동 플랜에서의 지식재산인재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관리가 변화·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주로 국내의 지식재산권 취득·유지·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지식재산 전문 인재」에 머물지 않고「기술기준형 사이클 모델」 및 「사업기준형 사이클 모델」의 모델의 사용이나 조합을 적절하고 선행적으로 실시하는 총합적인 지식재산관리를 실천하는 이노베이션 전략에 기인한 글로벌적인 이노베이션을 창출하여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형태로 사업전략에 적절하고 선행적·실천적으로 지식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지식재산활용인재(지식재산관리 인재)」의 육성을 도모한다. 지적재산인재 육성플랜에 따른 추진계획은 크게 지식재산관리 인재 육성과 글로벌 지식재산인재 육성으로 구분하여 마련하고 있다. 먼저 지식재산관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전략적인 지식재산관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한다. 즉, 이노베이션을 창출함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우수한 이노베이션 전략성을 지니는 지식재산관리 인재의 육성·확보를 위한 시스템 정비를 추진한다. 둘째, 지식재산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다. 글로벌 경영환경·사업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국내외의 최신 사업전략 및 지식재산관련 정보를 축적·분석하여 사업전략에 기여하는 최첨단 지식재산관리 전략을 연구할 수 있는 거점정비를 추진한다. 셋째,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인재의 육성·확보한다. 글로벌 전개나 지식재산관리를 구사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일반적으로 기업내부에서 지식재산인재 확보가 곤란한 중소·벤처기업에서 지식재산총합지원창구 등을 활용하여 지식재산인재의 육성·확보를 도모한다. 다음으로 글로벌 지식재산인재 육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네트워크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심사체제 구축한다. 즉, 글로벌·네트워크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영어특허심사를 포함하여 일본기업의 기술·디자인·브랜드전략에 기여하는 심사를 비롯한 체제구축을 추진한다. 둘째, 글로벌 경쟁시대의 기업의 사업 활동에 기여하는 전문가의 육성·확보 : 글로벌 경쟁시대에 있어서 기업의 사업 활동에 기여하는 변리사를 비롯한 전문가 육성·확보를 도모한다. 그 외에도 지식재산인재의 저변확충을 위하여 지식재산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한다.

【제1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의 목표 및 중점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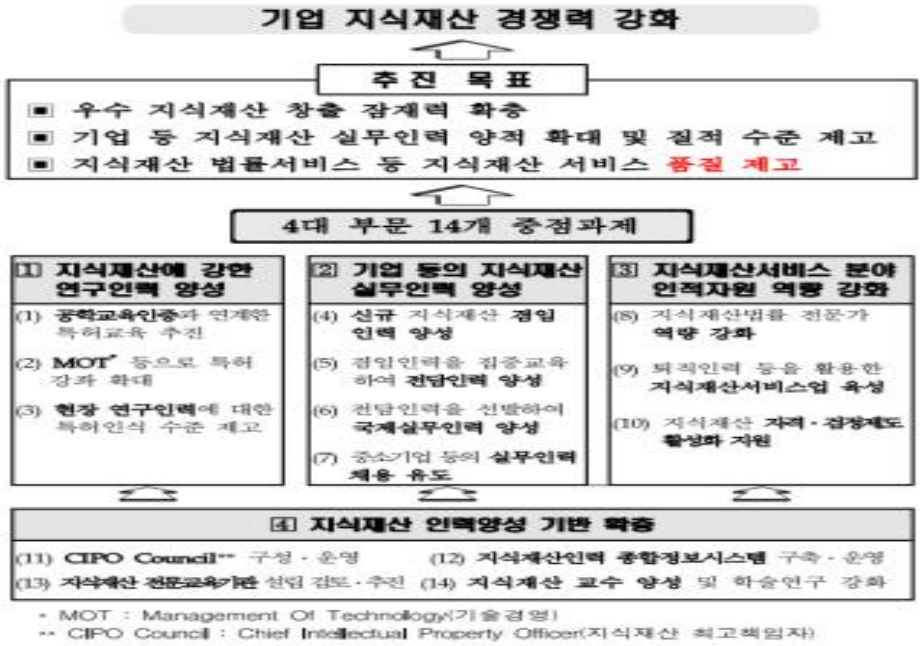


한편 지식재산제도의 융합적 발전을 위하여 2011. 5. 19. 지식재산 기본법이 법률 제10629호로 제정되어 2011. 7. 20. 시행되었다. 동법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한국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주요내용으로 지식재산교육의무의 부과((동법 제33조),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의무의 부과(동법 제8조, 제34조),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의무(제26조) 등이 있다.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융합적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고 국가의 지식재산교육의무, 전문인력양성의무 지식재산서비스산업육성의무 등을 명문으로 선언하였고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등에 대한 입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등 지식재산전문 인력양성제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되었다.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3~2017)은 지식재산 인재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보고, 경제발전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여 국가의 핵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지식재산 인력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식재산 인력의 수급 예상 및 적정규모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목표 및 핵심 전략과제를 설정하되, 정부의 지식재산산업 발전전략 등과 연계한 지식재산 인력의 양성 및 일자리 창출간의 정책적 연계 및 지식재산 산업의 육성 등 정책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식재산 관리인력 및 서비스 인력 규모를 2012년 3만명에서 2017년 5만명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차 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i)비즈니스에 강한 지식재산 관리인력의 양성, (ii)글로벌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iii)창조적·융합형 지식재산 창출인력의 양성, (iv)지식재산 인재저변의 확대 및 (v)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의 목표 및 중점과제】**

동 계획에서는 지식재산 인력을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 IP 라이프사이클의 제반 활동영역 및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인력"으로 정의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성 및 활동영역에 따라 창출인력, 관리인력 및 서비스인력의 3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식재산 창출인력이란 연구개발 및 창작의 전문성·창의성, 지식재산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와 소양, 시장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인력을 말하며,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지식재산 관련 법 및 선행기술조사 등 문헌 조사, 권리화 전략 관련 과목의 교육이 필요하다(실업계 고교와 이공계 학생 및 엔지니어를 위한 지식재산 교육).

지식재산 관리인력이란 기업·대학·연구소 등 소속기관이 창출한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적 이해와 더불어 권리화 및 보호, 평가 및 활용 등 비즈니스 통찰력과 함께 기관차원의 전략을 수립·집행할 수 있는 인력을 말하며, 주요국의 지식재산 제도 및 분쟁 대응에 관한 과목의 교육이 필요하다.

지식재산 서비스인력이란 급격히 글로벌화 되고 있는 시장 환경 하에서 지식재산 관련 법률·경영·금융·교육 등 고도의 전문역량을 갖추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말하며, 라이선싱, 기술가치평가, 분쟁대응 관련 과정 및 동 분야의 국제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지식재산 전문성·활동영역에 따른 인력의 구분】**

| 유형 | | 지식재산 활동영역 | | |
|---|---|---|---|---|
| | | 창출 | 관리 | 서비스 |
| 지식재산 전문성 | 높음 (전문인력) | | 지식재산 전담인력 (기업/연구소/대학) | ・지식재산 법률서비스 인력 (변리사/심사관/변호사)<br>・지식재산 경영서비스 인력 (사업화/기술이전/가치평가)<br>・지식재산 교육서비스 인력 (전담교육자) |
| | 중간 (준전문인력) | 연구개발인력 (교수/연구원/대학원생) | 지식재산 겸임인력 (기업/연구소/대학) | ・지식재산 서비스 실무자<br>・지식재산 비전담 교육자 |
| | 낮음 (잠재인력) | 학생(초・중・고・대), 기업인력, 일반인 | | |

※ 출처 : 특허청,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3~2017)」, 25면.

**【지식재산 인력 유형별 주요 역량】**

| 구분 | 필요한 역량 |
|---|---|
| 창출인력* | 전문성・창의성과 지식재산 소양을 함께 갖춘 융합적 연계역량 |
| 관리인력 | 지식재산의 기술적 이해, IP 실무, 비즈니스 통찰력 등 총체적 관리역량 |
| 서비스인력 | 법률・경영・금융・교육 등 고도의 분야별 전문서비스 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 |

* (창출인력 예시) 과학·기술 연구개발인력, 상표·디자인 개발인력, 문화·콘텐츠 창작 개발인력, SW·앱·게임·폰트 등 개발인력, 신지식재산 개발인력

※ 출처 : 특허청,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3~2017)」, 25면.

## Ⅱ. 바람직한 지식재산 인재상

바람직한 지식재산인재상은 '융합적 지재인재', 즉 국제적 지식재산환경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보호 및 활용 등 지식재산의 전주기에 걸쳐 기술적, 법적 및 경영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글로벌 전문가이다.

상설하면, 융합적 지식재산인재상은 첫째,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보호 및 활용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관련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분석능력을 갖춘 실무적 인재이다. 특허에 있어서는 특허 맵 작성능력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연구개발과제의 발굴이나 선정, 나아가 연구개발의 기획에 있어서 선행 기술의 소재와 경향을 분석하여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재여야 한다.

둘째,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의 기술적인 트렌드를 파악하고, 기술이나 콘텐츠의 사업성에 있어서도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인재이다.

셋째,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보호 및 활용 등 지식재산의 전주기에 걸쳐 지식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인재이다. 예컨대 자신이 지식재산 창출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창출될 지식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보호되며 활용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에 조력할 수 있어야 하고 지식재산 활용분야에 종사하는 자라면 경쟁 지식재산이 언제, 어떻게 창출되는가를 알아서 제대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전주기적 관점에서 지식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인재이다.

넷째,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활용에 관련한 기술적, 법적 및 경영적인 관점을 동시에 검토하여 종합적 고려를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재이다.

다섯째, 지식재산에 대한 국제적 대응능력을 가진 인재이다. 국제적 지식재산환경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국제적 분쟁에 있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말한다.

이러한 지식재산 인재상을 바탕으로 이하의 대학 및 대학원, 사회에서의 지식재산 인재양성방안과 지식재산전문가 시험제도 운영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 제2장 대학의 융합적 지식재산 인재양성방안

### 제1절 개설-대학교육의 의미

인간은 교육을 통해 문화와 지식을 전수받고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초중등 교육을 비롯하여 고등교육인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을 통해 체제 내지 교육체계가 정비되어 단계적으로 어떤 지식 내지 문화를 전수하고 있다. 또한, 교육에는 교육이념과 목표[2]가 존재한다.

어린 나이에 입학하여 배우는 초·중등교육의 의미는 인간 내지 사회적 인간으로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 주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교육의 내용이 비교적 균질적이고 평균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학교육의 의미는 초·중등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재능, 관심, 꿈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또는 학자가 되기 위하여 전공을 정하고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사회에서 전문가로서의 역할 내지 기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대학교육을 바라보면 그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사회 내지 국가의 교육 수요자 측면에서 대학교육을 바라보면 사회나 국가에서 필요한 인재의 공급을 요청하는 측면, 즉 사회나 국가의 수요에 적응하는 형태의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특히 대학 교육에 있어서 지식재산 내지 지식재산권[3] 교육의 의미는 전문가 양성으로서의 역할도 있고 교양형 교육으로서의 역할도 있다고 보이지만, 사회나 국가의 수요에 적응하는 교육으로서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지식재산을 향한 다양한 시각 내지 접근 방식이 있기 때문에 교육의 내용과 방향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사료된다. 지식재산과 관련된 교육과 관련하여 법학도에게는 '재산권으로서의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권리화 단계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교육이 중점이 될 것이다. 특히 권리의 대상과 특정, 권리의 발생과 변동, 침해에 대한 구제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국제적인 교역이 활발하게 됨에 따라 국제적인 관점에서의 권리관계에 대한 교육도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비법학도에게는 지식재산의 교육의 의미는 자산 관리 내지 정책 개발과 관련된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사료된다. 자산으로서의 지식재산도 궁극적으로는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표준화와 사업화와 관련된 교육이 그 중점을 이룬다고 판단된다.

지식재산과 관련된 교육방향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육성형 교육과 교양형 교육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도 보인다.

전문가 육성형 교육은 문자 그래도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갖추게 하고 그야말로 사

---

2)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는 교육의 이념 및 목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한국에서는 법령상 현재, 정신적 창작 내지 성과물에 관한 총칭을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무체재산권, 공업소유권, 산업재산권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최근 입법된 국가지식재산기본법의 용어에 따라 지식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회의 분쟁예방과 분쟁의 해소를 위하여 전문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을 기르는 것이다. 대학에서의 법학전공자라든지, 지식재산의 자신평가와 관련하여 훈련을 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교양형 교육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확산 내지 인식을 심어주려는 사회교육적인 의미도 있다. 실무에 있어서 문제인식 정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하에서는 한국의 대학교육에서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은 시간적으로 보면 그다지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지식재산에 관한 관심도 20세기 후반에 와서야 생겼고, 대학에서의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도 이제 20여년 정도에 지나지 않아서 분석의 대상으로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한국대학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식재산에 관한 현황을 중심으로 저자 나름대로 분류·분석하는 것으로 본고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 제2절 대학의 지식재산권 교육 현황

한국 사회와 경제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사회적·국가적으로 지식재산교육 내지 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 전후로 해서 한국 경제가 공장형 경제 내지 주문형 공장에서 지식형 경제 내지 부가가치 창출형 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침해와 분쟁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고, 사회적인 관심도 더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법조인 특히 변호사들의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변리사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게 되었고, 이는 곧 대학교육에 반영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한국의 대학에서도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이 시작되었고, 이제는 대학에서는 개론 형식의 지식재산권법에 관한 강의가 개설되고, 대학원을 중심으로 하여 각 개별 법률에 관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4)]
이하에서는 비록 짧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을 전문가육성형 교육프로그램과 교양형 교육프로그램으로 나누어 각각의 교육내용과 그 교육방향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 I. 한국 대학의 지식재산권 교육 현황

1. 전문가육성형 교육프로그램의 현황

1) 대학에서의 지재권교육프로그램

지식재산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대학이 몇 군데 있다. 지식재산권 교육을 특성화

4)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부산대학교의 경우 법과대학에서는 지적재산권법I, 지적재산권법II가 개설되어 있고, 대학원에서는 상표법특수연구, 신지적재산권법특수연구, 저작권법특수연구, 지적재산과 라이선스, 특허법특수연구, 엔터테인먼트법이 개설 운용되고 있다.

한 것으로 대표적 곳이 인하대, 상명대, 한남대 등이 있다. 대표적인 학과로 상명대, 한남대, 인하대의 교육과정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 교육의 이념 내지 목표

상명대학교에는 2009년 3월 1일부터 지적재산권학과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교육이념 내지 목표는 홈페이지[5]에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 *"지식사회의 급성장으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문화기술(CT)과 정보기술(IT)을 융합하여 저작권보호와 관련된 법, 정책, 경영, 정보기술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을 갖춘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인재를 양성하고 저작권 보호 관련 기술 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본 학과가 설립되었음.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본 학과는 학생들에게 영어와 한자능력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실사구시를 추구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한남대학교의 법과대학 속에 특허법학 전공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같은 대학교에서 특허법학의 전공과 관련된 교육이념 내지 목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발명, 디자인, 상표, 저작물과 같은 지적 창작물의 보호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허법을 비롯한 지적재산권법은 이와 같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이다. 본 전공에서는 일반적인 법학 지식뿐만 아니라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에 대하여 공부한다. 학과에서는 고시원을 운영하여 변리사 시험 등 각종 시험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나. 교과목

상명대학교의 경우 지식재산과 관련된 교과과정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6]하고 있다.

---

5) https://www.smu.ac.kr/mbs/smu/subview.jsp?id=smu_030108000000. (2014. 9. 4. 방문)
6) http://smsg.smuc.ac.kr:9100/haksa/homepage/view_subject_list.jsp?SHYR=1&SUST=121F. (2014. 9. 4. 방문)

| 학년 | 학기 | 이수구분 | 교과목명 | 학점 | 시간 |
|---|---|---|---|---|---|
| 1 | 1 | 교필 | 사교와 표현 | 3 | 3 |
| 1 | 1 | 교선 | 교양과 인성(지적재산권) | 1 | 1 |
| 1 | 1 | 1전필 | 법학개론 | 3 | 3 |
| 1 | 1 | 1전선 | 저작권과 컴퓨터과학 | 3 | 3 |
| 1 | 1 | 1학기 | 전공영어I | 2 | 2 |
| 1 | 2 | 교선 | 교양과 인성(지적재산권) | 3 | 3 |
| 1 | 2 | 1전필 | 프로그래밍I | 1 | 1 |
| 1 | 2 | 1전선 | 민법I | 3 | 3 |
| 1 | 2 | 1학기 | 전공영어II | 2 | 2 |
| 2 | 1 | 교필 | 상명CareerStart | 2 | 2 |
| 2 | 1 | 1전선 | 경영과학 | 3 | 3 |
| 2 | 1 | 1전선 | 형사법 | 3 | 3 |
| 2 | 1 | 1전선 | 프로그래밍Ⅱ | 3 | 3 |
| 2 | 1 | 1전선 | 민법Ⅱ | 3 | 3 |
| 2 | 1 | 1전선 | 전공과창업(지적재산권) | 1 | 1 |
| 2 | 2 | 1전필 | 저작권법 Ⅰ | 3 | 3 |
| 2 | 2 | 1전선 | 저작물데이터베이스 | 3 | 3 |
| 2 | 2 | 1전선 | 특허법 Ⅰ | 3 | 3 |
| 2 | 2 | 1전선 | 회계학 | 3 | 3 |
| 2 | 2 | 1전선 | 전공과창업(지적재산권) | 1 | 1 |
| 3 | 1 | 1전필 | 저작권법Ⅱ | 3 | 3 |
| 3 | 1 | 1전선 | 소프트웨어공학 | 3 | 3 |
| 3 | 1 | 1전선 | 특허법Ⅱ | 3 | 3 |
| 3 | 1 | 1전선 | 상표법 | 3 | 3 |
| 3 | 1 | 1전선 | 디지털멀티미디어개론 | 3 | 3 |
| 3 | 2 | 1전필 | 저작권보호기술개론 | 3 | 3 |
| 3 | 2 | 1전선 | 민사소송법 | 3 | 3 |
| 3 | 2 | 1전선 | 국제저작권법 | 3 | 3 |
| 3 | 2 | 1전선 | 경영정보 | 3 | 3 |
| 3 | 2 | 1전선 | 저작권포렌식 | 3 | 3 |
| 3 | 2 | 1전선 | 전공과취업(지적재산권) | 1 | 1 |
| 3 | 2 | 1전선 |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 3 | 3 |
| 4 | 1 | 1전선 | 디지털워터마킹기술 | 3 | 3 |
| 4 | 1 | 1전선 | 저작권침해와 구제 | 3 | 3 |
| 4 | 1 | 1전선 | 전공과취업(지적재산권) | 1 | 1 |
| 4 | 1 | 1전선 | 소프트웨어자산관리 | 3 | 3 |
| 4 | 2 | 1전선 | 저작권보호컨설팅 | 3 | 3 |
| 4 | 2 | 1전선 | 저작권모의소송 | 3 | 3 |
| 4 | 2 | 1전선 | 디지털저작권관리기술 | 3 | 3 |

한남대학교의 특허법학전공의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
|---|---|
| 1학년 | 법학개론 / 기초법률영어Ⅰ / 민법총칙 / 기초법률영어Ⅱ / |

| | |
|---|---|
| 2학년 | 형법총론 / 헌법Ⅰ / 저작권법 / 물권법 / 상법총칙, 상행위법 / 정보사회와 법 / 자연과학개론Ⅰ / 특허, 실용신안법 / 채권법총론 / 회사법 / 행정법Ⅰ / 헌법Ⅱ / 자연과학개론Ⅱ / 형법각론 |
| 3학년 | 상표법 / 민사소송법Ⅰ / 채권법각론 / 행정법Ⅱ / 국제법 / 형사소송법 / 원서강독 / 의장법 / 원서강독Ⅱ / 민사소송법Ⅱ / 가족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 법철학 / 지적재산권출원, 등록실무 |
| 4학년 | 특허명세서작성실무Ⅰ / 산업재산권심판, 소송실무 / 산업재산권국제협약론 / 기술이전법 / 신기술과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관리론 / 세법 / 노동법Ⅰ / 특허명세서작성실무Ⅱ / 지적재산권정보분류. 검색 / 저작권국제협약론 / 특허법세미나 / 상표. 의장세미나법 / 저작권법세미나 / 법조윤리 / 과학기술과 법 |

위 두 대학의 지식재산에 관한 교과과정의 특색을 살펴보면 상명대학은 주로 저작권 위주의 교과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작권위주로 하되 컴퓨터와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여 소위 기능적 저작물에 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이에 관하여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교육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국제화와 관련된 교과목도 눈에 보인다.

그리고 한남대학교의 특허법학전공의 경우에도 비교적 전반적인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을 가르치는 교과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와 함께 기본법학에 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학년이 될수록 특허법을 위주로 한 교육을 진행하면서 출원절차, 기술이전, 정보검색과 관련된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지적재산권학과[7]에 개설된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 종별 | | 과목영역 | 교과목명 | 학점 | 이수시기 |
|---|---|---|---|---|---|
| 교양필수 | 대학교양필수 | | Academic English Reading | 2.0 | 2학년(1학기) |
| 교양필수 | 대학교양필수 | | Academic English 1 | 2.0 | 1학년(1학기) |
| 교양필수 | 대학교양필수 | | Academic English 2 | 2.0 | 1학년(2학기) |
| 교양필수 | 대학교양필수 | | 인문사회계열 글쓰기와 토론 | 3.0 | 1학년(2학기) |
| 교양필수 | 대학교양필수 | | 생활한문 | 1.0 | 1학년(1학기) |

7) http://www.inha.ac.kr/college/law_law_intellectual.asp?pGubun2=curriculum.

| | | | | | |
|---|---|---|---|---|---|
| 교양필수 | 학과(부)교양필수 | 계열교양영역 | 지식산업과법 | 3.0 | 전체 |
| 교양필수 | 학과(부)교양필수 | 전공기초영역 | 민법총칙 | 4.0 | 전체 |
| 교양필수 | 학과(부)교양필수 | 전공기초영역 | 헌법1 | 3.0 | 전체 |
| 교양필수 | 학과(부)교양필수 | 전공기초영역 | 형법총론 | 4.0 | 전체 |
| 교양필수 | 학과(부)교양필수 | 전공기초영역 | 채권각론 | 3.0 | 전체 |
| 교양필수 | 학과(부)교양필수 | 전공기초영역 | 산업재산권법 | 3.0 | 전체 |
| 전공필수 | | 공통인정영역 | 저작권법 | 3.0 | 전체 |
| 전공필수 | | 공통인정영역 | 특허법 1 | 3.0 | 전체 |
| 전공필수 | | 공통인정영역 | 상표법 | 3.0 | 전체 |
| 전공선택 | | 공통인정영역 | 행정법1 | 3.0 | 전체 |
| 전공선택 | | 공통인정영역 | 행정법2 | 3.0 | 전체 |
| 전공선택 | | 공통인정영역 | 채권총론 | 3.0 | 전체 |
| 전공선택 | | 공통인정영역 | 물권법 | 3.0 | 전체 |
| 전공선택 | | 공통인정영역 | 민사소송법2 | 3.0 | 전체 |
| 전공선택 | | 공통인정영역 | 헌법 2 | 3.0 | 전체 |
| 전공선택 | | 공통인정영역 | 상법총칙.상행위 | 3.0 | 전체 |
| 전공선택 | | 공통인정영역 | 형법각론 | 3.0 | 전체 |
| 전공선택 | | 공통인정영역 | 민사소송법1 | 3.0 | 전체 |
| 전공선택 | | 공통인정영역 | 회사법 | 3.0 | 전체 |
| 전공선택 | | 공통인정영역 | 국제법1(원어) | 3.0 | 전체 |
| 전공선택 | | 공통인정영역 | 노동법 1 | 3.0 | 전체 |
| 전공선택 | | 공통인정영역 | 국제법 2(원어) | 3.0 | 전체 |
| 전공선택 | | 공통인정영역 | 어음수표법 | 3.0 | 전체 |
| 전공선택 | | 공통인정영역 | 국제사법 | 3.0 | 전체 |
| 전공선택 | | 공통인정영역 | 노동법 2 | 3.0 | 전체 |
| 전공선택 | | 공통인정영역 | 경제법 | 3.0 | 전체 |
| 전공선택 | | 공통인정영역 | 형사소송법 | 3.0 | 전체 |
| 전공선택 | | 공통인정영역 | 인터넷과 형법 | 3.0 | 전체 |
| 전공선택 | | 공통인정영역 | 법여성학 | 3.0 | 전체 |
| 전공선택 | | 지적재산권학 전공인정영역 | 특허법 2 | 3.0 | 전체 |
| 전공선택 | | 지적재산권학 전공인정영역 | 라이센싱실무 실습 | 3.0 | 전체 |
| 전공선택 | | 지적재산권학 전공인정영역 | 특허정보실무 | 3.0 | 전체 |
| 전공선택 | | 지적재산권학 전공인정영역 | 명세서작성실무 | 3.0 | 전체 |
| 전공선택 | | 지적재산권학 전공인정영역 | 특허영어 | 3.0 | 전체 |
| 전공선택 | | 지적재산권학 전공인정영역 | 디자인보호법 | 3.0 | 전체 |

2) 대학원 교육(석·박사 과정)

한국에서의 비교적 고도의 전문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대학원에서의 교육이고 지식재산을 기본적으로 전공하여 이 분야에 관한 지식을 심화적으로 학습하는 곳이 대학원이라고 생각된다. 현재로서는 대학원에서의 지식재산 교육이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지식재산에 대한 대학원 교육과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일반대학원에서의 지식재산 교육, 둘째,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지식재산 교육, 셋째, 법무학원에서 지식재산을 전공하는 것, 넷째, MIP나 MOT에서 지식재산 관련 공부를 하는 것이다.

대학원에서의 지식재산 교육의 방향성이나 목적, 그 기능은 모두 다르다고 판단된다. 일반대학원의 경우 대부분 학문 그 자체를 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 진로나 방향에 있어서 학자지향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는 법률적인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식재산과 관련 업무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학생이 수강하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법무대학원의 경우는 위 양자의 성격이 다소 혼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부분적으로 사회인 재교육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MIP과정이나 MOT과정은 사회인의 지식재산에 대한 심화과정 내지 실무형 교육을 위주로 하여 산업이나 실무현장에서의 애로점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받는 교육과정이라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일반대학원에서의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부분은 뒤에서 언급할 일본의 일반대학원에서의 지식재산 교육과 대부분 중복되고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질 정도의 교육과정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본고에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가. 법학전문대학원(제3장에서 논의함)

다음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식재산교육을 들 수 있다.[8] 현재 한국의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에는 각자의 대학원이 선택한 특성화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식재산을 특성화 과목으로 선택한 법학전문대학원이 있다. 이러한 법학전문대학원을 좁게 파악하면 6개 대학원[9]으로 파악되고, 광의로 의료법, 기업법무, 의・생명분야를 지식재산권과 함께 특성화한 전문대학원까지 합치면 12-13개 정도의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판단된다.[10]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뒤편의 제3장에서 상세히 논

8) 윤선희,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지적재산권 교육현황”, 지적재산&정보법연구(제5집제2호) 한양대학교, 2013, 37면 이하 참조.
9) 경북대(IT법), 인하대(지적재산권), 중앙대(문화법), 충남대(지적재산권), 충북대(과학기술법), 한양대(지식문화산업)
10) 윤선희, 전게논문, 각주16면.

하기로 한다.

나. 법무대학원

한국의 대학원에는 특수대학원의 형태로 법무대학원이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노무대학원, 세무대학원, 경영대학원 등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대학원 가운데 지식재산을 주 전공으로 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을 가르치는 대학원이 있는데,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충남대의 법무대학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법무대학원에는 소위 전일제 학생도 자신의 희망에 따라 지식재산을 공부하고자 수학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무계의 판사, 검사, 변호사, 변리사를 위시한 전문가 집단이거나 지식재산 관련 기업에 종사하는 회사원 등이 수학하는 경우도 있. 이런 과정은 대부분 석·박사 과정을 함께 운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대표적 사학인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법무대학원의 교과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세대학교 지적재산권법무전공 교과목소개>

| 전공명 | 과목종별 | 학정번호 | 교과목명 | 개정(안) |
|---|---|---|---|---|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전공필수 | TA 501 | 특허법 I | |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전공필수 | TA 502 | 특허법 II | |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전공선택 | TA 503 | 저작권법 I | |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전공선택 | TA 504 | 저작권법 II | |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전공선택 | TA 505 | 실용신안법 | |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전공선택 | TA 506 | 상표법 | |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전공선택 | TA 601 | 지적재산권개론 | |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전공선택 | TA 602 | 특허심사.심판실무 I | |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전공선택 | TA 603 | 특허심사. 심판실무 II | |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전공선택 | TA 604 | 실용신안심사.심판실무 | |
| 지식재산권법무 | 전공선택 | TA 605 | 특허관리 | |

| | | | | |
|---|---|---|---|---|
| 전공 | | | | |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전공선택 | TA 606 | 비교특허법 | |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전공선택 | TA 607 | 특허협력조약 | |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전공선택 | TA 608 | 특허.실용신안 판례연구 | |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전공선택 | TA 609 | 상표법 | |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전공선택 | TA 610 | 상표심사.심판 실무연구 | |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전공선택 | TA 611 | 특수상표이론과 실무 | |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전공선택 | TA 612 | 의장법 | |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전공선택 | TA 613 | 의장심사.심판실무 및 판례연구 | |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전공선택 | TA 614 | 특수의장이론과 실무 | |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전공선택 | TA 617 | 저작인접권 | |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전공선택 | TA 618 | 베른조약(저작권) | |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전공선택 | TA 619 | 저작권분쟁 세미나 | |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전공선택 | TA 620 | 신지적재산권 | |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전공선택 | TA 621 | 저작권 특수강좌 | |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전공선택 | TA 622 | 저작권판례연구 | |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전공선택 | TA 623 | WTO TRIPs | |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전공선택 | TA 624 | 실용신안실무연구 | |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전공선택 | TA 625 | 지적재산권기구론 | |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전공선택 | TA 626 | 민사소송법 | |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전공선택 | TA 627 | 저작권법 | |

| | | | | |
|---|---|---|---|---|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전공선택 | TA 628 | 부정경쟁방지법 | |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전공선택 | TA 629 | 상표판례연구 | |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전공선택 | TA 630 | 지적재산권 라이센스 계약법 연구 | |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전공선택 | TA 631 | 디자인보호법 | |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전공선택 | TA 632 | 특허침해소송론 | |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전공선택 | TA 633 | 미국특허법 | |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전공선택 | TA 634 | 유비쿼터스 환경과 지적재산권 | |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전공선택 | TA 635 | 미국저작권법 | |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전공선택 | TA 636 | 특허소송법 | |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전공선택 | TA 637 | 특허침해소송실무 | |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전공선택 | TA 638 | 부정경쟁방비및영업비밀보호법 | |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전공선택 | TA 639 | 상표법·영업비밀보호법 | |
| 지식재산권법무전공 | 전공선택 | TA 640 | 상표,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판례연구 |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과>[11]

| 구 분 | 학수번호 | 교과목 | 시간 | 학점 | 비고 |
|---|---|---|---|---|---|
| 전공 필수 | GLC 513 | 특허법 실용신안법 | 2 | 2 | |
| | GLC 516 | 저작권법 | 2 | 2 | |
| 소 계 | | | 4 | 4 | |
| 전공 선택 | GLC 515 | 상표법 | 2 | 2 | 택6과목 (12학점) |
| | GLC 518 | 지적재산권소송 | 2 | 2 | |
| | GLC 519 | 지적재산권분쟁해결제도 | 2 | 2 | |
| | GLC 522 | 지적재산권국제조약 | 2 | 2 | |

11) http://www.korealawschool.com/korea.asp?ai=17.

| | | | | | |
|---|---|---|---|---|---|
| | GLC 526 | 신지적재산권 | 2 | 2 | |
| | GLC 527 | 국제기술도입계약 | 2 | 2 | |
| | GLC 530 | 상표법 판례연구 | 2 | 2 | |
| | GLC 531 | 저작권 판례연구 | 2 | 2 | |
| | GLC 533 | 인터넷과 지적재산권 | 2 | 2 | |
| | GLC 535 | 상품화권 | 2 | 2 | |
| | GLC 537 | 컴퓨터와 지적재산권 | 2 | 2 | |
| | GLC 539 | 특허법・실용신안법 판례연구 | 2 | 2 | |
| | GLC 540 | 디자인보호법 | 2 | 2 | |
| | GLC 541 | 지적재산권과독점규제법 | 2 | 2 | |
| | GLC 542 | 특허소송 | 2 | 2 | |
| | GLC 543 | 지적재산권과법의충돌 | 2 | 2 | |
| | GLC 544 | 디지털권리관리 | 2 | 2 | |
| | GLC 545 | 지적재산권의이론적근거 | 2 | 2 | |
| | GLC 546 | 프라이버시 퍼블리시티및인격권의 보호 | 2 | 2 | |
| | GLC 547 | 엔터테인먼트법 | 2 | 2 | |
| | GLC 548 | 부정경쟁 지법특수문제 | 2 | 2 | |
| | GLC 549 | 미국특허법 | 2 | 2 | |
| | GLC 550 | 미국저작권법 | 2 | 2 | |
| | GLC 551 | 유럽특허법 | 2 | 2 | |
| | GLC 552 | 유럽저작권법 | 2 | 2 | |
| | GLC 553 | 국제비교상표법 | 2 | 2 | |
| | GLC 554 | 동아시아국가의지적재산권법 | 2 | 2 | |
| | GLC 555 | 지적재산권법 기본판례 | 2 | 2 | |
| | GLC 556 |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 | 2 | 2 | |
| **소 계** | | | 12 | 12 | |
| **일반선택** | | | 6 | 6 | |
| **소 계** | | | 28 | 28 | |

2. 교양형 교육프로그램

대학교육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지식재산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거나 지식재산에 대한 배움을 희망하도록 동기부여 내지 인식을 확산시키는 교육으로서는 각 대학의 교양과목으로서의 지식재산권법 과목을 들 수 있다. 보통 1학기에 1과목 정도로서 전공을 불문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2)]

교양과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재산권법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법

학전공과목과는 달리 사례 소개와 기초 이론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대로 지식재산에 흥미 내지 관심을 유도하는 지식재산 확산형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프로그램'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특허청의 사업의 일환으로서 대학교육내에서 지식재산 특히 특허와 관련된 지식을 확산시키고자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 계통의 학생들을 상대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이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대학교로서는 전남대학교를 들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의 이념 내지 교육목표는 1. 지식재산 인프라 기여, 2. 지식재산기본법 실행, 3. 지역의 지식재산 발굴 및 창출이며, 교육의 실행방안으로서는 지식기반 정보산업사회에 필요한 인재육성 교육, 체계적인 지식재산교육 시스템 구축 교육 활성화, 지역 거점 지식재산 네트워크 및 산학연관 지식재산 정책 추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3. 실무연계 내지 실무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 1) 홍익대 MIP

대학원 과정으로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학위를 수여하는 과정을 특허청에서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지식재산전문학위과정(MIP)이라고 부른다.

2013년에 특허청에서 공고한 이 교육과정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목표는,

◦ 기존의 대학(원)내 개설된 과정 등과 차별화된 사례·실무 중심의 다학제적 융합형(Inter-disciplinary)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하여야 하며,

- 기업의 미래 CIPO(Chief Intellectual Property Officer, 최고 지식재산 경영자)로서 해외 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기업의 지재권 전략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중견 지재권 관리자 양성하여야 한다.
- 일반 Law-School 등과의 차별성이 있어야 하는데, 국제 지식재산 전문가의 양성으로써 국제교섭 및 분쟁대응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어야 한다.
- MBA프로그램 등과의 차별성은 지식재산 사업화를 위한 실제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이어야 한다.

그리고 특허청의 지원대상은,

◦ 전국 4년제 대학(원)에서 추진조직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 2015년 상반기 지식재산 전문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대학이어야 한다. 즉 2014

12)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부산대학교의 경우 1학기에 지적재산권법I, 2학기에 지적재산권법II가 개설되어 있다.

년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설립 및 신입생 모집하여야 하고, 2015년부터 정규 프로그램 운영하여야 한다.

특허청의 본 학위과정 개설대학에 지원 규모는,

◦ 대학당 최대 5년간 총 20억원 이내 지원하는데, 매년 성과평가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지원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에 관해서는,

◦ 기존 대학(원)내 교육과정 형태로 개설하고, 수업연한은 관련 기준에 의거 대학별로 자율적 설계하여야 하며,

◦ 교육대상 및 인원은 지식재산 직무경험자(기업재직자 포함)를 우선 선발하되(정원의 40% 이상), 학부졸업생 선발도 가능(정원의 20% 이하)하며,

◦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을 전담할 교수진을 비롯한 교육 인프라 구축하여야 하며, 기업의 현직 지재 인력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교수로 확보 또는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교육커리큘럼은 현장중심형 실무교육과목으로 편성하여 국내 기업 현장의 지식재산 역량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대표적인 곳이 홍익대학교이며[13], 그 교육과정[14]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학기 | 과목명 | |
|---|---|---|
| 1학기 | 지식재산권개론 | 특허법 |
| | 저작권 소송실무 | 상표판례연구 |
| | 지식경영정보시스템 | 기술경영 |
| | 기술경영 | 공학의 이해 |
| | Design, Innovation & IP | 미국특허출원실무 |
| | 미국상표실무 | 특허법 |
| 2학기 | 특허출원실무 | 특허정보조사분석 |
| | 디자인의 보호 | 디지털콘텐츠법 |
| | IP 경제론 | IP 경제성 분석 |
| | American IP Contract Law | International IP Dispute Settlement/국제특허분쟁 |
| | International IP Contract and Negotiation/ | |

13) 이를 운영하는 대학이 홍익대학교 외에 카이스트가 있었으나 카이스트가 이 과정을 반납하여 고려대학교가 이어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14) http://mip.hongik.ac.kr/course/system.php.

| | | |
|---|---|---|
| | 국제 IP계약 및 협상 | |
| 3학기 | 지식재산라이센스계약실무 | 영업비밀보호전략 |
| | 신기술동향1 | 인터넷과 법 |
| | IP 사업타당성분석 | 기술표준화 |
| | IP 가치평가 | 기술과 IP 사례연구 |
| | 미국명세서 작성 및 출원클리닉 | Comparative IP Law |
| | 논문연구 | |
| 4학기 | 지식재산신탁 | 디자인출원실무 |
| | 국제특허소송전략 | 신기술동향2 |
| | 연구개발관리 | 기술전략 |
| | 산업재산권침해소송실무 | 미국저작권 |
| | International Trade and IP | 논문연구 |

2) MOT

기술과 경영을 주로 가르치는 MOT과정을 한국에서는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 부경대학교, 전남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15]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 | | 1학기 | 2학기 | 3학기 | 4학기 |
|---|---|---|---|---|---|
| 필수과목 | | 기술경영 (3학점) | 기술가치평가 (3학점) | 기술사업화 (3학점) | |
| | | 기술마케팅 (3학점) | 기술인사 및 조직 관리(3학점) | 기업가정신 (3학점) | |
| 선택과목(5개과정) | 기술전략및관리 | 기술전략 (3학점) | 지식경영 (3학점) | 프로젝트관리 (3학점) | 지식재산경영 (3학점) |
| | | | | 기술정책 (3학점) | 리스크관리 (3학점) |
| | 신사업개 | 제품개발 (3학점) | 기술회계 (3학점) | 하이테크제품 및 시장 개발(3학점) | 기술혁신 (3학점) |
| | | | | 사업관리 (3학점) | 제조혁신 (3학점) |

15) https://mot.korea.ac.kr/curriculum/curriculum.jsp.

| | | | | | |
|---|---|---|---|---|---|
| | 발 | | | | |
| | 신 수 종 창 출 | 기술재무 (3학점) | 신벤처창조 (3학점) | 벤처와 창업 (3학점) | 투자공학 (3학점) |
| | | | | 물류경영 (3학점) | 글로벌경영 (3학점) |

| | | | | | |
|---|---|---|---|---|---|
| 공학기반 선택과목 (5개 과정) | 화공산업경영 (3학점) | 플랜트경영 (3학점) | 건설사업관리 (3학점) | 신소재사업전략 (3학점) | 전기전자산업경영 (3학점) |
| | 건설산업경영 (3학점) | 자동화산업경영 (3학점) | 기계산업경영 (3학점) | 소재산업경영(3학점) | IT산업경영(3학점) |

| | | | | |
|---|---|---|---|---|
| | | | | |
| 실무인증 과목 (2개 과정) | | | 기업사례연구Ⅰ (3학점) | 기업사례연구Ⅱ (3학점) |

서강대학교의 기술경영대학원[16]의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세부과목 | | 비고 |
|---|---|---|---|
| 기초 필수 과목 (9학점) | 기술경영개론 (3학점)<br>기술기반기업을 위한 재무회계 (3학점)<br>기술마케팅과 시장조사 (3학점)<br>영어커뮤니케이션 (0학점)(P/NP과목) | | |
| 전공 필수 과목<br>전일제(21학점)<br>산업체<br>재직자(18학점) | 전일제/산업체 재직자:공통필수 과목(12학점) | | 단기 해외 방문 프로그램 Ⅰ은 Vacation Premium Class로 Illinois대학과 연계한 단기교육프로그램, Ⅱ는 |
| | 기술과 경제(3학점)<br>기술경영 연구방법론(3학점)<br>기술경영 전략 초청 세미나 Ⅰ,Ⅱ(각2학점)/(P/NP과목)<br>단기 해외방문 프로그램 Ⅰ,Ⅱ(각2학점)/(P/NP과목) | | |
| | 전일제<br>필수과목(9학점) | 산업체 재직자 필수과목<br>(6학점) | |
| | 기술경영 연구 | 산학연계 프로젝트Ⅰ | |

16) http://sgmot.sogang.ac.kr/.

| | | | | |
|---|---|---|---|---|
| | | 세미나(3학점)<br>졸업논문(3학점)<br>/(P/NP과목)<br>인턴쉽(3학점)/(P/NP과목) | (3학점)<br>산학연계 프로젝트Ⅱ<br>(3학점/(P/NP평가) | MOT STUDY TOUR로 해외성공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여름 또는 겨울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임. |
| | | 전일제 합계:21학점 | 산업체 재직자<br>합계:18학점 | |
| 전공선택과목 | Innovative Entrepreneurs(IE)트랙 | 기술혁신론(3학점)<br>벤처창업과 기업가 정신(3학점)<br>신기술사업화(3학점)<br>기술경영을 위한 인력과 조직관리(3학점)<br>기술혁신과 리더쉽(3학점) | | 본인이 선택한 트랙별 개설과목 중 2과목(6학점)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나머지 9학점은 트랙 및 공통과목 구분 없이 교차수강 가능함. |
| | Entrepreneurial Technology Manager(ETM)트랙 | 하이테크 마케팅(3학점)<br>기술예측 및 기획(3학점)<br>지식재산권 관리(3학점)<br>R&D관리(3학점)<br>신제품 개발 프로세스 관리(3학점) | | |
| | 공통과목 | 제조 프로세스 혁신(3학점)<br>기술과 금융(3학점)<br>벤처파이낸스(3학점)<br>통합마케팅 커뮤니케이션(3학점)<br>산업과 경제정책(3학점)<br>거시적 해외시장 분석-G20&FTA(3학점)<br>생산공정개론(3학점)<br>기술경영 특론Ⅰ,Ⅱ(3학점)<br>미래기술 특론Ⅰ,Ⅱ(3학점)<br>융·복합기술 사업화 특론(3학점)<br>산학협력 세미나(3학점)<br>기업홍보 세미나(3학점) | | |

| | | | |
|---|---|---|---|
| | | 기술과 경쟁전략(3학점)<br>신사업 전략과 정책(3학점)<br>에너지기술 혁신과 정책(3학점)<br>기술개발을 위한 전략적 제휴와 아웃소싱(3학점) | |

·MOTA201(기술경영 연구방법론)은 모든 학생이 수강하여야 하는 전공필수 과목임.

·MOTA422(기술경영 연구 세미나)은 전일제 학생의 전공필수 과목임.(논문을 제출할 전일제 학생은 이수 3학기째에 반드시 이수).

·MOTA500(산학연계프로젝트Ⅰ,Ⅱ)은 산업체 재직자 학생의 전공필수 과목임.

·단기 해외방문 프로그램(MOTA450/451)에 부득이한 사유로 불차할 경우 선택과목 중1과목(3학점)을 추가 이수하여야함.(졸업소요학점 45학점이상 이수)

·인턴십(MOTA441)은 전일제 학생들의 필수과목임(산업체 재직자 제외), 최소4주(160시간)이상 근무하여야함.(책임 시수는 하계/동계 계절학기별로 나누어 진행 가능하며, 이럴 경우 완료되는 학기에 학점 이수처리됨)

·Track변경 신청은 이수 3학기때까지 변경할 수 있음(양식:홈페이지 자료실)

| 과목명 | 책임 교수 |
|---|---|
| 기술경영 전략 초청 세미나Ⅰ,Ⅱ | 김동률 교수 |
| 단기 해외방문 프로그램Ⅰ,Ⅱ | 이규태 교수(Ⅰ), 김용민 교수(Ⅱ) |
| 인턴십, 멘토링 및 취업지원 | 김용민 교수, 장홍순 교수 |

·학점이수표

| 구분 | 기초 필수 | 전공 필수 | 전공 선택 | 금요 포럼 | 해외 방문 | 인턴 십 | 산학연 계 | MOT 세미 나 | 졸업논 문 | 계 |
|---|---|---|---|---|---|---|---|---|---|---|
| 산업체 재직자 | 9 | 6 | 18 | 4 | 2 | | 6 | | | 45 |
| 전일제 | 9 | 6 | 15 | 4 | 2 | 3 | | 3 | 3 | 45 |

<한양대학교의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과과정>[17]

| 교과목 | 과목구분 |
|---|---|
| IT기술사업화전략론 | 전공선택 |
| IT융합과 기술경영 | 전공선택 |
| R&D관리 | 전공선택 |
| R&D조직의 변화관리와 성과창출 | 전공선택 |
| 과학기술혁신정책이슈 | 전공선택 |
| 기술가치평가와 거래심화 연구 | 전공선택 |
| 기술가치평가와 거래입문 | 전공선택 |

17) http://mot.hanyang.ac.kr/indexD5.html.

| | |
|---|---|
| 기술경영 계량 분석 | 전공선택 |
| 기술경영개론 | 전공선택 |
| 기술경영세미나1 | 전공선택 |
| 기술경영세미나2 | 전공선택 |
| 기술경영조사방법론 | 전공선택 |
| 기술경영컨설팅 방법론 | 전공선택 |
| 기술경영컨설팅 방법론 2 | 전공선택 |
| 기술경영컨설팅 실습 | 전공선택 |
| 기술경영컨설팅실습2 | 전공선택 |
| 기술과 금융의 이해 | 전공선택 |
| 기술과 심리 | 전공선택 |
| 기술기업관리회계론 | 전공선택 |
| 기술기업재무회계론 | 전공선택 |
| 기술로드맵 활용 | 전공선택 |
| 기술마케팅심화연구 | 전공선택 |
| 기술마케팅입문 | 전공선택 |
| 기술사업화비즈니스모델링 | 전공선택 |
| 기술혁신과전략 | 전공선택 |
| 대형R&D프로젝트관리 | 전공선택 |
| 디자인기술 혁신스튜디오 | 전공선택 |
| 디자인기술 혁신이론 | 전공선택 |
| 미래연구방법론 | 전공선택 |
| 미래연구방법론실습 | 전공선택 |
| 미래학개론 | 전공선택 |
| 사물인터넷 기반 기술혁신 | 전공선택 |
| 사업기획과 전략개발 | 전공선택 |
| 사업전략과 기술로드맵 | 전공선택 |
| 시스템다이내믹스 | 전공선택 |
| 신제품개발론 | 전공선택 |
| 연구방법론 | 전공선택 |
| 인간심리와 혁신 제품-서비스개발론 | 전공선택 |
| 전략경영개론 | 전공선택 |
| 전략경영사례연구 | 전공선택 |
| 전략적 SCM디자인 | 전공선택 |
| 지식재산경영과 경제학스튜디오 | 전공선택 |
| 지식재산경영과 경제학이론 | 전공선택 |

| | |
|---|---|
| 특허전략 2 | 전공선택 |
| 특허전략1 | 전공선택 |
| 프로젝트프랙티컴1 | 전공필수 |
| 프로젝트프랙티컴2 | 전공필수 |
| 프로젝트프랙티컴3 | 전공필수 |
| 프로젝트프랙티컴4 | 전공필수 |
| 행동경제학 | 전공선택 |
| 혁신 디자인-제조 전문과정 | 전공선택 |
| 혁신 디자인공학 방법론 | 전공선택 |
| 혁신경영 특론 | 전공선택 |
| 혁신경영론 | 전공선택 |
| 혁신이론 및 정책 | 전공선택 |

<성균관대학교의 기술경영학과(MOT) 교육과정[18]>

| 교과목명 | 영역구분 |
|---|---|
| 기술전략 | 전공 |
| 기술사업화 | 전공 |
| 기술경영학개론 | 전공 |
| 신제품개발론 | 전공 |
| 기술경영 커뮤니케이션 | 전공 |
| 기술예측 | 전공 |
| 기술기획 | 전공 |
| 프로젝트관리 | 전공 |
| 기술가치평가 | 전공 |
| 기술자산관리 | 전공 |
| 조직인사관리 | 전공 |
| 기술경영통계 | 전공 |
| 기술혁신 | 전공 |
| R&D평가 | 전공 |
| 지식경영 | 전공 |
| 기술마케팅 | 전공 |
| 기술정보관리 | 전공 |
| 신기술동향분석 | 전공 |
| 벤쳐경영론 | 전공 |

18) http://mot.skku.edu/contents/kor/currintro/curriculum.html.

| | |
|---|---|
| 기업가정신 & 기업윤리 | 전공 |
| 기술경제학 | 전공 |
| 제조전략 | 전공 |
| 국제기술경영 | 전공 |
| 계량경영학 | 전공 |
| 시장분석 | 전공 |
| 기술재무 | 전공 |
| 인턴십 Ⅰ | 전공 |
| 인턴십 Ⅱ | 전공 |
| 기술계약 | 전공 |
| 금융공학 | 전공 |
| 신사업개발론 | 전공 |
| 전략적 경영 | 전공 |
| 경제성공학 | 전공 |
| 기술정책 | 전공 |
| 기술리더십 | 전공 |
| 기술경영세미나 | 전공 |

<전남대학교의 경영전문대학원 MOT MBA 교육과정>[19]

| 구분 | 1학기(9-12월) | 2학기(1-4월) | 3학기(5-8월) |
|---|---|---|---|
| 공통필수 | 기술경영개론 | 기술사업화론 | 기술혁신전략론 |
| | 기술경영회계 | 기술경영인사조직 | 캡스톤프로젝트2 |
| | 기술경영커뮤니케이션 | 하이테크마케팅 | |
| | 하이테크산업분석 | 캡스톤프로젝트1 | |
| 공통선택 | 신제품개발관리 | 기술경영리더십 | 신기술동향분석 |
| | 기술경영재무론 | 기술가치평가 | 기술혁신경제론 |
| | 기술협상론 | 기술예측론 | 기술혁신기법 |
| | 기술경영연구방법론 | 기술정책론 | 하이테크신흥시장현장실습 |
| | | | 기업가정신 |
| | | | 기술개발프로젝트관리론 |
| | | | 지적자산관리론 |
| | | | 지역전략산업특론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기술경영대학원[20]의 교과과정>

19) http://mba.chonnam.ac.kr/html/?MBA=007003000.
20) http://mot.kut.ac.kr/.

| 이수구분 | 교과목 | |
|---|---|---|
| 기초과목 | 경영학특론(MOT선수과목)<br>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Ⅰ<br>(MOT선수과목)<br>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Ⅱ<br>(MOT선수과목)<br>기술경영론 | 인턴십Ⅰ<br>인턴십Ⅱ<br>인턴십Ⅲ<br>글로벌인턴십 |
| 전공공통필수 | <석사과정><br>기술경영연구방법론Ⅰ<br>기술경영연구방법론Ⅱ<br><박사과정><br>기술경영연구방법론세미나Ⅰ<br>기술경영연구방법론세미나Ⅱ | 현장기술연구Ⅰ<br>현장기술연구세미나Ⅰ<br>현장기술연구Ⅱ<br>현장기술연구세미나Ⅱ |
| 전공선택 | 신기술동향<br>기술경영세미나<br>벤처경영론<br>기술인사조직론<br>기술마케팅론<br>신상품경영론<br>혁신경영론<br>기술정책론<br>기술혁신경제론<br>기술예측론<br>기술경영재무론 | 기술가치평가론<br>제조혁신<br>프로젝트관리론<br>시장분석론<br>기술사업화론<br>특허경영론<br>기술전략론<br>혁신정책세미나(박사과정)<br>혁신전략세미나(박사과정)<br>기술혁신경제세미나(박사과정)<br>기술경영회계<br>기술기획과 전략실무<br>기술사업화 전략세미나(박사과정)<br>R&D경영세미나(박사과정)<br>신상품경영세미나(박사과정)<br>특허경영세미나(박사과정) |

3) 기술사업정책 과정(TBP)

부산대학교에서는 '기술사업정책전공'라는 과정을 계약학과형태로 개설하여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기사정'이라고 약칭하여 부르는 위 과정은 기술, 법률, 경영이 조화된 학제적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동남권 기업의 업무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과목은 산업공학, 기업경영법, 지식재산권법, 기술정책 등으로 기술을 둘러싼 사업정책을 교육하는 학제 간 융합 과정이다. 2013년 현재 2007년 이후 석사과정 학위수여자 총 45명, 박사학위 수여자 총 19명을 배출하고 있고, 이중 지식재산권 관련 논문으로 석사 4개, 박사 1개가 있다. 구체적인 교과목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수구분 | 교과목명 | 이수학점 | | |
|---|---|---|---|---|
| | | 학점 | 이론 | 실습 |
| 전공 석.박사공용 | 논문연구(Thesis Research) | 3.0 | 3.0 | 0.0 |
| | 기술경영학개론(Ⅰ)(Introduction to Technology Management(Ⅰ)) | 3.0 | 3.0 | 0.0 |
| | 지적재산관리전략론(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Strategy) | 3.0 | 3.0 | 0.0 |
| | 산업기술정책론(Industry Technology Policy) | 3.0 | 3.0 | 0.0 |
| | 국제기술정책론(International Technology Policy) | 3.0 | 3.0 | 0.0 |
| | 기술이전사업화론(Technology Transfer Commercialization) | 3.0 | 3.0 | 0.0 |
| | 국제계약론(Theory of International Contract) | 3.0 | 3.0 | 0.0 |
| | 기술계약론(Theory of Technology Contract) | 3.0 | 3.0 | 0.0 |
| | 지적재산권법이론(Theory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 3.0 | 3.0 | 0.0 |
| | 특허법이론(Theory of Patent Law) | 3.0 | 3.0 | 0.0 |
| | 기업법개론(Introduction to Corporate Law) | 3.0 | 3.0 | 0.0 |
| | 컨설팅비즈니스(Consulting Business) | 3.0 | 3.0 | 0.0 |
| | 기업사례연구(Corporate Case Study) | 3.0 | 3.0 | 0.0 |

| | | | | |
|---|---|---|---|---|
| | 기술경영학개론(Ⅱ)(Introduction to Technology Management(Ⅱ)) | 3.0 | 3.0 | 0.0 |
| | 기술사업법(Technology Business Law) | 3.0 | 3.0 | 0.0 |
| | 기업법무(Corporate Law) | 3.0 | 3.0 | 0.0 |
| | 기술경영(Ⅰ)(Technology Management(Ⅰ)) | 3.0 | 3.0 | 0.0 |
| | 기술경영전략(Technology Management Strategy) | 3.0 | 3.0 | 0.0 |
| | 기술정책(Ⅰ)(Technology Policy(Ⅰ)) | 3.0 | 3.0 | 0.0 |
| | 기술정책(Ⅱ)(Technology Policy(Ⅱ)) | 3.0 | 3.0 | 0.0 |
| | 기술경영(Ⅱ)(Technology Management(Ⅱ)) | 3.0 | 3.0 | 0.0 |
| | 기술경영케이스스터디(Technology Management Case Study) | 3.0 | 3.0 | 0.0 |
| | 지재권관리(In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Strategy) | 3.0 | 3.0 | 0.0 |
| | 기술사업케이스스터디(Technology Business Case Study) | 3.0 | 3.0 | 0.0 |
| | 지재권전략(Intellectual Property) | 3.0 | 3.0 | 0.0 |
| | 기술벤처창업(Technology Venture Start) | 3.0 | 3.0 | 0.0 |
| | 해외첨단기술현장실습(Ⅰ)(International High-Tech Field Practice(Ⅰ)) | 3.0 | 3.0 | 0.0 |
| | 해외첨단기술현장실습(Ⅱ)(International High-Tech Field Practice(Ⅱ)) | 3.0 | 3.0 | 0.0 |
| | 기술관리전략(Technolog | 3.0 | 3.0 | 0.0 |

| | | | | |
|---|---|---|---|---|
| | y Management Strategy) | | | |
| | 기술보호전략(Technology Protection Strategy) | 3.0 | 3.0 | 0.0 |
| | 계약과협상(Contract & Negotiation) | 3.0 | 3.0 | 0.0 |
| | 경영법률(Ⅰ)(Business Law(Ⅰ)) | 3.0 | 3.0 | 0.0 |
| | 경영법률(Ⅱ)(Business Law(Ⅱ)) | 3.0 | 3.0 | 0.0 |
| | 기술사업정책세미나(Ⅰ)(Technology Business Policy Seminar(Ⅰ)) | 3.0 | 3.0 | 0.0 |
| | 기술사업정책세미나(Ⅱ)(Technology Business Policy Seminar(Ⅱ)) | 3.0 | 3.0 | 0.0 |
| | 기술사업정책세미나(Ⅲ)(Technology Business Policy Seminar(Ⅲ)) | 3.0 | 3.0 | 0.0 |
| | 계약과국제거래(Contract And International Transactions) | 3.0 | 3.0 | 0.0 |
| | 기술이전사업화(Ⅱ)(Technology Transfer Commercialization(Ⅱ)) | 3.0 | 3.0 | 0.0 |
| | 기술경영과회계(Technology Management And Accounting) | 3.0 | 3.0 | 0.0 |
| | 기술경영과금융(Technology Management And Finance) | 3.0 | 3.0 | 0.0 |
| | 기술이전사업화(Ⅰ)(Technology Transfer Commercialization(Ⅰ)) | 3.0 | 3.0 | 0.0 |
| | 기업회계론( Business Accounting) | 3.0 | 3.0 | 0.0 |
| | 기업금융이론(Business Finance) | 3.0 | 3.0 | 0.0 |
| | 기술사업정책케이스스터디(Ⅰ)(Technology | 3.0 | 3.0 | 0.0 |

| | | | | |
|---|---|---|---|---|
| | Business Policy Case Study(Ⅰ)) | | | |
| | 기술사업정책케이스스터디(Ⅱ)(Technology Business Policy Case Study(Ⅱ)) | 3.0 | 3.0 | 0.0 |
| | 지역사업정책론(Ⅰ)(Local Industry Policy(Ⅰ)) | 3.0 | 3.0 | 0.0 |
| | 지역사업정책론(Ⅱ)(Local Industry Policy(Ⅱ)) | 3.0 | 3.0 | 0.0 |

4. 대학교육기관 이외의 교육프로그램

발명진흥회와 저작권위원회 등에서 대학생과 일반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논문 공모나 특허소송 변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학생들에게 지식재산권에 관한 관심유도, 미래직업에 대한 비전 제시 등을 통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본 용역연구와의 상관성 내지 연계성은 그다지 중요하거나 시사점이 있다고 보기에는 일반적인 면이 적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5. 교재개발현황

한국에서의 지식재산에 관한 대학 교재 내지 실무가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서적류는 대강 별표와 같다고 생각된다. 현재 이런 통계는 100% 파악된 것은 아니다. 지식재산과 관련된 서적류 내지 출판도서는 대부분 교재 내지 수험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많으며, 실무에 종사하는 자들을 위한 매뉴얼 형태라든지, 학자 내지 연구자들을 위한 주석서 내지 깊이 있는 연구서는 다른 법학에 비해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지식재산에 관한 출판문화는 시장성 내지 경제성이 낮아 출판사에서 출판을 꺼리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2013. 12. 특허청과 발명진흥회에서 대학(원) 지식재산 표준교육과정 교육모듈별 강의교재를 발간하였으나, 특허청 산하기관의 실무인력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교재로 보이고 실제로 대학(원)에서 활용하기 위한 교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 II. 일본 대학의 지식재산권 교육 현황

### 1. 일본정부의 지식재산정책의 방향

일본의 지식재산과 관련된 전략 내지 방향성은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에서 발간한 2013. 7.에 발간한 '지적재산추진계획 2014'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지식재산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방향제시[21]를 하면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인재 육성에 대한 방향성[22]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미 일본 정부는 2012년과 2013년도에 이미 지식재산 인재 육성 플랜과 관련하여 '지식재산 매니저먼트인재'와 '글로벌 지식재산인재'를 육성·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하였다. 지식재산 매니저먼트 인재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표준 또는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말하고 글로벌 지식재산 인재란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말한다.

글로벌 지식재산 인재와 경영층도 포함된 지식재산 매니저먼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다양한 지식재산에 대한 정보, 법률적인 지식, 사업전략과 연계된 지식재산전략에 관한 식견과 노우하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정보와 지식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정부가 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정부가 중심이 되어 민간영역과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음과 같이 정부조직이 추진하여야 할 여덟 가지 과제를 제시[23]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지식재산 인재의 육성의 장은 정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① 세계를 부대로 활약할 수 있는 지식재산인재 육성의 장 정비

미국특허상표청(USPTO) 등의 대처에 대한 조사 결과를 참고하면서, 독일의 민간영역과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과 연계하여 정부 주도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지식재산인재를 육성할 장을 정비한다. 그 일환으로서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 지식재산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사례를 수집하고, 소규모 그룹 연수를 실시하는 등 기업의 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재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정비에 착수한다. 본 사업은 단기·중기 사업으로서 경제산업성이 담당한다.

② 종합적으로 지식재산 전략을 구축을 지원하는 인재 육성

비즈니스 모델 검토 단계부터 소송 대응 등 권리행사 단계까지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적 지식이나 해외 정보를 포함한 사업 전략과 연계한 지적재산 매니지먼트 전략에 관한 식견을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에서 특

21) 지식재산전략본부, '지적재산추진계획 2014', 2014. 7., 7면 이하.
22) 위 보고서 28면 - 31면.
23) 위 보고서 30-31면.

허·디아진·상표·노하우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식재산 매니지먼트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강화한다. 본 사업은 중기・단기 사업으로서 경제산업성이 담당한다.

③ 표준화와 관련되는 국제 교섭 담당 인재 등의 육성

현재 일본이 90개 이상 담당하고 있는 국제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ISO) 및 소프트웨어 기술자 기구(Institute of Software Engineers, ISE) 전문위원회의 간사국의 수를 계속해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에서 의장 또는 간사를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세대를 초월하여 육성할 방책을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관리직, 영업직, 초임자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국제표준활용 인재를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본 사업은 중기・단기 사업으로서 경제산업성이 담당한다.

④ 영어를 통한 지재 교육 프로그램

일본의 지식재산 시스템을 글로벌하게 전개하는 동시에 세계적으로 뛰어난 지식재산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의 학술·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영어를 사용하는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체제를 정비할 것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본 사업은 중기・단기 사업으로서 경제산업성이 담당한다.

⑤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변리사·법조인재 육성 강화

일본의 지식재산 법제의 국제적으로 소개, 해외지식재산 정보의 취득, 국제적인 지식재산 ADR 기관의 정비 등을 시야에 넣고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변리사·법조인재의 육성을 강화・촉진한다. 본 사업은 중기・단기 사업으로서 경제산업성과 법무성이 담당한다.

⑥ 신흥국 등에 있어서의 사법(司法)과 관련된 지식재산 인재의 육성 지원

신흥국 등에 있어서의 지재권 집행(enforcement)에 관한 법제도·운용 정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사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서 신흥국 등 사법 관계자 등에 대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사법에 있어서 지식재산 인재의 육성을 지원한다. 본 사업은 중기・단기 사업으로서 법무성, 경제산업성, 외무성이 담당한다.

⑦ 국경단속원에 관한 인재 육성

글로벌 지식재산환경의 정비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신흥국이 필요로 하는 것과 제도의 정비상황을 파악하고, 국경단속원에 관한 인재육성을 포함하여 적절한 지원을 실시한다. 본 사업은 중기・단기 사업으로서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이 담당한다.[24)]

⑧ 대학 등의 지식재산 교육 추진

대학 등의 이과계열 및 법학전공, 예술계통과 경영학과 등 장래의 지식재산 전문인재 및 지식재산 창출인재・매니지먼트 인재를 육성하는 학부·학과 등에 있어서, 예를 들면 지식재산에 관한 과목의 필수화를 채용하는 대학의 대응사례를 참고로 하면서 지식재산 관련 과목의 개설을 유도한다. 본 사업은 중기・단기 사업으로서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이 담당한다.

일본에서도 글로벌 지식재산 인재와 지식재산 매니저먼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서 대학교육에 있어서 지식재산 창출과 운영에 관련된 학과의 학생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각 전공과 관련된 지식재산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라는 취지로 보이고 특정 학문이나 방향등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판단된다.

2. 일본대학의 지식재산 교육

가. 홋카이도 대학(北海道大學)의 학부에서의 지식재산 교육

일본 구 제국대학의 하나인 홋카이도 대학의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은 3, 4학년 과목으로서 지적재산법(知的財産法)이라는 과목 하나가 개설되어 있다. 그 내용도 지식재산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습득을 목표로 하고 있고,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강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25)] 우리나라의 대학의 지식재산법과 관련된 교육과 비슷하다고 판단된다.

나. 홋카이도 대학(北海道大學)의 대학원에서의 지식재산 교육

24) 일본국의 위의 정책 ⑥번과 ⑦ 정책은 소위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에 대해서 일본국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정책이지만, 법학전공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법학의 수출 내지 일본법학에 친근감 내지 익숙함을 을 느끼게 하도록 하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도 여력이 되는 한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5) http://www.juris.hokudai.ac.jp/ug/syllabus/cs30ug/k11511029j9084s/(2014. 11. 9. 최종방문).

홋카이도 대학의 법학대학원에서의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은 다음과 같다.[26]

우선, 이론과목으로서 '현대지적재산권법I', '현대지적재산권법II'가 있다. 본 과목의 개설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경제 소프트화, 인터넷 시대의 도래에 의해 지적 재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지적재산법은 취급 대상이 다방면에 걸쳐있고, 그 일부에 대해서는 특허청의 절차가 관여하는 것도 있고 복잡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에 더하여, 지적재산에 관한 법률이라는 관점에서 구분된 법 분야이기 때문에 법 기술적으로는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등 기본적인 법률이 등장한다. 게다가, 대상이 지적재산임에 기인하는 응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적재산법을 배움으로써 이들 법률의 취지도 잘 안다고 하는 측면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적 재산법 학습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연습과목으로서는 지적재산권법학A, 지적재산권법학B, 지적재산권법학C, 지적재산권법학D개설되어 있고, 국제지적재산권법에 관한 분야로서는 지적재산법학특수강의A와 지적재산법학특수강의B가 개설되어 있다. 앞의 연습과목들은 일본어로 된 문헌을 읽고 지식재산권법을 공부하는 것이고, 후자의 두 과목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국제거래의 기초지식과 지식재산의 정당성 이론을 배우는 과목이다.

### 다. 동경공업대학(東京工業大學)의 지식재산 교육

동경공업대학의 대학원에는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연구과(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Graduate School of Innovation Management)가 설치되어 있다. 대학원의 연구과의 설치목적 및 운영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27]

#### (1) 본 연구과의 설치목적

본 학과는 동경공업대학 및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면서 기술에 특화된 지식재산 매니저먼트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28] 이를 위해서 공학, 기술의 배경을 가지고 지식재산권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 또는 이미 법학부 내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법률배경을 가지면서 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에 관해서 배우고자 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단순히 지식재산권관련 법률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욱 중요성이 더해가는 지식재산의 매니저먼트 능력을 양성을

26) http://www.juris.hokudai.ac.jp/gs/syllabus/(2014. 11. 9. 최종방문).
27) http://www.mot.titech.ac.jp/dept_mot/mot_lecture/ (2014. 11. 9. 최종방문).
28) 京本直樹, "東京工業大學의 知的財産マネジメントプログラムについて、情報管理 Vol. 47 No. 7, 2004, 488면.

향한 실천적 교육을 수행하고, 석사수준의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에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에 배출하고자 하며 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에 맞는 교육대상자로서 기업의 지식재산부원 및 기술자, 변리사, 법학부 내지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 공학계 학부 또는 대학원 출신자, 대학의 지식재산본부, TLO의 스태프 등이다.[29]

(2) 교과목의 구성

교과목의 구성은 기술경영전략과목군, 지식재산과목군, 파이낸스과목군, 정보・서비스이노베이션과목군, 세미나・인턴쉽, 기술과목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 | 기초 | 발전 |
|---|---|---|
| A.기술경영전략과목군 | 기술경영개론<br>기업전략과 이노베이션<br>경영의 역사와 이념<br>이노베이션론<br>R&D론<br>이노베이션과 산관학연대<br>기술자윤리와 리스크관리<br>기술경영정보분석<br>이노베이션을 위한 지식공학<br>경영기초 | 경영자론세미나<br>기업실천세미나<br>이노베이션시스템/Strategies and System of Innovation<br>기술조직론<br>콘비테인션 디베르퍼먼트<br>먹거리 음식비즈니스창성론<br>먹거리의 미래와 기술<br>회계정보와 자본시장 |
| B. 지식재산과목군 | IP매니저먼트<br>지적재산권법<br>이노베이션과 표준화 | R&D전략과 지적재산전략<br>기업경영에 있어서 지적재산활동<br>지적재산침해실무<br>디지털시대의 지적전략 |
| C. 파이낸스 과목군 | 금융공학<br>코프레이트 파이낸스 | 금융리스크・매니저먼트<br>파이낸스응용<br>계산파이낸스<br>금융리스크 관리의 최첨 |

29) 京本直樹, 전게논문, 490면.

| | | |
|---|---|---|
| | | 단<br>금융공학특론<br>국제투자전략 |
| D.정보・서비스이노베이션 과목군 | 조직전략과ICT<br>텔레와쿠개론<br>서비스이노베이션 개론<br>서비스이노베이션론<br>서비스과학기초학 | 시큐러티매니저먼트<br>네트사회와 비즈니스모델/Business Models in the net Society |
| E. 연습・세미나・인턴쉽 | 리서치와 리터러시연습<br>기술경영강구제1(필수)<br>기술경영강구제2(필수)<br>기술경영강구제3(필수)<br>기술경영강구제4(필수) | 전략적디베이트실천/Strategic Debating Skills<br>기술경영이노베이션I<br>기술경영이노베이션II<br>기술경영이노베이션III<br>기술경영이노베이션IV |
| F. 타전문과목 | 첨단기술과 이노베이션 | |
| G. 과목지정 | 회계정보와 자본시장 | |

(3) 지식재산권 전공 이수과정

동경공업대학(東京工業大學)의 이노베이션 매니저먼트과에서 권장하는 수업모델은 네 가지가 있다. 기술경영을 종합적으로 공부하는 경우, 정보・서비스이노베이션 분야를 중점으로 공부하는 경우, 전략적・실천적 지식재산매니저먼트 프로그램을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공학을 깊이 있게 전문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경우 네 가지 학습모델을 권장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한 공부 모델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런데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학과에서 공부를 원하는 학생을 위해서 대학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커리큘럼을 권장하고 있다.

| 학년 | | 기간과목 | | | 카스타마이즈과목 | 단위수 |
|---|---|---|---|---|---|---|
| | | 기술경영전략과목 | 지적재산・파이낸스・서비스이노베이션과목군 | 연습・세미나・인턴쉽프로젝트연구 | 기술과목군 | |
| 1 | 전기 | 경영자세미나(2) | 지적재산권법(2) | 기술경영강구제1(1) | 사업창출론(2) | 17 |

| | | | | | | |
|---|---|---|---|---|---|---|
| | | 기술경영개론(2)<br>이노베애션론(2) | IP매니저먼트(2)<br>실천지적재산보호(2) | 리서치리테라시연습(2) | | |
| | 후기 | 기업실천세미나(2)<br>기술전략론(2) | 기업경영에 있어서 지적재산활동(2)<br>R&D전략과지적재산전략(2)<br>라이프사이언스지재와국제제도(2) | 기술경영강구제2(1) | 매니저먼트특론(2) | 13 |
| 2 | 전기 | 기술마켓팅(2)<br>이노베이션과산학연계(2)<br>콘핀텐시디베르퍼먼트(2) | 지적재산권침해실무 | 기술경영강구제3(1)<br>기술경영인턴쉽(2) | 극단조건에 있어서 사이언스(2) | 13 |
| | 후기 | 기술자윤리와리스크 관리(2) | | 기술경영강구제4(1)<br>프로젝트연구 | | 3 |
| 합계 | | 18 | 14 | 8 | 6 | 46 |

라. 와세다 대학의 법무대학원・법학대학원

와세대 대학의 법무대학원의 2년차에 첨단・전개과목으로서 가을학기에 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 특허법이 개설되어 있다. 3학년의 봄학기에는 엔터테인먼트법, 저작권법, 저작권분쟁처리법, 특허분쟁처리법, 국제지적재산법, 비교지적재산법이 개설되어 있고, 가을하기에는 지적재산법응용연습이 개설되어 있다.[30]

법학대학원[31]에는 석사과정에 연구지도와 관련해서는 지적재산권연구지도라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그리고 이론과목으로서는 석사과정에 전공필수 과목으로 지적재산권법연구I, 지적재산권법연구II가 개설되어 있다. 전공필수과목 이외의 과목으로서는 국제지적재산법, 저작권법연구1, 저작권법연구2, 비교지적재산법연구가 개설되어 있다. 그리고 박사과정에는 지적재산권법연구지도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마. 동경이과대학전문직대학원(東京理科大學專門職大學院)

30) http://www.waseda.jp/flaw/gwls/education/class/class03/(2014. 11. 8. 최종방문).

31) http://www.waseda.jp/flaw/glaw/assets/uploads/2014/05/2014m_kenkyushido_minji.pdf. (2014. 11. 8. 최종방문).

1881년도에 설립되어 1949년부터 대학이 된 동경이과대학의 전문직대학원의 MIP (지적재산전략전공)의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 기초과목 | 발전과목 |
|---|---|
| 기반계 | 전략계 |
| 지재과학개론<br>지재제도개론<br>콘텐츠・미디어론<br>과학기술정책<br>지재경영과 기술<br>지재경제론<br>매니저먼트개론<br>첨단기술입문 | 브랜드전략<br>비즈니스・디자인전략<br>하마비즈니스전략<br>엔터테인먼트비즈니스전략<br>지재와 경영전략<br>표준화와 지재전략<br>중소기업의 지재전략<br>지역과자지재전략<br>바이오특허전략<br>종묘법과농수산지재 |
| 법률계 | 지재실무계 |
| 민법<br>지재관계절차(민・행)<br>특허법・실용신안법개론<br>의장법개론<br>상표법개론<br>부정경쟁방지법개론<br>저작권법개론<br>산업재산권조약개론<br>기업법무개론<br>미국지재법개론<br>Introduction to Comparative Law | 기업에 있어서 지재관리<br>정보수집해석<br>지재평가・회계<br>전략적 특허명세서<br>전기특허특론<br>기계특허특론<br>화학특허특론<br>지재계약실무<br>지재소송과 분쟁처리실무<br>콘텐츠계약실무<br>상품화라이센스실무<br>미국특허출원실무<br>중국지재실무<br>아세안지재실무<br>브릭스지재실무 |
| | 법률계 |
| | 특허법・실용신안법특론<br>의장특론<br>상표특론<br>저작권법특론 |

| | |
|---|---|
| | 독점금지법<br>국제거래법<br>미국지재법특론<br>국제저작권특론<br>EU지재법 |
| 연습과목 | 전문계 |
| 지재프로젝트연구 | 특허법・실용신안법전문개론<br>특허법・실용신안법전문특론1<br>의장법전문개론1<br>상표법전문개론1<br>지재조약전문개론1 |

동경이과대학의 기술경영과정(MOT)의 교과과정[32]에서는 우선 영역을 나누어 교육하고 있다. 기술경영과정에서도 네 가지 영역으로 세분하여 전공을 가르치고 있다. 컨셉이노베이션영역, 이노베이션필드 영역, 기술・산업영역, 매니저먼트영역으로 나누어 개별적인 교과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① 컨셉 이노베이션 영역

| 수업과목 명칭 | |
|---|---|
| 기간과목 | 콘셉창조론 |
| | 개발프로토타이프론 |
| 기술・시장다이나믹스 | |
| 산업재이노베이션A | |
| 산업재이노베이션B | |
| 서비스이노베이션 | |
| 디자인전략 | |
| 나렛지매니저면트 | |
| 비즈니스모델이노베이션 | |
| 콘셉이노베이션특론A | |
| 콘셉이노베이션특론B | |
| 콘셉이노베이션특론C | |

② 이노베이션필드 영역

| 수업과목 명칭 | |
|---|---|
| 기간과목 | 이노베이션프로세스론 |
| | 신사업개발론 |
| 개발조직이노베이션 | |
| 프로젝트매니저먼트 | |

32) http://most.tus.ac.jp/mot/curriculum/syllabus/index.php (2014. 11. 8. 최종방문).

| |
|---|
| 글로벌 기술경영론 |
| 기업가론(起業家論) |
| 벤처 매니저먼트 |
| 지적재산 매니저먼트 |
| 비즈니스보델이노베이션 |
| 이노베이션필드특론A |
| 이노베이션필드특론B |
| 이노베이션필드특론C |

③ 기술산업영역

| 수업과목 명칭 | |
|---|---|
| 기간과목 | 기술전략 |
| | 과학과 기술 |
| 소프트웨어기술매니저먼트 | |
| 생산기술매니저먼트 | |
| 에네르기 산업론 | |
| 의약산업론 | |
| 나노테크산업론 | |
| 미래기술론 | |
| 전통기술고 | |
| 기술윤리・철학 | |
| 기술특론A | |
| 기술특론B | |

④ 매니저먼트 영역

| 수업과목 명칭 | |
|---|---|
| 기간과목 | 경영전략 |
| | 마켓팅 |
| | 경영조직 |
| 매니저먼트기초 | |
| 리더쉽 | |
| 재무회계 | |
| 관리회계 | |
| 경영재무 | |
| 기술계경영자론A | |
| 기술계경영자론B | |
| 비즈니스에코노믹스 | |
| 매니저먼트고전리딩(reading) | |
| 매니저먼트 특론A | |
| 매니저먼트 특론B | |

3. 일본대학에서의 지식재산교육의 특징

1) 교과목에 대한 분석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지식재산에 관한 관심과 노력이 일찍부터 시작되었고, 지식재산보호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나라라고 평가된다. 또한, 기업과 기술수준도 세계적인 수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식재산에 관한 관심도 높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사회적, 국가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인지 우리나라에 비해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노하우도 다르다고 판단된다.

법학부의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은 개론 수준의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대학원에 와서야 특허법이나 저작권법, 상표법 등을 중심으로 한 개별법을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에 관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동경이과대학의 MIP과정의 교과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다소 법학중심의 교육과정이라고 판단된다. 법률계 과목군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법학 교육 외에 다시 심화과정에서 법학을 다시 공부하도록 교과과정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재실무계 과목군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법학과 관련된 과목이 두드러지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실무과목과 이론과목이 서로 학기를 엇갈리게 배치해 놓고 있어서 적절하게 섞여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략과목계도 전반적으로 경제 내지 브랜드와 관련된 교육과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동경이과대학의 MOT과정을 컨셉이노베이션영역, 이노베이션필드 영역, 기술・산업영역, 매니저먼트영역으로 나누어 교육하고 있는데 이는 어느 정도 수요자 맞춤형 내지 산업계의 요청을 반영하여 특성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사업이나 신제품을 가지고 스스로 창업하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프로토타이프(Proto-Type)형의 콘셉주도형의 교육을 하는 컨셉이노베이션 영역, 기업경영을 하면서 기업현장에서 생기는 다양한 형태의 이노베이션 프로세스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이노베이션 필드 영역, 기술과 그 기반이 되는 과학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기술・산업영역, 기술자 또는 기술과 관련된 사람, 넓게는 경영에 관계되는 기본적인 지식을 보는 방법, 또는 사고방법을 가르치는 매니저먼트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이러한 다소 특색이 있는 교육방법인데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 내지 교수를 상대로 한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겠지만 교육방향으로서는 올바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는 시각에 따라 너무 협소하게 교육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의문도 들 수 있다.

2) 교과과정에 대한 분석

일본 대학원의 MIP나 MOT과정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고 생각된다. 교육과정에서 전반적으로 혁신(innovation)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본 기업

의 대부분이 세계적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인상이 들고, 기업의 규모도 우리보다 더 크기 때문에 경영혁신이나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이 교육에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동경공업대학의 교과과정의 특성은 전공분류보다 과목군을 중심으로 하여 기술경영, 법학, 금융, 서비스, 기술과목으로 분류하고, 인턴쉽 과목을 도입하여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대상학생들로 이미 어느 정도의 기초과목 내지 자신의 전공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구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회인 재교육 내지 새로운 출발을 위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동경공업대학의 교과과정은 법과목을 축소하고 대부분 기업실무와 관련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과 기술경영, 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한 경영과목을 수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순수한 경영 내지 기술경영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지식의 전수에 그 중점이 있다고 보인다.

동경공업대학에 있어서도 금융분야에 관한 교육에 있어서도 다른 특이점은 보이지 않는다.

동경공업대학의 특이한 교육과정으로서는 정보, 통신,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기초적인 개론과 응용과목으로서의 인터넷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에 관해서 연구하도록 하는 과목을 들 수 있다. 특수성이 있는 과목이라고 보인다. 이는 현대 사회의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첨단과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교과과정은 1학년에는 전반적으로 기초 내지 이론 중심에서 2학년에는 응용 내지 첨단과목, 윤리성에 관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 과목의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리고 동경이과대학전문직대학원의 MIP교과과정은 법률과목의 비중이 높고 또한 이에 대한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MIP과정의 주요 교육대상자는 법률가, 변리사, 지식재산담당자라는 것을 교과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공무원 중에서도 심판관, 심사관 등 지식재산과 연관된 사람들의 직무교육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MOT과정은 앞서 언급한 대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이라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되나, 협소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기술을 둘러싼 경영, 금융, 법학 등을 종합적으로 배운다기 보다 특정 분야를 깊이 있게 다룬다는 점에서 장·단점이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최소한 과학, 기술, 시장을 연결하는 기술경영의 실천능력을 배양하고자 하여, 프로젝터의 리더, 간부기술자, 컨설턴트, 공무원, 경영자로서의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점인데 교육과정도 이에 맞추어 각 영역별로 나누어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동경이과대학전문직대학원의 교과과정에도 금융분야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발견되지 않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심도 있게 나누어져 있거나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설령 매니저먼트 영역에 관한 교육이라고 하더라

도 재무회계, 관리회계, 경영재무 등 일반적인 과목이지 이것이 기술경영과 관련되어 금융과 기술의 관계, 기술 내지 기술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금융의 조달기법 등과 관련된 교과목은 보이지 않는다.

4. 교재개발현황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지식재산에 관한 대학 교재 내지 실무가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지식재산 서적이 풍부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일본특허청에서 다음과 같이 이공계대학생을 대상으로 이공계 연구활동에서 필요한 지식재산법의 기초를 가르치기 위한 교재를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크게 참조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일본특허청의 이공계생을 위한 지식재산법 교재

목차

제1주 특허제도 개요 (1)
제2주 특허제도 개요 (2)
제3주 연구활동과 지적재산 (1)
제4주 특허맵의 활용
제5주 연구활동과 지적재산(2)
제6주 연구활동과 지적재산(3) 발명은 누구의 것인가
제7주 연습
제8주 연구활동과 지적재산(4) 지적재산의 이용과 활용
제9주 특정영역분야와 지적재산
제10주 특허명세서의 작성방법 (1)
제11주 특허명세서의 작성방법 (2) 연습
제12주 기타 지적재산제도(1) 저작권
제13주 기타 지적재산제도(2) 실용신안, 디자인
제14주 기타 지적재산제도(3) 상표
제15주 기타 지적재산제도(4) 부정경쟁방지법 기타 (종자산업법, 반도체집적회로배치법, 국경조치, PL법, 안전보장무역관리)

## 5. 한국과 일본대학의 지식재산교육 비교 및 시사점

일본은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서 지식재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비록 일반대학과 일반 대학원에서의 교육은 서로 비슷한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MIP과정에서는 우리나라에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고 보인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교육보다 역사와 전통에 있어서, 그리고 교과목의 구성에 있어서도 앞서 있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동경이과대학이나 동경공업대학의 교과목의 구성에 있어서도 서로 법학, 공학, 경제, 금융 등 다양하고, 전공심화적인 성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동경공업대학의 지식재산교육은 비교적 뚜렷한 타겟팅이 있다는 특징이라고 판단된다. 즉 기존의 법학이나 공학을 전공한 학생이 자신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영역의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을 상정하여 교과목이나 강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어느 정도 스스로 융합적인 지식을 구비하도록 유도한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MIP의 경우 사회인 재교육의 성격이 강하거나 교육 이외의 효과도 노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경영대학원이나 산업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형태로 운영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아직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확산이 그다지 깊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습하기보다 미리 규범적인 형태 내지 상식으로서 지식을 구비하고자 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MOT과정의 교과목에서도 주로 금융이나 기술평가 등 경제 내지 경영 위주로 교과목이 구성되어 있고, 종합적인 성격을 가진 형태의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법학이나 기술 내지 과학과 관련된 강의과목은 그다지 많이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교육은 개별 교과목의 나열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이는 지식재산교육의 초기단계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보인다. 일본의 MIP나 MOT교육에 있어서 융합교육이라든지 종합과목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교육은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이것은 일본에서도 고민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교육현장에서도 융합 내지 종합적인 과목의 성격을 실습 내지 연습 과목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인접하고 두 과목의 함께 공부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실체법인 민사법과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는 경우이다. 또한 다른 성격의 두 과목, 예를 금융법과 담보법에 관한 것을 공부하는 경우 이를 융합과목 내지 종합과목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성격이 전혀 다른 법학과 경영, 법학과 기술, 기술과 경제 등을 함께 융합하여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다고 보인다. 다만 앞으로의 지식재산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테마의 하나가 아닌가 사료된다.

### Ⅲ. 결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에서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와서 진행되어 아직도 초기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국가경제의 성장에 따른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수요 내지 필요성이 강하여 교육도 이에 발맞추어 짧은 시간 내에 비약적인 팽창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교육을 핵심적으로 담당한 곳은 대학이었고, 특히 법학 위주이긴 하였지만 지식재산에 관한 인식확산과 그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설파하는데 지금도 그 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대학과 대학원의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 중심이어서 전국적인 확산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자금이나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아직도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이 제대로 전파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교과과정도 아직 융합적이고 종합적인 형태의 교육프로그램 내지 교과과정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론위주의 교육인지 아니면 실무와의 융합형 교육인지 여부도 사실 불분명하다고 사료된다. 교육과정도 융합형 교육이라기보다 자신의 전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이는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비록 짧은 시간에 괄목상대(刮目相對)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되기는 하지만, 그 효율성이나 경제성,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책적인 판단 내지 숙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앞으로의 한국대학에서의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과제는 지식재산에 관한 인식확산의 속도보다는 지식재산을 개인의 자산으로서 초기단계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지금까지 비교적 약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도록 하는 교과과정을 보다 더 심도 있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제적인 교육이 과연 무엇인지에 관한 정의 내지 방향성도 분명히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인다.

## 제3절 대학교수 대상의 지재교육 현황

### Ⅰ. 우리나라에서의 대학교수 지식재산교육 현황

대학차원에서 대학교수를 위한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예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국가기관 차원에서는 특허청에서 전국 고등교육기관인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등에 근무하는 전임 또는 비전임 교수를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기초부터 전공과 연계된 실무적 내용까지 단계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식재산 강좌와 전공의 융합교육을 담당할 교수를 양성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대학교수 지식재산교육(T3)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기본과정, 중급과정,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과정에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하는 과정, 중급과정은 유망 지식재산권 창출전략, 지식재산권 정보조사 및 분석, 해외특허제도,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구축방법, 심화과정에서는 강한 특허를 위한 청구범위 작성, 특허기술 평가 및 라이선싱, 지식재산 마스터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33)]

### Ⅱ. 일본에서의 대학교수 지식재산교육 현황

일본의 경우에도 대학차원에서 대학교수를 위한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예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특기할 사항은 일본 변리사회에 부설된 지재경영 아카데미에서 지식재산법의 수업법에 관한 강좌를 초급과 중급으로 나누어 마련하고 있는데, 지식재산권법교수들도 다수 수강생으로 등록하여 교육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재 수업법 강좌는 매학기 개설될 때마다 예컨대, 이공계 학부 학생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또는 경영학부 학생을 위한 지식재산교육과 같이 교육내용을 달리 하고 있어서 이공계 학부 또는 경영학과 또는 교양학부에서 교육하는 지식재산권교수들이 수강생으로 등록하여 해당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효과적인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3장 제1절 지재경영 아카데미 해당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 제4절 대학의 융합적 지재인재양성제도의 개선방안

### Ⅰ. 한국 대학의 융합적 지식재산인재양성방안

#### 1. 전체적인 분석

앞서 전반적으로 한국의 대학에서의 지식재산 교육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교육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 및 평가를 해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 가. 시대에 적응하는 교육

한국에서의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연혁이나 과정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사회수요 내지 기업수요에 따른 교육으로써 변화의 속도와 수요의 증대에 따라 비교적 발빠

33) 김정균, “창조경제를 위한 지식재산 인력 양성방안”, 지재인력양성 학술대회(2013. 11. 25.), 발표문.

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대학에서도 이와 관련된 학과를 신설할 정도로 사회에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 교육계나 산업계에서 이를 필요로 한다고 평가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에 관한 대학원 과정도 개설되어 있어서 비교적 지식재산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도 판단된다.

나. 법학위주의 교육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살펴보면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의 대부분이 법과 법이론 위주의 교육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융합형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법이론과 법학 위주의 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 기본법의 해석을 위주로 하는 전통적인 형식의 법학교육방법으로 교육을 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일부 대학에서 저작권이나 특허법과 관련된 실무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법학 내용의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킨다는 의미이지 이러한 것을 두고 실무교육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다. 일부 융합형 교육

대학원 과정에서 기술과 경영, 법학이 어우러지는 형태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자산평가와 지식재산 경영, 기술평가 등과 법학이 어우러지는 일부 융합형 교육이 행해지고 있다고도 보인다. 예를 들어, MIP 과정이라든지 MOT 과정이 그런 유형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도 지식재산을 둘러싼 기술, 경영, 법학의 융합된 형태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기보다 교과목의 개별적 개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인다. 따라서 교육의 수요자가 지식재산의 전 교육과정의 상관성 내지 연관성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라. 서울에의 편중

앞서 언급한 한국대학에서의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 현황을 보면 대부분 서울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인구와 경제가 집중되어 있어서 일면 이해되는 면도 있지만, 국가라는 운명체의 균질적인 발전과 전반적인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전국적으로 지식재산에 관한 기초적인 교육 내지 인식이 공통적으로 확산되고 균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인다.
아무래도 대학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국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이러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마. 제도적 한계

제도적 한계로서는 MIP나 MOT,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프로그램등도 대부분 지식재산과 관련 있는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초기에 자립할 수 있는 재정지원을 하고 후에는 자립하여 계속적으로 운영하라는 취지인데, 국가의 재정지원의 중단과 함께 사실상 학과운영이나 교과과정의 부실이 예상된다. 정부에서 국가 경쟁력 내지 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지만, 정권교체나 국가의 관심사의 변동 또는 정책의 변화에 따라 지원이 가변적인 성질의 것이어서 불안한 면이 있다.

바. 교재개발의 필요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식재산에 관한 최근의 관심 증대와 사회적 인식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콘텐츠, 즉 참고할 수 있는 서적류가 아직 그렇게 많이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이 출간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비록 출간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변호사 시험 내지 변리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용 서적이 상당수를 이루고 있고, 학문적 깊이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방향이나 내용을 담은 학문적 깊이가 있는 주석서나 교과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경우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수험서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최근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에 따른 법전공학생의 절대적 감소로 인해 법학관련 출판사들의 법학도서 출판기피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특히, 지식재산 전공 학생 숫자의 빈곤과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의 선택과목에서 지식재산권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이 절대적으로 적어서 출판사들은 더욱 지식재산관련 법학도서의 출간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사. 국제경쟁력 있는 교육의 미약

한국의 대학이나 대학원에서의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에 있어서 다소 국제적인 성격을 가진 교육은 비교적 빈약하다고 판단된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기르기 위한 교과내용도 그렇게 풍부하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지식재산을 특성화한 대학의 교과과정에 비록 한 두 과목 정도 반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식재산을 둘러싼 국제적인 감각을 기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대학원 과정에서 가르치는 교과과정 등에서는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이 다수 포함된 경우가 있지만, 교과목 수가 비교적 소수이고, 현장중심으로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해외 관련기관 방문 형식을 띠는 경우가 많다고 보인다.

2. 개별과정에 대한 평가

가. MIP 과정에 대한 평가

MIP과정에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알 수 있는 아쉬운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된다.

우선, 다양한 계층, 각자 다른 학업배경, IP 지식수준의 격차 등으로 인해 각양각색의 학생들을 한 공간에서 수업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 즉 다양한 출신의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강의에서 강의의 수준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법이라고는 MIP에 입학하여 처음 접하는 사람과를 한 공간에서 강의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과정을 분리하는 것인데 이것은 또 비슷한 내용의 교과를 복수 개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식재산은 종합적인 학문분야라 기술, 법, 경영 등의 융합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학생들은 MIP과정에서 위의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융합지식 내지 융합된 교육을 원하고 있으나, 이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어렵다.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기에 충족요건으로서 우선 이를 감당할 교수진이 없다. 즉 이 세 가지를 모두 가르칠 수 있는, 또는 두 가지 분야를 모두 가르칠 수 있는 교수진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재산의 융합형 교육은 아직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도 초기 단계라고 보인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 가지 교육과목에 대한 연구나 교재개발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융합교과목을 개설하는 것 내지 교과목을 만들기기 사실상 힘들다는 점이다. 결국 개별 교과목을 개설하고 이에 대한 지식은 배우는 학생들로 하여금 융합하라는 식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교육현장에서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메우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식재산 자체 또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교육은 국제화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역시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된다. 교과목 중에서 한 두 과목의 교양과목 형태의 비교법적인 강의, 또는 영어강의는 사실상 국제화라는 의미와는 먼 개념이라고 생각되고, 사실상 국제화라는 큰 이념의 구현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MIP과정에서 내세우고 있는 국제화된 전문가 양성이란 모토도 현실에서 구현하기에는 교과목의 구성, 교육 시간, 교수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실상 다루기 힘든 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MIP 운영 대학 선정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이다. 즉 5년간의 장학금 혜택이 있을 동안에는 선정된 대학을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이에 대한 특허청의 지원이 중단되거나 다른 대학이 MIP로 선정되면 학생들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MIP 교육과정은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정원외로 학생을 뽑는 과정이 아니고 일반대학원의 정원 내에서 학생을 선발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학내의 정원조정이라는 학사 내지 입학행정과 관련하여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

킬 수 있다. 즉 대학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

MIP과정을 융합적 지재전문가 양성을 위한 핵심프로그램으로 개혁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은 직장인을 위한 야간 또는 주말 교육과 잡탕식 교육으로는 융합적 지재전문가를 양성할 수 없다. (i) MIP과정을 원칙적으로 전일제 학생을 상대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융합적 지재인재가 필요한 대기업의 경우에는 국내유학프로그램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기업이 전일제로 학생을 파견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므로 직원을 전일제 학생으로 파견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등록금에 대한 조세지원을 하거나 특허청에서 등록금의 전부( 중소기업의 경우)나 일부(중견기업의 경우)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ii) MIP과정에 필수과목을 부과한다. 필수과목으로는 민법, 지재법, 지재경영, 지재분석, 지재가치평가 과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iii) 아울러 MIP의 경우, 각 학교별로 특화된 교육과정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홍익대 MIP는 상표와 디자인에 특화하고, 고려대 MIP는 이공계 전공자만을 학생으로 선발하여 기계, 전자, 화학, 생물 등 세분화된 전공별로 지재교육을 특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MIP이수자에 대해 간단한 시험을 통해 지식재산서비스 전문 자격사 자격을 부여거나 MIP프로그램에서 변리사시험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변리사시험 1차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MIP과정에서 지재분석이나 지재가치평가 심화과정까지 이수한 졸업생에게는 지재분석사나 지재가치평가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MOT 과정에 대한 평가

MOT과정은 교과과정 내지 교과목이 경영 내지 상과계열에 있다 보니, 그 중점이 지나치게 경영 내지 경제 중심으로 교과목이 운영되는 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융합이라는 것에 가치를 두는 현 경향에 비추어 보면 다소 이질적인 교육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에 필요하고 최근의 경향에 맞추어 기술금융이나 기술과 관련된 가치평가와 이를 담보하는 교육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의 아쉬운 점은 법학 관련 과목의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경영과 관련된 법률이나 지식재산과 관련된 기초과목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기술경영이라는 과정의 성격에 비추어 보아 너무 경영 내지 평가라는 기능적인 면만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기술의 사업화 내지 벤쳐기업의 창립 등은 모두 규범적인 요소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고,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인과의 충돌 내지 사업화에 따른 권리화라든지 규범적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는데 법학교육이 너무 소홀한 것은 아닌가 하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또한, MOT의 경우 이를 운영하는 대학교에 따라 교과목의 차가 상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간의 균질적이고 공통적인 교과과정이 아니라 대학마다 각각 특색있는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TBP에 대한 평가

TBP는 전형적인 사회인 재교육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교과과정이나 교과목도 지식재산, 기술경영, 기술평가 등의 과목이 적절하게 섞여있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지식재산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진 과정이라고 평가된다. 다만 이 과정은 산학협동과정의 하나로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이 등록금의 절반을 내고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 내지 기관에서 등록금 절반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그런데 학생모집은 당해 도시의 반경 100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산업체나 기관만이 그 대상이어서 현실적으로 학생모집에 한계가 있다.

라. 법무대학원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지식재산권을 전문적인 테마로 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한 것이 법무대학원이라고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충남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가 그 대표적인 대학이라고 생각된다. 교과목도 특허법을 중심으로 하여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킨 점에서 지식재산교육 영역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 당시의 산업대학원, 경영대학원과 같은 사회인 재교육이라는 관점을 넘어서서 법학교육 중에서 전문적인 내용의 교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과 관련된 경제나 기술, 산업의 발전에 따른 이 분야에 대한 수요에 응하는 것이 법무대학원의 역할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교육과정이나 교과목에 대한 개선점은 크게 지적할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석사나 박사과정 동안 기존법학에 대한 기초 지식 없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교육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무대학원이 지식재산권을 전문적으로 학습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법과목의 논리상 내지 구성상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 대학의 자유라는 국가 운영의 큰 이념 속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개별적으로 대학에 지시하거나 논의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법무대학원의 운영도 대부분 20여년 이상이 되었고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인다. 그 대표적인 문제점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제시될 수 있다.

(1) 교육의 질

법무대학원에서의 교육은 전문화된 교육을 주로 하는 곳이어서 교육이념에 비추어 보면 어느 정도의 균질적인 교육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앞서 언급한 MIP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개별 학생의 평균적인 수준이 다 상이하다는 점이다. 즉 학생들의 수준이 특허청심사관, 변리사와 같은 전문가 집단에서부터 지식재산권을 처음 접하는 그룹까지 그 수준이 천차만별이어서 특정 그룹에 맞추어 전문화되고 특화된 교육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특허법무대학원의 교육 중심은 법학인데 학생들 대부분이 공학이나 자연계이고 문과라고 해도 경영학이나 행정학 등 비법학도가 대부분이어서 법학공부가 자체가 처음인 경우가 많고, 특히 기본법인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헌법에 대한 기초지식 없이 특별법적인 성격을 지니는 지식재산권법을 공부하다 보니 특별법으로서의 지식재산권법을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된다.

(2) 학생선발

학생모집에 있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움이 느껴진다. 서울과 대전지역도 최근의 MIP나 MOT과정 등 다양한 교과과정이 개설됨에 따라 기존의 특허법무대학원이나 법무대학원에의 지원이 소원해지고 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수요나 관심이 높은 특허청, 특허법원, 각종 연구소 등이 소재해 있는 대전에서도 이제는 학생모집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 문제는 지식재산에 관한 관심이나 인식의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해준다고 생각된다.

(3) 졸업 후 진로지도

법무대학원에 입학생의 대부분이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대학원의 경우과 같이 졸업 후 취업에 대한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많은 분들이 법무대학원을 수료한 후에 무언가 자신의 직업이나 미래에 도움이나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입학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특허법무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한다고 해서 학교로 직업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작다. 그렇다고 비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변리사 시험이라든지 국가시험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자기만족 내지 지적호기심만으로 진학을 위한 동기부여가 되기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

마. 대학의 지식재산전공학과에 대한 평가

아직은 대학교의 학부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식재산전공학과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평가를 하여보면 해당학과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학과가 대부분 법과대학 내지 법학전공학과에 부치 되어 있기 때문에 법학중심의 교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기존의 법과대학 내지 법학전공학과의 교과목들과의 중복이라는 점이다.

또한, 이들 학과 출신의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하여서도 기존 법학과 학생들의 진로와 중복된다는 점이다. 기존의 변리사 사무소에의 취업 내지 지식재산과 관련된 업무에의 종사도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인다. 즉 교과목이나 학생, 나중에 취업에 있어서 기존의 법학과와 서로 중복되는 점이 있다.

대학의 지식재산학과의 교과과정은 지식재산의 교육 이념과 사회에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 있다고 평가되지만, 현실적으로 취업과 관련하여서는 그다지 큰 경쟁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인하대학교의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2017년까지만 지식재산전공학과가 존치될 가능성이 높다.

### 3. 대학의 융합적 지식재산인재양성제도 개선방안

인간이 아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의사가 될 필요가 없듯이 모든 사람이 지식재산과 관련된 업무와 지식을 구비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 정확하고 손쉽게 접근해서 정확한 정보 내지 조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교육을 통한 저변학대는 국가적으로는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고, 권리의식이나 사회적으로도 권리침해에 따른 분쟁해결도 쉽게 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지식재산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초두에 언급하였다시피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이나 교과과정에 관한 경험이 다른 법 분야나 전공에 비해 아직 초기단계라고 판단되므로 시간적으로 볼 때 아직 초기라는 생각이 든다.

다만, 앞으로 지식재산과 관련된 교육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점은 필자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 가.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재평가 내지 재구성

현재의 한국에서의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은 법학위주의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즉 재산법으로서의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위주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된다. 기존의 법학교육에 비해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실질적인 교육은 1990년 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시작되었는데 그 교육의 중심은 법과대학의 법학을 중심

으로 한 교육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기술 내지 지식재산에 대한 인프라는 법학의 측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지식재산과 관련된 연구과정, 개발된 기술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평가, 시장조사 및 시장에서의 평가, 사업화, 표준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법학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넘어서서 융합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특히 장차 연구개발(R&D)에 종사할 이공계 학생들에게 지식재산법과 아울러 지식재산경영을 교육하여, 단순한 지재창출이 아닌 강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그 활용에 대해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이는 지재창출을 위한 인재의 양성방안에 연관된다. 엔지니어 등 지재 그 자체를 창출하는 인력에 대한 지재 소양의 배양도 중요하지만 그와 별도로 엔지니어들의 지재 창출 환경을 조성하여 주고 창출되는 지재의 현황을 파악, 분석하여 그 권리화 여부를 판단하는 등 지재창출 환경의 조성 및 전략의 수립을 할 수 있는 지재서비스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재 창출에 관련하여서는 연구개발의 기본적 방향 설정, 기존 지재의 존부, 기존 지재의 극복방안, 양수, 라이선스 취득, 단독 연구개발, 공동연구개발, 위탁연구개발 중의 선택, 관련 지재의 처리 방안, 지재창출과정에 있어서 연구노트 작성, 클린 룸 메소드(clean room method)의 채용, 영업비밀로서의 취급, 지재 보호방안의 결정, 특허 출원시기의 결정, 특허청구범위의 작성, 권리취득의 완급 결정 등 지재 창출에 관련한 일련의 지재 관리 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대학에서는 지재 관리·활용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일단 창출하거나 획득한 지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창출하거나 획득한 지재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최소한 유지하고, 지재 가치의 변동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며, 지재를 이용하여 사업화를 하거나 최소한 보유한 지재를 양도, 라이선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 만약 보유 지재를 라이선스하여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라이선시의 선택, 라이선스 조건의 결정, 라이선스기간의 설정, 라이선스에 따른 재라이선스, 상호라이선스의 가부 등 결정, 라이선스 대상 지재권이 무효로 되는 경우의 처리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 만약 지재를 활용하여 사업화를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독자 경영, 공동경영, 위탁 경영, 자금조달 방법의 결정, 지재담보, 기술신용보증, 지적재산유동화 등 지재금융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야 하며 지재 양수도, 라이선스, 금융 담보제공 등 제반 거래에 있어서 지적재산의 가치를 적정히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들이 지재경영에도 관여할 수 있을 수준의 교과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재 보호를 위한 인재의 양성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지재 보

호를 담당하는 인력은 지재보호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지재침해 모니터링 방법, 샘플 채취 검사, 침해 보고 시스템, 침해에 대한 경고와 방어, 침해 중지를 위한 협상, 피침해 지재권의 특정, 제소, 제소 이외의 보호방법 강구, 지재소송능력, 지재침해소송 중 증거조사능력, 지재침해소송 중 협상 능력 등을 가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야 할 것이다.

나. 투자방향 및 우선순위

특히 기술입국 내지 창조경제의 핵심을 지식재산, 문화콘텐츠, 방송 등으로 보고 있는 현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효율적인 재정집행 내지 사회적 자산 집행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국가 전체 내지 사회 전체적으로 지식재산에 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에의 투자 내지 지원비율을 더 높이고, 특히,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한다.

특허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MIP과정이나 미래부에서 운용하는 MOT과정에서도 지식재산에 대한 교육과정을 지원할 때 현장에서부터 경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지식재산에 관한 인식이 확산되도록 정책의 입안과정에서부터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현 단계에서는 지식재산에 관한 기초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정보의 수집 내지 축적을 위하여 지식재산과 관련된 전문가 및 교수들의 도서출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좋다고 판단된다.

다. 전국적인 지재교육 통일성 내지 균질성 확보방안

앞서 언급한 대로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부러라도 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식재산에 관한 내용을 학생 내지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균질적으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개발을 하여야 한다고 보인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식재산교육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업무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을 위한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교육내용 역시 수준이 있는 균질적인 것이어야 한다.

라. 융합형 교육의 의미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기존의 지식재산법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과 경영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법학일반, 기술일반, 경영학일반 및 지재권법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융합형 교육 교과목의 개발 및 초기투자자 내지 초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규진입자등을 위한 금융관련 교육프로그램등도 개발

되어야 하고 이러한 교육의 전국적 확산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교육 내용 역시 법학위주의 지식재산에 관한 것에서 경영, 금융, 기술평가, 마켓팅 등과 융합적으로 결합하여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러한 경향의 교육이 앞서 언급한 MIP등에서 시도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거나 확고하게 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융합형 내지 종합형 교육은 개별적인 지식전수가 아니라, 융합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교육프로그램 내지 교재가 개발되어야 하는데, 학제간의 교류를 통해 공통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의 교재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제대로 된 융합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면 직장인을 위한 야간·주말 교육을 벗어나 국내유학제도의 확충 등을 통한 전일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 국제경쟁력을 가진 교육

한국도 무역규모로 보면 더 이상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교육에서 국내용으로만 지식재산을 가르치기보다 국제적 감각을 가질 수 있는 교과과정이나 이를 위한 소수의 특별과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대기업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과 관련된 업무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과 관련된 국제적 분쟁의 예방 내지 해결을 위해서 업무상 필요한 지식을 구비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바. 지식재산과 공학과목 등 전공과목과의 연계 현황과 개선방안

현재의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지식재산권법 교육에 있어서는 공학과목 등 전공과목과 제대로 된 연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공학과목과의 지식재산권법 연계에 있어서도 해당 공학교과목에 필요한 지식재산권법을 교육한다는 마인드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고, 해당 학과나 대학원 프로그램 안에 이공계 교과목과 지식재산권법 강좌가 함께 개설되어 있다는 것을 공학과목과 지식재산권법의 융합교육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문제이다. 또한 경영학과 및 MOT의 경우에도 지식재산권법을 교육한다는 마인드가 부족함과 아울러 실제 지식재산권법 강좌의 개설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경영학과에서도 지재권법 과목과 기술과목을 개설하여 강의하는 것을 권장 내지 강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MOT의 경우, 기술분야별로 그에 적절한 지재법, 지재실무 및 지재경영을 교육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과 공학, 경영학 과목 등과의 연계에 있어서는 특허청 주도하에 공학, 경영학에 필요한 지식재산권법을 교육하기 위한 표준 교과서 개발 용역을 발주하여 표준교과서를 개발하고 이를 해당 대학과 대학원에 배포하고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에 대하여도 이러한 관점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

여 대학에서 융합형 교육을 제대로 담당할 수 있도록 강의법을 교육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사. 세부 커리큘럼에 대한 개선방안

현재의 공학, 경영과목과 지식재산권법 융합교육의 세부 커리큘럼은 앞에서 각 대학과 대학원의 공학과목 내지 경영과목과의 지식재산권법 연계 커리큘럼 검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해당 학과나 대학원 프로그램 안에 이공계 교과목과 지식재산권법 강좌가 함께 개설되어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공학과목과 지식재산권법의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허청이 주도하여 융합교육용 지식재산권법 표준교재를 개발한다면 이에 맞추어 공학, 경영과목과 지식재산권법 융합교육의 세부 커리큘럼도 변경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인바, 이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은 융합교육용 지식재산권법 표준교재개발 이후로 미루기로 한다.

아. 교재 개발 및 보급과 교원 양성에 대한 개선방안

앞에서 살펴본 일본 특허청에서의 이공계생을 위한 지식재산법 표준교재 개발사업은 우리의 경우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것이다. 이공계생을 위한 맞춤형 지식재산법 교재가 부재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도 어느 지식재산권법 교수 개인이 이러한 이공계생을 위한 지식재산권법 교재를 작성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특허청에서 이공계생을 위한 지식재산법 표준교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표준교재를 개발하고 이를 전국 이공계 대학의 지재권법 교육을 위하여 보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다. 나아가 융합적 지재인재를 양성할 수 있으려면 그 인재를 양성하는 교수 요원이 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자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재 실무의 일부만을 담당하여 본 사람이 대부분이므로 지재 전반에 걸쳐 법적, 기술적 그리고 경영적으로 융합적인 사고를 하여 대처할 수 있는 자는 희소하다. 따라서 지재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수 요원을 먼저 배출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요원들이 라운드 테이블 방식의 토론과 자체 학습을 통하여 융합적인 교원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연마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수요원들을 교육할 교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양성한 교수요원을 각 대학에 채용해야 할 것이다.

## II. 융합적 지식재산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수 대상의 지재교육 개선방안

앞에서 살펴본 일본 변리사회에 부설된 지재경영 아카데미에서 지식재산법의 수업법에 관한 강좌는 우리나라의 융합적 지식재산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수 대상의 지

식재산법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융합적 지식재산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수 대상의 교육에서는 일본의 경우처럼 교육대상자의 전공에 필요한 지식재산법을 가르치는 맞춤형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지식재산법 수업법 강좌[교육대상자의 전공별, 예컨대 이공계/경영학 전공자를 위한 지식재산법 수업법]를 개설하여 수강생인 대학교수에게 모의강의를 하게 하고 이에 대한 강평을 하는 방식으로 개별화된 지도를 하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제3장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자격사제도 정비방안

## 제1절 변리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 I. 변리사제도의 현황

한국에서는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3~2017)에 변리사의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내용이 반영되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변리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나와 있다.[34] 동 개정안은 지식재산관련 법률서비스시장의 다변화에 대한 대응과 기업의 지식재산전략 및 지식재산경영을 반영한 변리사 업무영역 확대 필요를 반영하고 있다. 이제 변리사는 기존의 명세서 작성 등 특허출원업무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정보의 조사/분석, 지식재산평가, 지식재산사업화, 지식재산라이선싱, 지식재산 M&A, 지식재산금융, 지식재산관리, 지식재산 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에 관한 총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변리사제도의 현황을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 1. 변리사의 업무영역

##### 가. 한국변리사의 업무영역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의 업무영역을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제2조), 변리사법개정안에서는 변리사의 고유업무에 기존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한 산업재산 관련 사항의 대리' 외에 '외국 행정청 등에 대한 산업재산 관련 국내에서 수행되는 업무' 및 '특허 등 지식재산 관련 사항에 대한 감정'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변리사가 할 수 있는 업무에 '당사자 또는 공공기관 등의 위촉에 의한 종자산업법, 반도체 배치설계법 등에 따른 대리 업무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안 제3조).[35]

---

34) 자세한 내용은 이규호, 변리사 업무영역 명확화, 변리사법 전부개정안 공청회자료집, 48~62면 참조.

35) 변리사법 개정안 제3조(업무) ① 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1.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대리
2. 외국 행정청 및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국내에서 수행되는 업무
3.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 등 지식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

② 변리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외에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률에서 그 업무를 행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허청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신청의 대리,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에서의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대리 및 그에 딸린 업무
2. 「종자산업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대리 및 그에 딸린 업무

즉 21세기 변리사의 역할변화에 따른 변리사의 직역확대로 저작권등의 영역으로 감정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반도체배치설계, 품종보호, 지리적 표시, 저작물의 절차대리 등, 저작권, 인터넷주소, 반도체배치설계 등에 관한 ADR업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문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통관업무, 지식재산권 침해관련 불공정무역행위업무, 기술이전 및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술이전의 대리 및 사업화, 기술평가에 관한 업무도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방향이다.

나. 일본변리사의 업무영역

(1) 고유업무

변리사는 타인의 요구에 따라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 또는 국제 출원 또는 국제등록출원에 관한 특허청의 절차 및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재정에 관한 경제산업장관에 대한 절차에 대한 대리 및 이들의 절차에 관한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실시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36]

(2) 비배타적 업무

변리사는 전항에 규정하는 업무 외에 타인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다.[37]

1. 관세법 제69조의3 제1항 및 제69조의12 제1항에 규정하는 인정절차에 관한 세관장에 대한 절차 및 동법 제69조의4 제1항 및 제69조의1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그 신청을 한 자 및 당해 신청과 관련되는 화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고자

---

3.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또는 지리적표시보호심판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지리적표시 등록·이전·변경 등의 절차, 등록거절·취소·무효심판 및 재심 절차에 관한 대리 및 그에 딸린 업무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문 및 그에 딸린 업무
5.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주소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과 관련된 분쟁 절차의 대리 및 그에 딸린 업무
6. 「저작권법」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저작물 등록 및 법정허락·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대리 및 그에 딸린 업무
7.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관세청 또는 세관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신고·변경·갱신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관련 담보의 제공, 통관의 보류·허용, 검사 및 견품채취, 유치·유치해제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절차의 대리 및 그에 딸린 업무
8.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의 행정처분 청구에 관한 대리 및 그에 딸린 업무
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술이전의 대리 및 사업화, 기술평가에 관한 업무

36) 일본변리사법 제4조 제1항.
37) 일본변리사법 제4조 제2항.

하는 자가 행할 당해 신청에 관한 세관장 또는 재무장관에 대한 절차에 대한 대리
2.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회로배치 또는 특정부정경쟁에 관한 사건 또는 저작물에 관한 권리에 관한 사건의 재판외분쟁해결절차이며, 이 사건의 재판외분쟁해결절차의 업무를 공정하고 적확하게 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서 경제산업대신이 지정하는 것이 행하는 것에 대한 대리
3.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회로배치 또는 저작물에 관한 권리 또는 기술상의 비밀의 매매 계약,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계약 기타 계약체결의 대리 또는 매개를 행하거나, 또는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거나 외국의 행정 관청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에 관한 절차에 관한 자료의 작성 기타 사무를 수행하는 것.

(3) 소송관련 업무

① 소송 보좌업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 국제출원 또는 국제등록출원, 회로배치 또는 특정부정경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에서 보좌인으로서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 또는 심문을 할 수 있다.[38]

② 소송대리업무

변리사는 특허법 제107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47조 제1항, 의장법 제59조 제1항 또는 상표법 제6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송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39]

변리사는 특정침해소송대리업무시험에 합격하고, 그 취지의 부기를 받은 때에는 특정침해소송에 대해 변호사가 동일한 의뢰자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한하여 그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40]

2. 변리사에 대한 자격 부여

가. 한국의 변리사 자격 부여

변리사시험을 합격하여야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변호사에 대하여 연수를 조건으로 자동자격부여제도를 두고 있으며 특허변리사와 상표변리사를 구분하지 않는다.

38) 일본변리사법 제5조 제1항.
39) 일본변리사법 제6조.
40) 일본변리사법 제6조의2.

나. 일본의 변리사 자격 부여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변리사시험을 합격하여야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변호사에 대하여 연수를 조건으로 자동자격부여제도를 두고 있으며 특허변리사와 상표변리사를 구분하지 않는다.

## II. 변리사에 대한 교육제도

### 1. 변리사시험전 교육제도

가. 한국의 변리사시험전 교육제도

변리사시험응시를 위하여 특정 교육을 받을 것을 응시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한국에서는 보통 변리사 시험준비과정의 일환으로 대학(원)에서 지재교과목을 수강하거나 변리사시험 준비전문학원에서 지재교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도 대학에서의 지재권 관련 법률과 기술에 대한 면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논의중이다.

나. 일본의 변리사시험전 교육제도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변리사시험응시를 위하여 특정 교육을 받을 것을 응시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한국과 같이 보통 변리사 시험준비과정의 일환으로 대학(원)에서 지재교과목을 수강하거나 변리사시험 준비전문학원에서 지재교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석박사 학위소지자, 지식재산전문직대학원의 석사 학위소지자에게 1차 시험과 2차 시험 선택과목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41] 상설하면 대학원(산업재산권 과목) 수료자에 대하여 수료 2년 이내의 단답식 시험을 면제하고,[42] 선택과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식을 가진 자,[43] 즉 석사·박사학위 논문심사합격자·전문직대학원 논문심사 합격자에 대하여 논문식시험(선택과목)을 면제한다.[44]

---

41) 2000년 개정(2002년 1월 1일 시행)에서는 응시자 층의 확대를 통해 변리사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석사·박사학위 논문심사합격자 및 다른 공적 자격자들에 대한 논문식 선택과목의 면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 후 2007년 개정(2008년 1월 1일 시행)에서 지적재산에 관한 지식 등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유능한 인재의 변리사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또한 응시자의 부담 경감의 관점에서 지적재산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학습한 대학원수료자와 변리사시험의 일부 과목의 기존 합격자에 대한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42) 일본변리사법 제11조 제4호.

43) 일본변리사법 제11조 제6호.

44) 일본변리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 2호에서 규정.

현행법에 의한 면제대상자와 면제내용은 다음과 같다.[45]

| 일본변리사법 제11조 | 대상자 | 면제내용 |
|---|---|---|
| 1호 | 단답식 시험 합격자 | 2년 이내의 단답식 시험 |
| 2호 | 논문식 시험(필수과목) 합격자 | 2년 이내의 논문식 시험(필수과목) |
| 3호 | 논문식 시험(선택 과목) 합격자 | 논문식 시험(선택 과목) |
| 4호 | 대학원(산업재산권 과목) 수료자 | 2년 이내의 단답식 시험 |
| 6호 | 선택과목의 필기시험에 합격 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식을 가진 자(성령 6조 각호에서 규정)·석사·박사학위 논문심사합격자·전문직대학원 논문심사합격자·기술사, 1급건축사 제1종·제2종 전기주임기술자, 약사, 정보처리기술자, 전기통신주임기술자,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사법서사, 행정서사 | 논문식시험(선택과목) |

2. 변리사실무수습제도

가. 한국의 변리사실무수습제도

(1) 신입연수의 법적 근거

변리사는 변리사로서의 업무개시 및 그에 필요한 변리사 등록을 위해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하여야 한다.[46] 실무수습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으며,[47] 실무수습은 변리사회, 변리사 사무소 또는 변리사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데, 변리사회는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2주일 이내에 실무수습의 시작 일시 및 신청 요령 등을 포함한 실무수습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실무수습의 내용,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변리사회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48]

45) 최종합격자 중 기술사 등 다른 자격보유자 (변리사법 제11조 제6호)의 합격 비율은 20% 전후이다. 또한 최종합격자 중 석·박사학위 논문심사통과에 의한 면제자의 합격비율은 36%에서 51% 범위이다. 한편 2012년도 일본변리사시험자료를 분석하면 석사·박사 학위논문 심사통과에 의한 면제자가 지원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31.1%이지만 합격자 비율은 50.1%였다.

46) 한국변리사법 제5조 제2항.

47) 한국변리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실무수습은 시험합격 후에 요구되며 2개월 이상의 변리사회 주관실무수습(이하 “집합교육”)과 10개월 이내의 변리사사무소 등에서의 실무수습(이하 “변리사사무소 등 실무수습”)으로 총 1년 간이다.[49]

(2) 실시주체

상설한 바와 같이, 집합교육은 변리사회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고 변리사 사무소 등의 실무수습은 변리사 사무소, 기업의 특허전담부서, 특허청,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단체 또는 연구소가 주체가 되어 실시한다.

(3) 교육자료 작성자

집합교육의 교육자료는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강사가 집필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도 사용할 수 있다.[50] 담당강사가 집필하는 교과목 자료는 변리사회 회장이 발간한다.[51] 한편, 변리사 사무소 등에서의 실무수습은 일반적으로 교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4) 연수의 의무성 여부

신입변리사의 연수는 의무사항이다.[52] 그러나 신입변리사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 등록을 한 자(제3조 제1항 제2호),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제4조의3 제1항),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제4조의3 제2항), 변리사등록이 취소된 후 재등록하는 자(제5조의3)에 대하여는 실무수습이 의무사항은 아니다.[53]

(5) 연수를 수강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변리사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실무수습을 받아야 할 자로서 실무수습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된다.[54] 미등록 개업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

48) 한국변리사법 제12조 제2항, 변리사법시행규칙 제7조.
49) 한국변리사합격자 실무수습규정 제7조 제2항.
50) 한국변리사시험합격자실무수습운영세칙 제5조 제1항.
51) 한국변리사시험합격자실무수습운영세칙 제5조 제2항.
52) 한국변리사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53) 한국변리사법 제5조 제2항 단서
54) 한국변리사법 제5조의2 (등록 거부)
① 특허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된다.[55]

(6) 연수의 시기

변리사합격자 실무수습규정은 실무수습대상자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실무수습등록부에 등록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변리사로서의 등록을 위해서는 실무수습을 이수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실무수습의 시기는 변리사시험 합격 후 변리사등록 전이다.

(7) 연수 개최 빈도 및 기간

실무수습 중의 집합교육기간은 2개월 이상(240시간 이상)이며, 변리사 사무소 등의 실무수습기간은 개인별로 10개월 이내로 하여 집합교육기간 및 변리사 사무소 등의 실무수습기간은 통산하여 1년이어야 한다.[56]

(8) 집합교육의 교과과정

집합교육은 강의, 토론, 사례·과제 연구 및 발표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며[57] 출석과 집합교육 사이에 행해지는 시험에서 특정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집합교육이수가 인정된다.[58] 집합교육의 교육범위는 다음과 같다.[59]

(a) 변리사의 소양에 관한 과목
(b)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이론과 실무
(c) 저작권법 등 기타 지식 재산권에 관한 이론
(d) 특허소송 등의 이론과 실무
(e) 외국의 지식재산권제도에 관한 이론과 실무
(f) 반도체배치설계권 등 신지식재산권에 관한 과목
(g)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

변리사실무수습의 구체적인 개설과목은 아래와 같다.[60] 선택 과목과 필수 과목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a) 변리사 직업윤리/ 특허전략과 변리사의 역할/ 변리사 실무영어

---

.....
2. 제5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아야 할 사람이 실무수습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55) 한국변리사법 제25조 (미등록 개업금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6) 한국변리사합격자실무수습규정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참조.
57) 한국변리사시험합격자실무수습규정 제10조 제1항.
58) 한국변리사시험합격자실무수습규정 제14조.
59) 한국변리사시험합격자실무수습규정 제10조.
60) 2011년 기준이다.

(b) 특허제도 관련 (ex. BM 특허, 특허심판, 특허소송, 특허맵, 표준특허, 선행기술검색)
(c) 저작권제도의 이해
(d) 상표제도의 이해
(e)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
(f) 해외지재권제도의 이해 - 일본, 중국, 유럽, 미국
(g) 기술분야 (전자, 기계, 화학, 상표)별 명세서의 작성, 의견/보정서의 작성실습

(9) 변리사사무소등의 실무수습

변리사 사무소외에 기업의 특허전담부서, 특허청, 지식재산권관련 기관·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서의 현장 실무실습이 있다.

변리사 사무소 등에서의 실무수습은 10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행해지고, 실무수습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변리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1개월 단위로 실무수습일지를 작성하고, 대한변리사회에 제출해야하고, 총실무수습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 수료 가능하다.[61]

(10) 연수비용

실무수습의 비용은 본인 부담이 원칙이다.[62] 변리사 사무소 등에서의 실무수습의 경우에는 급여를 받으며 실무중심의 경험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11) 신입연수의 수강이력

특허청 홈페이지[63]나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64]에서 등록된 회원 변리사의 정보 일부를 검색할 수 있으나 신입연수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기록은 제공하지 않는다.

나. 일본의 변리사실무수습제도

(1) 법적 근거

일본변리사회는 변리사법에 기초하여 大正11년 설립된 변리사에 관한 유일의 법인으로, 연수를 통한 회원의 능력향상, 산업재산권 제도의 연구와 보급활동 등을 하고 있다.[65]

61) 한국변리사시험합격자실무수습규정 제9조 및 제15조 참조.
62) 한국변리사시험합격자실무수습규정 제8조의2.
63) www.kipo.go.kr
64) www.kpaa.or.kr

2008년 10월 1일부터 경제산업대신 또는 내각에서 지정받은 일본 유일한 지정수습기관인 일본변리사회가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실무수습을 수료하는 것이 변리사등록을 하기 위한 조건이 되고 있다.[66]

실무수습에서는 변리사로서 활약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문적인 응용능력을 습득한다. 연수는 집합 외 e러닝 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67]

특히 2007년 일본변리사법이 개정되면서 2007년 변리사법개정 이전의 신입연수의 (전기) 부분이 실무수습으로 변경되었고 신입연수 (후기) 부분은 신입연수로서 존치되어 있다. 이하에서 2007년 변리사법 개정 전후에 있어서, 실무수습을 받는 순서를 보여주는 흐름도를 살펴보기로 한다.[68]

[2007년 변리사법 개정 전후 실무수습의 순서]

※개정 전후는 2007년 변리사법 개정을 의미함.

※ 실무수습 144단위(1단위=30분)

※ 계속연수제도 5년간 70단위(1단위=1시간)

(2) 연수대상 및 주체

(가) 연수대상

실무수습의 대상자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특허청에서 심판관 또는 심사관으로서 심판 또는 심사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7년 이상인 자이다.[69]

---

65) http://www.jpaa.or.jp/?p=60, 2014.10.9. 최종방문.

66) 일본변리사법 제7조; 일본변리사법 제16조의2.
일본변리사법 제16조의2 제1항 실무수습은 제17조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변리사가 되는데 필요한 기술 및 고등의 전문적 응용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 경제산업대신이 행한다.
제2항 실무수습은 다음에 열거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것.
2. 변리사의 업무에 관한 법령 및 실무에 대하여 행할 것.
3. 실무수습의 강사 및 지도자는 변리사로서 그 실무에 통산하여 7년 이상 종사한 경험을 가질 것.

67) 그밖에 일본 변리사회에서는 지적 재산 인재 육성 커리큘럼이나 신입 연수, 신입 양성 연수, 지속적인 연수, 지적 재산 비즈니스 아카데미의 연수 등이 있다. 一般財団法人 知的財産研究所, 我が国の知財人材育成制度の現状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平成２５年２月, 35頁.

68) 日本弁理士会, 研修の現状-平成１９年法改正で導入された実務修習及び継続研修について ～, 平成 25年 9月 19日, 2면 참조.

69) 일본변리사법 제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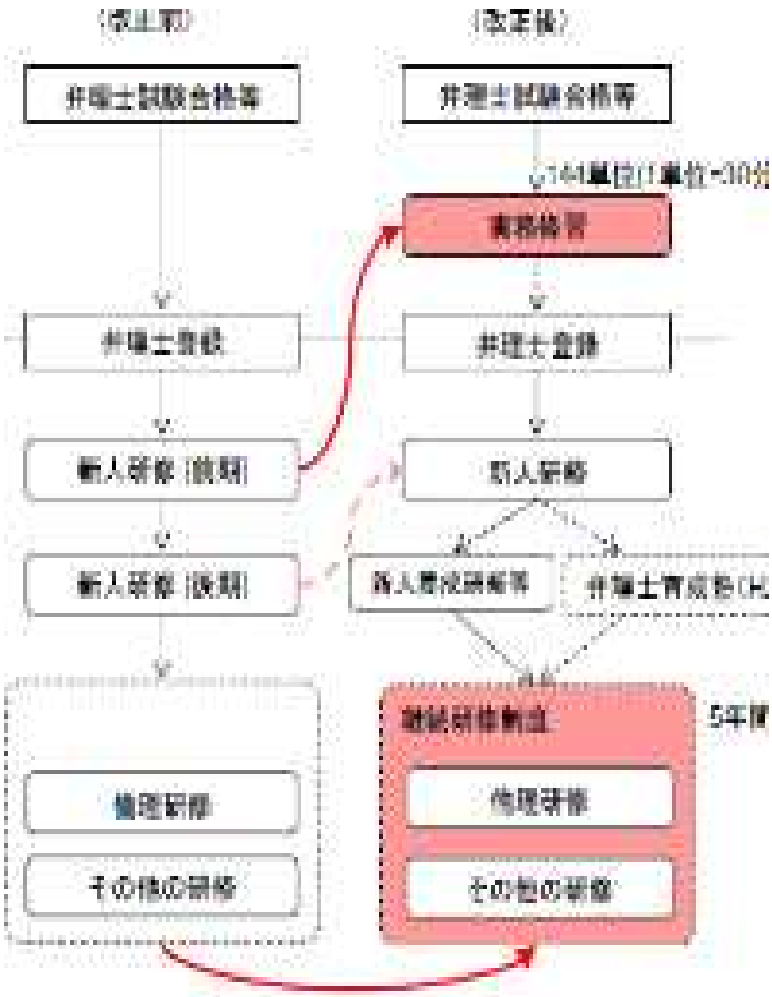

일본변리사회에서 밝힌 실무수습교육을 수강한 자의 통계는 다음과 같다.[70]

[실무수습수강 통계]

| 연도 | 시험합격자 | 실무수습수강자※ | 실무수습수료자 | 변리사등록자(2013.7말 시점) | 등록률 |
|---|---|---|---|---|---|
| 2008 | 574 | 560 | 559 | 492 | 85.7% |
| 2009 | 813 | 814 | 813 | 702 | 86.3% |
| 2010 | 756 | 758 | 756 | 583 | 77.1% |
| 2011 | 721 | 723 | 723 | 563 | 78.1% |
| 2012 | 773 | 773 | 768 | 498 | 64.4% |

70) 日本弁理士会, 研修の現状-平成１９年法改正で導入された実務修習及び継続研修について ～, 平成 25年 9月 19日, http://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pdf/dai2_newberisi_paper/03_sankou01.pdf

※ 실무수습 수강자의 99%는 동년도 시험합격자

(나) 연수주체

일본변리사회는 현재 경제산업대신으로부터 유일한 지정수습기관으로서 지정을 받고 있다.

(3) 연수교재의 작성자

지정수습기관인 일본변리사회에서 연수교재를 준비한다.

(4) 연수주기 및 의무이수시간

실무수습은 년도내에 수료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변리사시험합격발표직후인 12월부터 3월까지 약 3개월 정도에 집중하여 실시하고 있다. 의무이수시간은 144단위 77시간이다.[71]

[실무수습 연간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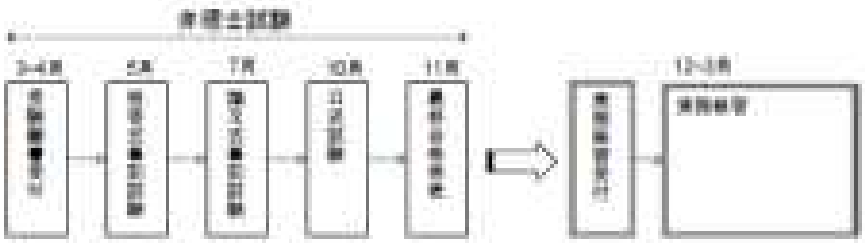

[실무수습기간 중의 주요일정]

(5) 연수교과과정

실무수습은 강의 및 연습에 의하여 행하고, 하나의 실시기간 내에 각 과정에 대하여 해당 단위 수 이상 행해야 하며 실무수습단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30분을 1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72]

71) 일본변리사법 제21조의4에서 실무수습이 일부면제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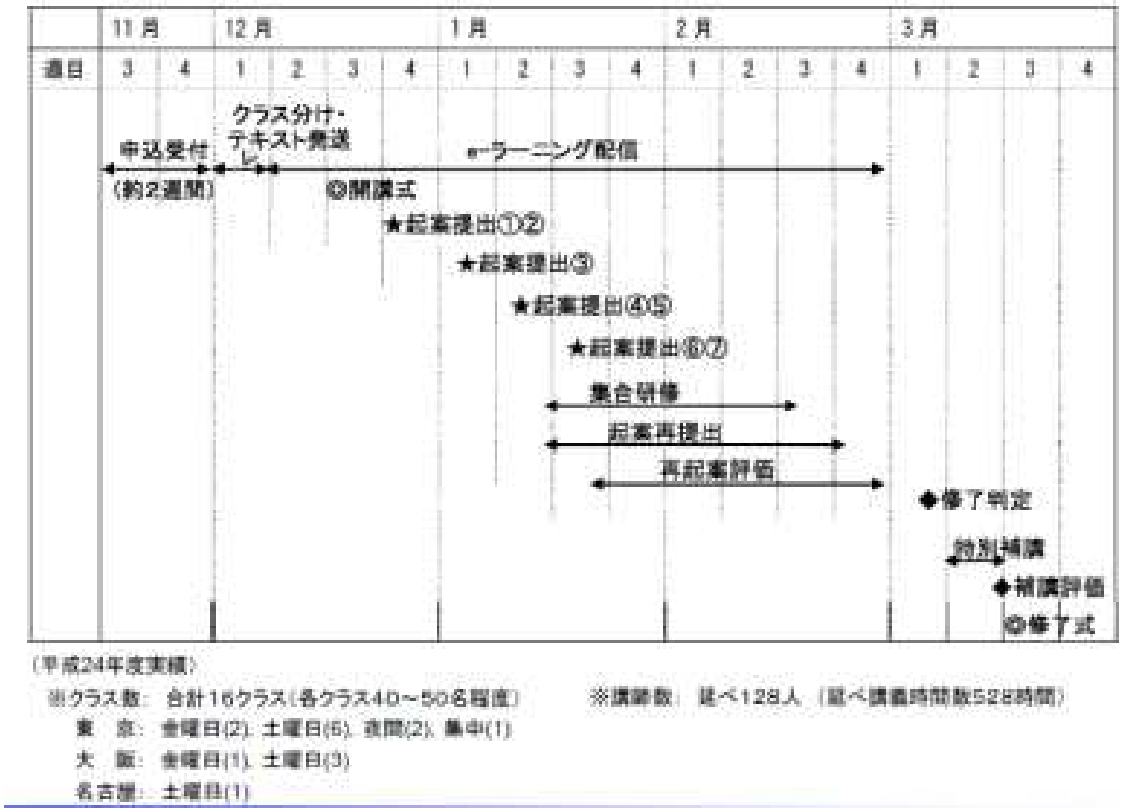


[실무수습 교과과정표]

| 과정 | 단위수 |
|---|---|
| 1. 변리사법 및 변리사의 직업윤리 | 16단위 |
| 2. 특허 및 실용신안에 관한 이론 및 실무 | 57단위 |
| 3. 의장에 관한 이론 및 실무 | 24단위 |
| 4. 상표에 관한 이론 및 실무 | 30단위 |
| 5. 공업소유권에 관한 조약 기타 변리사의 업무에 관한 이론 및 실무 | 17단위 |

실무수습의 실시에 있어서는 변리사가 되는데 필요한 기술 및 고등의 전문적 응용능력의 습득이 행해지는 것에 대하여 확인하는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73] 강의는 다양한 미디어(방송, 인터넷 기타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 및 전자적 기록에 관한 기록매체를 말한다)를 고도로 이용하여 실무수습의 실시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수습하도록 할 수 있다.[74]

72) 일본변리사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3 제1항.
73) 일본변리사법 제21조의2 제 3 항.
74) 일본변리사법 제21조의2 제 4 항.

실무수습과목의 상세는 다음과 같다.[75]

[실무수습 과목의 실제]

| No. | 과정 | 실무수습과목 | 시간수 | 이수형태 |
|---|---|---|---|---|
| 1 | 변리사법등 | 변리사법 | 3 | e러닝 |
| 2 | | 변리사윤리 | 2 | e러닝 |
| 3 | | 변리사법개론 | 3 | e러닝 |
| 4 | 특허관련 | 정보조사 | 3 | e러닝 |
| 5 | | PCT출원 | 1.5 | e러닝 |
| 6 | | 명세서의 방식(읽는방법, 작성)개론 | 1.5 | e러닝 |
| 7 | | 심사기준(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등) | 3 | e러닝 |
| 8 | | 청구항의 작성·해석 | 1.5 | e러닝 |
| 9 | | 청구항의 작성·해석 | 3 | 집합연수 |
| 10 | | 명세서방식연습(화학·기계·전기) | 6 | 집합연수 |
| 11 | | 심사대상·개론(의견서·보정서) | 1.5 | e러닝 |
| 12 | | 심사기준(보정의 제한) | 1.5 | e러닝 |
| 13 | | 심사대상·연습(화학·기계·전기) | 6 | 집합연수 |
| 14 | 의장관련 | 출원절차·개론 | 1.5 | e러닝 |
| 15 | | 출원절차·연습 | 3 | 집합연수 |
| 16 | | 심사대상·개론(의견서·보정서) | 1.5 | e러닝 |
| 17 | | 심사기준의 설명 | 1.5 | e러닝 |
| 18 | | 유부판단 | 1.5 | e러닝 |
| 19 | | 심사대상·연습(유부판단) | 3 | 집합연수 |
| 20 | 상표관련 | 정보조사 | 1.5 | e러닝 |
| 21 | | 마드리드출원 | 1.5 | e러닝 |
| 22 | | 출원절차·개론 | 1.5 | e러닝 |
| 23 | | 출원절차·연습 | 3 | 집합연수 |
| 24 | | 심사대상·개론(의견서·보정서) | 1.5 | e러닝 |
| 25 | | 심사기준의 설명 | 1.5 | e러닝 |
| 26 | | 유부판단 | 1.5 | e러닝 |
| 27 | | 심사대상·연습(유부판단) | 3 | 집합연수 |
| 28 | 조약등 | 조약등지적재산권에 관한 시책 | 2 | e러닝 |

75) 日本弁理士会, 研修の現状-平成１９年法改正で導入された実務修習及び継続研修について ～, 平成 25年 9月 19日, 2면 참조.

| | | | | |
|---|---|---|---|---|
| 29 | | 출원절차(온라인출원·원서의 양식) | 1.5 | e러닝 |
| 30 | | 조약(각국의 제도개요를 포함) | 3 | e러닝 |
| 31 | | 심판의 개요 | 2 | e러닝 |

수습과정에 있어서 수습생이 교과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위하여는 수습과정 중에 기안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하는데 수습생의 기안 합격상황은 다음과 같다.[76]

[수습생의 기안 합격상황(면제자 제외)]

(단위 인·과목수)

| 기안 1회차 | | | 기안 2회차 | | | 기안 3회차 | | |
|---|---|---|---|---|---|---|---|---|
| 제출자 | 합격자 | 합격률 | 제출자 | 합격자 | 합격률 | 제출자 | 합격자 | 합격률 |
| 5,058 | 3,560 | 70% | 1,497 | 1,458 | 97% | 35 | 35 | 100% |
| 누계 | 3,560 | 70% | | 5,018 | 99% | | 5,053 | 100% |

(6) 현장실습

변리사실무수습은 출원서류의 작성연습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장실습(OJT)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 실무수습에 있어서 OJT 등 실습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과목 면제자를 제외한 모든 연수생에 OJT에 유사한 기회를 주고 있다. 또한 특허사무소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일본변리사회가 인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동지부 등의 무료상담에서도 베테랑 변리사의 상담에 처음 무료상담을 하는 변리사가 동석하여 발명상담에 관한 OJT도 실시하고 있다.

(7) 연수비용

실무수습의 대상자가 연수비용을 부담하므로, 지정수습기관에 실무수습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77]

76) 日本弁理士会, 研修の現状-平成１９年法改正で導入された実務修習及び継続研修について ～, 平成 25年 9月 19日, 6면 참조.

77) 일본변리사법 제16조의14.

(8) 연수수강내역

실무수습 수강내역에 대하여는 지정수습기관인 일본변리사회 주사무소에 비치하여 수습생이 실무수습을 마친후 변리사등록부에 등록되기까지 기간과 실무수습수료후 10년간 중 장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는 서면과 전자적 기록을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78]

3. 기등록 변리사 보수교육제도

가. 한국의 변리사 보수교육제도

(1) 기등록된 변리사의 의무연수의 법적 근거

2011년 11월 25일자로 시행된 개정변리사법에서는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식기반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변리사를 양성하기 위해 등록변리사에 대한 연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신설되었다.[79]

(2) 연수대상 및 주체

(가) 연수대상

변리사법 제4조 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는 모두 해당되며 변리사시험합격자, 변호사, 특허청 출신 전체가 포함된다. 대한변리사회 회원가입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등록변리사에게 의무연수가 적용된다.[80]

(나) 연수주체

등록변리사 연수는 원칙적으로 대한 변리사회 주체로 실시된다.[81]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 대한변리사회의 승인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연수실시주체가 될 수

78) 일본변리사법 제21조의18.

79) 변리사법 제15조 (변리사의 연수)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리사회는 연수교육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연수규칙을 제정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변리사회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연수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위하여 변리사 등록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

80) 한국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등록을 한 모든 변리사는 반드시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81) 한국변리사의무연수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변리사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변리사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리사 연수교육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 있다.[82)83)]

(3) 연수교재의 작성자

해당 연수의 실시기관이 준비하고 있다.

(4) 연수주기 및 의무이수시간

2년의 연수주기(짝수년도 1월 1일부터 홀수년도 12월 31일까지)마다 24시간(윤리연수 2 시간 이상, 전문연수 6시간 이상과 선택교육 16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연수해야 한다.[84)85)] 이수시간의 계산은 30분 단위로 계산한다.[86)]

2년의 연수주기에 부여된 의무연수이수기간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특허청에 과태

---

82) 한국변리사의무연수규칙 제10조(위임연수) ① 위임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전문 교육기관 또는 단체는 연수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와 함께 별지 제2호의 변리사의무연수 실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수과정의 세부 내용 또는 강의계획서
2. 개별 강좌를 담당할 강사의 약력 또는 강사 선정 기준
3. 출석, 평가 관리 등을 포함한 연수관리계획
4. 기타 본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
② 본회는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전문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연수교육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위임연수를 실시하는 전문 교육기관 또는 단체는 연수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를 이수한 변리사의 명단과 각각의 이수 시간 등을 기재한 연수실시결과보고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83) 한국변리사의무연수규칙 제11조(기관인정연수) ①인정연수로 지정받고자 하는 교육, 학술대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연수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와 함께 별지 제2호의 변리사의무연수 실시신청서를 작성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수과정의 세부 내용 또는 강의 계획서
2. 개별 강좌를 담당하는 강사의 약력 또는 강사 선정 기준
3. 출석, 평가 관리 등을 포함한 연수관리계획
4. 기타 본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
② 본회는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기관 또는 단체의 연수교육을 인정연수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전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 7.11)
③ 인정연수를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를 이수한 변리사의 명단과 각각의 이수 시간 등을 기재한 연수실시결과보고서를 변리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84) 변리사법 시행령 제17조의5 (연수교육의 시간 등)
① 연수교육의 시간은 2년에 24시간 이상으로 하되, 직업윤리 과목을 2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간은 다음 2년에 받아야 할 연수교육의 시간에 합산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질병·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질병, 부상, 출산, 군복무, 장기 국외 체류 등으로 정상적인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고령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변리사회가 정하는 경우

85) 해당 제도가 2011. 11. 25.자로 시행됨에 따라 첫 번째 연수주기는 2011. 11. 25부터 2013. 12. 31까지이며 해당 주기 내 의무이수 시간은 1시간이 추가되어 총 25시간이 된다.

86) 따라서 30분 미만은 삭제하게 된다. 예컨대, 이수시간이 40분인 경우 0.5시간으로 인정되고, 80분인 경우 1시간을 인정되며, 100분인 경우 1.5시간으로 인정된다.

료를 납부하여야하며,[87] 과태료 납부기준은 이하 표와 같다.[88] 또한 연속 3주기 이상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않는 경우, 변리사징계위원회의 회부대상이 된다. 아울러 과태료를 납부해도 이수하지 않은 연수시간은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기에 추가하여 이수해야한다.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
| | | 1회 | 연속 2회 | 연속 3회 이상 |
|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제1항 | | | |
| 가. 연수교육 실적: 없음 | | 150 | 300 | 500 |
| 나. 연수교육 실적: 50% 미만 | | 100 | 200 | 400 |
| 다. 연수교육 실적: 50% 이상 75% 미만 | | 75 | 150 | 300 |
| 라. 연수교육 실적: 75% 이상 100% 미만 | | 50 | 100 | 200 |

(5) 연수의 개최빈도

연수개최빈도는 정해져 있지 않고, 개최기간은 각 교육과정마다 다르다.

(6) 연수 교과과정

연수의 종류에는 윤리연수, 전문연수 및 선택연수가 있고, 2년마다 윤리연수 2시간, 전문 연수 6시간과 선택연수 16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89]

【2014년도 변리사 의무연수 교육 과정】

| 과목구분 | 교과목명 |
|---|---|
| 변리사 전문연수 | 제53회 정기총회·윤리연수 |
| | 제1차-4차 변리사 전문연수 |
| 지식재산소송실무과정 | 상반기 소송실무연수-기초 |
| | 지식재산소송실무연수-심화 |
| | 하반기 소송실무연수-기초 |

87) 한국변리사법 제27조 (과태료) ①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88) 변리사법 시행령 제23조.
89) 변리사법 시행령 제17조의5.

| 비즈니스과정 | 가치평가감정 3,4기(기초, 심화) |
|---|---|
| 지식재산세미나 | 제1회-10회 지식재산세미나 |
| 전문변리사분회 세미나 | 제1,2차 전지전자전문변리사분회 |
| | 제1,2차 화학생명전문변리사분회 |
| | 제1,2차 기계금속전문변리사분회 |
| | 제1,2차 상표디자인전문변리사분회 |

연수는 필수연수와 선택연수, 집합연수와 온라인연수로 나눌 수 있는데, 각 연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필수연수

윤리연수와 전문연수를 필수연수로 하고, 대한변리사회가 필수로 지정한 과목의 연수이다. 연수주기동안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윤리연수는 변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절 및 직업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연수이다. 연수주기 내에 반드시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전문연수는 변리사업무 관련 전문지식, 법령·제도의 제·개정, 기술동향 등에 관한 연수이다. 연수주기 내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나) 선택연수

필수연수를 제외한 과목으로, 대한변리사회 주최의 연수·세미나(필수연수과정 이외) 및 대한변리사회가 사전승인한 관련 기관 및 단체 주최의 연수(위임연수, 기관인정연수)를 통해 이수할 수 있다.

2014년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실시된 연수과목은 다음과 같다.

[특허청] 변리사제도 및 법개정현황, 윤리연수 1시간
[한국라이센싱협회] IP라이센싱협상(Negotiation for IP Licensing) 프로그램, 전문연수 4시간
[(주)이지펙스] 고품질 특허확보전략 교육세미나 (전문연수 2시간)
- 고품질 특허확보전략 교육세미나, 가치특허창출을 위한 R&D 전략,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전략, 고품질 명세서 작성전략
[(주)이지펙스]효율적 로열티 징수를 위한 라이센싱 전략 및 감사기법 (전문연수 2시간 인정)
[특허청] `14년 찾아가는 열린 출원·등록제도 통합설명회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내용, 출원·등록·국제출원제도의 `14년도 주요 개선

사항 및 유의사항
[(사)한국상표·디자인협회] 세미나 - 상표권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기한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전문연수 1시간 인정)
[(사)한국라이센싱협회] CLP과정2 (Valuation, Opportunity Assessment & Development) (전문연수 4시간)
[특허정보진흥센터] 2014년 상반기 표준특허 전문변리사 양성 교육(전문 7시간 인정)
[특허청] 2014 출원·등록·국제출원 합동설명회 (변리사의무연수 전문 2시간 인정)
[세계지식재산분쟁조정중재센터] IIPAC Education 2014 개최 안내 (총 15시간 인정)
[(사)한국상표디자인협회] 2014년 상반기 상표정책동향 세미나 개최 (전문3, 윤리1시간 인정)
[대한여성변리사회] 2014년 여성인재아카데미 '여성 변리사 역량 강화 교육' 시행 안내 (변리사의무연수 전문 7시간 인정)
[유럽특허청] 유럽특허청 주최 "소프트웨어 특허의 보호" 세미나 (전문연수 3.5시간 인정)
[ASCo] 제2차 전자증거개시 및 기록관리 전략 포럼 (전문 2시간 인정)
[대한변리사회] 2014년도 제1차 변리사 전문연수 개최 (윤리연수 1시간, 전문연수 3시간 인정)
2014년도 제1회 지식재산세미나-특허심사제도설명회(전문1.5 윤리1)
2014년도 제2회 지식재산세미나 개최 (전문2, 윤리1)
2014년도 제3회 지식재산세미나 개최 안내 (변리사의무연수 2.5시간 인정)
2014년도 제4회 지식재산세미나 개최 (의무연수 전문 2시간, 윤리 1시간 인정)
2014년도 제5회 지식재산세미나 개최 (의무연수 전문 1.5, 윤리1시간 인정)
2014년도 제7회 지식재산세미나 개최 안내 (변리사의무연수 총 2.5시간 인정)
2014년도 제8회 지식재산세미나 개최 (의무연수 전문 1.5, 윤리 1시간 인정)

[특허청] 2014년 특허제도 통합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안내(변리사 의무연수 전문 2시간 인정)
[한국라이센싱협회] CLP대비과정 Ⅲ 교육 안내(변리사의무연수 전문 4시간 인정)
[스톨마앤파트너] 유럽특허 심사단계 대응 및 분쟁대비 세미나(변리사의무연수 전문3시간 인정)
[한국상표디자인협회] 2014년 KOTA아카데미 개최 안내 (변리사 의무연수 전문연수 인정)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급변하는 글로벌 상표제도와 신브랜드 전략' 세미나 (변리사의무연수 전문3시간인정)
[(사)한국상표디자인협회] 제6회 브랜드&디자인 세미나 개최 (변리사의무연수 전문 1시간 인정)

[특허청] PATINEX 2014 개최 (변리사의무연수 전문 총 9시간 인정)
2014년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 (변리사의무연수 인정) (입상자 전문 최대 3시간 인정)
2014년도 제2차 변리사 전문연수(대전) 개최 (변리사 의무연수 윤리 1시간, 전문 3.5시간 인정)
[변리사 36기 동기회] 2014년도 제3회 변리사 36기 워크숍 개최 (전문연수 4시간)
- 인하우스 변리사/변호사의 역할, 국제특허동향, 특허와 비지니스
[특허청] IP금융 국제컨퍼런스 개최 안내 (변리사의무연수 전문4시간 인정)
[국제변리사연맹] 제22회 4단체 춘계 합동세미나 개최 안내(변리사의무연수 전문 1.5시간 인정)
제3기 특허 가치평가감정 교육 개최 안내 (변리사 의무연수 전문 15시간, 윤리 1시간 인정) 2014년도 상반기 지식재산소송실무연수 개최 안내 (변리사의무연수 전문 10시간, 윤리 1시간)
[특허청] EU단일특허제도 세미나 개최 안내(변리사의무연수 전문 1.5시간 인정)
지적재산권 대리인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전문 1.5시간 인정)
2014년도 하반기 지식재산 소송실무연수 개최 안내(전문6시간, 윤리1시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글로벌 협상조정 최고위과정(GNMP) 모집 안내(변리사의무연수 전문 5시간 인정)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 2014 AIPPI 의약특허세미나 개최 안내 (변리사의무연수 전문3시간 인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4년 열린 네트워크 시즌 3 Fall: 위기의 극복" 개최 안내 (변리사의무연수 전문 1시간 인정)

(7) 현장 실습

등록변리사에 대한 현장실습연수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8) 연수 비용

연수 비용은 본인 부담이며, 변리사회가 주최하는 연수의 경우 변리사회 회원에 한하여 참가비의 일부가 할인된다.

(9) 연수 수강내역

변리사법 제14조에 따라 2011년 11월 25일부터 연수교육이수현황을 포함하는 변리사정보가 변리사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나. 일본의 변리사 보수교육제도

(1) 일반

변리사의 기초능력향상, 지재관리능력향상, 변리사업무의 글로벌화에 대응한 능력향상을 위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2008년 변리사법 개정으로 계속연수제도로서 5년간 70단위(1단위 1시간) 이상의 연수수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윤리연수, 회원연수, 지역연수, 특정침해소송대리업무에 관한 능력담보연수, 민법·민소법에 관한 기초연수, 부기변리사연수, 첨단혁신연수, 인정외부기관이 실시하는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 내용을 우리나라 계속연수제도와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근거법령

2008년 4월 1일부터 변리사법개정으로 계속연수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변리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일본변리사회가 행하는 연수를 받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다(변리사법 제31조의2). 변리사법 제31조의2는 "변리사는 경제산업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본변리사회가 행하는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위한 연수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계속교육훈련계획은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경제산업대신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변리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구체적으로 5년간 70단위(1단위는 1시간임) 이상의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변리사는 일본변리사회가 지정하는 4월 1일을 시작으로 5년간(이하 "연수기간"이라 한다)마다 일본변리사회가 실시하는 법 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연수(이하 "계속교육"이라 한다)를 70단위 (이하 "필요단위수"라 한다) 이상 받아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단위의 계산 방법은 강의에 의해 실시하는 연수 1시간을 1단위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연수 방법에 대해 일본 변리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2항).[90]

(3) 연수대상 및 주체

(가) 연수대상

등록변리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나) 연수주체

90) 계속연수의 면제에 대하여는 동시행규칙 제26조, 필요단위수의 경감에 대하여는 동시행규칙 제27조 참조.

일본변리사회는 부속기관으로 연수원을 마련하여 변리사의 실무능력 향상, 윤리의 공고화에 노력하고 있다. 연수는 집합형식 외에도 e학습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고 있다.

(4) 연수교재의 작성자

계속연수주체가 준비한다.

(5) 연수주기 및 의무이수시간

모든 변리사는 5년간 70단위(1단위 1시간) 이상 연수를 수강할 의무가 있다.

(6) 연수교과과정

(가) 계속연수의 대상이 되는 연수

ⓐ 필수여부에 의한 구분

① 윤리연수(필수)

10단위로서 집합연수 5단위, e러닝연수 5단위이다.

② 업무연수(필수과목)

업무연수의 필수과목은 일본변리사회 회장이 지정한다.

- 2008년 특허법등의 개정에 대하여: 2008년 지정되었고, 수강기간은 2010년도말까지이다.

-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에 대하여: 2008년 지정되었고, 수강기간은 2010년도말까지이다.

- 2011년 특허법등의 개정에 대하여: 2011년 지정되었고, 수강기간은 2012년도말까지이다.

③ 업무연수(선택과목)

- 집합연수(2012년): 2012년 기준으로 연수과목수는 398과목이고, 총 수강자수는 23,323명이다.

- e러닝연수(2012년): 2012년 기준으로 연수과목수는 256과목이고, 총수강자수는 31,761명이다.[91]

[연수의 분야별 수강상황] 2012년 실적

| No. | 연수내용 | 과목수 | 총수강인수 | 총수강시간수 |
|---|---|---|---|---|
| 1 | 변리사 실무전반 | 93 | 4,883 | 8,042 |
| 2 | 특허·실용신안 | 320 | 12,386 | 25,981 |
| 3 | 의장 | 21 | 1,421 | 2,638 |
| 4 | 상표 | 81 | 5,107 | 8,640 |
| 5 | 지재소송 | 98 | 3,538 | 8,872 |
| 6 | 조약 | 49 | 1,114 | 2,932 |
| 7 | 주변법 | 88 | 3,793 | 7,722 |
| 8 | 민법·민사소송법 | 43 | 2,528 | 5,182 |
| 9 | 외국법 | 249 | 12,958 | 32,976 |
| 10 | 비지니스관련 | 174 | 5,787 | 14,773 |
| 11 | 첨단혁신관련 | 24 | 1,855 | 2,511 |
| 12 | 기타 | 134 | 4,499 | 9,701 |
| | 총계 | 1,374 | 59,869 | 129,966 |

(b) 성질에 의한 구분

ⅰ) 윤리연수

e-학습(5시간)과 집합연수(5시간)를 합하여 총 10시간의 연수인데, 필수과목으로서 모든 변리사가 수강하여야 한다.

ii) 회원연수

변리사로서 지니고 있어야 할 지식과 기술을 양성하기 위한 연수이다. 최근 변리사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하고 있어 내용도 다양화하고 있다. 또한 특허법이 개정 등 변리사로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하는 것은 필수과목으로서 모든 변리사가 반드시 수강하여야 한다.

iii) 지역연수

연수는 주로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대도시권에서의 개최가 많기 때문에, 그 이외의 지역 변리사의 편의를 위해 각지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iv) 특정침해소송대리 업무에 관한 능력담보연수

본 연수를 수료하고, 특정침해소송대리업무시험에 합격하면 특정침해소송에 한하여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상한이 10단위이며 수료자수는

91) 필수과목 1과목을 제외한 수치이다.

2012년 기준으로 193명이다.

ⅴ) 민법·민사소송법에 관한 기초연수

능력담보연수를 수강하기 위해 필요한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연수이다.

ⅵ) 부기변리사연수

특정침해소송대리업무시험에 합격하고 그 내용을 변리사등록부에 부기한 변리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이다. 실제 특정침해소송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위한 연수이다.

ⅶ) 첨단혁신연수

첨단 기술을 테마로 한 연수이다.

ⅷ) 인정외부기관이 실시하는 연수

일본변리사회가 인정한 인정외부기관이 실시하는 연수 중 일본변리사회가 계속연수로 인정한 연수이다.

인정외부기관이 실시하는 연수는 상한이 30단위이며 인정외부기관수는 2012년 말 기준으로 53단체이다. 2012년도 기준으로 집합연수를 시행한 연수 과목수는 702과목, 총수강자수는 4,406명이다.

(나) 계속교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연수 : 신입연수

변리사 등록 후 얼마 되지 않은 변리사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연수로서, 기초적인 실무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수 교육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선택하여 수강한다.

[신입연수의 개요]

| No. | 과목 | 시간 | 연수형태 |
|---|---|---|---|
| 1 | 신규등록한 변리사로서의 자세 | 1.5 | e러닝 |
| 2 | 사정계심판(특허) | 1.5 | e러닝 |
| 3 | 사정계심판(의장) | 1.5 | e러닝 |

| | | | |
|---|---|---|---|
| 4 | 사정계심판(상표) | 1.5 | e러닝 |
| 5 | 감정·판정의 실무(특허·실용신안) | 1 | e러닝 |
| 6 | 감정·판정의 실무(의장) | 2 | e러닝 |
| 7 | 감정·판정의 실무(상표) | 1 | e러닝 |
| 8 | 외국특허출원의 실무(미국)① | 2.5 | e러닝 |
| 9 | 외국특허출원의 실무(미국)② | 1.5 | e러닝 |
| 10 | 외국특허출원의 실무(EPC) | 1.5 | e러닝 |
| 11 | 외국특허출원의 실무(아시아) | 1.5 | e러닝 |
| 12 | 외국특허출원의 실무 | 1 | e러닝 |
| 13 | 외국특허출원의 실무(구미·아시아 등) | 2 | e러닝 |
| 14 | 저작권법 개론 | 1.5 | e러닝 |
| 15 | 부정경쟁방지법개론 | 1 | e러닝 |
| 16 | 계약의 기초지식 | 1 | e러닝 |
| 17 | 라이센스계약 | 1.5 | e러닝 |
| 18 | 일본의 특허침해실무 | 1 | e러닝 |
| 19 | 당사자계심판(특허·실용신안) | 3 | 집합연수 |
| 20 | 당사자계심판(의장) | 3 | 집합연수 |
| 21 | 당사자계심판(상표) | 3 | 집합연수 |
| 22 | 실결취소소송의 실무 | 3 | 집합연수 |
| 23 | 지적재산권 실무연습 | 3 | 집합연수 |

수강자수는 2012년에 279명이었으며 개최지역은 동경, 대판, 나고야 3곳이었다.

[신입양성연수의 개요(1) - 특허명세서 작성 실무에 관한 연수] 2010~2012년까지 실시

| No. | 과목(과제 주제) | 시간 | 연수형태 |
|---|---|---|---|
| 1 | 특징추출과 표현방법의 모색 | 3 | 기안제출·집합연수 |
| 2 | 실시례 추가와 발명의 단일성 | 3 | 기안제출·집합연수 |
| 3 | 복수청구항의 의의 | 3 | 기안제출·집합연수 |
| 4 | 발명의 다면적 보호(기능적 청구항) | 3 | 기안제출·집합연수 |
| 5 | 수치한정 청구항 | 3 | 기안제출·집합연수 |

[신입양성연수의 개요(2)-상표조사 보고서 및 의견서 작성실무에 관한 연수] 2012년 실시

| No. | 과목(과제 주제) | 시간 | 연수형태 |
|---|---|---|---|
| 1 | 조사보고서의 작성, 마드리드 프로토콜 | 3 | 기안제출·집합연수 |

| | | | |
|---|---|---|---|
| 2 | 의견서의 작성①(제4조 제1항 제11호 위반의 거절이유) | 3 | 기안제출·집합연수 |
| 3 | 의견서의 작성②(제3조 제1항 각호위반의 거절이유) | 3 | 기안제출·집합연수 |
| 4 | 의견서의 작성③(두 가지 이상의 거절이유, 기타 거절이유) | 3 | 기안제출·집합연수 |

[변리사육성학원의 개요] (2013년 시험실시, 2014년 본격실시)
장기의 연습지도형 연수를 시작하여 베테랑 변리사가 신입변리사를 친절하고 정중하게 지도하는 연수를 시작한다.

| No. | 과목 | 시간 | 연수형태 |
|---|---|---|---|
| 1 | 화학(동경코스) | 40 | 기안제출·연습 |
| 2 | 기계(동경코스) | 40 | 기안제출·연습 |
| 3 | 전기(동경코스) | 40 | 기안제출·연습 |
| 4 | 화학(대판코스) | 40 | 기안제출·연습 |
| 5 | 기계(대판코스) | 40 | 기안제출·연습 |
| 6 | 전기(대판코스) | 40 | 기안제출·연습 |

(다) e-학습

지역이나 시간 등에 제한되지 않는 연수의 수강방법으로서 e러닝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현재 100개 이상의 다양한 콘텐츠를 갖추고 있다.

(라) 지재 비즈니스 아카데미

사회가 변리사에게 요구하는 기술은 기존의 명세서 작성 업무뿐만 아니라 경영에 관한 사업에 관련된 사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지재 컨설턴트 등의 업무에 강한 변리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개강하고 있다. 외부의 지재 인력과의 교류도 실시하고 있어 기업의 지재부서직원들도 수강할 수 있다.

지재 비지니스에 관한 교육은 과목 수로 111개를 망라하여 총 수강 인원이 4,000명을 넘고 있다.

(마) 기타

계속연수의 단위에 대하여는 일본변리사회가 실시하는 연수를 수강하는 것만은 아

니고 강사활동(10단위), 논문등의 집필(10단위), 인정외부기관이 실시하는 연수의 수강(30단위)에도 단위 취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강사활동에 의한 간주단위부여(상한 10단위)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457명에 대하여 합계 1,714단위 (상한 초과분을 제외)를 부여하였다.

저작물의 집필에 의한 간주단위부여(상한 10단위, 1단위 5,000자)의 경우 2012년을 기준으로 61명에 대하여 합계 216단위(상한 초과분을 제외)를 부여하였다.

(6) 현장 실습

현장 실습과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7) 연수 비용

연수대상자가 부담한다.

(8) 연수수강내역

계속 교육은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변리사내비(동법 제77조의 2, 동규칙 제 34조 및 변리사회 회칙 제145조)에서 파악할 수 있는 수강 상황은 연수명, 형태(집합 연수, e-학습, 외부기관 연수, 특례 단위) 등 개략적 형태만이고, 상세(토론 형식, 실습 형식, 강사 활동 · 저작 집필활동 내용 등)는 파악할 수 없다. 또한 집합연수의 효과확인은 강사에게 일임되고 있는데(계속연수실시세칙 제3조 제3항) 실제로 효과확인이 행해졌는지 여부도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외부기관에 의한 연수에서는 간단한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어있다.

다. 지재경영 아카데미의 연수교육

2005년 개강한 지재경영아카데미는 변리사회 연수원과는 별도로 마련된 변리사를 위한 연수기관이다. 연수원에서의 연수와는 다른 영역에서의 연수, 즉 지재컨설턴트 등의 업무에 강한 변리사 양성을 위한 연수, 변리사업무의 광역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수업방법, 지적기반능력구축에 관한 강좌 등 MOT 대학원에서 개설되지 않은 특정 프로그램이 다수 준비되어 있다. 그러한 강좌들은 변리사 본래의 업무에도 도움이 된다. IPBA는 유료 강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듣는 수강생이 많다. 외부 지재인재와의 교류를 행하여 기업의 지재부서직원도 수강가능하다.

변리사회 연수원이 변리사 본연의 업무 중심으로 변리사 업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지재법 개정사항, 실무지식 등에 대한 연수를 주 목적으로 함에 반하여, 지재경영아카데미에서는 지재경영 최전선에서 중심적으로 활동하는 선도적 변리사 양성을 위하여 지재를 경영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공부하는 점, 그를 위해 필요한 지적기반능력의 구축에 대하여 연수 강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지재경영아카데미의 강좌의 경우 강사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을 주로 하는 변리사회 연수원 강좌와는 달리, 정원 20명 이하의 소규모 수업으로서 사전과제의 레포트 등에 대한 그룹토론, 각 그룹에서 토론한 그룹별 구성원의 레포트의 발표와 전체 토론, 강사의 보조적 강의로 구성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재 수업법에 관한 강좌도 다수 마련하고 있다는 점인데, 기초 수업법 강좌에서는 법대가 아닌 경영학부나 이공계 학부 학생에게 지재를 교육하는 것을 상정하여 모의강의(10~15분)와 이에 대한 학생평가, 강사 강평 등을 주로 하고 있다. 중급단계의 수업법 강좌에서는 case method, 워크샵, 세미나, 블록 세미나 등의 다양한 수업방법을 통해 지재과목을 강의하는 방법을 지도한다. 또한 인터뷰, 프리젠테이션, 컨셉워크, 지재컨설팅(기초/방법론 해설·연습), 사업전략과 지재관리(기초), 지재경영 교섭학(기초), 지재경영교섭학 (중급) 등의 과목도 개설하고 있다.

올해 지재경영 아카데미에서 실천적인 경영 마인드를 가미한 실력향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강의는 다음과 같다.[92]

| | 강좌명 | 강의기간 | 회수 | 형태 | 강사 | 수강료 |
|---|---|---|---|---|---|---|
| 1 | 기업의 지재전략지원세미나(오사카) | 5/23~8/1 | 6회 | 세미나 | 변리사 | 35,900엔 |
| 2 | 기업의 지재전략지원세미나(동경) | 10/2~12/11 | 6회 | 세미나 | 변리사 | 35,900엔 |
| 3 | 경영기초과정(오사카) | 6/4~9/17 | 7회 | 세미나 | [경영직]육성학교 CICOM-ISL강사진 | 33,000엔 |
| 4 | 경영기초과정(동경) | 6/25~10/8 | 7회 | 세미나 | [경영직]육성학교 CICOM-I | 33,000엔 |

92) http://www.jpaa.or.jp/?cat=121.

| | | | | | | |
|---|---|---|---|---|---|---|
| | | | | | SL강사진 | |
| 5 | 경영전략사례연구(동경) | 9/16~11/12 | 5회 | 세미나 | CICOM BRAINS | 40,000엔 |
| 6 | 경영전략사례연구(오사카) | 10/7~12/18 | 5회 | 세미나 | CICOM BRAINS | 40,000엔 |
| 7 | 정보해석(오사카) | 10/25, 11/15 | 4회 | 세미나 | CICOM BRAINS | 40,000엔 |
| 8 | 정보해석(동경) | 11/5~12/17 | 4회 | 세미나 | CICOM BRAINS | 40,000엔 |
| 9 | 지재계약실무세미나 | 11/20~12/18 | 6회 | 세미나 | 변호사/변리사 | 20,000엔 |

## III. 변리사 제도 개선방안

### 1. 지식재산서비스 세부전문영역별 전문변리사제도의 도입

현재 나와 있는 개정안 상의 전문변리사제도는 변호사법상의 전문변호사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일정 경력이상인 된 변리사에게 전기, 기계, 화학, 상표 등에 대한 전문변리사를 인증하는 제도에 그치고 있다.[93]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안에서 변리사의 직역을 저작권 등의 영역으로 확대하고, ADR업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문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통관업무, 지식재산권 침해관련 불공정무역행위업무, 기술이전의 대리 및 사업화, 기술평가에 관한 업무까지도 업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지식재산서비스 중 해당 업무영역(즉 지식재산의 전주기에 맞춘 지식재산창출, 보호, 관리·활용의 세분화 영역)의 전문변리사 인증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서비스전문변리사의 구체적 도입분야와 관련해서는 지식재산보호전문변리사[지식재산권리화 전문. 지식재산분쟁처리 전문, 지식재산권침해 손해산정 전문], 지식재산취득지원전문변리사[지식재산창출지원전문, 지식재산양수지원전문], 지식재산관리·활용전문변리사[지식재산관리전문, 지식재산평가전문, 지식재산이전전문, 지식재산사업화전문, 지식재산금융전문]와 같이 분류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지식재산서비스전문변리사 인증과 관련해서는 지재서비스 전문자격사를 취득한 후 5년 정도 특화된 실무경험을 입증하면 전문자격사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변리사가 지식재산서비스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지식재산서비스전문변리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변리사제도를 함께 운영하면 지식재산서비스에 관한 대학(원)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을

93) 김원오, 변리사자격등록제도개선, 변리사법전부개정안 공청회 자료집(2013.5.31) 11면.

것이다. 사후적인 지식재산서비스전문변리사의 자격관리를 위하여 지식재산서비스 교과목에 대한 계속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2. 변리사시험제도의 개선

21세기 변리사의 역할변화에 따른 적합한 변리사시험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그 개선 방향은 국제적 경쟁력과 전문성을 가진 변리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국제사건처리능력과 확대된 직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처리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명세서작성능력을 테스트하도록 시험출제방향을 잡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험과목에 있어서는 21세기형 변리사상 인재를 양성, 공급하는데 있어서 현행 변리사시험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차 시험 과목 중 산업재산권 비중이 더 커질 필요가 있고,[94] 2차시험 필수과목에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이 포함되어야 함과 아울러,[95] 2차시험 선택과목의 수가 지나치게 많고 점수편차가 심하며 일부과목은 수험생이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96] 또한 지식재산서비스, 명세서 작성 시험[97][98], 국제지재권법 과목[99]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100]

특히 변리사법개정으로 변리사의 직역이 지식재산서비스분야로까지 확대될 예정이므로 2차시험의 선택과목으로서 지식재산서비스과목에는 특허분석, 지식재산관리, 기술가치평가, 지식재산사업화, 지식재산금융 등의 세부과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94) 응시자격을 이공계로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제1차시험에서 자연과학개론을 폐지하고 산업재산권법 과목명을 지식재산권법으로 변경하고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95) 제2차시험에서는 필수과목에 있던 특허법, 상표법과 새로 추가되는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을 지식재산권법으로 통합한 1과목으로 하는 방안도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96) 바람직하기로는 이공계로 수험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변리사시험응시자격을 이공계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다. 즉 미국은 이공계 대학 졸업자, 독일은 이공계 대학 졸업자로서 3년간 실무수습을 받은 자, 영국은 이공계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 수준의 학력소지자, 프랑스는 이공계 기사 자격증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중국은 이공계 대학 졸업자만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제한을 하고 있다.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변리사 시험 2차 선택과목으로 이공계 전공과목을 포함시킴으로써 과목 수 과다와 과목별 난이도 조정 실패로 변리사시험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나 획기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우리가 먼저 이공계로 수험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이공계 수험과목을 둘러싼 비효율적인 문제 현안을 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97) 명세서 작성 시험에서는 응시자에게 기계, 전기전자, 화학 또는 약학 중에서 택일하도록 하여 해당전공의 명세서작성 시험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98)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공계 외에도 인문사회계 출신이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고 응시자의 대부분은 로스쿨에 수학한 경력이 없으며 특허출원에 관련한 실무경험도 없으므로 변리사제도개선에 있어서 미국이 명세서 시험을 폐지한 것을 참고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명세서작성시험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험과목조정에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99) 국제지재권법이라 함은 지재관련 조약 또는 주요국의 지재권법, 지재권에 관한 국제분쟁해결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100) 손경한외, 상게보고서 72면.

**변리사시험 시험과목(변리사법시행령 별표1 개정안)**

| 현행변리사법시행령 | 변리사법시행령개정안 |
|---|---|
| [별표 1]<br>시험과목(제3조제1항 관련)<br><br>1. 제1차 시험(4과목)<br>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조약을 포함한다),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은 제외한다), 자연과학개론, 영어<br><br>2. 제2차 시험(4과목)<br>가. 필수과목(3)<br>특허법(조약을 포함한다), 상표법(조약을 포함한다), 민사소송법<br><br>나. 선택과목(1)<br>디자인보호법(조약을 포함한다), 저작권법, 산업디자인, 기계설계, 열역학, 금속재료, 유기화학, 화학반응공학,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데이터구조론,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섬유재료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중 1과목<br><br>비고: 법 제4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제2차 시험의 과목은 제2차 시험의 필수과목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1과목과 선택과목 1과목으로 한다. | [별표 1]<br>시험과목(제3조제1항 관련)<br><br>1. 제1차 시험(3과목)<br>지식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및 조약을 포함한다),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은 제외한다), 지식재산서비스개론, 영어<br><br>2. 제2차 시험(6과목)<br>가. 필수과목(4)<br>지식재산권법(특허법(영업비밀 포함), 상표법(부정경쟁방지 포함),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을 포함한다), 민사소송법, 국제지식재산권법(지식재산권에 관한 조약, 미국, 유럽연합 및 중국의 특허법, 국제지식재산분쟁해결을 포함한다) 및 변리사윤리<br><br>나. 선택과목(2)<br>·명세서 작성: 기계공학, 전기전자학, 화학 또는 약학 중 택 1(명세서작성능력을 테스트함)<br>·지식재산서비스: 특허분석, 지식재산관리, 기술가치평가, 지식재산사업화, 지식재산금융 중 택 1<br>비고:<br>1. 지식재산석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1차시험과목 중 지식재산권법과 지식재산서비스를 면제한다.<br>2. 국제지식재산분쟁해결에는 지식재산분쟁에 관한 국제소송절차 및 국제중재를 포함한다.<br>3. 법 제4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제2차시험의 과목은 제2차 시험의 필수과목 중 변리사윤리와 응시자가 선택하는 1과목 및 선택과목 1과목으로 한다. |

## IV. 변리사 교육제도 개선 방안

### 1. 변리사시험전 교육제도의 개선: 교육을 통한 양성을 위한 면제제도의 도입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대학에서의 지재권 관련 법률과 기술에 대한 면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변리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

국의 경우 일본과 달리 석박사 학위소지자, 지식재산전문직 대학원의 석사 학위소지자에게 변리사시험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이공계계열 전공자들에게 지식재산 융복합교육을 통해 융합적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기확립된 지식재산교육제도의 활용률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면제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석박사 학위소지자, 지식재산전문직대학원의 석사 학위소지자에게 1차 시험과 2차 시험 선택과목 면제제도로서, 대학원(산업재산권 과목) 수료자에 대하여 수료 2년 이내의 단답식 시험을 면제하고, 선택과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식을 가진 자, 즉 석사·박사학위 논문심사합격자·전문직대학원 논문심사 합격자에 대하여 논문식시험(선택과목)을 면제하고 있는 것이 좋은 참조가 된다.

2. 변리사시험합격후의 교육제도의 개선

가. 실무수습

실무수습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시험합격후 3개월 동안 144단위 77시간 동안 지식재권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점에서 변리사시험 합격후 2개월 간 240시간의 집중적인 지식재산권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다양한 과목을 깊이 있게 교육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21세기 과학기술시대에 적합한 융합형 지식재산서비스전문자격사로서 변리사의 위상에 걸맞는 교육을 아직 실시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변리사시험 합격후 실무연수에서는 선행기술조사·개시에 관한 교육, 변리사의 명세서 직접작성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 심사시 구두설명을 가능하게 하고 심판·소송에서의 구두심리 관련 교육 과목을 추가하고 강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변리사법개정으로 변리사의 직역이 지식재산서비스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지식재산서비스에 대한 전문변리사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지식재산서비스과목을 집합연수 교과목에 포함시키고 변리사사무소 등의 실무수습에 있어서 실무수습기관에 기술가치평가기관이나 지식재산정보검색분석업체 등 지식재산서비스기관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계속연수

앞에서 살펴본 계속(보수)교육의 커리큘럼이 변리사법 개정안상의 변리사 신설업무영역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변리사법이 개정될 경우 계속교육의 커리큘럼의 손질이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지식재산서비스과목들을 추가하여 실시하고 현장

실습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보다 먼저 변리사법 개정으로 계속연수제도를 크게 보강한 일본의 경우가 참조가 많이 된다.

일본의 계속연수제도의 있어서 특이점의 하나는 2007년 변리사법을 개정하면서 기존 신입연수제도의 일부를 실무수습제도로 돌리고 나머지 신입연수제도를 변리사 등록후의 신입연수제도로서 존치시키고 있는 점이다. 의무교육은 아니나 신입변리사에게 사정계 심판(특허, 의장, 상표), 감정·판정의 실무(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외국특허출원실무(미국, 유럽, EPC, 아시아),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계약, 라이선스계약, 당사자계심판(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심결취소소송의 실무, 지적재산권 실무연습과 같이 기초적인 실무내용에 중점을 두어 교육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또한 신입양성연수로서 특허명세서 작성 실무에 관한 연수로서, 특징추출과 표현방법의 모색, 실시례 추가와 발명의 단일성, 복수청구항의 의의, 발명의 다면적 보호(기능적 청구항), 수치한정 청구항 등에 관하여 단순한 강의방식이 아니라 기안제출 방식을 통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은 우리의 경우에도 참조할 만하다. 또한 상표조사 보고서 및 의견서 작성실무에 관한 연수에서도 조사보고서와 의견서의 작성에 관하여 기안제출 방식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점도 참조가 된다.

더 나아가 일본의 신입연수와 관련하여 변리사육성학원에서 화학, 전기, 화학분야에 대하여 40시간 이상씩 기안제출·연습을 하는 장기의 연습지도 방식으로 베테랑 변리사가 신입변리사를 친절하고 정중하게 지도하는 연수를 시작하였는데 우리의 경우에도 참조할 만하다.

변리사등록후의 계속연수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변리사 보수교육은 2년간 24시간인데 반하여 일본의 경우 변리사법을 개정하여 보수교육을 5년 간 70시간을 의무화하였는데 우리보다 의무교육시간이 많고 기간을 유연화함으로써 실효성있는 연수를 가능하게 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본과 같이 의무연수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의 변리사 계속교육의 경우 교육의 다양성과 질면에서도 우리보다 앞선다고 할 수 있는데, 변리사실무전반에 93과목, 특허·실용신안부문 320과목, 의장 21과목, 상표 81과목, 지재소송 98과목, 조약 49과목, 주변법 88과목, 민법·민사소송법 43과목, 외국법 249과목, 비즈니스관련 174과목, 첨단혁신관련 24과목, 기타 134과목으로 1,374과목을 개설하였는바, 아직 초기단계인 우리나라의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시키고 실무중심의 전문성과 과목의 다양화를 도모함에 있어서 참

조가 된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지재경영아카데미는 지재컨설턴트등의 업무에 강한 변리사 양성을 위한 강좌, 변리사업무의 광역화를 지원하기 위한 강좌, MOT 대학원에서 개설되지 않는 수업방법, 지적기반능력구축에 관한 강좌 등과 같이 지재경영 최전선에서 중심적으로 활동하는 선도적 변리사 양성을 위하여 지재를 경영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수 강좌를 제공한다는 점, 강사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을 주로 하는 변리사회 연수원 강좌와는 달리, 정원 20명 이하의 소규모 수업으로서 사전과제의 레포트 등에 대한 그룹토론, 각 그룹에서 토론한 그룹별 구성원의 레포트의 발표와 전체 토론, 강사의 보조적 강의로 구성되는 점, 또한 변리사의 고객 상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인터뷰, 프리젠테이션, 컨셉워크, 지재컨설팅(기초/방법론 해설·연습), 사업전략과 지재관리(기초), 지재경영 교섭학(기초), 지재경영교섭학 (중급) 등의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점은 우리의 경우에도 크게 참조가 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지재경영아카데미에서는 변리사들이 지재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지재 수업법에 관한 강좌도 다수 마련하고 있는데, 특히 기초 수업법 강좌에서는 법대가 아닌 경영학부나 이공계 학부 학생에게 지재를 교육하는 것을 상정하여 모의강의(10~15분)와 이에 대한 학생평가, 강사 강평 등을 주로 하고, 중급단계의 수업법 강좌에서는 case method, 워크샵, 세미나, 블록 세미나 등의 다양한 수업방법을 통해 지재과목을 강의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것은 종합적 지재서비스자격사로서의 변리사를 지향하는 우리의 경우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고 소정 연수를 거쳤다고 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변리사로서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기술의 진보 속도가 빠르고 빈번한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변리사시험 당시의 지식은 무용의 것으로 화하게 된다. 따라서 변리사에 대한 정기 보수교육을 엄격히 시행하여 최신 지식재산서비스를 제공하는 변리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3. 소결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 변리사의 직역이 확대되고 변리사의 전문성 및 실무 역량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변리사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과 관련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시대의 변리사는 글로벌 역량을 가지고 세계경쟁력을 가지는 강한 특허를 만들 수 있는 영어능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이공계 전공의 인재여야 한다. 즉 1차적으로는 강한 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해당 분야에 관한 기술적 지식과 명세서 작성 능력을 갖추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통용가능한 국제지식재산권법과 실무에 정통할 것

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지식정보사회에서 필요한 변리사의 바람직한 인재상은 지식재산과 법학, 기술, 경영분야의 융합 인재이며, 이러한 인재상은 변리사 직역확대와 지식재산서비스 전문변리사제도 도입, 보수교육 강화 등의 변리사제도 개선과 지식재산 융합인재들이 대거 합격할 수 있는 변리사시험제도 개선과 면제제도 확충, 시험전후 교육제도 개선을 통하여 가능해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변리사교육제도와 관련한 당면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 제2절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식재산권 교육 개선방안

### I.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식재산권 교육 현황

#### 1.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식재산교육정책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특성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원의 설치인가 신청 대학이 특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가신청대학들은 각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특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특성화 프로그램과 관련한 교육인적자원부 심사기준의 주요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와 연계하여 특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각 법학전문대학원들은 인적, 물적여건과 사회적 환경 등을 감안하여 특성화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였다. 최종 인가를 받은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지식재산권을 특성화분야로 지정한 학교는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권 특성화 법학전문대학원>

| 인가받은 대학 | 특성화 분야 | 정원 |
|---|---|---|
| 경북대학교 | IT와 법 | 120 |
| 연세대학교 | 공공거버너스와 법, 글로벌 비즈니스법, 의료·과학기술법 | 120 |
| 인하대학교 | 물류법, 지적재산권법 | 50 |
| 중앙대학교 | 문화법 | 50 |
| 충남대학교 | 지적재산권법 | 100 |

| | | |
|---|---|---|
| 충북대학교 | 과학기술법 | 50 |
| 한양대학교 | 국제소송, 지식·문화산업, 공익·소수자인권 | 100 |

이처럼 7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식재산권을 특성화 분야로 정하였지만 지식재산권만을 특성화로 다루고 있는 것은 경북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와 충북대학교만이며 나머지 3개 학교에서는 다른 분야와 지식재산권을 함께 특성화 분야로 선정하였다. 이들 7개 대학이 지식재산권을 특성화 분야로 선정하였다 함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다른 법학전문대학원과 비교하여 더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식재산권 교육 현황

### 가. 법학전문대학원 개설 이전의 지재교육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학교교육은 크게 대학교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으로 분류되어 이루어졌다. 즉 학부과정에서는 지식재산권학과(학교마다 명칭이 조금씩 상이함)를 설치하거나 법과대학의 교육과정 중 선택과목의 하나로 지식재산권법을 두었다. 대학원 과정에서는 대학원에 지식재산권법 전공(전공마다 명칭이 상이함)을 두거나 특수대학원(대학마다 특수대학원의 명칭이 상이함)을 설치하는 방법에 의해 지식재산권 교육이 이루어졌다. 학부과정에 지식재산권학과를 두고 있던 대학들과 특수대학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이전 국내대학 지식재산학과 설치 현황>[101]

| 대학교 | 단과대학 | 전공 | 학위 |
|---|---|---|---|
| 인하대학교 | 법과대학 | 지적재산권학 | 법학사 |
| 광운대학교 | 법과대학 | 과학기술법학 | 법학사 |
| 경기대학교 | 경상대학 | 지식재산학 | 경제학사 |
| 상명대학교 | 융복합특성화대학 | 저작권보호학 | 저작권보호학사 |
| 한남대학교 | 법과대학 | 특허법학 | 법학사 |
| 영동대학교 | 과학기술대학 | 발명특허학 | 공학사 |
| 한북대학교 | 사회과학대학 | 특허법률학 | 법학사 |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시에는 총7개 대학에서 학부과정으로 지식재산권학과

101) 김동준&이철남, “지식재산교육 평생교육제 도입을 통한 교육효율성 제고방안”,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연구보고서, 2012.12. 5면 참조.

를 운영 중이었으나 인하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과 함께 2017년까지만 법과대학을 유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법과대학에 소속되었던 지적재산권학 전공도 법과대학의 폐지와 함께 폐지될 예정이다. 따라서 장래에는 학부과정으로 운영되는 지식재산권학과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이전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특수대학원 설치 현황>[102]

| 교육기관 | 전공 | 학위 |
|---|---|---|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 지적재산권법무 | 법학석사 |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지적재산권법학 | 법학석사 |
|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 지적재산권법무학 | 법학석사 |
| KAIST | 지식재산실무 | 공학석사 또는 경영학석사 |
|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 특허법무 | 법학석사 |
| 홍익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 지식재산학 | 지식재산학 석사 |
| 아주대학교 산업대학원 | 지식재산공학 | 공학석사 |

위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이전에는 총7개의 대학이 지식재산권에 한한 특수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 중 KAIST와 홍익대학교를 제외한 총5개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과정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학교들이 특수대학원을 폐지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대학들이 특수대학원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며 현재도 7개 대학이 지식재산권 관련 특수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지재권 특성화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재교육

(1) 지식재산권 관련 과목 개설현황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이전의 법과대학에서는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으며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교육은 특수대학원이나 대학원에서의 교육이 중심을 이루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고 특히 7개 대학에서는 지식재산권 교육을 특성화 분야로 선정함에 따라 과거 법과대학과 비교할 때 지식재산권에 대한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간이 흐를수록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이 변호사시험과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시험의 합격률이 저하될수록 학생들은 선택과목 보다는 필수과목이나 기본과목

102) 김동준&이철남, 위의 보고서, 6면 참조.

에 편중하여 수강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다음은 지식재산권을 특성화분야로 선정한 대학의 개설과목들이다.

① 경북대학교

| 학년/학기 | 구분 | 교과목명 | 학점 |
|---|---|---|---|
| 1-1 | 필수 | IT경제와 법 | 2 |
| 1-2 | 선택 | 정보사회와 저작권법 | 3 |
| 2-1 | 선택 | IT산업과 특허법 | 3 |
| 2-1 | 선택 | 방송통신과 법 | 3 |
| 2-1 | 선택 | 벤처기업법 | 3 |
| 2-2 | 선택 | IT산업과 독점규제법 | 3 |
| 2-2 | 선택 | 특허소송과 특허심판 | 3 |
| 2-2 | 선택 |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 3 |
| 3-1 | 선택 | 전자상거래법 | 3 |
| 3-1 | 선택 | 기술이전과 Licensing 실무 | 3 |
| 3-2 | 선택 | IT 국제거래와 WTO/TRIPs 실무 | 2 |
| 3-2 | 선택 | 정보사회와 개인정보보호 | 2 |

경북대학교에는 두 분의 지식재산권 전임교수가 있다. IT경제와 법이 1학년 1학기에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며 이론과목과 실무과목이 모두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연습과목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

② 연세대학교

| 기본과목군 | 심화과목군 | 응용실무과목군 |
|---|---|---|
| 특허법 | 문화산업법 | 지적재산권라이센스실무 |
| 상표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 | |
| 저작권법 | 사이버법 | |
| 정보통신공학과 법 | 미국정보통신법 | |
| | 저작권침해와 구제 | |
| | 지적재산권 국제분쟁 | |
| | International Trade and | |

| | Intellectual Property | |
|---|---|---|

연세대학교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교육은 2학년과 3학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학년별 과목 분포는 인터넷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연세대학교에는 두 분의 지식재산권 전임교수와 민법과 과학기술법을 담당하는 한분의 교수가 있다. 과목은 기본과목과 심화과목 및 응용실무과목으로 분류되며 실무과목으로는 지적재산권라이센스실무가 개설되어 있다.

③ 인하대학교

| 학년/학기 | 구분 | 교과목명 | 학점 |
|---|---|---|---|
| 1-2 | 필수선택 | 지적재산권개론 | 3 |
| 2-1 | 선택 | 특허법 | 3 |
| 2-1 | 선택 | 저작권법 | 3 |
| 2-1 | 선택 | 지적재산라이센싱실무(원어) | 3 |
| 2-2 | 필수 | 지적재산권모의재판 | 1 |
| 2-2 | 선택 | 상표법 | 3 |
| 2-2 | 선택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 3 |
| 2-2 | 선택 |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 3 |
| 2-2 | 선택 | 디자인보호법 | 3 |
| 2-2 | 선택 | 지적재산권법실무(원어) | 3 |
| 3-1 | 선택 | 미국특허법제와 실무(원어) | 3 |
| 3-1 | 선택 | 산업기술보안 | 3 |
| 3-1 | 선택 | 저작권소송실무 | 3 |
| 3-1 | 선택 | 인터넷과 지적재산권 | 3 |
| 3-1 | 선택 | 지적재산권과 경쟁질서 | 3 |
| 3-1 | 선택 | 지적재산권법연습 | 3 |
| 3-1 | 선택 | IT법 | 3 |
| 3-1 | 선택 | 미술법 | 3 |
| 3-2 | 선택 | 산업재산권소송실무 | 3 |
| 3-2 | 선택 | 엔터테인먼트법 | 3 |
| 3-2 | 선택 | 지적재산권법 세미나 | 3 |

| | | | |
|---|---|---|---|
| 3-2 | 선택 | 지적재산서비스와 관리실무 | 3 |

인하대학교에는 네 분의 지식재산권 전임교수가 있다. 지적재산권개론이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으며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과 같은 기본과목 외에 많은 응용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특히 다른 학교에서는 찾아보니 힘든 지적재산권 모의재판이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다. 이외에도 다수의 실무과목과 연습과목도 개설되어 있다.

④ 중앙대학교

| 학년/학기 | 구분 | 교과목명 | 학점 |
|---|---|---|---|
| 2-1 | 선택 | 저작권법 | 3 |
| 2-1 | 선택 | Art Law | 2 |
| 2-2 | 선택 | IP 소송법 | 3 |
| 2-2 | 선택 | Motion Picture Law | 3 |
| 2-2 | 선택 | Global Entertainment Law | 2 |
| 2-2 | 선택 | 언론법 | 3 |
| 3-1 | 선택 | 특허법 | 3 |
| 3-1 | 선택 | International Copyright Law | 2 |
| 3-1 | 선택 | 문화·종교와 법 | 3 |
| 3-1 | 선택 | 엔터테인먼트계약법 | 3 |
| 3-1 | 선택 | 정보프라이버시법 | 3 |
| 3-1 | 선택 | Media & Entertainment Law Practice | 3 |
| 3-2 | 선택 | 상표·디자인과 법 | 3 |
| 3-2 | 선택 | Intellectual Property Licensing Practice | 2 |
| 3-2 | 선택 | 인터넷법 | 3 |
| 3-2 | 선택 | 방송통신법 | 3 |
| 3-2 | 선택 | 스포츠법 | 3 |

중앙대학교에는 한분의 지식재산권 전임교수가 있다. 저작권과 방송에 관한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으며 실무과목은 원어강의로 개설되어 있다. 연습과목이나 모의재판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

⑤ 충남대학교

| 학년/학기 | 구분 | 교과목명 | 학점 |
|---|---|---|---|
| 2-1 | 선택 | 지적재산권 기초 | 3 |
| 2-2 | 선택 | 특허법 | 3 |
| 2-2 | 선택 | 상표법 | 3 |
| 2-2 | 선택 | 저작권법 | 3 |
| 3-1 | 선택 | U.S. IP Law | 3 |
| 3-1 | 선택 | Trademark Law for Global Practitioners | 3 |
| 3-1 | 선택 | 발명의 보호와 특허실무 | 3 |
| 3-1 | 선택 | IP Infringement and Litigation | 3 |
| 3-1 | 선택 | IT(컴퓨터)법 | 3 |
| 3-1 | 선택 | 특허경영 | 3 |
| 3-1 | 선택 | 기초과학연구 | 3 |
| 3-2 | 선택 | International Licensing and Negotiation | 3 |
| 3-2 | 선택 | Patent Law for Global Practitioners | 3 |
| 3-2 | 선택 | 특허법원과 소송 | 3 |
| 3-2 | 선택 | 사이버공간과 지적재산권 | 3 |
| 3-2 | 선택 | 중국지적재산권법 | 3 |
| 3-2 | 선택 | 첨단기술과 특허 | 3 |
| 3-2 | 선택 | International IP Law | 3 |
| 3-2 | 선택 | Implication of Antitrust to IP Law | 3 |
| 3-2 | 선택 | 지적재산권법 연습 | 3 |

충남대학교에는 네 분의 지식재산권 전임교수가 있다. 지식재산권 과목 중 필수과목은 없으며 모두 선택과목이다. 실무과목과 연습과목은 개설되어 있지만 인하대학이 개설하고 있는 모의재판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

⑥ 충북대학교

| 학년/학기 | 구분 | 교과목명 | 학점 |
|---|---|---|---|
| 1-1 | 선택 | 정보과학기술사회의 제문제 | 3 |

| | | | |
|---|---|---|---|
| 1-2 | 선택 | 지식재산권법 일반이론 | 3 |
| 2-1 | 선택 | 과학기술법일반론 | 3 |
| 2-1 | 선택 | 생명윤리와 법 | 3 |
| 2-1 | 선택 | 특허법 | 3 |
| 2-2 | 선택 | 보건의료법 | 3 |
| 2-2 | 선택 | 저작권법 | 3 |
| 2-2 | 선택 | 상표법 | 3 |
| 3-1 | 선택 | 의료정책법 | 3 |
| 3-1 | 선택 | 정보통신법 | 3 |
| 3-1 | 선택 | 특허소송실무 | 3 |
| 3-2 | 선택 | 산업재산권법 사례연습 | 3 |
| 3-2 | 선택 | 국제지적재산권법 | 3 |
| 3-2 | 선택 | 생명과학 특수문제 세미나 | 3 |

충북대학교에는 두 분의 과학기술법 전임교수와 한 분의 특허법 실무교수가 있다. 과학기술법을 중심으로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으며 실무과목과 산업재산권법에 대한 사례연습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하지만 모의재판과목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

⑦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의 개설과목에는 부정경쟁방지법, 라이센싱법, IT법, 국제지적재산권법. 엔터테인먼트법, 인터넷과 법, 저작권법, 문화산업법, 지적재산권법, 지적재산권법 연습, 상표·디자인법, 특허법이 있다. 이론에 대한 기본과목들과 응용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으며 지적재산권법 연습도 개설되어 있으나 실무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103)]

다. 지재권 비특성화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재교육

(1) 지식재산권 관련 과목 개설현황

지식재산권을 특성화로 지정하지 않은 나머지 18개 학교의 특성화 분야는 다음과 같다.

103) 한양대학교는 학교 홈페이지에 개설교과목을 게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학회지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양대학교의 지식재산권 관련 과목의 개설을 살펴보았다.

<지적재산권 이외의 각 법학전문대학원들의 특성화 분야>[104]

| 인가 대학원 | 특성화 분야 | 정원 |
|---|---|---|
| 강원대학교 | 환경법 | 40 |
| 건국대학교 | 부동산관련법 | 40 |
| 경희대학교 | 글로벌 기업법무 | 60 |
| 고려대학교 | GLP(국제법무) | 120 |
| 동아대학교 | 국제상거래법 | 80 |
| 부산대학교 | 금융, 해운통상 | 120 |
| 서강대학교 | 기업법(세부특성화:금융법) | 40 |
| 서울대학교 |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법무 | 150 |
| 성균관대학교 | 기업법무 | 120 |
| 시립대학교 | 조세법 | 50 |
| 아주대학교 | 중소기업법무 | 50 |
| 영남대학교 | 공익·인권 | 70 |
| 원광대학교 | 의생명과학법 | 60 |
| 이화여자대학교 | 생명의료법, 젠더법 | 100 |
| 전남대학교 | 공익인권법 | 120 |
| 전북대학교 | 동북아 통상관련법 | 80 |
| 제주대학교 | 국제법무 | 40 |
| 한국외국어대학교 | 국제지역 전문법조인 | 50 |

그러나 지식재산권을 특성화 분야로 지정하지 않은 많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1명 이상의 지식재산권 교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식재산권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① 강원대학교

| 학년/학기 | 구분 | 교과목명 | 학점/시수 |
|---|---|---|---|
| 2-1 | 전선 | 저작권법 | 3-3 |

104) 배대헌,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논의-지적재산권 관련 교과목 편성·운영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제27호, 2008, 7면 참조.

| | | | |
|---|---|---|---|
| 2-2 | 전선 | 산업재산권법 | 3-3 |
| 3-1 | 전선 | 컴퓨터정보법 | 3-3 |
| 3-2 | 전선 | 과학기술관계법 | 3-3 |

강원대학교에는 한분의 지식재산권 전공교수가 있다. 산업재산권법을 특허법, 상표법 등 해당 법률별로 분류하지 않고 산업재산권법으로 통합하여 강의하고 있으며, 연습과목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

② 건국대학교

| 학년/학기 | 구분 | 교과목명 | 학점/시수 |
|---|---|---|---|
| 2-1 | 전선 | 지적재산권법 | 3-3 |
| 2-1 | 전선 | 엔터테인먼트법 | 3-3 |
| 2-2 | 전선 | 특허법 | 3-3 |
| 2-2 | 전선 | 스포츠법 | 3-3 |
| 3-1 | 전선 | 저작권법 | 2-2 |
| 3-2 | 전선 | 지적재산소송실무 | 2-2 |
| - | 전선 | Law&Art | 3-3 |
| - | 전선 | Law&Tech. | 3-3 |

건국대학교에는 한분의 지식재산권 전공교수와 엔터테인먼트법 분야의 실무경험을 가진 민법교수 한분이 있다. 실무과목과 영어강좌는 개설되어 있는 반면 연습과목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

③ 경희대학교

| 학년/학기 | 구분 | 교과목명 | 학점/시수 |
|---|---|---|---|
| 2-1 | 전선 | 지적재산법 | 2-2 |
| 2-1 | 전선 | 인터넷과 법 | 2-2 |
| 2-2 | 전선 | 저작권법 | 2-2 |
| 2-2 | 전선 | 산업재산권법 | 2-2 |
| 2-2 | 전선 | 과학기술법 | 2-2 |
| 2-2 | 전선 | 생명공학과 국제법 | 2-2 |

| | | | |
|---|---|---|---|
| 3-1 | 전선 | 미술과 법 | 2-2 |
| 3-1 | 전선 | 인터넷과 지적재산법 | 2-2 |
| 3-1 | 전선 | 엔터테인먼트법 | 2-2 |
| 3-2 | 전선 | 지적재산법 세미나 | 2-2 |
| 3-2 | 전선 | 국제지적재산법 | 2-2 |

현재 경희대학교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임교수는 없으며 민법분야와 지식재산권법을 함께 하는 한분의 교수님을 보유하고 있다. 전임교수가 없는 것을 고려하면 다양한 지식재산권법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연습과목과 실무과목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

④ 고려대학교

| 학년/학기 | 구분 | 교과목명 | 학점/시수 |
|---|---|---|---|
| 2-1 | 전선 | 지적재산권법 개론 | 3-3 |
| 2-1 | 전선 | 저작권법 | 3-3 |
| 2-2 | 전선 | 특허법 | 3-3 |
| 2-2 | 전선 | 인터넷법 | 3-3 |
| 2-2 | 전선 |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 3-3 |
| 2-2 | 전선 | 엔터테인먼트법 | 3-3 |
| 3-1 | 전선 | IT법 | 3-3 |
| 3-1 | 전선 | 국제특허법 | 3-3 |
| 3-2 | 전선 | 국제지적재산권법 | 3-3 |

고려대학교에는 세분의 지식재산권 전임교수가 있으며, 과목들은 기본교과, 심화교과, 연습교과의 세 종류로 구분된다. 고려대학교에 지식재산권 과목 중에 필수과목은 없으며 전부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과구분 중 연습교과에 해당하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 비교적 많은 전임교수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실무과목이나 연습과목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

⑤ 동아대학교

| 학년/학기 | 구분 | 교과목명 |
|---|---|---|
| 2-1 | 전선 | 지적재산권법 I |
| 2-2 | 전선 | 지적재산권법 II |
| 2-2 | 전선 | 전자상거래법과 소송실무 |

| | | |
|---|---|---|
| 3-1 | 전선 | 첨단과학기술과 법 |
| 3-2 | 전선 | 지적재산권침해판단론 |

동아대학교에는 한분의 지식재산권 전임교수가 있다. 지식재산권법을 권리별로 분류하지 않고 지적재산권법 I과 II로 통합하여 개설한 점이 특징이다. 실무과목이 개설되어 있지만 지식재산권법이 아닌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소송실무가 지식재산에 대한 실무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연습과목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

⑥ 부산대학교

| 학년/학기 | 구분 | 교과목명 | 학점/시수 |
|---|---|---|---|
| 2-1 | 전선 | 과학기술과 지적재산권법 | 3-3 |
| 2-2 | 전선 | 상표와 지적재산권법 | 3-3 |
| 2-2 | 전선 | 전자상거래법 | 3-3 |
| 3-1 | 전선 | 문화와 지적재산권법 | 3-3 |
| 3-1 | 전선 | 미디어와 법 | 3-3 |
| 3-2 | 전선 | 국제지적재산권법 | 3-3 |
| 3-2 | 전선 | 지적재산권 침해소송 및 실무 | 3-3 |
| 3-2 | 전선 | 지적재산과 독점규제법 | 3-3 |

부산대학교에는 두 분의 지식재산권 전임교수가 있다. 개설과목 중 전자상거래법은 상사법 전공과목으로 미디어와 법은 공법 전공과목으로, 지적재산과 독점규제법은 법경제법 전공과목으로 분류된다. 실무과목이 개설되어 있지만 연습과목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

⑦ 서강대학교

| 학년/학기 | 구분 | 교과목명 | 학점/시수 |
|---|---|---|---|
| 2-1 | 전선 | 저작권법기초 | 3-3 |
| 2-2 | 전선 | 부정경쟁방지법 I | 3-3 |
| 2-2 | 전선 | 특허심판·소송실무 | 3-3 |
| 3-1 | 전선 | 미디어법실무 | 3-3 |
| 3-1 | 전선 | 부정경쟁방지법 II | 3-3 |
| 3-2 | 전선 | 문화산업과 법 | 3-3 |

서강대학교에는 한분의 지식재산권 전임교수가 있다. 개설과목 중 선택과목들은 법학선택과목과 특성화과목으로 분류되며 지식재산권법 과목들은 특성화과목들로

분류되어 있다. 비록 개설과목 수는 적지만 개설과목의 1/3 이상이 실무과목이다. 그러나 연습과목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

⑧ 서울대학교

| 학년/학기 | 구분 | 교과목명 | 학점/시수 |
|---|---|---|---|
| 2-1 | 전선 | 지적재산권법개론 | 3-3 |
| 2-2 | 전선 | 특허법 | 3-3 |
| 2-2 | 전선 | 저작권법 | 3-3 |
| 2-2 | 전선 | 정보통신법 | 3-3 |
| 3-1 | 전선 | 과학기술과 법 | 3-3 |
| 3-1 | 전선 | 부정경쟁방지법 | 3-3 |
| 3-1 | 전선 | 특허실무 | 3-3 |
| 3-1 | 전선 | 혁신과 경쟁 | 3-3 |
| 3-1 | 전선 |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 3-3 |
| 3-2 | 전선 | Licensing International Intellectual | 3-3 |
| 3-2 | 전선 | 저작권실무 | 3-3 |
| 3-2 | 전선 | 정보통신과 사법 | 3-3 |

서울대학교에는 두 분의 지식재산권 전임교수가 있다. 교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다시 기본과목과 심화과목으로 나뉜다. 지식재산권과목은 지적재산권법개론만이 기본과목이며 나머지 과목들은 심화과목과 연습과목으로 분류된다. 이 중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만이 연습과목이다.

⑨ 성균관대학교

| 학년/학기 | 구분 | 교과목명 | 학점/시수 |
|---|---|---|---|
| 2-1 | 전선 | 지적재산과 법 | 3-3 |
| 2-1 | 전선 | 특허법 | 3-3 |
| 2-1 | 전선 | 저작권법 | 3-3 |
| 2-1 | 전선 | 과학기술과 법 | 3-3 |
| 2-2 | 전선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3-3 |
| 2-2 | 전선 | 특허출원·소송실무 | 3-3 |
| 3-1 | 전선 | 저작권법사례연구 | 3-3 |
| 3-2 | 전선 | 지적재산권과 독점규제법 | 3-3 |
| 3-2 | 전선 | 지적재산권라이센싱 | 3-3 |

| | | | |
|---|---|---|---|
| 3-2 | 전선 | 국제지적재산권법 | 3-3 |
| 3-2 | 전선 | 엔터테인먼트법 | 3-3 |

성균관대학교에는 세분의 지식재산권 전임교수(한분은 과학기술법 전공으로 되어 있음)가 있다. 개설과목은 모두 선택과목이며 실무과목은 개설되어 있으나 연습과목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

⑩ 시립대학교

| 학년/학기 | 구분 | 교과목명 | 학점/시수 |
|---|---|---|---|
| 2-1 | 전선 | 특허법 | 3-3 |
| 2-1 | 전선 | Patent Law(격년) | 3-3 |
| 2-2 | 전선 | Intellectual Property Law(격년) | 3-3 |
| 2-2 | 전선 | 저작권법 | 3-3 |
| 3-1 | 전선 | 지적재산권법(격년) | 3-3 |
| 3-2 | 전선 | Science, Technology and Law(격년) | 3-3 |

시립대학교에는 한분의 지식재산권 전임교수가 있다. 지식재산권 과목은 2, 3년 과목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선택과목으로만 되어 있다. 이 중 격년으로 개설되는 Intellectual Property Law와 지적재산권법은 기본과목으로 나머지 과목들은 심화과목으로 되어 있다. 실무과목과 연습과목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

⑪ 아주대학교

| 학년/학기 | 구분 | 교과목명 | 학점/시수 |
|---|---|---|---|
| 2-1 | 전선 | 저작권법 | 2-2 |
| 2-1 | 전선 | 특허법 | 3-3 |
| 2-2 | 전선 | 상표법 | 3-3 |
| 2-2 | 전선 |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 | 2-2 |
| 3-1 | 전선 | 기업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 | 2-2 |
| 3-1 | 전선 | 첨단산업과 법 | 2-2 |
| 3-2 | 전선 | 기업의 지적재산권 분쟁사례연구 | 2-2 |
| 3-2 | 전선 | 미국지적재산권법 | 2-2 |
| 3-2 | 전선 | 사이버스페이스법 | 2-2 |
| 3-2 | 전선 | 지적재산권의 행사와 독점금지법 | 2-2 |

아주대학교에는 한분의 지식재산권 전임교수가 있다. 그러나 세분의 교수님들이 민법, 독점규제법 등 다른 과목과 함께 지식재산권 및 관련과목들을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전임교수가 한분인 반면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만 실무과목이나 연습과목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

⑫ 영남대학교

| 학년/학기 | 구분 | 교과목명 | 학점 |
|---|---|---|---|
| 2-1 | 선택 | 지적재산권법1 | 3 |
| 2-2 | 선택 | 산업재산권 실무 | 3 |
| 3-1 | 선택 | Intellectual Property | 2 |

현재 영남대학교에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임교수가 없다.

⑬ 원광대학교

| 학년/학기 | 구분 | 교과목명 | 학점 |
|---|---|---|---|
| 2-1 | 선택 | 지식재산권법 | 3 |
| 2-2 | 선택 | 저작권법 | 2 |
| 2-2 | 선택 | 영업비밀보호법 | 2 |
| 3-1 | 선택 | 상표법 | 2 |
| 3-1 | 선택 | 특허와 출원절차 | 2 |
| 3-2 | 선택 | 지식재산권침해와 법 | 2 |

원광대학교에는 두 분의 지식재산권 전임교수가 있다. 개설과목에 있어 특허, 상표와 저작권법과 같은 기본과목은 개설되어 있지만 응용과목의 개설이 부족하며, 실무과목과 연습과목도 개설되어 있지 않다.

⑭ 이화여자대학교

| 학년/학기 | 구분 | 교과목명 | 학점 |
|---|---|---|---|
| 2-1 | 선택 | 저작권법 | 3 |
| 2-2 | 선택 | 지적재산권법 개론 | 3 |
| 2-2 | 선택 |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 3 |
| 2-2 | 선택 | 산업재산권법 | 3 |
| 2-2 | 선택 | 특허소송실무 | 3 |
| 3-1 | 선택 | FT, IT와 지적재산권법 (Information | 3 |

| | | | |
|---|---|---|---|
| | |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 |
| 3-1 | 선택 | 첨단생명과학의 법과 윤리 | 2 |
| 3-2 | 선택 | 지적재산금융거래법 | 2 |
| 3-2 | 선택 | International Competition Law | 2 |

이화여자대학교에는 세분의 지식재산권 전임교수가 있다. 이 중 한분은 의생명과학법과 지식재산권법을 다른 한분은 금융공학과 지식재산권법을 전공분야로 하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생명공학과 관련된 과목들과 지적재산금융거래법이 개설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실무과목으로는 특허소송실무가 개설되어 있으나 연습과목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

⑮ 전남대학교

| 학년/학기 | 구분 | 교과목명 | 학점 |
|---|---|---|---|
| 2-1 | 선택 | 특허법 | 3 |
| 2-2 | 선택 | 저작권법 | 3 |
| 3-1 | 선택 | 특허법·상표법 실무 | 3 |
| 3-2 | 선택 | 지적재산법 세미나 | 2 |

전남대학교에는 두 분의 지식재산권 전임교수가 있다. 과목이 다양하게 개설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무과목은 있지만 연습과목은 개설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⑯ 전북대학교

| 학년/학기 | 구분 | 교과목명 | 학점/시수 |
|---|---|---|---|
| 1-2 | 선택 | 지적재산권법 1 | 3-3 |
| 2-1 | 선택 | 지적재산권법 2 | 3-3 |
| 2-1 | 선택 | 저작권법 | 2-2 |
| 2-2 | 선택 | 중국지적재산권법제와 사례연구 | 3-3 |
| 3-2 | 선택 | 지적재산권실무 | 2-2 |
| 3-2 | 선택 |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 | 3-3 |
| 3-2 | 선택 | 인터넷과 법 | 3-3 |

전북대학교에는 한분의 지식재산권 전임교수가 있다. 동북아법 특성화 대학원의 특성에 맞게 중국지적재산권법제에 대한 과목이 있는 점이 특징이며 실무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반면 연습과목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

⑰ 제주대학교

| 학년/학기 | 구분 | 교과목명 | 학점 |
|---|---|---|---|
| 2-1 | 선택 |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 | 3 |
| 2-2 | 선택 | 상표법 및 저작권법 | 3 |

제주대학교에는 한분의 지식재산권 전임교수가 있다. 2013년 입학자를 기준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살펴볼 때 지식재산권법에 대하여 많은 과목이 개설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⑱ 한국외국어대학교

| 학년/학기 | 구분 | 교과목명 | 학점 |
|---|---|---|---|
| 2-1 | 선택 | 지적재산권법 | 2 |
| 3-1 | 선택 | 국제지적재산권 전략의 법과 실무 | 2 |
| 3-2 | 선택 | 인터넷과 법 | 2 |
| 3-2 | 선택 | 스포츠와 법 | 2 |

한국외국어대학교에는 한분의 지식재산권 전임교수가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실무과목은 개설되어 있지 않으며 연습과목도 개설하지 않고 있다.

(2) 지식재산권 과목 수강현황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지식재산권 과목의 수강현황은 각 대학에서 공개를 꺼려하여 공식적으로 집계된 예가 없다. 다만 최근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지적재산권 교육현황”을 연구한 윤선희 교수의 연구논문에서 각 대학의 수강현황이 가명으로 공개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과목 수강 현황을 분석한다.

K대 법학전문대학원[105)]

| | 과목 | 학점 | 학년 | 수강현황 |
|---|---|---|---|---|
| 2013년 1학기 | IT경제와 법 | 2 | 1 | 120/120 |
| | IT산업과 특허법 | 3 | 2 | 7/120 |
| | 기술이전과 Licensing 실무 | 3 | 3 | 4/120 |
| | 전자상거래법 | 3 | 3 | 9/120 |

105) 윤선희,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지적재산권 교육현황”, 「지적재산&정보법연구」, 제5집 제2호, 한양대학교 지적재산&정보법센터, 2014, 71면.

| | | | | |
|---|---|---|---|---|
| 2013년 2학기 | 특허소송과 특허심판 | 3 | 2 | 5/120 |
| |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 3 | 3 | 5/120 |
| | 정보사회와 저작권법 | 3 | 1 | 10/120 |
| | 정보사회와 개인정보보호 | 2 | 3 | 45/120 (영어강의) |
| | IT국제거래와 WTO/TRIPs 실무 | 2 | 3 | 4/120 (외부강사/영어강의) |

필수과목인 IT경제와 법의 경우 100%의 수강률을 보인 반면 선택과목인 다른 과목의 경우에는 낮은 수강률을 보이고 있다. 2013년도에는 원어강의에 대한 평가기준이 절대평가여서 상대평가로 운영되는 다른 과목과 비교하여 유연성이 있다는 것이 수강생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고 그에 따라 영어강의의 수강생비율이 그렇지 않은 과목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K대의 경우 외부강사에 의한 영어강의의 경우 전임교수에 의한 경우보다 수강생의 비율이 낮은 것은 외부강사의 경우 강의시간 선택이 자유롭지 못한 점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H대 법학전문대학원

| | 과목 | 학점 | 학년 | 수강현황 |
|---|---|---|---|---|
| 2013년 1학기 | 지적재산권법 | 3 | 2 | 9/100 |
| | 인터넷과 법 | 3 | 2 | 5/100 |
| | 부정경쟁방지법 | 3 | 3 | 9/100 |
| | 지적재산권법 연습 | 3 | 3 | 6/100 |
| 2013년 2학기 | 상표·디자인법 | 3 | 2 | 10/100 |
| | 저작권법 | 3 | 2 | 7/100 |
| | 특허법 | 3 | 2 | 5/100 |
| | 국제지적재산권법 | 3 | 3 | 13/100 |
| | 라이센싱법 | 3 | 3 | 7/100 |

H대의 경우 수강률이 5~10%대를 보이고 있다. 필수과목과 원어강의가 없는 것이 높은 수강률을 보이지 않은 것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A대 법학전문대학원[106)]

| | 과목 | 학점 | 학년 | 수강현황 |
|---|---|---|---|---|

106) 연구자 자체 조사 통계이며 학교 사정상 익명으로 처리함.

| | | | | |
|---|---|---|---|---|
| 2010년 1학기 | 지적재산권 기초 | 3 | 2 | 53 |
| | 저작권법 | 3 | 2 | 14 |
| 2010년 2학기 | 특허법 | 3 | 2 | 20 |
| | 상표법 | 3 | 2 | 14 |
| 2011년 1학기 | 지적재산권 기초 | 3 | 2 | 61 |
| | 저작권법 | 3 | 2 | 10 |
| | 발명의보호와 특허실무 | 3 | 3 | 2 |
| | International Licensing and Negotiation | 3 | 3 | 19 |
| | 특허법원과 소송 | 3 | 3 | 2 |
| 2011년 2학기 | 특허법 | 3 | 2 | 7 |
| | 상표법 | 3 | 2 | 7 |
| | 지적재산권법 연습 | 3 | 3 | 8 |
| | 엔터테인먼트법 | 3 | 3 | 18 |
| | 특허경영 | 3 | 3 | 7 |
| 2012년 1학기 | 지적재산권 기초 | 3 | 2 | 9 |
| | 저작권법 | 3 | 2 | 10 |
| | 발명의 보호와 특허 | 3 | 3 | 3 |
| | 특허법원과 소송 | 3 | 3 | 3 |
| 2012년 2학기 | 특허법 | 3 | 2 | 8 |
| | 상표법 | 3 | 2 | 4 |
| | 특허경영 | 3 | 3 | 3 |
| | 지적재산권법 연습 | 3 | 3 | 4 |
| 2013년 1학기 | 지적재산권 기초 | 3 | 2 | 33 |
| | 저작권법 | 3 | 2 | 20 |
| | International Licensing and Negotiation | 3 | 3 | 6 |
| | 미국특허법 | 3 | 3 | 3 |

| | | | | |
|---|---|---|---|---|
| 2013년 2학기 | 엔터테인먼트법 | 3 | 3 | 9 |
| | Trademark Law for Global Practitioners | 3 | 3 | 5 |
| | 지적재산권법연습 | 3 | 3 | 2 |
| 2014년 1학기 | 지적재산권 기초 | 3 | 2 | 36/100 |
| | U.S. IP Law | 3 | 3 | 47/100 (영어강의) |
| | 라이센싱 계약실무 | 3 | 3 | 6/100 (영어강의) |
| 2014년 2학기 | 상표법 | 3 | 2 | 7/100 |
| | 저작권법 세미나 | 3 | 3 | 3/100 (석박사 통합과정) |
| | Patent Law for Global Practitioners | 3 | 3 | 10/100 |
| | 지적재산권법 연습 | 3 | 3 | 4/100 |
| | 과학기술과 형법 | 3 | 3 | 11/100 |

지적재산권 기초 과목은 2학년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주 수강생은 1학년생들이며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초 과목 정도는 수강하려는 의지를 상당수 입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응용과목이나 보다 전문적인 과목에 대한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소수인 것 같다. 2014년 1학기의 경우 같은 영어강의임에도 기초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U.S. IP Law에 대한 수강률은 높지만 라이선싱 계약실무에 대한 수강률은 낮았던 것에서 그런 경향을 추정할 수 있다. 2014년 2학기부터 수강생이 소수인 경우에(10명 이하) 대한 평가방식이 완화됨으로써 그 전과는 달리 원어강의에 수강생이 집중되는 현상은 많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B대 법학전문대학원

| | 과목 | 학점 | 학년 | 수강현황 |
|---|---|---|---|---|
| 2014년 1학기 | 지적재산권법 | 3 | 2 | 7/100 |
| | 문화산업법 | 3 | 2 | 10/100 |
| | 특허법 | 3 | 3 | 3/100 |
| 2014년 2학기 | 상표, 디자인법 | 3 | 2 | 4/100 |
| | 저작권법 | 3 | 2 | 5/100 |
| | 부정경쟁방지법 | 3 | 2 | 7/100 |

| | | | | |
|---|---|---|---|---|
| | 지적재산권법 연습 | 3 | 3 | 3/100 |
| | 엔터테인먼트법 | 3 | 3 | 11/100 |

B대의 2014년도 수강률은 10%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특허, 상표, 저작권법과 같은 기본과목의 수강률이 낮으며, 장래 지식재산서비스 분야에 진출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에 지식재산권법을 선택하리라 예상되는 인원들의 지적재산권 연습의 수강률도 3%로 낮게 나타났다.

C대 법학전문대학원

| | 과목 | 학점 | 학년 | 수강현황 |
|---|---|---|---|---|
| 2009년 2학기 | 상표와 지적재산권법 | 3 | 2 | 21/120 |
| | 지재권 침해소송 및 실무 | 3 | 3 | 34/120 |
| 2010년 1학기 | 과학기술과 지적재산권법 | 3 | 2 | 19/120 |
| 2011년 1학기 | 과학기술과 지적재산권법 | 3 | 2 | 15/120 |
| | 문화와 지적재산권법 | 3 | 3 | 3/120 |
| 2012년 1학기 | 과학기술과 지적재산권법 | 3 | 2 | 6/120 |
| 2013년 1학기 | 과학기술과 지적재산권법 | 3 | 2 | 5/120 |
| 2013년 2학기 | 지재권 침해소송 및 실무 | 3 | 3 | 3/120 |

C대의 경우 1기가 처음 입학한 2009년에는 18~28%의 높은 수강률을 보였다. 특히 1기의 경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식재산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수업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기가 처음으로 변호사시험을 보고 그 결과가 발표된 2012년을 기점으로 점차 수강생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기초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수강생이 급격히 줄고 있다.

D대 법학전문대학원

| | 과목 | 학점 | 학년 | 수강현황 | 비율 |
|---|---|---|---|---|---|

| | | | | | |
|---|---|---|---|---|---|
| 2013년 1학기 | 저작권법 | 3 | 2 | 13/120 | 10.8% |
| | 지적재산법 | 3 | 3 | 9/120 | 7.5% |
| 2013년 2학기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3 | 2 | 15/120 | 12.5% |
| | 엔터테인먼트법 | 3 | 3 | 18/120 | 15% |
| 2014년 1학기 | 지적재산법 | 3 | 3 | 8/120 | 6.6% |
| 2014년 2학기 | 엔터테인먼트법 | 3 | 3 | 6/120 | 5% |

D대학의 경우에도 최대 10%대의 낮은 수강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초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적재산법에 대해서도 10% 이하의 낮은 수강률을 보이고 있다. 2014년 이전에는 원어 강의가 없었던 점이 수강률이 낮은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그 기준이 완화된 2014년에도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변호사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수강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고 2009년부터 수강률 통계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2012년부터 이러한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원인으로는 첫째, 2012년도는 법학전문대학원 1기들이 처음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해로서 변호사시험의 합격 문제가 처음으로 표면화된 해이다. 따라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시험과목 중심으로 수강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선택과목 중에서도 기본과목에 대한 연습과목의 수강자는 급증하였으나 지식재산권법을 포함한 기본과목이 아닌 과목들의 수강생은 급감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서 지식재산권법이 부적합하다는 학생들의 생각도 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법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을 모두 합할 때 학습해야 할 분량이 다른 과목에 비하여 방대하다. 학생들의 상당수가 비법학과 출신이라는 점에서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은 기본과목을 학습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생각들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방대한 분량이 학생들로 하여금 지식재산권법을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 선택하기를 주저하게 하며 이는 수강생의 감소로 이어졌다.

셋째,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평가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상대평가 대상이 아닌 원어강의에 수강생이 집중되고 시험과 상관성이 낮은 과목들의 수강생이 감소하였다. 이런 이유로 지식재산권법도 다른 비원어강의이면서 동시에 선택과목인 과목들과 동일하게 수강생이 감소하였다.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수강생의 감소문제는 2013년도 입학생부터 법학과 출신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법시험에 대한 합격경험을 가진 입학생이 늘어나면서

일부 해소되리라 기대된다. 이들은 비교적 기본과목에 대한 학습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여서 선택과목의 선정에 있어 자유로운 편이다. 따라서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수강도 증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 2014년 2학기부터 평가방법이 엄격한 상대평가에서 소수정원의 수업에 대해서는 상대성을 약화하는 방법이 인정됨에 따라 수강생이 증가하리라 기대된다. 기존에는 지식재산권법을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 변리사나 변리사시험에 경험이 있는 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이들과 경쟁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특히 상대평가 하에서는 점수 때문에 수강생들이 같이 수강하는 학생들의 경험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2014년 2학기부터 시작된 평가방법의 변화는 지식재산권법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선태과목의 수강생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수강생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변호사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험범위를 축소하는 방법이다. 특히 최근에는 법학과 출신들의 입학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과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과목을 중심으로 과목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재교육에 대한 평가

#### 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의 지식재산서비스 시장 진입현황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지식재산서비스 시장 진입현황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집계를 알 수 없다. 취업률 문제는 예민한 부분이어서 각 학교마다 공개를 꺼리는데다 학생들도 자신들의 취업상황을 학교에 공개하기를 꺼려해서 의료보험 가입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의 취업률을 집계할 뿐이다. 아래는 두 곳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식재산서비스 시장 진입현황이다.

A 대학

| 입학년도 | 2009 | 2010 | 2011 |
|---|---|---|---|
| 진출인원 | 40명 | 12명 | 6명 |

A대학에서는 지식재산서비스 시장 진입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시에 지식재산권법 과목을 수강하였으며, 현재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나 판사, 검사로 일하고 있는 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B 대학

| 입학년도 | 2009 | 2010 | 2011 |
|---|---|---|---|
| 진출인원 | 17명 | 8 | 5 |

B대학에서는 재학시에 지식재산관련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수업을 수강한 자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C대학에서는 전체 졸업생에 대한 개별적 취업 및 진로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졸업생의 취업유형은 크게 '대형로펌', '중소형로펌', '특허법인' 및 '기업'의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에 따라 지식재산분야에 취업한 졸업생도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i)대형로펌 취업한 졸업생은 주로 지식재산과 연관이 높은 학부의 출신이거나 관련 직군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은 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경우가 많다. 김장법률사무소에 취업한 J변호사는 공과대학을 졸업한 경력이 주효하였고 법무법인 바른에 취업한 K변호사의 경우, 공과대학을 졸업한 후 삼성전자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 현재 법무법인의 IT관련 소송 및 지적재산권 관련 자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지평에 취업한 P변호사의 경우, 학부 졸업 후 대형신문사의 사회부 및 경제부 기자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였으며, 현재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문화 등을 전문영역으로 활동 중이다.

ii)중소형 로펌의 경우 지식재산전문 법률사무소인 조앤파트너스에 취업한 H변호사는 공과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 스탠포드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경력으로 취업하였다. 이 외에도 중소형 로펌으로 진출한 졸업생들이 상당수 확인되고 있으나, 중소형 로펌의 특성상 지식재산으로의 전문적 업무경향은 비교적 뚜렷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지식재산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중소형 로펌에 취업한 경우는 대부분 지식재산 관련 전공 출신이거나 관련 실무자 출신이 많은 편이다.

iii)특허법인처럼 지식재산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다. 리앤목 특허법인에 취업한 H변호사는 약사출신이며, 현재 특허법인에서 제약 및 생명공학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허법인으로 진출하는 졸업생들의 경우, 특허업무의 특성상 공학이나 기술에 특화된 배경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iv)기업 내부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소위 '사내변호사(In-house Lawyer)'로도 상당수 졸업생이 진출해있다.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S변호사와 삼성전기에 취업한 Y변호사의 경우, 모두 공과대학을 졸업해 삼성전자에서 상당한 경력을 갖춘 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다. 한편 이랜드로 취업한 Y변호사는 의류학을 전공한 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였으며, 해당 기업에서 디자인 및 상표 관련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 나.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재교육과 전문가 양성에 대한 평가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기 이전 법과대학 시절에는 지식재산권은 사법시험에 배점이 높은 기본과목에 밀려 많은 과목이 개설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법과대학 졸업생의 경우 지식재산에 대한 수업을 전혀 듣지 못하거나 선택과목으로 한 과목 정도를 수강하고 졸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법과대학에서 충분한 지식재산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법과대학이 있는 대학에서는 지식재산권 교육은 특수대학원이나 법학과와는 별개로 설립되어 있는 지식재산권학과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두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긍정적인 측면은 두 프로그램 모두 법과대학 법학과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비교하여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어 교육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구성원의 전문성을 놓고 볼 때, 먼저 특수대학원의 구성원 대부분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조인이 아닌 소속기관에서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이며 법학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물론 지식재산 전문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상정할 것인지에 따라 이들도 지식재산 전문가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들을 모두 법률전문가라고 분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특수대학원의 교육과정이 지식재산에 대한 법률전문가 양성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평가된다. 같은 맥락에서 지식재산권학과 졸업생의 경우에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적고 대부분의 경우 변리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들을 지식재산 전문가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지식재산권 교육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법률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대부분이 법과대학 졸업자였다. 따라서 대학재학 시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이공계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특허법 등의 경우에는 더욱 이해에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에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의 출신계열별 비율을 살펴보면 자연계열, 공학계열, 약학계열 및 의학계열 출신자의 비율이 가장 그 수치가 높았던 2009년에 18.70%에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해마다 9~10%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이공계 지식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법률지식을 가진 진정한 의미의 법률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계열별 증감현황>[107]

| 전체비율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법학계열 | 35.20% | 37.65% | 49.14% | 54.06% | 55.36% |
| 상경계열 | 16.50% | 13.90% | 11.85% | 11.57% | 9.53% |

107) 윤선희, 앞의 논문, 48면.

| | | | | | |
|---|---|---|---|---|---|
| 사회계열 | 12.90% | 13.90% | 12.38% | 10.80% | 13.63% |
| 인문계열 | 12.10% | 13.90% | 12.38% | 10.80% | 13.63% |
| 자연계열 | 3.70% | 2.95% | 3.34% | 2.58% | 2.86% |
| 공학계열 | 12.30% | 11.10% | 8.37% | 5.98% | 5.10% |
| 농학계열 | 0.60% | 0.70% | 0.29% | 0.29% | 0.05% |
| 사범계열 | 2.90% | 3.25% | 2.53% | 2.35% | 2.62% |
| 약학계열 | 1% | 1.75% | 0.76% | 0.67% | 0.33% |
| 의학계열 | 1.70% | 1.55% | 0.72% | 0.62% | 0.33% |
| 예체능계열 | 0.60% | 0.70% | 0.53% | 0.38% | 0.48% |
| 신학계열 | 0.20% | 0.15% | 0.24% | 0.14% | 0.28% |
| 기 타 | 0.30% | 0.15% | 0.24% | 0.67% | 0.38% |

## II. 일본 로스쿨의 지식재산권 교육 현황

### 1. 일본 로스쿨의 지식재산권 교육정책

#### 가. 로스쿨 현황

2004년 처음 로스쿨(법과대학원, 이하에서는 “로스쿨”이라 함)이 일본에서 시작되었을 때에는 국립20개교, 공립2개교, 사립46개교로 모두 68개교였다. 이후 2006년 요건을 구비한 국립3개교, 사립3개교가 준비과정을 거쳐 추가로 개교하여 74개교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후 2010년도에 히메지돗쿄(姫路獨協)대가 자진해서 문을 닫았고 도인요코하마(桐蔭横兵)대와 오미야(大宮)대가 2012년 4월에 통합하였다. 이후에도 메이지가쿠인(明治學院)대가 2013년도부터 학생모집을 중단하기로 하였고 2013년에는 이들 3개 로스쿨과 고베카쿠인(神戶學院)대와 스루가다이(駿河台)대 로스쿨을 포함하여 5개 로스쿨이 폐교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4년 7월 현재 일본의 로스쿨은 총 67개교이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108] 그러나 현재 67개 인증대학원 중 新潟大学大学院, 信州大学大学院, 島根大学大学院, 香川大学大学院, 鹿児島大学大学院, 白鷗大學大學院, 獨協大学大学院 등 18개교가 2015년 4월부터 모집중단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 번호 | 구분 | 대학원명 | 연구과명 | 전공명 | 학위명칭 | 입학정원 | 위치 |
|---|---|---|---|---|---|---|---|
| 1 | 国立 | 北海道大学大学院 | 法学研究科 | 法律実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80人 | 北海道 |

108) www.mext.go.jp/a_memu/koutou/senmonshoku/08060508.htm (2014. 9. 18. 방문).

| | | | | | | | |
|---|---|---|---|---|---|---|---|
| 2 | 国立 | 東北大学大学院 | 法学研究科 | 総合法制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50人 | 宮城県 |
| 3 | 国立 | 筑波大学大学院 | ビジネス科学研究科 | 法曹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36人 | 東京都 |
| 4 | 国立 | 千葉大学大学院 | 専門法務研究科 | 法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40人 | 千葉県 |
| 5 | 国立 | 東京大学大学院 | 法学政治学研究科 | 法曹養成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240人 | 東京都 |
| 6 | 国立 | 一橋大学大学院 | 法学研究科 | 法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85人 | 東京都 |
| 7 | 国立 | 横浜国立大学大学院 | 国際社会科学府 | 法曹実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40人 | 神奈川県 |
| 8 | 国立 | 新潟大学大学院 | 実務法学研究科 | 実務法学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20人※ | 新潟県 |
| 9 | 国立 | 金沢大学大学院 | 法務研究科 | 法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25人 | 石川県 |
| 10 | 国立 | 信州大学大学院 | 法曹法務研究科 | 法曹法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18人※ | 長野県 |
| 11 | 国立 | 静岡大学大学院 | 法務研究科 | 法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20人 | 静岡県 |
| 12 | 国立 | 名古屋大学大学院 | 法学研究科 | 実務法曹養成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70人 | 愛知県 |
| 13 | 国立 | 京都大学大学院 | 法学研究科 | 法曹養成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160人 | 京都府 |
| 14 | 国立 | 大阪大学大学院 | 高等司法研究科 | 法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80人 | 大阪府 |
| 15 | 国立 | 神戸大学大学院 | 法学研究科 | 実務法律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80人 | 兵庫県 |
| 16 | 国立 | 島根大学大学院 | 法務研究科 | 法曹養成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20人※ | 島根県 |
| 17 | 国立 | 岡山大学大学院 | 法務研究科 | 法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45人 | 岡山県 |
| 18 | 国立 | 広島大学大学院 | 法務研究科 | 法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48人 | 広島県 |
| 19 | 国立 | 香川大学大学院 | 香川大学・愛媛大学連合法務研究科 | 法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20人※ | 香川県 |
| 20 | 国立 | 九州大学大学院 | 法務学府 | 実務法学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70人 | 福岡県 |
| 21 | 国立 | 熊本大学大学院 | 法曹養成研究科 | 法曹養成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16人 | 熊本県 |
| 22 | 国立 | 鹿児島大学大学院 | 司法政策研究科 | 法曹実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15人※ | 鹿児島県 |
| 23 | 国立 | 琉球大学大学院 | 法務研究科 | 法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22人 | 沖縄県 |
| 24 | 公立 | 首都大学東京大学院 | 社会科学研究科 | 法曹養成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52人 | 東京都 |
| 25 | 公立 | 大阪市立大学大学院 | 法学研究科 | 法曹養成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60人 | 大阪府 |
| 26 | 私立 | 北海学園大学大学院 | 法務研究科 | 法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25人 | 北海道 |
| 27 | 私立 | 白鴎大学大学院 | 法務研究科 | 法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16人※ | 栃木県 |
| 28 | 私立 | 獨協大学大学院 | 法務研究科 | 法曹実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18人※ | 埼玉県 |
| 29 | 私立 | 青山学院大学大学院 | 法務研究科 | 法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35人 | 東京都 |
| 30 | 私立 | 学習院大学大学院 | 法務研究科 | 法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50人 | 東京都 |
| 31 | 私立 | 慶應義塾大学大学院 | 法務研究科 | 法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230人 | 東京都 |

| | | | | | | | |
|---|---|---|---|---|---|---|---|
| 32 | 私立 | 國學院大学大学院 | 法務研究科 | 法務職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25人 | 東京都 |
| 33 | 私立 | 駒澤大学大学院 | 法曹養成研究科 | 法曹養成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36人 | 東京都 |
| 34 | 私立 | 上智大学大学院 | 法学研究科 | 法曹養成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90人 | 東京都 |
| 35 | 私立 | 成蹊大学大学院 | 法務研究科 | 法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45人 | 東京都 |
| 36 | 私立 | 専修大学大学院 | 法務研究科 | 法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55人 | 東京都 |
| 37 | 私立 | 創価大学大学院 | 法務研究科 | 法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30人 | 東京都 |
| 38 | 私立 | 大東文化大学大学院 | 法務研究科 | 法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40人※ | 東京都 |
| 39 | 私立 | 中央大学大学院 | 法務研究科 | 法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270人 | 東京都 |
| 40 | 私立 | 東海大学大学院 | 実務法学研究科 | 実務法律学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30人※ | 東京都 |
| 41 | 私立 | 東洋大学大学院 | 法務研究科 | 法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20人 | 東京都 |
| 42 | 私立 | 日本大学大学院 | 法務研究科 | 法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60人 | 東京都 |
| 43 | 私立 | 法政大学大学院 | 法務研究科 | 法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60人 | 東京都 |
| 44 | 私立 | 明治大学大学院 | 法務研究科 | 法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170人 | 東京都 |
| 45 | 私立 | 立教大学大学院 | 法務研究科 | 法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50人 | 東京都 |
| 46 | 私立 | 早稲田大学大学院 | 法務研究科 | 法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270人 | 東京都 |
| 47 | 私立 | 神奈川大学大学院 | 法務研究科 | 法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25人 | 神奈川県 |
| 48 | 私立 | 関東学院大学大学院 | 法務研究科 | 実務法学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23人※ | 神奈川県 |
| 49 | 私立 | 桐蔭横浜大学大学院 | 法務研究科 | 法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30人 | 神奈川県 |
| 50 | 私立 | 山梨学院大学大学院 | 法務研究科 | 法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20人 | 山梨県 |
| 51 | 私立 | 愛知大学大学院 | 法務研究科 | 法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30人 | 愛知県 |
| 52 | 私立 | 愛知学院大学大学院 | 法務研究科 | 法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20人 | 愛知県 |
| 53 | 私立 | 中京大学大学院 | 法務研究科 | 法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25人 | 愛知県 |
| 54 | 私立 | 南山大学大学院 | 法務研究科 | 法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30人 | 愛知県 |
| 55 | 私立 | 名城大学大学院 | 法務研究科 | 法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40人 | 愛知県 |
| 56 | 私立 | 京都産業大学大学院 | 法務研究科 | 法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18人 | 京都府 |
| 57 | 私立 | 同志社大学大学院 | 司法研究科 | 法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120人 | 京都府 |
| 58 | 私立 | 立命館大学大学院 | 法務研究科 | 法曹養成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100人 | 京都府 |
| 59 | 私立 | 龍谷大学大学院 | 法務研究科 | 法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25人※ | 京都府 |
| 60 | 私立 | 関西大学大学院 | 法務研究科 | 法曹養成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40人 | 大阪府 |
| 61 | 私立 | 近畿大学大学院 | 法務研究科 | 法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30人 | 大阪府 |
| 62 | 私立 | 関西学院大学大学院 | 司法研究科 | 法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70人 | 兵庫県 |
| 63 | 私立 | 甲南大学大学院 | 法学研究科 | 法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26人 | 兵庫県 |
| 64 | 私立 | 広島修道大学大学院 | 法務研究科 | 法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30人※ | 広島県 |
| 65 | 私立 | 久留米大学大学院 | 法務研究科 | 法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15人※ | 福岡県 |
| 66 | 私立 | 西南学院大学大学院 | 法務研究科 | 法曹養成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35人 | 福岡県 |
| 67 | 私立 | 福岡大学大学院 | 法曹実務研究 | 法務専攻 | 法務博士（専門職） | 20人 | 福岡県 |

| | | | | | | | |
|---|---|---|---|---|---|---|---|
| | | | 科 | | | | |

## 2. 일본 로스쿨의 지식재산권 과목 개설현황

다음은 지적재산전략본부 하의 권리보호기반 강화에 관한 전문조사회에서 2004년 발표한 로스쿨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설과목이다.[109] 많은 일본 로스쿨들이 로스쿨 설립 당시 교과목으로 지금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수정, 변경하여 개설한 곳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변경된 대학들을 전부 찾아볼 수 없어 몇 개 대학만 변경내용을 확인해 보았다. 따라서 다른 학교의 경우에도 약간의 변화가 개설과목에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먼저 大阪大學의 경우 현재 개설과목은 지적재산법 1, 지적재산법 2, 지적재산법 연습, 기술지적재산법, 국제지적재산법이며 지적재산법 워크숍과 인터넷법은 현재는 개설되어 있지 않다.

둘째, 東京大學의 경우 현재 지적재산법만 개설되어 있다.

셋째, 明治大學의 경우 지적재산과 법(知的財産と法) I · II · III · IV에 展開 · 先端系総合指導I · II (知的財産法)와 지적재산소송실무(知的財産訴訟実務) 과목이 추가되었다.

넷째, 慶應義塾大學의 경우도 약간의 변경이 있었는데 기존의 지적재산법 I, II, III, 지적재산법무 워크숍 프로그램(知的財産法務ワークショップ · プログラム), 지적재산법무 Basic 프로그램 (知的財産法務ベーシック · プログラム)과 International IP Licensing Agreements 외에 지적재산법사례연습, 지적재산법종합을 추가하였다.

다섯째, 早稻田大學의 경우에는 비교적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현재는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 저작권법, International Entertainment Law, 저작권등분쟁처리법, 특허분쟁처리법, 국제지적재산법, 비교지적재산법, 지적재산법응용연습이 개설되어 있다.

109)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 (2014. 10. 13. 방문).

# 法科大学院における開設予定の「知的財産」関係科目

本表は、授業科目名等から知的財産に関連を有すると思われるものをピックアップしたものであり、これらの授業科目以外にも知的財産関係科目がある可能性があります。

（国立）

| | 大学名 | 授業科目名 | 単位数 |
|---|---|---|---|
| 1 | 北海道 | 知的財産法 | 4 |
| | | 知的財産法A | 2 |
| | | 知的財産法B | 2 |
| | | 知的財産法C | 2 |
| | | 知的財産法D | 2 |
| 2 | 東北 | 知的財産法Ⅰ | 4 |
| | | 知的財産法Ⅱ | 2 |
| | | 国際知的財産法 | 2 |
| 3 | 千葉 | 特許法 | 4 |
| | | 知的財産法特論 | 2 |
| 4 | 東京 | 知的財産法 | 4 |
| | | 知的財産法演習Ⅰ | 2 |
| | | 知的財産法演習Ⅱ | 2 |
| | | 知的財産法演習Ⅲ | 2 |
| 5 | 一橋 | 知的財産法 | 2 |
| | | 事例研究（知的財産法） | 2 |
| 6 | 横浜国立 | 著作権法 | 2 |
| | | 特許法・意匠法 | 2 |
| | | ブランド保護 | 2 |
| | | ライセンス契約 | 2 |
| 7 | 新潟 | 知的財産法 | 2 |
| 8 | 金沢 | 知的財産法 | 2 |
| 9 | 名古屋 | 知的財産法Ⅰ | 2 |
| | | 知的財産法Ⅱ | 2 |
| | | 知的財産法Ⅲ（演習） | 2 |
| 10 | 京都 | 知的財産法Ⅰ | 2 |
| | | 知的財産法Ⅱ | 2 |
| | | 知的財産法事例演習 | 2 |
| | | 知的財産判例 | 2 |
| 11 | 大阪 | 知的財産法Ⅰ | 4 |
| | | 知的財産法Ⅱ | 4 |
| | | 知的財産訴訟実務 | 2 |
| | | 国際知的財産法 | 2 |
| | | 知的財産法ワークショップ | 2 |
| | | インターネット法 | 2 |
| 12 | 神戸 | 法人格と法　知的財産法 | 2 |
| | | 特許法 | 4 |
| | | 著作権法 | 4 |
| | | 競業・不正競争法 | 4 |
| 13 | 高知 | 知的財産法 | 4 |
| 14 | 岡山 | 知的財産法Ⅰ | 2 |
| | | 知的財産法Ⅱ | 2 |
| 15 | 広島 | 知的財産権法 | 2 |
| | | 特殊講義（知的財産） | 2 |
| 16 | 香川 | 知的財産法Ⅰ | 2 |
| | | 知的財産法Ⅱ | 2 |
| 17 | 九州 | 著作権法 | 2 |
| | | 知的財産法演習 | 2 |
| | | 産業財産法 | 2 |
| | | インターネットと法 | 2 |
| 18 | 熊本 | 知的財産法 | 2 |
| | | インターネットと法 | 2 |
| 19 | 鹿児島 | 知的財産企業実務論 | 2 |
| | | 知的財産法特論 | 2 |
| | | 知的財産法実務演習 | 2 |
| | | インターネットと法 | 2 |
| 20 | 琉球 | 知的財産法 | 2 |
| | | ＩＴと著作権 | 2 |

(北海)

| | 大学名 | 授業科目名称 | 単位数 |
|---|---|---|---|
| 21 | 東京都立 | 知的財産法１ | 2 |
| | | 知的財産法２ | 2 |
| | | 知的財産法演習 | 2 |
| 22 | 大阪市立 | 知的財産法Ⅰ | 2 |
| | | 知的財産法Ⅱ | 2 |
| | | 知的財産法演習 | 2 |

(東京)

| | 大学名 | 授業科目名称 | 単位数 |
|---|---|---|---|
| 23 | 東北学院 | 知的財産権法 | 2 |
| 24 | 日　　弁 | 知的財産法 | 2 |
| 25 | 大宮法科大学院 | 知的財産法 | 4 |
| | | エンタテインメント と法 | 2 |
| | | ＩＴ法 | 2 |
| 26 | 駿河台 | 知的財産法Ⅰ（特許法） | 2 |
| | | 知的財産権法Ⅱ（著作権法） | 2 |
| | | 知的財産法演習 | 2 |
| 27 | 獨　　協 | 知的財産法と紛争処理 | 2 |
| 28 | 青山学院 | 知的財産法（１） | 2 |
| | | 知的財産法（２） | 2 |
| 29 | 学習院 | 知的財産法１ | 2 |
| | | 知的財産法２ | 2 |
| 30 | 慶應義塾 | 知的財産法Ⅰ | 2 |
| | | 知的財産法Ⅱ | 2 |
| | | 知的財産法Ⅲ | 2 |
| | | 知的財産法務ベーシック・プログラム | 2 |
| | | 知的財産法務ワークショップ・プログラム | 2 |
| | | International IP Licensing Agreements（国際知的財産のライセンス契約） | 2 |
| 31 | 國學院 | 知的財産法 | 2 |
| 32 | 駒　　澤 | 知的財産権法特講 | 2 |
| | | 電子商取引法特講 | 2 |
| 33 | 上　　智 | 知的財産権法Ⅰ | 2 |
| | | 知的財産権法Ⅱ | 1 |
| 34 | 成　　蹊 | 工業所有権法 | 4 |
| | | 著作権法 | 4 |
| | 専　　修 | 知的財産法Ⅰ（著作権法） | 2 |
| | | 知的財産法Ⅱ（特許・商標法） | 2 |
| | | 知的財産法Ⅲ（意匠・競業・不正競争防止法） | 2 |
| | | 知的財産法Ⅳ（国際取引） | 2 |
| 35 | 創　　価 | 知的財産権法Ⅰ | 2 |
| | | 知的財産権法Ⅱ | 2 |
| | | 国際知的財産権法 | 2 |
| 36 | 大東文化 | 知的財産法 | 2 |
| 37 | 中　　央 | 知的財産権法Ⅰ | 2 |
| | | 知的財産権法Ⅱ | 2 |
| | | 戦略的特許ライセンス契約論 | 2 |
| | | ものづくり右産法務 | 2 |
| | | ＩＴ社会と法Ⅱ | 2 |
| 38 | 東　　海 | 知的財産法Ⅰ | 2 |
| | | 知的財産法Ⅱ | 2 |
| | | 知的財産法特論 | 2 |
| 39 | 東　　洋 | 知的財産権法Ⅰ | 2 |
| | | 知的財産権法Ⅱ | 2 |
| 40 | 日　　本 | 知的財産法Ⅰ | 2 |
| | | 知的財産法Ⅱ | 2 |
| 41 | 法　　政 | 知的財産法 | 4 |

| | 大学名 | 授業科目名称 | 単位数 |
|---|---|---|---|
| 42 | 明治 | 知的財産と法Ⅰ | 2 |
| | | 知的財産と法Ⅱ | 2 |
| | | 知的財産と法Ⅲ | 2 |
| | | 知的財産と法Ⅳ | 2 |
| 43 | 明治学院 | 知的財産権法 | 2 |
| 44 | 立教 | 知的財産法 | 2 |
| 45 | 早稲田 | 知的財産権法概説 | 2 |
| | | 工業的所有権保護法 | 2 |
| | | 著作権法 | 2 |
| | | 国際知的財産権法 | 2 |
| | | 欧米知的財産権法 | 2 |
| | | 知的財産紛争処理法 | 2 |
| | | 欧米知的財産紛争処理法 | 2 |
| | | 臨床法学教育（知財） | 2 |
| | | 判例法 | 2 |
| 46 | 青山Ⅲ | 知的財産法 | 2 |
| 47 | 関東学院 | 知的財産権法 | 2 |
| | | 特許法の実務 | 2 |
| 48 | 桐蔭横浜 | 知的財産法 | 2 |
| | | 特許権侵害と紛争処理 | 2 |
| | | 著作・商標とその管理 | 2 |
| 49 | 山梨学院 | 知的財産法 | 2 |
| 50 | 愛知 | 知的財産法Ⅰ | 2 |
| | | 知的財産法Ⅱ | 2 |
| 51 | 中京 | 知的財産法 | 2 |
| 52 | 南山 | 知的財産権法 | 2 |
| 53 | 名城 | 知的財産法Ⅰ | 2 |
| | | 知的財産法Ⅱ | 2 |
| 54 | 京都産業 | 知的財産法講義 | 2 |
| | | 知的財産法演習 | 2 |
| 55 | 同志社 | 知的財産法 | 4 |
| | | 知的財産取引法 | 2 |
| 56 | 立命館 | 知的財産法務Ⅰ | 2 |
| | | 知的財産法務Ⅱ | 2 |
| | | 知的財産法務演習 | 4 |
| 57 | 大阪学院 | 知的財産法 | 2 |
| 58 | 関西 | 知的財産法 | 2 |
| | | 知的財産法演習 | 2 |
| 59 | 近畿 | 知的財産法A（理論） | 2 |
| | | 知的財産法B（実務） | 2 |
| 60 | 関西学院 | 知的財産権法Ⅰ（特許権） | 2 |
| | | 知的財産権法Ⅱ（著作権） | 2 |
| 61 | 甲南 | 知的財産法Ⅰ | 4 |
| | | 知的財産法Ⅱ | 2 |
| | | 知的財産法Ⅲ | 2 |
| 62 | 神戸学院 | 知的財産法 | 4 |
| 63 | 福岡県立 | 知的財産法 | 2 |
| | | 先端科目演習Ⅰ | 2 |
| | | 先端科目演習Ⅱ | 2 |
| 64 | 広島修道 | 知的財産法 | 2 |
| 66 | 久留米 | 知的財産法 | 2 |
| 67 | 西南学院 | 知的財産法 | 2 |
| 68 | 福岡 | 知的財産法 | 2 |

일본 로스쿨들의 지식재산권 실무과목으로는 関東学院大學大学院의 특허법 실무,

大阪大学大学院과 早稻田大學大學院의 임상법학교육, 慶應義塾大學大学院의 워크샵 프로그램, 一橋大學大學院의 실천세미나 과목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早稻田大學의 임상법학교육을 살펴보면, 임상법학교육이란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부속법률사무소에서 실제 법률서비스에 종사해 보는 "리걸 클리닉", 일반기업체나 법률사무소에 파견되어 법률실무를 배우는 "엑스턴십(externship)"와 모의법정과 롤플레이 등을 진행하는 "기타 실무계기초과목"을 통하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우리와 비교할 때 실무교육에서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에 특화된 실무교육은 발견할 수 없었다.

### 3. 일본 로스쿨의 지재교육에 대한 평가

#### 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지식재산서비스 시장 진입현황

일본에서도 로스쿨 출신들의 지식재산서비스 시장 진입에 대한 통계는 찾을 수 없었으며 다른 통계들을 통하여 그 수를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일본 변호사연합회가 지식재산인재양성추진협의회에 보낸 지식재산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일본변호사연합회에서는 사법시험에서 수험자가 지식재산권법을 선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자는 제언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2014년 사법시험 응시자중 지식재산법을 선택한 자는 총 980명으로 12.3%를 기록하여 1위인 노동법과 2위인 도산법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3년도의 12.39%(1,261명)에 비하여 약간 감소한 수를 기록하였지만 여전히 노동법과 도산법에 이어 높은 응시율을 기록하고 있다.[110] 그러므로 적어도 해마다 배출되는 변호사 중 적어도 10% 정도의 변호사들이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에서 일한다고 할 수 있다. 아래 표는 일본 사법시험에서 선택과목별 응시율이다.

<일본 사법시험 수험현황>(단위: 명)

| | 2014 | 2013 | 2012 | 2011 |
|---|---|---|---|---|
| 전체수험자 | 7,970 | 7,595 | 8,332 | 8,721 |
| 도산법 | 1,633 | 1,700 | 1,965 | 2,134 |
| 조세법 | 544 | 562 | 583 | 551 |
| 경제법 | 848 | 745 | 840 | 887 |
| 지적재산법 | 980 | 929 | 1,020 | 1,149 |
| 노동법 | 2,466 | 2,378 | 2,601 | 2,658 |

110) www.moj.go.jp (2014. 10. 15. 방문).

| | | | | |
|---|---|---|---|---|
| 환경법 | 476 | 455 | 501 | 522 |
| 국제관계법 (공법계) | 107 | 121 | 129 | 127 |
| 국제관계법 (사법계) | 906 | 705 | 693 | 693 |

나. 로스쿨의 지식재산교육과 전문가 양성에 대한 평가

일본에서는 로스쿨에서만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지식재산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로스쿨 차원에서는 지식재산 전문가의 영역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변호사연합회에서는 로스쿨에서 양성하는 지식재산 전문가를 매니지먼트 전문가와 글로벌 전문가에 초점을 맞출 것을 계속하여 제안하고 있다.[111]

실제로 이런 결과로 사법시험에서 로스쿨 졸업생들이 지식재산권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하는 비율은 10%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로스쿨 이외에도 변리사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고 각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되는 추세에 있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지식재산권 영역에서 입지를 구축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런 이유로 변호사연합회가 법과대학원에서 매니지먼트나 글로벌 전문가 양성이라는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 것으로 보인다.

## III.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식재산교육 활성화방안

### 1. 지식재산법과 타 법률전공과목과의 연계의 개선방안

우리나라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만이 아니라 타대학(원)에서도 여러 전공들이 연계된 과목을 개설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먼저, 강의시수 분배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여러 교수들이 연계된 과목을 만드는 경우에 당연히 다수의 교수들이 해당과목을 함께 가르쳐야 하고 그런 경우에 각 담당교수별로 담당시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세 명의 교수가 3학점 한 과목을 같이 가르치는 경우 각 교수에게 1학점씩 담당시간을 분배할 것인지, 아니면 세 명의 교수 모두에게 3학점을 가르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국립 C대학과 P대학의 경우 연계전공과목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운영에 있어서는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 따라서 학생들 스스로 두 전공의 과목을 각각 학습하고 연계훈련을 하는 것이지 학교에서 두 과목을 연계시키는 과목을 운영하지는 않는다.[112] 그러므로 학교에서 학칙으로 연계과목을 개설

111) www.nichibenren.or.jp (2014. 10. 13. 방문).

하는 교수들을 고려한 규정의 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계과목을 개설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실질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은 타대학원과 비교할 때 연계과목을 개설해야 할 필요성이 비교적 높다. 그 이유는 변호사시험의 경우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이 함께 출제되는 민사법의 경우와 헌법과 행정법이 함께 출제되는 공법의 경우를 대비하여 연계과목이 개설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식재산권법의 경우에는 변호사시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타 법률전공과목과의 연계성을 찾기 어렵다. 다만 시험이라는 관점을 벗어나 지식재산권법이 모든 학문분야와 연계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연계성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 범죄나 예술과 법 등의 과목이 과거 대학원이나 특허법무대학원 등에서 개설된 경험에 비추어 형법과 지식재산권법, 법철학과 지식재산권법의 연계가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이처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다양화 및 전문화를 위해서는 연계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연계과목에 참여하는 각 교수들에게 연계과목 학점 전체를 강의시수로 인정해주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연계과목의 개설을 장려하기 위하여 업적평가에서 연계과목을 개설하는 교수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다양한 연계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환경을 학교차원에서 조성할 경우 연계과목이 다양해지고 그럴 경우 교수시간에 관한 학칙 개정 등과 같은 예민한 사안의 해결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교수들이 다양한 연계과목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연계과목 개설 활성화의 문제가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연계과목의 필요성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개선과 인식공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2. 세부 커리큘럼에 대한 개선방안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식재산 관련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본 바 있다. 그런 검토를 바탕으로 커리큘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지식재산과목의 대부분은 선택과목인데다 2학년 2학기나 3학년 과목으로 개설된 경우가 많아 현재와 같이 재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 대하여 부담감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많은 수가 수강하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2학년 1학기나 2학기에 집중하여 과목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많은 학교에서 현재 3학년에 지식재산권연습과목을 개설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 보니 지식재산권과목을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 한 학생의 경우에도 혼자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하여 선택과목 응시율이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2학년에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이론과목을 집중강의하고 3학년에서는 연습과목이나 실무과목을 강의하도록 커리큘럼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현재는 지식재산권과목이 각 학교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

112) www.cnu.ac.kr & www.pusan.ac.kr (2014. 10. 20. 방문)

거나 시대 변화에 맞는 신규과목의 개설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미국의 Berkeley 대학의 경우 포도주 생산이 많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Wine Law를 개설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39명의 학생이 수강 중이다. 이외에도 Video Game Law, Computer Crime Law와 같이 사회현실을 반영한 과목들도 많이 개설하고 있다.[113] 우리의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도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강화되어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의료산업이 발달한 지역의 경우에 특허나 보건복지부의 허가절차, 생명공학 분야 등에 관한 과목을 강화하는 등이 그것이다. 또한 현재는 기본법을 위주로 운영되는 클리닉의 운영에 지식재산권법 분야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기업의 실제 사례를 통해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3. 교재 개발 및 보급 등에 대한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법률서적 판매율은 시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수험서의 판매율은 비교적 높은 반면 수험서가 아닌 서적의 경우 강의교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판매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개정판이 자주 나오지 않는 책의 경우 전년도 수강자가 과목의 수강 후 교과서를 판매하거나 후배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많아 더 이상 책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서적에 대한 수요경향 때문에 가능한 해당 서적이 강의교재로 채택되도록 해야 하고 자주 개정판을 내는 것만이 서적의 판매와 보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수험서로 사용되지 않는 일반서적의 경우에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고가 쌓여가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개정판을 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식재산권 과목은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 하에서도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지식재산권을 선택하지 않는 경향에 있고 그에 따라 교재 판매량도 높지 않다. 더욱 문제는 지식재산권법에 대하여 매우 잦은 개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때로 산업재산권법은 일년에 2회 이상 개정되는 일도 잦고 하다 보니 교재를 구매한다 하여도 그 교재가 시행 중인 현행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로 인하여 교재의 판매는 더욱 저하되고 교재 판매의 저하는 좋은 교재개발과 출판을 어렵게 한다.

그러므로 많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특정 교재를 수업에서 사용하기 보다는 각 담당교수가 자체적으로 준비한 PPT자료나 자체 제작 자료를 교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교재들은 일반 판매 서적과 달리 충분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수업시간 이후의 복습교재나 수험준비서로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따라서 교재의 경우에도 기존의 교재의 틀에서 벗어나 전향적이 사고가 필요하지

113)www.berkeley.edu (2014. 10. 20. 방문).

않나 한다. 우선 시험과목으로 많은 학생들이 지식재산권을 선택하게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험에 적합한 쉽고 간결한 교재가 필요하다. 또한 간결하면서 충분한 정도의 시험준비서가 될 수 있도록 시험적합성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잦은 개정이라고 하는 지식재산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교재 형태를 고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러므로 지식재산교육의 현실에 맞추어 인터넷에서 제작되고 배포되며, 계속하여 손쉽게 새로운 수정을 가할 수 있는 e교과서(e-text book)의 이용 개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표준교재를 만들 수 있다면 학생들의 수험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표준교재를 개발한다 하여도 이를 사용하지 않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수가 상당수에 이른다면 표준교재의 존재는 유명무실하게 된다. 과거 사법시험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표준교재를 개발한 선택과목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닌가 판단된다. 지식재산권법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하는 교수들의 학문적 배경과 경험적 배경이 상이하여 표준교재의 채택에 합의를 도출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제3절 변호사에 대한 지식재산 계속교육 개선방안

### I. 한국의 변호사에 대한 지식재산 계속 교육 현황

#### 1. 변호사단체의 소속변호사에 대한 지적재산 교육프로그램의 현황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연수는 공공성 있는 법률전문직으로서 변호사들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교육이다. 변호사연수는 변호사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연수와 희망하는 변호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연수로 나뉜다.[114]

전문분야 특별연수의 경우 변호사들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각 업무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변호사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매달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특정 주제를 정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강의도 제공한다. 2013년의 경우 12월에 지식재산권법 강의를 개설한 바 있다. 2014년도의 연수계획은 다음과 같다.

| | | |
|---|---|---|
| 2014년도 연수계획 | 2014. 1. 11. (토) 09:30 ~ 18:20 | 제129기 『헌법소송』 특별연수 |
| | 2014. 1. 25. (토) 09:30 ~ 18:20 | 제130기 『금융법』 특별연수 |
| | 2014. 2. 16. (일) ~ 2. 18. (화) | 제69회 변호사연수회 (여수) |
| | 2014. 3. 8. (토) 09:30 ~ 18:20 | 제131기 『2013년 주요판례해설』 특별연수 |
| | 2014. 3. 22. (토) | 제132기 『행정쟁송』 특별연수 |

114) www.koreanbar.or.kr (2014. 10. 13. 방문).

| | | |
|---|---|---|
| | 09:30 ~ 18:20 | |
| | 2014. 4. 5. (토) 09:30 ~ 18:20 | 제133기 『형사실무(국민참여재판 등 소송실무 포함』 특별연수 |
| | 2014. 4. 19. (토) 09:30 ~ 18:20 | 제134기 『중재/ADR(국제중재 포함)』 특별연수 |
| | 2014. 5. 10. (토) 09:30 ~ 18:20 | 제135기 『가사법(성년후견제, 친족상속포함)』 특별연수 |
| | 2014. 5. 24. (토) 09:30 ~ 18:20 | 제136기 『국제통상법』 특별연수 |
| | 2014. 6. 14. (토) 09:30 ~ 18:20 | 제137기 『지방(영남권) 특별연수』 특별연수 |
| | 2014. 6. 28. (토) 09:30 ~ 18:20 | 제138기 『부동산등기법(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포함)』 특별연수 |
| | 2014. 7. 12. (토) 09:30 ~ 18:20 | 제139기 『영업비밀보호』 특별연수 |
| | 2014. 8. 25. (월) | 제22회 변호사대회 및 제70회 변호사연수회 |
| | 2014. 9. 13. (토) 09:30 ~ 18:20 | 제140기 『건설법』 특별연수 |
| | 2014. 9. 27. (토) 09:30 ~ 18:20 | 제141기 『해외투자법제(중국법 등』 특별연수 |
| | 2014. 10. 11. (토) 09:30 ~ 18:20 | 제142기 『협동조합법』 특별연수 |
| | 2014. 10. 25. (토) 09:30 ~ 18:20 | 제143기 『공정거래법』 특별연수 |
| | 2014. 11. 8. (토) 09:30 ~ 18:20 | 제144기 『신탁법』 특별연수 |
| | 2014. 11. 15. (토) 09:30 ~ 18:20 | 제145기 『지방(호남권) 특별연수』 특별연수 |
| | 2014. 11. 22. (토) 09:30 ~ 18:20 | 제146기 『손해배상법』 특별연수 |
| | 2014. 12. 6. (토) 09:30 ~ 18:20 | 제147기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 특별연수 |
| | 2014. 12. 20. (토) 09:30 ~ 18:20 | 제148기 『IT·방송통신법』 특별연수 |

2013년과는 달리 2014년도에는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과 같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기본법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응용분야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비밀보호,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과 IT·방송통신법에 대한 특별연수가 이미 실시되었거나 계획되어 있다.

더 나아가 대한변호사협회는 온라인변호사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연수

원에서도 지식재산권법 분야를 강의하고 있다. 그러나 강의는 지식재산권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주제에 대하여 강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개설된 강좌로는 “저작권침해 이론 및 판례 정리”,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정리”, “직무발명제도 및 판례정리”, “상표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소송의 실무”, “저작권 소송의 몇 가지 쟁점”, “지적재산권 소송에서의 항변사유”,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특허침해소송과 가처분”이 있다.

2. 변호사단체 내 지식재산법 연구모임의 현황

지식재산권에 관한 변호사단체로는 2014년 11월 5일 설립된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LPA,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lawyers Association)이 있다. 이 협회는 2013년 10월 개최된 2013 한미 지재소송 컨포런스를 계기로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의 결집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결성되게 되었다. 협회의 주요역할로는 지식재산권에 관심 있는 신진 변호사들을 교육해 전문 변호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것을 들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 변호사이기만 하면 누가나 가입할 수 있으며 경력은 요구되지 않는다.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는 주요역할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연구모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변호사만으로 구성된 지식재산권법 연구모임이 존재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 조직도를 살펴보면 상임이사 하에 사무국과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하나로서 지식재산권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공시되어 있지 않다.

3. 변호사의 한국지식재산학회 등 학술단체에서의 활동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관련 학회로는 한국지식재산학회, 정보법학회, 저작권법학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한국지식재산학회는 기존의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와 한국지식재산학회가 통합하여 2014년 10월 발족하였다. 이 학회는 법만이 아니라 경영, 경제, 과학, 기술 등 지식재산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학문분야의 교수, 실무진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은 기존의 한국지식재산학회와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의 회원들을 그대로 통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에서 확인된 임원진(전부를 게재할 수 없어 감사에 한정한다)은 다음과 같다.

| 직책 | 성명 | 소속 |
|---|---|---|
| 회장 | 윤선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고문 | 양승두 | 연세대학교 |
| 고문 | 이수웅 | 특허법인 로얄 대표변리사 |
| 고문 | 김창세 | 제일광장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변리사 |
| 고문 | 김명신 | 명신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
| 고문 | 이상정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고문 | 이영필 | 리&목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
| 명예회장 | 최공웅 |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
| 부회장 | 강일우 | 강&강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
| 부회장 | 권태복 | 광운대학교 법과대학교수 |
| 부회장 | 김연수 | 한양특허법인 대표변리사 |
| 부회장 | 김원오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부회장 | 김은현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 |
| 부회장 | 배대헌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부회장 | 손원 | 특허법원 C&S 대표변리사 |
| 부회장 | 조용식 | 법무법인 다래 대표변호사 |
| 부회장 | 한지영 |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 감사 | 구대환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감사 | 함상준 | 특허법인 C&S 파트너 변리사 |

정보법학회는 새로운 정보법학 분야의 학술적 연구와 연구자 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아울러 국내외의 학회, 관련단체 및 정보산업계와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법학회에서는 법학계, 법조계와 정보통신분야

의 전문가 상호간의 학술토론을 위한 포럼을 다수 개최하고 있다. 특히 정보법학회에는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참여하고 있으며, 정보법학회의 임원진 구성을 보면 이러한 특성이 잘 드러난다. 2014년 정보법학회의 임원진 구성은 다음과 같다.

| | | |
|---|---|---|
| 고문 | 양영준 | 김앤장 법률사무소 |
| | 유의선 | 이화여대 |
| | 한봉조 | 법무법인 송백 |
| | 오승종 | 홍익대 |
| | 황희철 | 김앤장 법률사무소 |
| | 백창훈 | 김앤장 법률사무소 |
| | 박경춘 | 법무법인 일호 |
| 전임회장 | 방석호 | 홍익대 |
| | 강민구 | 창원지원 |
| | 김병일 | 한양대 |
| 회장 | 김용대 | 서울고법 |
| | 이인호 | 중앙대 |
| 부회장 | 강영수 | 수석부회장, 법원/서울고법 |
| | 이규호 | 수석부회장, 학계/중앙대 |
| | 김봉석 | 검찰/법무연수원 |
| | 황창근 | 학계/홍익대 |
| | 최우석 | 변호사 |
| | 윤종수 | 변호사/세종 |
| | 남상봉 | 변호사/KT |

저작권법학회나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학회도 상황은 유사하여 다수의 변호사들이 학회임원 내지 회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4. 변호사의 지식재산관련 사회단체에서의 교육 및 활동 현황

변호사들이 각종 정부단체나 사회단체의 위원회 위원이나 교육프로그램의 교육자로 참여하는 경우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지식재산관련 정부단체로 특허청, 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들 수 있으며, 변호사들은 이들 기관의 자문위원이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최근 홍익대교수이자 변호사인

오승종변호사를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저작권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포함 22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1/3이상이 변호사 내지 판사 등 법률 실무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저작권위원회에서는 검찰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기소유예부 저작권지킴이 교육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오프라인과 온라인 저작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오프라인교육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저작권교육, 교사를 위한 저작권 교육, 방문 맞춤형 저작권 교육,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이 있으며, 온라인교육과정으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속 저작권 이야기, 수업에 활용하는 저작권 이야기, 학교 속 저작권 이슈와 사례 등의 과정이 있으며, 산업종사자와 공무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출판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음악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등의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는 '저작권과 친구될래요', '저작권! 이제 기본입니다' 등의 과정을, 평생교육관심자를 위해서는 아리송한 웹저작권 한방에 끝내기, 분야별 저작권 계약실무,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실무의 과정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여 수요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온라인 맞춤형 특화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온라인교육 중 핫이슈특강 부문을 살펴보면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최승수 변호사가 만화산업의 위기와 해법이라는 명칭의 특강을 하고 있다. 이처럼 공개된 내용 외에도 많은 변호사들이 저작권위원회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5]

### 5. 해외 교육기관에의 파견과 유학, 해외직장에서의 OJT기회부여 현황

우리나라 법률사무소들이 소속 변호사들에게 해외 파견이나 유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공개된 자료가 없어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최근 많은 변호사들이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해외 유학을 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도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공식 집계를 구하기는 어렵다. 다만 법률신문에 공개된 일부 법률사무소들에 대한 기사를 바탕으로 이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먼저 김앤장에서는 2014년 현재 연수제도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지만 특정 연차에 보내주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연수는 본인의 전문분야가 생겨 자신의 경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때가 되면 가며, 미국 로스쿨에 가거나 해외 로펌에 파견근무를 가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또한 해상 분야 전문가라면 영국, 일본업무를 많이 한다면 일본, 중국 고객이 많다면 중국로펌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평지성의 경우 해외 유학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등 해외사무소가 많아 해외 파견 근무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116]

115) www.copyright.or.kr (2014. 10. 20. 방문).
116) www.lawtimes.co.kr (2014. 10. 20. 방문).

그러나 법률시장의 경기가 예전 같지 않고 최근 몇 년간 법률사무소들의 규모 확대로 비용 부담이 증가해 해외연수프로그램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진행되고 있는 해외 연수의 경우 과거 미국 등 영어권 국가에 집중되던 것에서 일본, 중국, 유럽과 남미 등으로 다양화되는 경향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117]

2014년도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가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개최해 참가하는 변호사들을 1년간 교육한 뒤 6개월 이상 해외 유관 기관에의 연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로스쿨 졸업생으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며, 선발된 청년법조인들은 대한변협 강당에서 2014년 9월 15일부터 2015년 7월 8일까지 격주로 수요일마다 2시간동안 국제법무 관련 수업을 듣게 된다. 교육과정 이수자 중 소정의 심사를 통과한 자에게는 대한변협회장 명의의 인증서가 수여되고 인증서 수령자 중 일부에게는 KOICA 자문관, 미국소재 법률사무소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118]

## II. 일본의 변호사에 대한 지식재산 계속 교육 현황

### 1. 변호사단체의 소속변호사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프로그램의 현황

일본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연수제도는 서로 상이하다 변리사는 등록과 무관하게 의무연수제도를 두고 있지 않는 반면 변호사는 등록전, 등록후 의무연수는 물론 계속연수(의무)를 두고 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1949년 설립된 법인으로 변호사 회원에게 다양한 법 분야에 걸친 각종 연수를 기획, 제공하고 있다.[119] 일본변호사연합회는 2003년부터 특별연수로 최신 법개정과 변호사 실무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간 30강좌 정도의 연수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닝 연수 및 재판관 강연회도 개최하고 있다. 이처럼 변호사를 위한 지식재산 연수에는 일본변호사연합회가 개최하는 것 외에 변호사지재넷(辯護士知財ネット) 및 엔터테인먼트·변호사·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어 제공하고 있는 것이 있다.[120] 아래표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연수에 관한 비교이다.

| | | 변리사 | 변호사 |
|---|---|---|---|
| 등록전 의무연수 | 명칭 | 무 | 사법연습 |
| | 연수에 관한 근거규정 | 무 | 재판소법 제66조 제67조 |

117) www.lawtime.co.kr (2014. 10. 20. 방문).
118) www.lawtime.co.kr (2014. 10. 20. 방문).
119) http://www.nichibenren.or.jp/jfba_info/organization/about.html (2014.10. 9. 방문).
120) 一般財団法人 知的財産研究所, 我が国の知財人材育成制度の現状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平成２５年２月, 32-33頁.

| | | | | |
|---|---|---|---|---|
| | 실시주체 | 무 | 최고재판소(사법연수원) | |
| | 수료고사의 유무 | 무 | 유(재판소법 제67조) | |
| | 불합격자의 취급 | 무 | 미공표(3개월 정도의 보충수업 후 재시험) | |
| 등록후 의무연수 | 명칭 | 무 | 윤리연수(등록 후 1년되는 해) | 신규등록변호사연수 |
| | 연수에 관한 근거규정 | 무 | 윤리연수규정 제3조<br>윤리연수규칙 제2조 제1항 | 신규등록변호사연수 가이드라인 |
| | 실시주체 | 무 | 일본변호사연합회 | 일본변호사연합회,<br>각변호사회,<br>각변호사회연합회 |
| | 수료고사의 유무 | 무 | 무 | 무 |
| | 불합격자의 취급 | 무 | 무 | 무 |
| | 불이행자의 취급 | 무 | 가까운 시기의 연수에 참가 | 각회에 따라 상이 |
| 계속연수(의무) | 명칭 | 무 | 윤리연수(연차제) | 계속연수(단위제) |
| | 연수에 관한 근거규정 | 무 | 윤리연구규정 제3조<br>윤리연구규칙 제2조 제2항 | 제2동경변호사회회칙 제19조의 3<br>회원연수규칙 제12조 |
| | 빈도·시간수 | 무 | 등록 5년·10년·20년·30년되는 해 | 1년에 12시간(연구규칙 제15조) |
| | 실시주체 | 무 | 일본변호사연합회 | 제2동경변호사회 |
| | 수료고사의 유무 | 무 | 무 | 무 |
| | 불합격자의 취급 | 무 | 무 | 무 |
| | 불이행자의 취급 | 무 | 최근의 연수에 참가 | 회장에 의한 권고(회원연수규칙 제19조)<br>해당연도의 단위가 부족한 경우, 익년의 이수단위의 부족분에 가산 |

2. 변호사단체 내 지식재산법 연구모임의 현황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지식재산권의 확립, 보급 등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재산분야 전문특별위원회인 지적재산센터를 두고 있다. 지적재산센터에서는 i)지식재

산권에 대한 조사 · 연구 및 제언, ii)지식재산권에 관한 입법 및 제도에 대한 입안 및 제언, iii)지식재산권에 관한 입법 및 제도에 대한 정부, 심의회, 관련 단체 등과의 협의 및 교류, iv)지식재산에 관한 법조인 양성 및 회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v)지식재산에 대한 회원의 업무확대에 관한 활동, vi)기타 일본의 지식재산제도의 유지 및 발전에 필요한 활동을 임무로 한다. 지적재산센터의 위원 수는 85명 이내로 하며 동경, 오사카, 아이치 현 같은 대도시에서 소정의 인원이 위원으로 선정되며, 기타 전국 각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최소 2명의 위원이 선임된다.

지적재산센터의 위원은 각 지역 및 단위위원회의 추천을 참고로 하여 일본변호사연합회 이사회에서 선임되며, 임기는 2년이고 중임이 가능하다. 지적재산센터의 위원들은 정부의 지적재산전략본부, 경제산업성의 산업구조 심의회 및 특허청의 각종 검토회, 문부과학성 문화심의회 등의 위원으로 있는 자가 많으며, 동경 고등법원, 지적재산 고등법원 등 기타 법원의 지적재산권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전직 판사 등으로 구성된다.[121]

또한 각 지역의 변호사회에서도 지식재산권 연구모임을 가지고 있다. 동경 제2변호사회는 동경변호사회, 제1동경변호사와 함께 동경에 설립된 세 개의 변호사회 중 하나이다. 제2동경변호사회에는 지적재산권법연구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매월 제3수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정례모임을 갖고 있다. 이 연구회에서는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네 개의 법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법의 영역에서 매년 연간 주제를 결정하고 중요 논점에 대하여 외부 강사 등을 초청해 연 10회의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이중 5월에는 일반인에게도 개방된 공개강좌를 11월에는 제2동경변호사회의 연수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2014년도의 주제는 부정경쟁방지법이다.[122]

제1동경변호사회에서도 1996년 회원의 지식 및 기능을 높이고 변호사 업무의 개선 및 진보를 목적으로 각종 법률 문제의 조사, 연구 등을 위한 위원회로서 종합법률연구소를 설립하였다. 현재는 10개가 넘는 연구그룹이 설치되어 약 7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회원들은 이들 연구부서에 참여하고 전문 분야의 연구에 임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갖추어 나갈 수 있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스스로 주제를 정하여 연구 그룹을 신설하기도 한다. 현재 설치된 연구회로는 지적소유권법연구부회, 스포츠법연구부회 외에 IT법연구부회가 신설되어 있다. 지적소유권법연구부회에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최신판례를 연구하고 그 성과를 회원들의 업무를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동시에 널리 정보를 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123]

동경에 있는 변호사회만이 아니라 오사카를 포함한 각 지역의 변호사회에서도 유사한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오사카 변호사들의 경우 오사카 변호사와 지적재산법 실무연구회가 중심이 되는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모임은 월 1회씩 부정기적

121) www.nichibenren.or.jp (2014. 10. 20. 방문).
122) http://niben.jp (2014. 10. 20. 방문).
123) www.ichiben.or.jp (2014. 10. 20. 방문).

인 날에 이루어지며 2013년 9월, 11월, 12월 2014년 1월, 2월, 3월에 개최되어 여러 대학의 교수들이나 변호사들이 강연을 하였다.[124]

### 3. 변호사의 일본지식재산학회 등 학술단체에서의 활동 현황

일본 지식재산권학회는 지식재산을 생산하는 연구자나 이를 이용하는 기업 경영자가 중심이 되어 지식재산학을 진흥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되었다. 지식재산에 관심을 가진 폭 넓은 계층의 관련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과학기술과 콘텐츠의 창조, 보호, 활용에 대한 법률, 경제, 국제관계론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연구활동을 진흥하고 있다. 아래에 첨부된 이 학회의 임원진을 보면 변호사들도 다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一般社団法人日本知財学会

役 員 名 簿

平成25年 9月 1日現在

| 役職名 | 氏名 | 所属・役職 | 担当分野・最終学歴 | 常勤・非常勤 |
|---|---|---|---|---|
| 会長 | [redacted] | [redacted] | | 非常勤 |
| 理事 | [redacted] | [redacted] | [redacted] | 非常勤 |
| 理事 | [redacted] | [redacted] | | 非常勤 |
| 理事 | [redacted] | [redacted] | | 非常勤 |
| 理事 | [redacted] | [redacted] | | 非常勤 |
| 理事 | [redacted] | [redacted] | | 非常勤 |
| 理事 | [redacted] | [redacted] | | 非常勤 |
| 理事 | [redacted] | [redacted] | | 非常勤 |
| 理事 | [redacted] | [redacted] | | 非常勤 |
| 理事 | [redacted] | [redacted] | | 非常勤 |
| 理事 | [redacted] | [redacted] | | 非常勤 |
| 理事 | [redacted] | [redacted] | | 非常勤 |
| 理事 | [redacted] | [redacted] | | 非常勤 |
| 理事 | [redacted] | [redacted] | | 非常勤 |
| 理事 | [redacted] | [redacted] | | 非常勤 |
| 理事 | [redacted] | [redacted] | | 非常勤 |
| 理事 | [redacted] | [redacted] | | 非常勤 |
| 理事 | [redacted] | [redacted] | | 非常勤 |
| 理事 | [redacted] | [redacted] | | 非常勤 |
| 理事 | [redacted] | [redacted] | | 非常勤 |
| 理事 | [redacted] | [redacted] | | 非常勤 |

124) www.iplaw-net.com (2014. 10. 20. 방문).

이외에도 지식재산권에 관한 학회로서 저작권법학회가 있으며 이 학회는 1962년 내외의 저작권법제의 조사연구 및 저작권 사상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500여명의 연구자, 법률실무가 등 관련 업계의 실무가들이 소속되어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이 학회도 구성원을 살펴보면 다수의 변호사들이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理 事]

飯村　敏明　(知的財産高等裁判所所長)
伊藤　真　(弁護士)
上野　達弘　(早稲田大学教授)
大須賀　滋　(東京地方裁判所判事)
大渕　哲也　(東京大学教授)
小川　憲久　(弁護士)
小泉　直樹　(慶應義塾大学教授)
佐藤　恵太　(中央大学教授)
清水　幸雄　(清和大学教授)
椙山　敬士　(弁護士)
大楽　光江　(北陸大学教授)
辰巳　直彦　(関西大学教授)
田村　善之　(北海道大学教授)
千野　直邦　(創価大学教授)
茶園　成樹　(大阪大学教授)
戸波　美代　(専修大学)
土肥　一史　(日本大学教授)
中山　信弘　(明治大学教授、弁護士)
苗村　博子　(弁護士)
野村　豊弘　(学習院大学教授)
前田　哲男　(弁護士)
松田　政行　(弁護士)
三村　量一　(弁護士)
柳沢　眞実子　(清和大学教授)
山本　隆司　(弁護士)
吉田　大輔　(文部科学省)

渡邉　修　　(新潟大学教授)
[監 事]
大井　法子　(弁護士)
横山　久芳　(学習院大学教授)

4. 변호사의 지식재산관련 사회단체에서의 교육 및 활동 현황

오사카 변호사회의 경우 법교육 사업을 협회의 중요 사업의 하나로 보고 있다. 법률지식을 확대하고 일상생활에서 법이 잘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이나 행정기관의 다양한 변호사 지원요청에 맞추어 오사카 변호사회에서는 강사파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오사카 변호사회에서는 법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1998년부터 오사카부 내의 다수의 초중고교에 출장을 가서 수업이나 모의재판을 지도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는 무료출장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오사카부 내의 고교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정된 주제로 정해진 기간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무료 변호사 출장수업을 하며 이외의 변호사 출장 수업은 유료로 진행된다.[125]

이외에도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간단체인 일본지적재산협회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수요자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단체에서 실시하는 연수프로그램 중 정기연수와 임시연수 중 지식재산권법에 관한 연수의 강사로서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연수에서 변호사들은 “외국부정경쟁방지법” “지적재산권 실무에 있어 민법” “국제계약” “저작권법” 등의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126]

발명의 장려, 산업재산권제도의 보급, 국가과학의 발전에 공헌하고자 설립된 발명추진협회에서도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수프로그램의 강사로서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발명추진협회에서 실시하는 연수에는 장기연수, 단기집중 ·공개강좌, 특별기획강좌, 음성다운로드강좌,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공동연수가 있다. 발명추진협회에서 실시하는 장기연수 중 실무코스의 10월과 11월 개설과목 및 강사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10월 | 1일 | 전일 | 계약서작성실무 | 石田　正泰 | 청산학원대학대학법학부 특별초빙교수 |
| | 27일 | 전일 | 라인선스계약과 독점금지법 | 泉　克幸 | 동경여자대학법학부 교수 |
| | 7일 | 전일 | 지적재산권과 행정소송 | 安念　潤司 | 중앙대학 법과대학원 |

125) www.osakaben.or.jp (2014. 10. 20. 방문).
126) www.jipa.or.jp (2014. 10. 20. 방문).

| | | | | | |
|---|---|---|---|---|---|
| | | | | | 교수 |
| | 14일 | 전일 | 특허관계소송의 기초이론 | 牧野　利秋 | 변호사 |
| | 15일 | 전일 | 특허침해소송의 구조와 이론 | 清水　節 |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부총괄판사 |
| | 21일 | 전일 | 상표권침해 사례와 대응 | 松尾　和子 | 변호사 |
| | 22일 | 전일 | 의장권침해 사례와 대응 | 水野みな子 | 변리사 |
| | 28일 | 전일 | 손해배상청구 | 古城　春実 | 변호사 |
| | 29일 | 전일 | 기술적 범위와 이용관계 | 窪田 英一郎 | 변호사 |
| 11월 | 4일 | 전일 | 미국특허침해소송의 개요 | 村田　真一 | 변호사 |
| | 5일 | 전일 | 총괄연수 | 紋谷　暢男 | 성혜대학 법과대학원 |

5. 해외 교육기관에의 파견과 유학, 해외직장에서의 OJT기회 부여 현황

일본변호사연합회는 1997년 미국 뉴욕대학 법과대학원, 1999년에는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 캠퍼스와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추천하는 회원을 객원연구원으로 받아들이는 유학제도를 발족시켜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을 파견해 왔다. 또 2007년에는 일리노이대학 법과대학원, 2011년에는 에섹스대학과도 같은 제도를 발족시켰다. 현재 이들 대학 중 에섹스대학만 법학석사(LL.M)학생으로 유학이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실적을 살펴보면 본 유학제도를 통하여 파견된 인원은 2011년 현재 총 29명이다. 객원 연구원의 입장에서 각 학교의 교수, 학생과 교류하고 일본의 법적 제과제와 변호사의 역할을 소개하며 더 나아가 자신의 연구주제에 대해 발표하는 등의 유학생활을 보내고 귀국 후에는 위원회활동 등을 통해 그 성과를 일본변호사연합회에 환원하고 있다. 이하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파견 목록이다.[127]

| 파견연도 | 파견지 | 소속변호사회 | 수습기 | 연구주제 |
|---|---|---|---|---|
| 2005 | NYU | 동경 | 52기 | 미국이민법 및 이민보호를 위한 법률가, NGO의 역할 |
| | UCB | 동경 | 53기 | 미국 조직범죄대책, 기업 컴플라이언스 |
| 2006 | NYU | 제2동경 | 51기 | 여성인권에 관한 법적대응, 사법관계자를 위한 양성평등연수 등 |
| | UCB | 제2동경 | 52기 | 미국공적변호사제도의 현황과 과제-사법서비스편재해소를 중심으로 |
| 2007 | NYU | 동경 | 44기 | 국제인권법, 인종차별철폐법제도, |

127) www.moj.go.jp (2014.10.20. 방문).

| | | | | |
|---|---|---|---|---|
| | | | | 외국인 및 민족적 소수자 아동의 교육제도 등 |
| | UCB | 아이치 현 | 51기 | 접견교통·취조의 가시화, 범죄자처우, 사형제도 |
| 2008 | NYU | 아이치 현 | 56기 | 자유권규약에 있어 개인정보제도, 법과대학원의 Legal Clinic의 현황, 일본의 법과대학원에의 도입 가능성 |
| | UCB | 제2동경 | 57기 | 정보자유법 및 프라이버시법, 정보공개를 추진하는 시민활동의 실태 |
| 2009 | NYU | 경도 | 55기 | 아동학대 |
| | UCB | 동경 | 57기 |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변호사의 역할 |
| | UIUC | 가고시 마현 | 55기 | 로스쿨 리걸 크리닉, 공공기관이 설립한 사무소를 통한 사법 접근의 개선에 관하여 |
| 2010 | NYU | 동경 | 53기 | 미국의 사내 변호사의 존재방식 |
| | UCB | 제2동경 | 50기 | 비행청소년의 처우(교정)에 관한 대책 |
| | UIUC | 동경 | 55기 | 환경법, 지구환경온난화방지에 관한 제도와 소송에 관하여 |
| 2011 | NYU | 제2동경 | 55기 | 인터넷에서 소비자피해의 불법행의 구제를 목적으로 ①소액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 소송 제도의 운용 실태 ②가명, 익명의 가해자에 대한 소송 제기를 가능토록 하는 가해자 특정제도의 내용 및 이론적 근거(통신의 비밀과 관계도 포함) |
| | UCB | 오사카 | 55기 | 의료에 있어 아동의 인권 |
| | UIUC | 제2동경 | 신62기 | ①미국의 헤이그 조약 실시에 따른 법정비와 현재의 과제<br>②미국의 법 교육(LRE)제도의 현황과 과제 |

또한 일본변호사연합회는 회원 간의 정보 교류 및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보다 충실하고 지속적으로 국제사법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1999년 "국제 사법지원활동 변호사 등록제도"를 마련해 이후 이 활동에 관한 회원 간의 교류 및 정보 교환을 촉진하고 있다. 또 국제기관 취업에 관심을 갖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외무성과 협력해 "국제기구 근무희망자를 위한 변호사 명부 등록제도"를 만들었다. 이 명부에 등록된 회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최초 1999년에는 53명이던 것이 2010년에는 196명으로 증가하였다.

더 나아가 일본변호사연합회는 회원, 로스쿨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국제기구에 관한 세미나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 홈페이지 상에 "국제기관 취업지원 코

너"를 설치해 국제기관 취업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신62기 사법수습부터, 4개의 단체(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UNHCR) 도쿄 사무소, 국제이주기관(IOM)도쿄 사무소,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JICA), 외무성 경제국)에서의 선택형 실무수습(전국 프로그램)이 도입되었고, 신63기부터(2010년)는 국제노동기구(ILO) 주일 사무소도 추가되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이와 같은 국제화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여 국제기관 등에서 일하는 법조인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128]

## III. 변호사에 대한 지식재산 계속교육 개선방안

현재 변호사협회는 다양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의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에 특화된 프로그램은 아니어서 금년에도 3회 3과목의 연수강의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따라서 지식재산에 대한 계속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일본의 경우처럼 변호사협회 내에 각 전문주제별 연구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의 하나로 지식재산권 연구모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 2014년에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가 조직되기는 하였지만 연구모임으로서의 성격은 약할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전문연구모임의 설립을 통하여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변호사들이 모여 판례나 최신동향 등을 함께 연구하고 필요한 경우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화된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변호사협회 차원에서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법률시장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들이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그 비용이 누적됨에 따라 과거와 같이 사무소차원에서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반면에 법률시장은 갈수록 국제화되어가고 있어서 해외연수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해외연수가 변호사 개인 차원에서나 사무소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변호사협회차원에서의 해외연수는 단기연수를 제외하고 이루어진 바 없다. 그러나 최근의 법률시장의 동향을 고려할 때 변호사협회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교육적인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신규 변호사들이나 기존 변호사들을 위한 국제화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변호사들의 직무영역이 법원, 검찰, 변호사사무실 등과 같은 법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군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에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는 찾아볼 수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모든 직군에 변호사들의 진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 중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국제기관이나 글로벌 기업에의 진출이다. 우리나라에 직접 진출해 있는 국제기관이나 글로벌기업의 수는 적지만 우리의 경제성장과 함께 국제기관이나 글로벌기업에서 우리의 법을 아는 변

128) www.moj.go.jp (2014.10.20. 방문). (일변연의 국제활동 (변호사백서 2011년판 196~202면 발췌)),

호사를 필요로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좁은 국내시장을 벗어나 세계시장에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제기관이나 글로법기업으로의 진출에 대한 경험이 우리 변호사들에게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제4장 기업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

## 제1절 개설

기업의 지식재산 실무인력은 기업의 지식재산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인재로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다룬다. 지식재산 실무인력은 출원, 등록, 침해대응과 같이 기업의 자산으로서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타사의 침해로부터 지켜내는 권리 관련 업무, 지식재산을 이용하여 사업화하거나 다른 자산을 유치해오는 활용 관련 업무와 더불어 거시적으로 지식재산을 이용하여 기업의 운영 및 개혁방향을 제안하는 전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능력을 요한다.

이러한 능력은 학제교육이나 자격시험교육만으로는 육성하기 어렵고 기업실무적 감각이 더해져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학교나 자격시험을 통해 지식재산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자를 채용하여 사업 및 경영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한편,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 지식재산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기업의 내부사정에 정통하면서도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융합적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수, 강습, OJT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들 프로그램은 기업 내에 설치될 수도 있고, 외부에 위탁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할 수도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실무인력교육모델이 부족하여 각 기업이 내부 사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실시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지식재산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조사하고, 우리 사례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절 우리나라 기업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현황

### I. 기업의 실무인력 보유 및 양성현황

#### 1. 지식재산 담당인력 운영현황

2013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59%는 지식재산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中 16.1%는 전담부서를 두고, 92.5%에 달하는 기업이 최소한 겸임인력이라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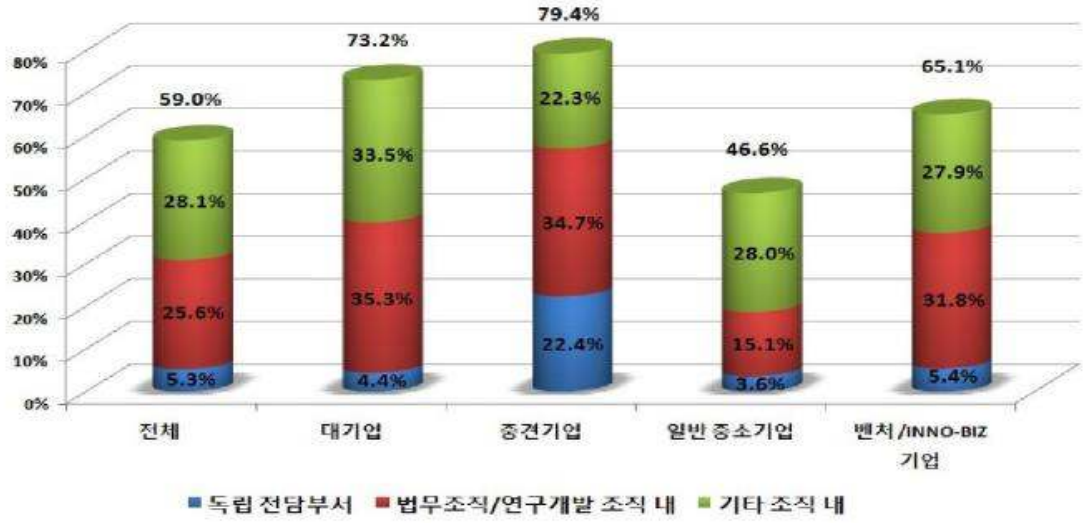


<지식재산 담당 조직 보유여부>[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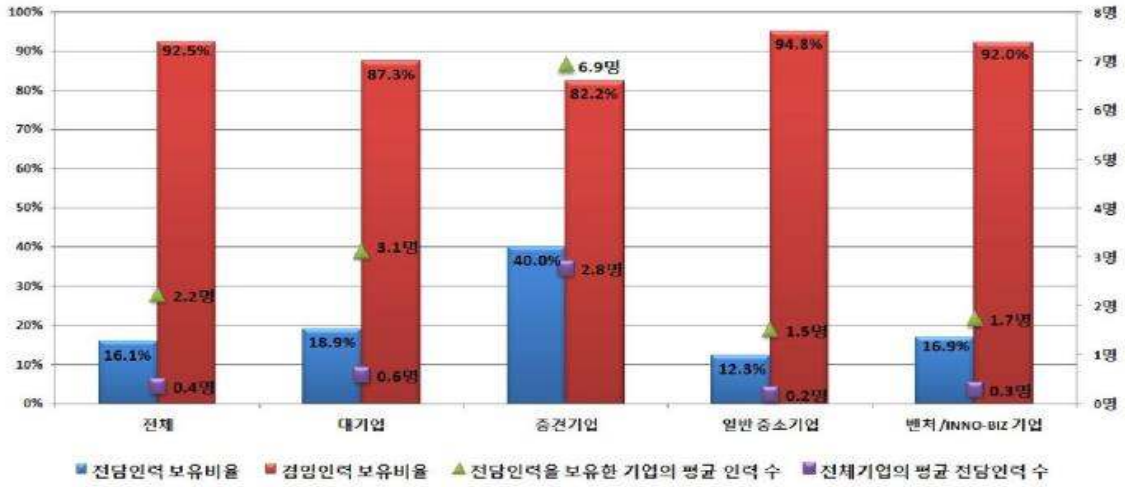


<지식재산 담당인력 보유현상>[130]

이들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조직은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지식재산 관련 분쟁/소송, 라이선스 등 지식재산 활용, 지식재산 평가/분석/심사 및 지식재산 전략수립/지식재산 관련 교육에 관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부수적으로는 연구개발 전략수립, 기술기획, 기술도입, 신규사업 계획, 사업전략 수립, 기술이전, M&A 등의 과정에서도 참여가 요구되었다.[131]

129) 특허청 · 무역위원회, 2013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2013, p.21.
130) 특허청 · 무역위원회, 2013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2013, p.22.
131) 한국발명진흥회, 기업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고용실태 및 수요조사, 2009, p.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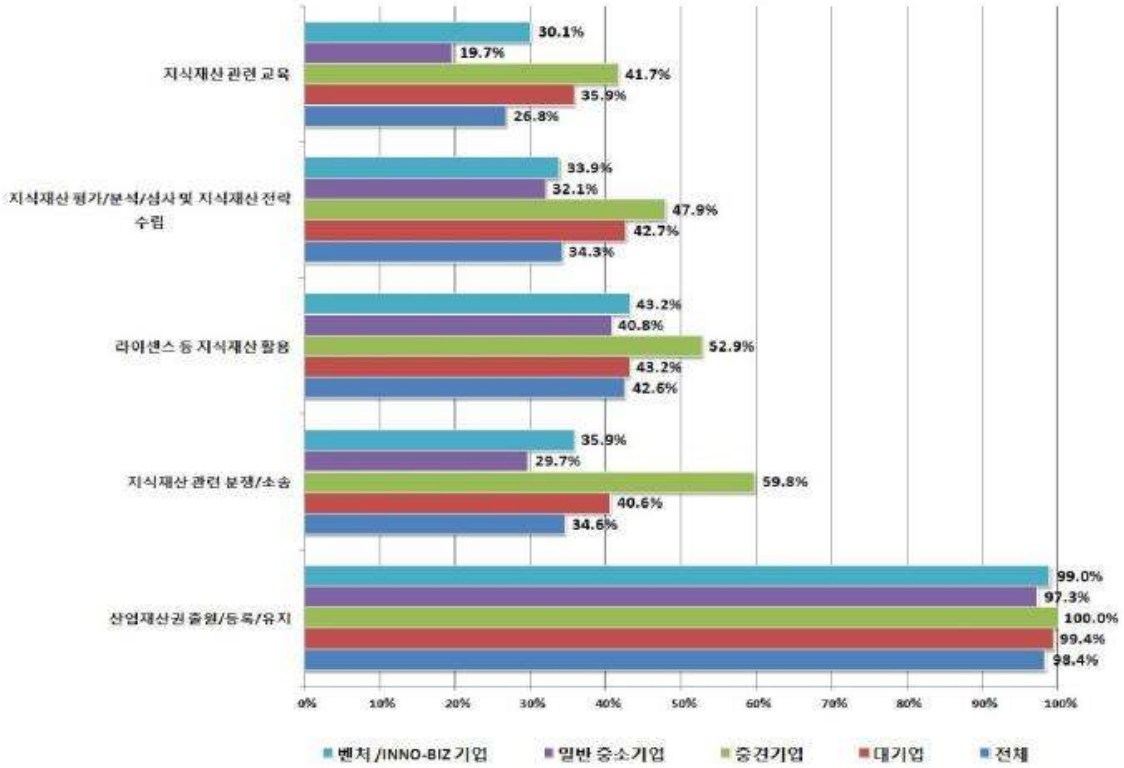


<지식재산 실무인재의 담당업무>[132]

2. 지식재산 담당인력 교육현황

기업이 지식재산 실무인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식재산 교육을 수행하는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기업 708개 중 13.0%가 자체운영, 20.5%가 위탁운영한다고 밝혔고, 37.1%에 달하는 수의 기업은 아예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제공되는 교육마저도 정기적으로 제공되고 관리되는 교육코스라기보다는 내·외부에서 수시로 진행되는 교육이 일반적이라 한다.[133]

132) 특허청·무역위원회, 2013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2013, p.23.
133)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2013, p.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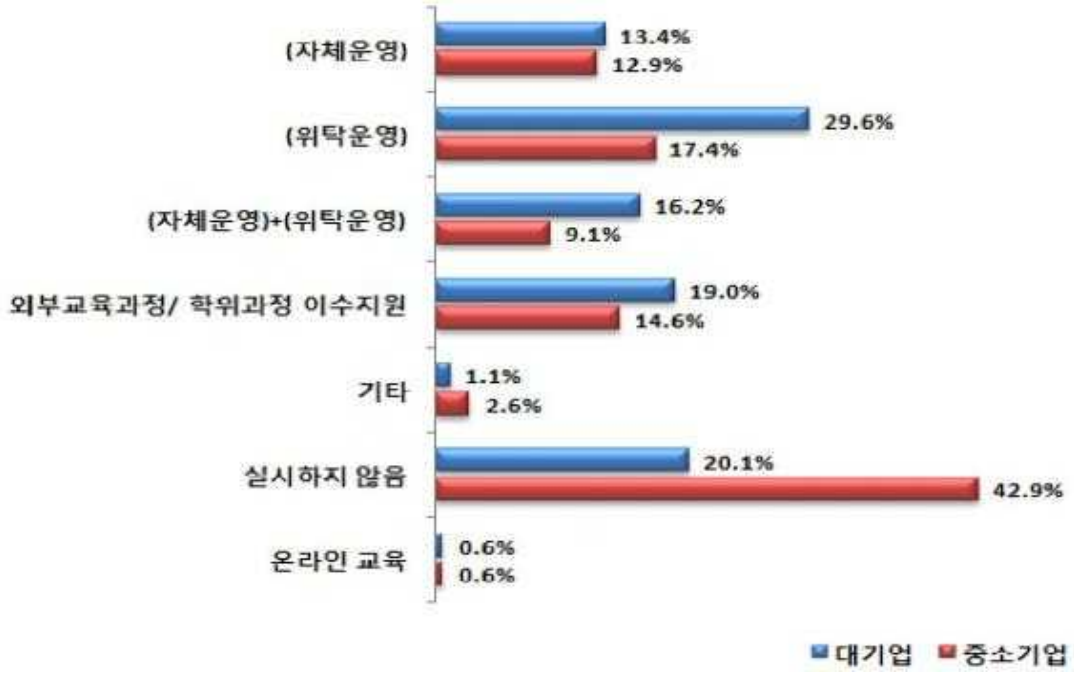


<지식재산 인재 교육 현상>[134]

지식재산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것은 물론, 관련 지식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은 규모나 산업 종류에 관계없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13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이는 있으나 상당수의 응답 기업이 지식재산 실무인력의 전문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고, 적합한 인재가 부족하여 지식재산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바, 지식재산 실무인력의 교육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135]

134)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2013, p.62.
135) 응답 기업들은 지식재산 실무인재의 부족으로 IP출원 질적저하/국내외 경쟁사 IP동향 파악 부족/국내외 IP 정책 동향 파악 부족/보유 IP관리 및 평가 기능 약화/중장기 IP 전략수립의 어려움 /IP 정보분석의 어려움/경영 및 연구개발과의 협력이 어려움/IP 관련 분쟁에 대한 대응소홀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했다.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2013, p.93.

<기업 규모별 지식재산 인재의 전문성>[136]

아울러 응답 기업들은 전문성을 갖춘 지식재산 실무인력의 부족으로 국내외 경쟁사의 지식재산 동향 파악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중장기 지식재산 전략 및 경영전략 수립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는데[137], 이 같은 문제는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 기업들도 겪는 일이며, 특히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더욱 큰 곤란을 겪게 될 수 있다.

3. 기업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교육사례

LG전자는 특허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사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G 특허센터는 2009년부터 매년 5개월 과정으로 'IP School'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300~400명의 특허관련 인재를 대상으로 협상, 소송, 라이선스, 출원, 특허분석 등을 강의하며, 강의의 절반 이상을 국내외 판례 및 분쟁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실무에서 바로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LG전자와 LG인화원은 2011년부터 공동으로 'IP college'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LG그룹 소속 특허담당자들을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연중 4회 1주일 과정으로 진행되며, 사내전문가는 물론 변리사, 특허전문 변호사, 미국 전문 특허변호사까지 다양한 경력의 강사진이 구축되어 있다. 아울러 LG내 특허인재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사례연구를 하는 LG특허실무연구회 등이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대학원 및 해외 로스쿨 등 대학원 교육도 지원하고 있다.[138]

하이닉스는 법무특허그룹 산하 특허출원팀과 특허협력팀에서 근무 중인 특허담당

136)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2013, p.59.
137) 한국발명진흥회, 기업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고용실태 및 수요조사, 2009, 137쪽.
138) 아이뉴스, "'특허전대비' LG전자 사내 특허교육 확대", 2013.6.21.,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53631&g_menu=022100&rrf=nv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로스쿨 유학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일반 직원들의 특허 마인드 향상을 위해 특허 출원 과정 등을 내용으로 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특허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IP 법무팀과 특허출원 및 관리 등 특허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IP 전략팀으로 분리하고, 신규 특허인재 교육, 특허 판례 동향 센터 등 직급별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 미국 로스쿨에 파견해 특허전문가를 양성하고 종업원들이 국내변리사시험에 수험하는 것을 지원하기도 한다.

현대모비스의 기술관리팀 산하 '특허그룹'에서는 하이브리드 · 전기자동차 등 특허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외부 특허전문가를 초빙해 수시로 교육하고 있다. 또 홍익대 IT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및 한국발명진흥회 등 특허조사전문기관을 통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포스코도 '지적재산그룹'에서 특허를 관리하고 있는 종업원들을 한국발명진흥회 · 특허청 등이 주관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있다.[139]

## II. 연수기관을 통한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현황

### 1.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가. 개요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987년 국제특허연수원으로 개원하여 1999년 행정자치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편입되었다. 2006년 WIPO 공식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사업을 기화하고, 공무원 · 일반인 · 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 나. 교육현황

(1) 집합교육

동 연수원은 일반인에 대한 지재권일반교육 및 실무과정인 정규과정과, 수요자 요구에 의해 개설된 지재권 특별교육과정인 맞춤형지재권과정을 두고 있다. 맞춤형 지재권 과정은 기업체, 연구소, 기타(협회, IP컨설턴트 등) 교육수요기관의 전문분야, 교육생 수준 등 수요자 특성을 감안하고 교육장소, 교과목, 강사진을 사전 협의한 후 교육내용을 설계하여 운영한다.

---

139) 서울경제, "기업들 "특허 전문인력 키우자"", 2010.3.3.,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1003/e2010030317283347580.htm

| 구 분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정규과정 | | 460 | 512 | 546 | 557 | 772 |
| 맞춤형 지재권과정 | | 846 | 702 | 545 | 168 | 293 |
| | 기업체 | 254 | 204 | 266 | - | 45 |
| | 연구소 | 562 | 479 | 167 | - | 12 |
| | 기타(대학생 등) | 30 | 19 | 112 | 168 | 236 |
| 계 | | 1,306 | 1,214 | 1,091 | 725 | 1,065 |

<집합교육 현황>[140]

(2) 이러닝 교육[141]

이러닝은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IP-ACADEMY)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개인별로 온라인 콘텐츠를 수강하는 B2C과정과 단체별 이러닝 사이트에서 직무교육으로 수강하는 B2B과정이 있다. 그 중 기업 실무인력과 밀접한 것은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IP리더과정,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업종별 맞춤형 심화교육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특허역량심화과정, 기업 전용사이트를 개설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기업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기업체 단체 과정이 있다.

| 구 분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중소기업IP리더 | 기관수 | - | 1 | 1 | 1 | 1 |
| | 인원 | - | 150 | 750 | 1,178 | 2,039 |
| 중소기업 특허역량심화 | 기관수 | - | 8 | 12 | 40 | 42 |
| | 인원 | - | 398 | 486 | 1,225 | 1,505 |
| 기업체 단체 | 기관수 | 98 | 150 | 234 | 267 | 262 |
| | 인원 | 16,371 | 82,355 | 93,263 | 102,313 | 139,343 |
| 계 | 기관수 | 98 | 159 | 247 | 308 | 305 |
| | 인원 | 16,371 | 82,903 | 94,499 | 104,716 | 142,887 |

<이러닝 과정 운영현황>[142]

다. 교육과정

(1) 집합교육

140)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013년 지식재산교육통계연보, 2014, 15쪽.
14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013년 지식재산교육통계연보, 2014, 51쪽.
142)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013년 지식재산교육통계연보, 2014, 53쪽.

| 과정명 | 교육대상 | 교육 기간 | 교육 횟수 | 기당 인원 | 총인원 | 연인원 |
|---|---|---|---|---|---|---|
| 산업재산권 | 기업·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 관련업무 종사자 | 5 | 3 | 30 | 90 | 450 |
| 특허명세서 | 〃 | 3 | 3 | 30 | 90 | 270 |
| 특허정보검색 | 〃 | 3 | 2 | 30 | 60 | 180 |
| 특허맵 작성 | 〃 | 3 | 2 | 30 | 60 | 180 |
| 상표와 디자인 권리화 | 〃 | 3 | 1 | 30 | 30 | 90 |
| 특허 출원/등록 실무 | 〃 | 3 | 1 | 30 | 30 | 90 |
| 특허법 이론과 실제 | 〃 | 3 | 1 | 30 | 30 | 90 |
| 특허분쟁 대응전략 | 〃 | 3 | 1 | 30 | 30 | 90 |
| 지식재산의 이해(학점은행제) | 〃 | 8 (2개월) | 2 | 10 | 20 | 160 |

<2014년 기업체 직원 대상 지식재산교육 과정>[143]

(2) 이러닝

가. 과목개설현황[144]

가) 법 · 제도

| 기초 | 심화 |
|---|---|
| 개정 특허법 해설<br>사례로 배우는 재미있는 특허이야기<br>상표등록 왜 필요한가?<br>사례로 배우는 상표제도의 이해<br>디자인IP보호전략<br>지식재산권 입문<br>직무발명제도<br>사례로 알아보는 저작권의 이해<br>MICE산업과 지식재산<br>과학기술과 지식재산<br>인터넷과 지식재산권<br>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지식재산<br>2011년 특허법 및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br>2011년 특허심사제도 개정 주요내용<br>나원본씨의 영업비밀 이야기<br>특허법(10주) | 직무발명 이것만은 알고 하자<br>특허법 (34주)<br>상표법<br>디자인보호법<br>미국특허제도 및 실무<br>미국특허출원 1 - 절차<br>미국특허출원 2 - 등록요건<br>기후변화, 기술이전 그리고 IP<br>지식재산권행사에 대한 공정거래법적 규제<br>FTA에 따른 지재권 활용전략<br>개정 미국특허법 완전정복 |

143)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014년도 교육훈련계획, 2014, 14-15쪽.
144) 2014년 기업종업원 대상 지식재산 이러닝 과정,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014년도 교육훈련계획, 2014, p.18-20.

나) 정보검색 및 분석

| 기초 | 심화 |
|---|---|
| 특허정보활용 - 특허정보의 가치<br>특허정보활용-특허정보의 활용<br>특허정보활용-특허정보의 검색<br>특허정보분석 및 특허맵작성<br>선행기술검색 노하우<br>선행기술조사 Skill up<br>유럽특허정보의 모든 것<br>최신 IT기술을 이용한 지재권 정보의 활용<br>특허공보의 이해 및 특허정보검색 | Patent Information EXpo 2012 |

다) 출원 및 명세서 작성

| 기초 | 심화 |
|---|---|
| 실전! 특허명세서 작성<br>실전! 의견서보정서 작성<br>특허제도와 출원서 작성<br>실전! 전자출원 따라하기<br>특허침해 대응방안<br>명세서작성방법 | 특허명세서 작성-전자기계 S/W 기술<br>특허명세서 작성_화학분야<br>특허명세서 작성_생명공학분야<br>특허명세서 작성_BM특허분야<br>영문명세서 작성실무<br>해외특허 출원시 유의사항<br>S/W 및 BM 명세서 작성방안 |

라) 소송 및 분쟁

| 기초 | 심화 |
|---|---|
| 특허침해판단과 청구범위 해석 | 판례로 본 특허침해소송<br>국제특허 분쟁시 협상 및 라이선스전략<br>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실무<br>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실무<br>국제특허분쟁에서의 비침해 분석 및 무효주장<br>특허괴물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전략<br>중소기업의 라이선스 협상전략<br>국제지재권 분쟁해결 컨퍼런스 2012<br>사례로 보는 중소기업 지재권분쟁대응전략 |

마) 관리 및 활용

| 基礎 | 深化 |
|---|---|
| 표준특허와 특허풀 | IP스토리 페스티벌 2012<br>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략 |

| | |
|---|---|
| 기술평가 및 기술이전<br>연구자를 위한 특허관리<br>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br>지식재산경영과 특허전략<br>표준특허 이론과 사례<br>중소기업의 IP경영 시스템 구축 전략 | 성공적인 특허풀 결성 및 운영관리<br>표준특허전략<br>중소기업의 라이선스 협상전략<br>특허괴물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전략<br>표준특허 (심화)<br>General Public License의 쟁점과 향후전망<br>특허라이선스쟁점과 협상전략<br>연구계약의 이론과 실제<br>IP비wm니스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특허전략<br>유럽 진출 기업을 위한 지재권대응전략세미나<br>국가지식네트워크컨퍼런스<br>PATINEX Ⅰ<br>PATINEX Ⅱ<br>한국상표·디자인 주간 |

바) 글로벌IP 및 아이디어 창출

| 글로벌 IP | 아이디어 창출 |
|---|---|
| IP Panorama<br>IP Xpedite<br>특허법률영어<br>Recent Developments in US patent law<br>How to perfect your invention from idea to application | TRIZ를 활용한 기술혁신 |

나. 교육대상별 교과과정[145)]

A. 지식재산 잠재인재

| | 1단계 | 2단계 |
|---|---|---|
| **창출** | 지식재산권 입문 | 발명교육이론 |
| |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 |
| **권리화** | 사례로 배우는 재미있는 특허이야기 | 상표법 |
| | 사례로 배우는 상표제도의 이해 | 디자인보호법 |
| | 사례로 알아보는 저작권의 이해 | 특허법 (10주) |
| **보호** | IP스토리페스티벌 2012 | 상표등록 왜 필요한가? |

B. 연구개발인재

145) http://general.ipacademy.net/

| | 1단계 | 2단계 |
|---|---|---|
| 창출 | 지식재산권 입문 | TRIZ를 활용한 기술혁신 |
| |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 |
| | | 발명신고서 작성과 명세서검토 |
| 권리화 | 사례로 배우는 재미있는 특허이야기 | 특허제도와 출원서 작성 |
| | 특허법 (10주) | 명세서 작성방법 |
| 보호 | IP스토리페스티벌2012 | 특허침해판단과 청구범위해석 |
| | | 특허침해 대응방안 |
| 활용 | 연구계약의 이론과 실제 | 표준특허전략 |
| 경영 | 특허정보활용 - 특허정보의 가치 | 특허정보활용 - 특허정보의 활용 |
| | 직무발명제도 | 특허정보활용 - 특허정보의 검색 |
| | 특허공보의 이해 및 특허정보 검색 | 선행기술검색 노하우 |
| | | 연구자를 위한 특허관리 |

C. 상표디자인 등 개발인재

| | 1단계 | 2단계 |
|---|---|---|
| 창출 | 지식재산권 입문 | 사례로 배우는 상표제도의 이해 |
| | | 사례로 알아보는 저작권의 이해 |
| 권리화 | 상표법 | 디자인 IP 보호전략 |
| | 디자인보호법 | 실전! 전자출원 따라하기 |
| 보호 | IP스토리페스티벌2012 | 상표등록 왜 필요한가? |

D. 관리전담인력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창출 |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 | |
| | 발명신고서 작성과 명세서검토 | | |
| 권리화 | 특허법 (10주) | 실전! 특허명세서작성 | 미국특허법완전정복 |
| | 특허제도와 출원서 작성 | 명세서 작성방법 | 해외특허출원시 유의사항 |
| | 실전! 전자출원 따라하기 | 실전! 의견서 · 보정서 작성 | 영문명세서 작성실무 |
| 보호 | 특허침해 대응방안 | 판례로 본 특허침해소송 | 특허침해판단과 청구범위해석 |
| | | 국제특허분쟁시 협상 및 라이선스전략 | 특허침해손해액산정 |

| | | | |
|---|---|---|---|
| | | 특허괴물에 대한<br>국내기업의 대응전략 | 노하우 및 협상의<br>기술 |
| **활용** | 기술이전 및<br>사업화전략 | 성공적인 특허풀<br>결성 및 운영관리 | 기술평가 및 기술이전 |
| | 연구계약의 이론과<br>실제 | 특허라이선스계약의<br>쟁점과 협상전략 | |
| **경영** | 특허정보활용 –<br>특허정보의 가치 | 특허정보활용 –<br>특허정보의 활용 | 특허정보 분석 및<br>특허맵 작성 |
| | 직무발명제도 | 특허정보활용 –<br>특허정보의 검색 | |
| | 특허공보의 이해 및<br>특허정보 검색 | | |

E. 관리겸임인력

| | **1단계** | **2단계** |
|---|---|---|
| **창출** | 지식재산권 입문 |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 |
| |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 발명신고서 작성과 명세서검토 |
| **권리화** | 사례로 배우는 재미있는 특허이야기 | 실전! 전자출원 따라하기 |
| | 특허법 (10주) | 실전! 특허명세서작성 |
| | 특허제도와 출원서 작성 | 명세서 작성방법 |
| **보호** | 특허침해 대응방안 | 특허침해판단과 청구범위해석 |
| | | 중소기업 지재권분쟁대응전략 |
| **활용** | 기술이전 및 사업화전략 | 중소기업의 라이선스 협상전략 |
| | 연구계약의 이론과 실제 | |
| **경영** | 특허정보활용 – 특허정보의 가치 | 특허정보활용 – 특허정보의 활용 |
| | 직무발명제도 | 특허정보활용 – 특허정보의 검색 |
| | 특허공보의 이해 및 특허정보 검색 | 중소기업 IP경영 시스템<br>구축전략 |

4) 교육인재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는 특허청 공무원 및 외부강사를 함께 활용하고 있다. 외부강사로는 교수, 변호사, 변리사, 기타 기업에 소속된 실무가 등이 있다. 교육대상에 따라 강사의 비율을 달라지는데, 일반 공무원, 심사관 교육에는 외부강사의 비율을 늘리고, 일반인 교육에는 특허청 공무원 신분인 강사를 더욱 활용하는 식으로 강의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다.

| 구 분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청직원 | | 158 | 117 | 168 | 187 | 200 |
| 외 부 강 사 | | 134 | 126 | 111 | 122 | 109 |
| | 교수 | 16 | 15 | 18 | 20 | 18 |
| | 변호사 | 4 | 4 | 3 | 9 | 2 |
| | 변리사 | 44 | 47 | 23 | 36 | 33 |
| | 기타 | 70 | 60 | 67 | 57 | 56 |
| 계 | | 292 | 243 | 279 | 309 | 309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강사 현황>[146]

2. 한국발명진흥회

(1) 개요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기업 실무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기업지식재산 교육과정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업을 운영한다. 기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집합연수 및 방문위탁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147]

(2) 교육프로그램[148]

한국발명진흥회는 2013년 기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기초 등 총 31개 과정으로 225명을 교육(전체 807명)한 바 있다. 교육인력으로는 교수, 기업 임원,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등이 활용되고 있고, 각 강사가 맡은 강의의 교재를 자체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 No. | 과정명 | 교육강사 | 교재개발 | 참여인원 (기업 수) |
|---|---|---|---|---|
| 1 | 특허평가 및 라이센싱 계약 | 외부 교수 등 2 | 강사제작 | 23(9) |
| 2 | 지식재산 분쟁 및 협상 1기 | 외부기업임원 등 5 | 강사제작 | 30(11) |
| 3 | 미국특허마스터 1기 | 외부 변호사 등 3 | 강사제작 | 32(8) |
| 4 | 특허 주요심사기준(화학생명) | 외부 변리사 등 2 | 강사제작 | 23(9) |
| 5 | 특허 주요심사기준(전기전자) | 외부 변리사 등 2 | 강사제작 | 20(9) |
| 6 | 특허무효심판 대응전략 | 외부 서기관 등 2 | 강사제작 | 22(8) |
| 7 | 강한 디자인 창출 및 저작권 2기 | 외부 변호사 등 2 | 강사제작 | 11(3) |

146)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013년 지식재산교육통계연보, 2014, 18쪽.
147) http://www.ipcampus.kr/eduprograms/progTraining.jsp
148) 한국발명진흥회, “기업 지식재산 교육과정 운영 및 인프라 구축”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서, 국회 제출자료, 2014.

| | | | | |
|---|---|---|---|---|
| 8 | 영문지재권용어 및 영문레터 작성 노하우 1기 | 외부 변리사 등 2 | 강사제작 | 41(9) |
| 9 | 강한 상표를 위한 브랜딩전략 2기 | 외부기업임원 등 4 | 강사제작 | 10(2) |
| 10 | 미국 지식재산 전략 특별교육 | 외부 교수 등 3 | 강사제작 | 63(-) |
| 11 | 지식재산권 기초 3기 | 외부 변리사 등 7 | 강사제작 | 26(9) |
| 12 | 특허청구범위해석과 침해판단 2기 | 외부 변리사 등 3 | 강사제작 | 22(4) |
| 13 | 특허평가 및 라이센싱계약 2기 | 외부기업임원 등 2 | 강사제작 | 22(10) |
| 14 | 지식재산권 기초 4기 | 외부 변리사 등 7 | 강사제작 | 16(5) |
| 15 | 특허정보검색 및 특허성 판단 2기 | 외부 변리사 등 2 | 강사제작 | 34(12) |
| 16 | 중국 특허마스터(출원-소송) | 외부 변리사 등 3 | 강사제작 | 16(7) |
| 17 | 강한 디자인, 상표 실무 | 외부 변리사 등 3 | 강사제작 | 46(7) |
| 18 | 직무발명 보상액 산정 및 공동연구개발 계약 | 외부 변호사 | 강사제작 | 33(12) |
| 19 | 특허명세서작성 및 리뷰 SKILL UP 2기 | 외부 변리사 등 3 | 강사제작 | 23(9) |
| 20 | 영문지재권용어 및 영문레터 작성 노하우 2기 | 외부 변리사 등 2 | 강사제작 | 34(6) |
| 21 | 특허청구범위해석과 침해판단 3기 | 외부 변리사 등 3 | 강사제작 | 22(8) |
| 22 | 특허평가 및 라이센싱계약 3기 | 외부 변리사 등 2 | 강사제작 | 18(3) |
| 23 | 특허경영 우수기업 IP 전략 | 외부기업임원 등 6 | 강사제작 | 21(6) |
| 24 | 연구원들을 위한 발명신고서 작성 2기 | 외부 변리사 등 2 | 강사제작 | 10(6) |
| 25 | 지식재산 분쟁대응 및 협상 2기 | 외부 변호사 등 4 | 강사제작 | 14(5) |
| 26 | 미국 특허미스터(출원-소송) | 외부 변리사 등 3 | 강사제작 | 29(5) |
| 27 | 단계별 특허비용 및 기일관리 전략 2기 | 외부 변리사 | 강사제작 | 22(13) |
| 28 | 유럽 특허마스터(출원-소송) | 외부기업임원 등 4 | 강사제작 | 13(4) |
| 29 | 주요국(IP5) 지식재산 비교 실무 | 외부 변리사 등 6 | 강사제작 | 28(7) |
| 30 | 지식재산권 기초 5기 | 외부 변리사 등 7 | 강사제작 | 20(9) |
| 31 | 특허소송 실무 및 최신 판례 동향 | 외부 판사 등 3 | 강사제작 | 63(10) |

<2013년 기업 지식재산 직무교육 운영 현황>

| 번호 | 일자 | 과정명 |
|---|---|---|
| 지식재산 집중교육 | | |
| 1 | 02.12~02.14 | 지식재산권 기초 1기 |
| 2 | 02.19~02.21 | 미국특허출원 및 중간사건 대응전략 1기 |
| 3 | 02.26~02.28 | 기술이전 및 라이센싱 계약서 작성 실무 1기 |
| 4 | 03.05~03.07 | 특허청구범위 해석 방법과 침해판단 1기(전기·전자·기계) |
| 5 | 03.05~03.07 | 특허청구범위 해석 방법과 침해판단 1기(화학·생명·바이오) |
| 6 | 03.19~03.21 | 특허 감세기초 및 특허성 판단 1기 |
| 7 | 03.26~03.28 | 주요국(IP5) 특허출원 및 OA 절차 1기 |
| 8 | 04.02~04.04 | 특허명세서 작성 및 리뷰 SKILL UP 1기(전기·전자·기계) |
| 9 | 04.02~04.04 | 특허명세서 작성 및 리뷰 SKILL UP 1기(화학·생명·바이오) |
| 10 | 04.09~04.11 | 미국특허분쟁 및 소송 대응전략 |
| 11 | 04.23~04.25 | 특허기술가치평가 실무 |
| 12 | 05.14~05.16 | 지식재산권 기초 2기 |
| 13 | 05.21~05.23 | 경쟁 디자인 창출 및 출원전략(도면까지) |
| 14 | 06.18~06.20 | 강한 상표를 위한 출원 및 사업화전략 (브랜드마케팅까지) |
| 15 | 06.25~06.27 | 특허정보검색 및 특허맵 구축전략 |
| 16 | 08.27~08.29 | 지식재산권 기초 3기 |
| 17 | 09.03~09.05 | 미국특허출원 및 중간사건 대응전략 2기 |
| 18 | 09.17~09.19 | 특허청구범위 해석 방법과 침해판단 2기(전기·전자·기계) |
| 19 | 09.17~09.19 | 특허청구범위 해석 방법과 침해판단 2기(화학·생명·바이오) |
| 20 | 09.24~09.26 | 기술이전 및 라이센싱 계약서 작성 실무 2기 |
| 21 | 10.06~10.08 | 특허 감세기초 및 특허성 판단 2기 |
| 22 | 10.15~10.17 | 특허명세서 작성 및 리뷰 SKILL UP 2기(전기·전자·기계) |
| 23 | 10.15~10.17 | 특허명세서 작성 및 리뷰 SKILL UP 2기(화학·생명·바이오) |
| 24 | 10.22~10.24 | 주요국(IP5) 특허 출원 및 OA 절차 2기 |
| 25 | 11.05~11.07 | 지식재산권 기초 4기 |
| | 소계 | 25회 |

<2014년 지식재산캠퍼스 교육프로그램>

또한 해외출원이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미국 등 IP5 국가별 특허제도 및 사례 중심의 '해외 지식재산 분쟁 및 협상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에는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 중심의 지식재산 분쟁대응 과정을 개설하여 미국 4회, 유럽 1회, 중국 2회, 공통 1회 등 총 8회에 273명이 교육받았다.

| No. | 과정명 | 교육강사 | 교재개발 | 참여인원 (중소기업) |
|---|---|---|---|---|
| 1 | 성공하는 미국특허 출원전략 과정 | 외부 변리사 등 | 강사제작 | 35(22) |
| 2 | 중국 상표법 개정안 및 상표소송과 단속 | 외부 변호사 등 | 강사제작 | 66(24) |
| 3 | 미국 특허소송의 단계별 가이드 | 외부 기업임원 등 | 강사제작 | 20(14) |
| 4 | 유럽 특허 최근동향 및 출원전략 | 외부 변리사 | 강사제작 | 25(11) |
| 5 | 중국 지식재산 출원 및 분쟁대응 | 외부 변리사 등 | 강사제작 | 28(18) |
| 6 | 미국 특허침해 판단과 대응 방안 | 외부 변리사 등 | 강사제작 | 27(15) |
| 7 | 국제 특허 라이센스 계약 및 협상 | 외부 기업임원 | 강사제작 | 32(22) |
| 8 | 미국 특허출원 및 OA 대응 전략 | 외부 변호사 등 | 강사제작 | 40(16) |

<2013년 해외지식재산 실무인재 교육현황>

(3) 주요 과목 커리큘럼

| No. | 과정명 | 내용 |
|---|---|---|
| 1 | 각국별 상표출원 및 마드리드 출원전략 | 해외 상표등록 출원 개요<br>마드리드 시스템 개관 및 본국관청 절차 / 지정국 관청절차<br>미국 상표제도 및 등록의 이해<br>일본 상표제도 및 등록의 이해<br>중국 상표제도 및 등록의 이해<br>유럽 상표제도 및 등록의 이해 |
| 2 | 강한 디자인 창출 및 권리화 실무 | 디자인경영의 성공실패 사례<br>디자인등록출원 동향<br>디자인등록출원의 중요성<br>사례를 통한 디자인등록요건의 이해<br>디자인 분쟁 발생시 해결방안<br>디자인 분쟁 사례<br>디자인 검색이론<br>디자인 검색실습<br>디자인 검색결과 분석 및 활용<br>디자인 출원 준비사항 점검<br>디자인 출원 및 심사절차<br>디자인 출원비용 및 비용 절감사유 확인<br>해외디자인 등록출원을 위한 절차 |

| | | |
|---|---|---|
| | | 디자인등록출원을 위한 서류작업 실습<br>실습 결과에 대한 피드백 및 검수 |
| 3 | 강한 상표를 위한 출원 및 사업화전략 | 기업 브랜드 경영 전략의 중요성 및 브랜드 아이덴티티 요소 개발<br>브랜드 마케팅 전략<br>상표법 제도 일반<br>상표 출원의 절차<br>사례를 통한 상표권 침해 분쟁<br>사례를 통한 상표심판 및 소송제도<br>마드리드 국제출원 실무<br>유럽공동체상표제도(CTM:Community Trade Mark)를 이용한 출원 실무<br>KIPRIS를 이용한 상표검색 방법<br>최근 상표관련 이슈 |
| 4 | 기술이전 및 라이센싱 계약서 작성 실무 2기 | 기술이전 및 라이센싱 계약서 작성 실무(1)<br>기술이전 및 라이센싱 계약서 작성 실무(2)<br>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전략<br>기술이전 계약의 내용 및 세부 조항<br>라이센스 계약의 내용 및 세부 조항<br>공동연구계약의 내용 및 세부 조항<br>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협상의 개요<br>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서의 검토<br>계약서 샘플(분야별, 라이센스 종류별)을 활용한 실무 계약서 검토 |
| 5 | 미국특허 출원 및 OA대응전략 2기 | 미국특허 제도 개관<br>미국특허 출원의 종류<br>미국특허 출원/심사/등록 실무<br>해외 기업의 미국특허 출원 전략 사례<br>국내 기업의 미국특허 출원 전략 사례<br>미국특허 대상 및 등록요건<br>한정요구(Restriction Requirement) 및 IDS 실무<br>OA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방안<br>OA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방안 |
| 6 | 영문 지재권 용어 및 영문레터 작성 노하우 2기 | 영문 비즈니스 레터 일반<br>OUTGOING 업무 관련 레터<br>기타 일반 절차 관련 레터(OUTGOING)<br>INCOMING 업무 관련 레터 |

| | | |
|---|---|---|
| | | 기타 일반 절차 관련 레터(INCOMING)<br>영문 지식재산권 용어 정리 |
| 7 | 주요국(IP5) 특허출원 및 OA절차 2기 | 미국 특허출원 절차 실무<br>미국 특허 주요거절사유 및 OA 대응<br>유럽 특허 실무의 이해 및 기업의 특허전략<br>일본 vs 한국 특허법과의 차이점 비교 및 그에 따른 기업의 특허전략<br>중국 특허출원절차 및 OA 처리절차<br>한국기업의 중국진출시 기업의 특허전략(계속) |
| 8 | 지식재산권 기초 4기 | 지식재산권 개요<br>특허법 제도<br>특허 출원절차<br>국제 출원제도<br>특허 명세서 작성방법<br>특허검색 방법<br>특허청구범위 해석과 침해판단<br>특허심판 및 소송제도<br>상표법 기초<br>디자인 기초<br>저작권 기초 |
| 9 | 지식재산 관리 인력 양성 교육 | 지식재산권 제도의 이해<br>상표 제도<br>디자인제도 및 저작권<br>특허 등록요건<br>특허출원/심사의 절차<br>특허명세서 이해/구성<br>명세서 기재방법(이론)<br>특허명세서 작성 실습<br>전자출원 및 출원포대 실습<br>주요 거절사유 및 대응전략<br>특허권 발생/소멸/실시 등<br>라이선스 계약 이해<br>권리범위의 해석<br>심판/소송 및 분쟁대응<br>직무발명제도 이해<br>직무발명신고서 작성방법<br>해외출원제도의 이해-1<br>해외출원제도의 이해-2 |

| | | |
|---|---|---|
| | | 특허정보의 의의<br>특허정보 검색/활용법<br>특허정보 검색 실습-1<br>특허정보 검색 실습-2<br>선행기술조사보고서<br>선행기술조사보고서 작성 |
| 10 | 직무발명 신고 및 보상절차, 보상액 산정 | 직무발명에서의 주요 논점 3가지<br>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주요사건<br>직무발명 보상금액 산정방식 및 최신 사례<br>직무발명의 귀속 문제, 세액공제, 보상금산정 문제 의 종합 사례(대판2013두2655) |
| 11 | 특허검색 및 특허맵 구축전략 | 지식재산권의 이해<br>해외출원제도<br>특허정보 개요<br>각국의 특허검색사이트 활용 방법 및 검색전략<br>특허맵이란?<br>특허맵 작성 실무<br>특허맵 작성 실무(계속)<br>특허분석 활용 사례 및 실무 |
| 12 | 특허명세서 작성 및 리뷰 SKILL UP 2기 | 특허명세서 작성 이론<br>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는?<br>특허명세서 기재 방법<br>특허출원의 범위<br>명세서의 기재불비 종류와 이에 따른 효과<br>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및 청구범위의 작성전략<br>국제출원의 경우<br>사례를 통한 거절이유 분석 & 보완방법<br>심사진행절차<br>주요거절이유 및 거절이유 통지<br>거절이유에 따른 출원인의 대응방안<br>기타 특허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br>의견서 작성 방법<br>보정서 작성 방법<br>분야 실제 사례를 통한 우수 명세서 리뷰<br>분야 실제 사례를 통한 명세서 수정 및 보완 실습<br>(기업체 입장에서의 명세서 리뷰 노하우) |
| 13 | 특허소송시 변론능력 SKILL | 특허 심결취소소송 실무<br>특허 침해소송 준비 시 유의사항 |

| | | |
|---|---|---|
| | UP | |
| 14 | 특허엔지니어(구.특허명세사) 양성교육 1기 | 특허법 및 지식재산권의 이해<br>전문용어 및 사용처 설명<br>특허 출원 개요 및 절차<br>발명신고서 설명 및 발명 기술 이해 (1)<br>특허 검색 및 실습 (1)<br>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작성<br>선행기술조사 모범 보고서 제시<br>특허명세서 정의, 구성, 작성방법 등<br>사례를 통한 명세서 분석<br>청구항 작성 모범 사례 제시<br>발명신고서 기술 이해 및 특허 검색 (2)<br>선행기술조사보고서 작성(자습)<br>선행기술조사 모범 보고서 제시<br>특허 무효사례 분석<br>거절 이유에 따른 명세서 보정 방법<br>모범 의견서/보정서 제시<br>발명신고서 제시 → 특허명세서 작성<br>특허명세서 작성 모범 사례 제시<br>특허 침해 사건 사례 |
| 15 | 특허청구범위 해석 방법과 침해판단 2기 | 한국 특허청구범위의 해석<br>보호범위 판단 실무<br>특허권의 침해<br>판례를 통한 특허침해판단 심화<br>미국 특허청구범위 해석<br>[조별 학습] 실습 과제 제시 |
| 16 |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 ETRI 특허 비즈니스와 특허경영<br>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필요성<br>국내외 특허 포트폴리오 관련 사례<br>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전략(Who, When, How)<br>단계별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관리 방법(사례) |

3. 지역지식재산센터

1) 개요

발명진흥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거점을 마련한 지식재산서비스를 수행하는 단체이다. 특허청 국제지식

재산연수원이나 발명진흥회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2, 3시간에 걸친 1회성 세미나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관 지역 소재 공무원, 학생 및 교사, 중소기업 종업원 등 지역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교육과정[149]

가) 기초

| No. | 과정명 | 교육 강사 | 주요내용 | 인원 |
|---|---|---|---|---|
| 1 | 찾아가는 지식재산권 교육(2시간) | 내부강사 | 아이디어 발상 및 창조 | 40명 |
| 2 | 찾아가는 지적재산권교육 (3시간) | 내부강사 | 지식재산권 기초 전과정 | 30명 |
| 3 | 지식재산권입문 (4시간) | 외부 변리사 | 지식재산권 입문과정<br>지식재산권 중급과정 | 15명 |
| 4 | 지식재산권기초 (3시간) | 외부 변리사 | 지식재산권 기초 | 20명 |
| 5 | 지식재산권입문 (5시간) | 외부 전문가 | 지식재산권 입문<br>특허출원과 명세서 | 10명 |
| 6 | 지식재산권중급 (4시간) | 외부 변리사 | 출원명세서 작성과정<br>선행기술조사 중급과정 | 10명 |
| 7 | 지재권 집중교육 (10회, 20시간) | 외부 변리사 | 기업대상 맞춤 교육프로그램 | 20명 |
| 8 | 특허검색방법 (3시간) | 외부 변리사 | 특허출원 절차 및 특허검색방법<br>직무발명의 요건 및 제도의 활용 | 11명 |
| 9 | 찾아가는 『중소기업의 선행기술조사 스킬의 향상』 교육(4시간) | 외부 변리사 | 중소기업의 IP경쟁력 강화를 위한<br>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인식 및<br>선행기술조사의 활용 증진<br>KIPRIS등 무료사이트의 활용방법 | 3명 |
| 10 | 찾아가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증진 』 교육(4시간) | 외부 연구원 |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인식<br>특허출원 절차 및 특허검색방법 학습<br>직무발명의 요건 및 제도의 활용 | 7명 |
| 11 | 찾아가는 『중소기업의 | 외부 변리사 |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인식<br>선행기술조사 활용을 통한 효율성 | 3명 |

149) http://www.ripc.org/educationList.do?centerid=edu_main&memid=SUED

| | | | | |
|---|---|---|---|---|
| | IP관리 및<br>활용전략』<br>교육(2.5시간) | | 있는 개발 추진 방안<br>특허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한 IP경영<br>기반 구축 | |
| 12 | 찾아가는<br>『중소기업의<br>직무발명<br>활용사례』<br>교육(2회,<br>6시간) | 외부<br>변리사 |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인식<br>기술 개발 및 특허권 확보에 있어<br>선행기술조사의 활용 증진<br>직무발명에 대한 기본 개요 및<br>활용사례 | 3명 |
| 13 | 특허정보<br>검색 및<br>전자출원<br>교육(3.5시간) | 내부강사 | 특허정보 검색 및 활용 개요<br>KIPRIS검색 실습<br>전자출원의 이해와 실습 | 50명 |
| 14 | 지식재산권<br>집중교육<br>(7일, 28시간) | 외부<br>변리사,<br>전문가 | 지식재산권제도의 이해<br>특허정보검색 실무<br>특허명세서 작성방법<br>기업아이디어보호 및 IP분쟁대응전략<br>저작권의 이해 | 30명 |

나) 심화

| No. | 과정명 | 교육<br>강사 | 주요내용 | 인원 |
|---|---|---|---|---|
| 1 | 찾아가는<br>지식재산권<br>교육(3시간) | 내부<br>강사 | 특허침해판단 | 30명 |
| 2 | 열처리분야<br>특허출원사례<br>(3시간) | 외부<br>전문가 | 특허출원 열처리분야 사례 | 10명 |
| 3 | 삼성VS애플의<br>특허분쟁 및<br>디자인보호법(3시<br>간) | 외부<br>변리사 | 삼성과 애플 소송현황 및 쟁점<br>해외기업들과의 디자인권분쟁 및<br>실태 | 40명 |
| 4 | 상표검색 및<br>브랜드 기획, 광고<br>(4회, 16시간) | 외부<br>변리사,<br>기업임원 | 브랜드의 기초<br>상표검색、전자출원방법<br>브랜드의 프로모션 및 마케팅<br>전략<br>전략적 브랜드네임의 기획 및 | 20명 |

| | | | 발상 | |
|---|---|---|---|---|
| 5 | 전통산업<br>IP경쟁력제고사업<br>(1시간) | 외부<br>변리사 | | 18명 |
| 6 | 지리적표시<br>단체표장의 이해<br>(1시간) | 외부<br>변리사 | | 18명 |
| 7 | 기업IP담당자를<br>위한 지식재산권<br>교육(3시간) | 외부<br>변리사 | 청구범위해석 및 침해판단 | 30명 |

다) 경영 및 전략

| No. | 과정명 | 교육<br>강사 | 주요내용 | 인원 |
|---|---|---|---|---|
| 1 | 찾아가는<br>지식재산권<br>교육(4시간) | 외부<br>기업임<br>원 | 중국시장진출전략 | 30명 |
| 2 | 브랜드<br>경영의식 제고<br>교육<br>(3시간) | 내부강<br>사 | 브랜드 전략 | 30명 |
| 3 | 찾아가는<br>지식재산권<br>교육(3시간) | 내부강<br>사 | 특허관리전략 | 10명 |
| 4 | 찾아가는<br>『중소기업의<br>IP경영』지재권<br>교육(2시간) | 외부<br>변리사 | 중소기업 IP경쟁력 제고를 위한 CEO,<br>실무자간 IP경영 관리전략<br>특허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실효성<br>있는 특허 유지전략 | 5명 |
| 5 | 찾아가는<br>중소기업<br>맞춤형<br>지적재산권교육<br>(2시간) | 외부<br>변리사 | 중소기업 연구소에서의 IP경쟁력 강화를<br>위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인식<br>기업보유특허관리전략구축 | 2명 |
| 6 | 찾아가는<br>『기업연구관<br>입주기업 대상<br>기술이전』교육<br>(3시간) | 외부<br>기업임<br>원 | 기술이전절차 및 해외기술이전방법<br>유망기술발굴 및 사업화지원 | 50명 |

| | | | | |
|---|---|---|---|---|
| 7 | 특허/실용신안<br>전문과정<br>(2.5시간) | 외부<br>교수 | 해외특허 및 기술이전전략 | 40명 |
| 8 | 디자인<br>마케팅전략<br>(3시간) | 외부<br>교수 | 디자인 마케팅 성공사례<br>디자인 출원 등 마케팅 전략 | 40명 |
| 9 | 지식재산<br>집중교육 | | 특허출원<br>IP경영 및 창업 | 30명 |
| 10 | 특허경영전략과정<br>(3시간) | | 특허경영의 필요성<br>특허제도<br>특허경영 성공사례 | 30명 |
| 11 | 기업의 브랜드<br>관리전략<br>(2시간) | 외부<br>변리사 | 기업의 브랜드 가치에 대한 중요성<br>브랜드 활용방안 및 관리전략<br>특허 컨설팅 | 10명 |

4. 한국지식재산협회

1) 개요

한국지식재산협회는 2008년 창립된 지식재산관련 민간단체로 120여개의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협회 내 7개의 분과가 있으며 각 분과에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지식재산 경영 및 특허분쟁 대응방안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기업의 실무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 교육내용(2014년도)

가) 분과회의

| 분과명 | 내용 | 강사 |
|---|---|---|
| 특허분과 | 복수침해, 국제특허제도 조화 | 관련<br>전문가 |
| |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심사기준 개정<br>소프트웨어 특허등록 및 권리행사 관련 실무상 문제 | 변호사 |
| | 특허법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br>복수주체 침해, idefiniteness의 기준, 소프트웨어 특허기준<br>관련 미국 대법원 판례설명 및 대응방안 | 변호사<br>기업 |

| | | |
|---|---|---|
| | IP5 Meeting 결과 공유<br>특허 무효화를 위한 검색 전략 | |
| | IP5 국가간의 특허조화<br>중국 심사 실무의 이해 | 변호사<br>변리사 |
| 중소기업<br>분과 | 발명진흥법 개정안 | 변호사 |
| | 최신판례연구 실무사례 | 기업 |
| | 계약서 검토방법<br>특허경영 | 관련<br>전문가 |
| | 미국출원 명세서 작성<br>브랜드, 상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
| | 최근 미국출원 명세서 작성<br>중소기업을 위한 특허지원사업<br>특허권 등 '지방세법' 개정안 관련 | 기업<br>공무원 |
| | 균등론과 금반언에 대한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판례 및<br>이에 따른 특허청구범위의 해석<br>심사기준으로 본 한일심사실무의 차이 및 한중일<br>특허제도의 비교 | 관련<br>전문가 |
| | 특허정정심판<br>기업 맞춤형 솔루션 | 기업 |
| 국제 | 국제계약상의 영문표현 연구<br>대리인 특권(Attorney Privilege) 국제논의현황 및<br>의견수렴 | 변호사<br>공무원 |
| | 일본특허동향: 진보성 판단을 중심으로<br>국제계약상의 영문표현연구 | 변리사<br>변호사 |
| | 영문계약작성법 | 변호사 |
| | 글로벌 한인 지식재산 네트워크 현황 | 변호사 |
| | 적정 심판비용액 현실화 관련 안내 및 의견수렴<br>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 사항<br>최근 미국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본 기업체 대응방안 | 공무원<br>등 |
| 라이선스<br>분쟁분과 | 코오롱의 특허소송(국내)케이스 | |
| | LS전선의 특허분쟁사례 | |
| | KT 분쟁사례 | |
| | 특허침해 가처분 소송<br>기업에서의 전략적 IP분쟁대응 | 변호사<br>기업 |
| IP경영<br>분과 | 복수주체 침해관련<br>발명진흥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br>기업의 IP조직 연구 | 변호사<br>등 |
| | 강한특허 만들기<br>IP Practice Academy 관련 | |
| |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분쟁동향 및 최근판례<br>바람직한 특허 실시보상 기준 마련에 관하여 | |
| |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전략 | |
| | 특허품질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관련 | 공무원 |

| | | |
|---|---|---|
| | 기업에서의 전략적 IP분쟁 대응 | 기업 |
| 상표디자인분과 | 유럽상표제도 관련 특이점 및 사례 | 기업<br>변리사 |
| | KGC 상표로열티 정책<br>미국 상표출원시 주의점 및 사례를 통한 OA 대응방안<br>상표검색 프로그램 '인투마크'안내 | 기업<br>변호사 |
| | 저작권 관련 사례<br>부정경쟁방지법 최근 이슈사항<br>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최근 기업사례 | 변호사<br>변리사<br>기업 |
| | 기어의 상표 및 디자인 사례<br>비아그라 알약사건과 상표의 식별력<br>IP-Desk,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 IP소송보험에 대한 안내 및 의견수렴 | 변리사<br>공무원<br>등 |
| 특허정보분과 | 효과적인 특허정보 및 선행조사 방법<br>심사관용 심사진행정보조회서비스 시연 및 향후 대민공개 관련 | 공무원<br>등 |
| | 특허 무효화를 위한 검색 전략 | |
| | 특허정보 보급관련 의견 수렴<br>CPC 분류 소개 및 진행현황<br>GD관련 산업계 의견수렴 | 공무원<br>기업 |

나) 기업실무자 대상 강의[150]

| No. | 과정명 | 교육강사 | 주요내용 | 인원 |
|---|---|---|---|---|
| 1 | 제3차 IP Practice Academy | 변리사, 기업 | 상표분쟁 최신사례 분석 및 한국기업의 대응 전략<br>기업의 상표·브랜드 노하우<br>기업의 상표사례 | 30명 |
| 2 | 제4차 IP Practice Academy | 기업 |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br>사례로 알아보는 경영-특허전담자의 눈으로 본 특허개발, 활용, 관리 | 30명 |
| 3 | 제5차 IP Practice Academy | 기업 | In-house 명세서 Drafting<br>특허무효소송 사례를 통해 본 강한 특허 making 방법 | 30명 |
| 4 | 제6차 IP Practice Academy | 기업 | 기술경영에 공헌하는 Patent Map 작성방법<br>연구개발과의 Synergy를 위한 Patent Watch | 30명 |
| 5 | 제7차 IP Practice Academy | 기업 | 특허협상전략실무<br>특허분쟁대응실무 | 30명 |

다) 기타

| No. | 과정명 | 교육 강사 | 주요내용 |
|---|---|---|---|
| 1 | CIPO 조찬세미나 | 기업 | IP를 활용한 기업경영 전략 |
| | | |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IP패러다임 Shift전략 |
| | | | 국제 상표동향 및 Global Network를 통한 B2B기업의 상표경영 |
| | | | 볼보그룹의 IP혁신 전략 |
| | | | IP를 활용한 기업경영 전략 |
| 2 | 특허심판원 -KINPA 정기교류회 | | 특허심판원 심판사례 발표<br>KINPA회원사 지재권 분쟁사례 발표<br>상호토론 및 질의 |
| 3 | 2014 한국지식재산협회 Annual Conference | 기업 변호사 공무원 판사 | 주요 5개국 특허청의 특허정보시스템 공유<br>주요 5개국 특허청의 특허조화<br>주요 5개국 특허청의 심사협업 및 우선심사제도<br>미국 무효심판제도 IPR<br>부정경쟁행위(상품형태모방)<br>최근 특허심판 판례 동향 |

5.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1) 개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2009년 2월 설립된 기관으로 기업의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정규프로그램은 없지만 수시로 관련 컨퍼런스 및 세미나를 열어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교육내용(2014년도)

가) 컨퍼런스

| No. | 과정명 | 교육 | 주요내용 | 인원 |
|---|---|---|---|---|

150) http://www.kinpa.or.kr/U_event.do?method=event01G, 2014.10.30. 최종방문

| | | 강사 | | |
|---|---|---|---|---|
| 1 | 국제지식재산권 & 산업보안 컨퍼런스 | 교수, 변호사, 검사, 기업임원 | 산업보안에 관한 한·중·일 전문가 발표·토론을 통해 각 국가별 지재권 정책동향 파악 및 공동 발전·협력방안 도출 | 600명 |
| 2 | 특허전쟁2014 | 특허청 공무원, 기업임원, 변호사, 그 외 전문가 | 특허경영전략 및 지재권분쟁사례, 국내외 특허침해대응정보 제공 등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경쟁력 제고 | 290명 |

나) 세미나

| No. | 과정명 | 교육 강사 | 주요내용 | 인원 |
|---|---|---|---|---|
| 1 | 기업 지재권 분쟁대응 역량제고 세미나 | | 지재권 분쟁 대응 우수사례를 통해 분쟁대응 역량 강화 | 100명 |
| 2 | 미 특허심사관, 변호사와 함께하는 지재권 분쟁대응전략 세미나 | | 미국내 특허분쟁, 지재권 실무 동향 및 국내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부지원 정책 안내 | 100명 |
| 3 | 기업지재권 분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 순회 세미나 | | 부산테크노파크、인천상공회의소、대전테크노파크、성남산업진흥재단、시흥비즈니스센터 등 3월~8월에 실시된 순회세미나 | 170명 |
| 4 | 해외 전시회 참여 기업 대상 IP보호 설명회 | | 각 해외 국가별 진출 예정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상 지재권분쟁 대응 및 정부지원 정책 안내 | 300명 |
| 5 | 대덕IP 창립포럼 | 특허청 공무원, 특허법원 판사, 교수, 기업임원 | IP수익자산화를 위한 법제개편방향<br>NPEs의 권리행사에 대한 침해금지청구 가부<br>필수표준특허에 의한 Hold-Up을 야기하는 권리행사의 침해금지청구 가부<br>제품기여도가 적은 특허에 대한 침해금지청구의 가부<br>특허권의 행사 및 경쟁법 | 50명 |
| 6 | 아이디어 | 특허청 | 공모전 아이디어보호 가이드라인 설명 | 100 |

| | | | | |
|---|---|---|---|---|
| | 창출·보호·활용 시책설명회 | 공무원 | 아이디어 창출 및 활용 시책 설명<br>우리 기업의 지재권보호를 위한 정책 소개 | 명 |

6. 사설기관 - WIPS IP교육센터

1) 개요

윕스 IP교육센터는 지식재산서비스업 종사자, R&D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분야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지식재산 전문인재 양성기관이다. 2007년부터 실무기반의 교육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식재산교육 중에서도 특히 특허정보조사와 특허정보분석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151]

2) 교육과정[152]

| 조사과정 | 분석과정 | 침해과정 |
|---|---|---|
| R&D연구원을 위한 특허정보검색실무 | 빠른 연구기초자료 생성을 위한 특허데이터 분석 | 특허성판단 |
| R&D연구원을 위한 특허선행기술조사 | 효율적인 R&D 수행을 위한 특허정보분석실무 | 기업 IP담당자를 위한 특허분쟁대응실무 |
| 브랜드/디자인 실무전문가양성과정 | 유망기술 발굴을 위한 논문 및 특허분석 | |

## III. 분석 및 시사점

1. 기업사내교육

앞서 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응답기업 708개 기업 중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식재산교육을 실시하거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회답한 기업은 92개에 달한다.[153] 그러나 기업들은 내부 교육현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사내교육의 특징 등을 분석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된다. 다만 신문기사나 광보자료를 참조하면 대기업의 경우는 종업원이 국내외 판례 및 분쟁 사례를 익혀 실무에서 바로 응용하고, 특정 분야의 이슈를 분석하여 관련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151) http://edu.wips.co.kr/introduce/Sub01.jsp
152) WIPS 홈페이지, http://edu.wips.co.kr/process/Schedule.jsp#
153)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2013, p.62.

의 함양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위탁교육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는 집합교육의 경우 특허법 · 제도, 정보검색, 출원, 분쟁 등에 관한 기본적 과목을 수일에 걸쳐 심도 있게 교육하고 있으며, 이러닝의 경우 법·제도, 정보검색 및 분석, 출원 및 명세서 작성, 소송 및 분쟁, 관리 및 활용, 글로벌 IP 및 아이디어 창출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과목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닝 교육의 경우 테스트와 같은 교육성과 측정을 거치지 않고도 교육과정의 60 또는 80%를 수강한 경우 수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과목이 많아 교육과정에서 수강생의 집중도가 저하되고 교육효과를 측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상당히 실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해외 지식재산 동향에 대한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특정 기업에서 원하는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온디멘드 형식의 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현장 친화적 교육이 될 수 있다. 다만 각 교육과정이 강사가 자체제작한 교재에 의존하고 있는데,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한편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의 집합교육과정에는 지역적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지역지식재산센터의 교육과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동 센터는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방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의 기초, 심화교육과 지식재산을 이용한 경영 및 활용전략에 관한 과정을 제공한다. 다만 전국적인 범위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인 것을 고려하면 교육과정의 수가 다소 적은 것으로 보이고, 방대한 교육내용에 비해 교육시간이 2~3시간으로 짧은 것을 감안하면 충분한 교육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다. 따라서 과정별로 단발성 강의로 끝낼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시리즈화(Series)하여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는 특허분쟁, 산업보안 등 특정한 주제와 관련하여 국제적 시각을 키울 수 있는 컨퍼런스를 개최했고, 지재권 분쟁대응전략 및 국내외실무동향 등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사설기관인 윕스IP교육센터에서는 특허정보조사 및 분석에 비중을 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는데, 상기 위탁교육기관에서 지식재산의 권리화, 실무동향, 분쟁대응전략, 경영전략 등의 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 제3절 일본 기업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현황

## I. 기업의 지재인재육성에 관한 정책 및 제도

### 1. 개요

일본의 국가지식재산전략은 2002년 당시 국무총리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언급한 시책방침연설이 계기가 되어 논의가 시작되었다. 일본은 범부처적으로 지식재산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2002년 2월에 지적재산 전략회의를 창설하고, 7월에 지적재산전략대강(知的財産戰略大綱)을 수립하였으며, 2002년 12월에는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지적재산기본법은 교육의 진흥 및 인재의 양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1조 및 제22조)

또한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집중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각에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동법 제24조). 이에 근거하여 2003년 3월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출범하였고, 2006년 「지적재산인재육성총합전략」, 2012년 「지재인재육성플랜」을 수립하여 정부차원에서 지식재산인재를 육성하고 있으며, 해마다 지식재산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계층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의 시행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154]

한편 지식재산 추진계획에서 지식재산 통계의 개발 및 관리를 강조하였는데, '지식재산 관련 통계의 정비' 계획에 따라서 2002년부터 지적재산활동조사(知的財産活動調査)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지식재산활동의 현황을 정량적으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정책을 기획, 입안함에 있어서 유효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155]

### 2. 인재양성 및 공급에 관한 정책

기업 인재와 관련한 정책은 기업 내 인재의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공하거나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제도, 이미 양성된 인재를 공급하는 방법 등 여러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특허청 및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에서는 세미나 또는 강연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기업 인재육성을 실시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 변호사나 변리사 등 외부인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등 지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재활동에 부족한 인재를 제공하고 정보의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지재지원인재의 질을 유지·향상하고자 특허청 및 INPIT, 경제산업국에서는 지재지원인재의 육성을 위해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156]

---

154) 知的財産戰略本部, 知的財産推進計劃2014, 2014.7. 등

155) 특허청, 기업의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2006, 15쪽.

156) 總務部普及支援課, 特許庁が提供する知財支援人材とその育成について（中小企業・地域知財支援人材関連）, 平成 26.5.30., http://www.jpo.go.jp/shiryou/toushin/kenkyukai/pdf/chusho_chizai_shien_haifu02/shiryou03.pdf, 2014.10.12. 최종방문.

3. 인재양성을 위한 추진기구 운영

2006년 지적재산인재육성종합전략에 따라 지식재산인재육성추진협의회가 창설되었고, 각 참가기관의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 인재육성에 관한 연구성과의 보급 및 홍보, 정책 제언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157] 동 협의회의 참여기관은 지식재산교육협회, 일본변리사회, 일본지재학회, 발명추진협회, 일본지적재산협회, 일본변호사연합회,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등 7개로, 각각의 기관에서 지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158]

한편 지식재산의 권리화에 관한 지식을 주로 교육했던 것에서 벗어나 사업중심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여러 분야의 경영자들을 참여토록 하여 경영적, 전략적 관점에서 인재양성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워킹그룹 등을 운영하고 있다.

## II. 기업의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현황

### 1. 대기업의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현황

#### 가. 후지쯔 그룹

후지쯔(富士通) 그룹에서는 지식재산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인재의 육성을 중요시하고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이해하여 사업전략, 연구개발전략, 기본전략과 지식재산전략을 일체로 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종업원의 개별 커리어에 대응하는 지식재산의 육성체계를 정비하고 다수의 교육프로그램을 보유하여 전략적 인재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수강자의 상황을 고려한 선택에 의해 이러닝과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159]

#### 나. 캐논

(1) 교육현황

캐논에서는 지적재산권 기술센터에서 인재육성을 총괄하고 있으며 각 지적재산부서에서 교육·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지적재산교육과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지식재산교육과 지적재산권 법무본부 전체의 인재육성, 전사적 연구개발에 대한 지식재산교

157) 知的財産による競爭力强化·國際標準化專門調査會, 知財人材育成プラン、2012.1.20., 27頁.
158) http://www.jpo.go.jp/torikumi/hiroba/pdf/web_tokkyo/20_3.pdf, 2014.10.12. 최종방문.
159) http://img.jp.fujitsu.com/downloads/jp/jip/ipreport/ipreport2013j.pdf#search='%E5%AF%8C%E5%A3%AB%E9%80%9A+%E7%9F%A5%E8%B2%A1%E4%BA%BA%E6%9D%90+%E8%82%B2%E6%88%90', 2014.10.30.최종방문.

육과 계몽활동, 캐논그룹전체의 지식재산인재육성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지재교육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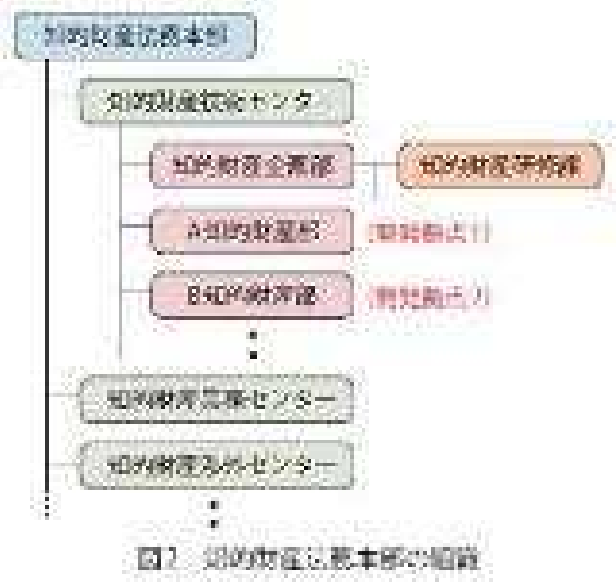

캐논에서의 교육과정은 총 3단계로 나뉘어 있다. 1단계는 입사 1년차, 2단계는 입사 2~5년차, 3단계는 입사 6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2) 교육과정[161]

가) 1단계 교육활동

본 과정에서는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연습을 통해 지식재산실무를 이해하고 기초적인 능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지식재산실무교육, 제품분석교육거점기술연수 등의 연수 외에 심사기준의 그룹학습과 신입사원 미팅이 포함되어 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적재산법무본부장, 부본부장, 지적재산권기술센터소장 등이 교대로 강연한다.

교육과정은 기초연수, 지적재산실무연수(출원과정검토, OA연습, 명세서작성연습), 제품분석연수, 거점기술연수, 신입직원미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2단계 교육활동

본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동료에게 OJT지도를 받아 지식재산의 다양한 업무에 관한 지식·기술·기능·태도 등을 익혀 혼자서 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단계에서는 OJT에서 지도를 받는 다른 내외부의 각

160) 木下達也, キヤノンにおける知財人材育成, tokugikon no.268(2013.1.28..), 18-19頁.
161) 木下達也, キヤノンにおける知財人材育成, tokugikon no.268(2013.1.28..), 19-20頁.

종 연수 및 그룹활동에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지식·기술을 배우도록 유도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 동료에 의한 OJT지도, 각종 그룹 활동, 외국출원보고회, 사내외 각종연수참가, 전체 드래프트 출원활동, 타겟 권리화 활동, 글로벌인재육성(영문명세서작성 워킹그룹, 타겟 미팅) 등이 있다.

다) 3단계 교육활동

본 과정에서는 경력을 쌓아 리더 클래스로 성장시키는 단계로 보고 자신의 일을 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과 업무과제를 찾아내고 다른 사람과 함께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획력·창의력·실행력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후배를 지도하는 능력도 육성하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는 외부위원회 등에 참석하기 위한 넓은 시야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연마하도록 하고 있으며, 판단력, 리더십 등을 습득하기 위해 외부단체, 국내외 지사에 파견하며 권리화부서 및 라이선스 소송, 교섭 부서에서 다양한 지식과 사고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부위원회로서는 일본지적재산협회(JIPA), (사)비즈니스기기·정보시스템산업협회(JBMIA), (사)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 기업연구회(BRI), (재)광산업기술진흥협회(OITDA) 등을 들 수 있으며 외부 단체로서 내각관방, 외무성, 지적재산연구소, 특허청 등에서도 인재를 파견하고 있다.

2. 지식재산관련 기관의 기업 실무인력 관련 교육현황

가. 지적재산연구소

(1) 개요

지적재산연구소는 지식재산에 관한 국내외의 제문제에 대한 조사 · 연구 및 정보의 수집 · 제공 및 이에 필요한 시스템의 연구 · 개발 등을 실시하여 지식재산권 제도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그 보급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일본 산업경제의 건전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 매년 IIP지재학교(知財塾)을 개설하여 기업, 변호사, 변리사 및 관련 기관에서 인재를 모집하여 육성하고 있으며,[162] 국내외 지식재산권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세미나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정보의 보급에 공헌하고 있다.[163]

(2) 커리큘럼

162) http://www.iip.or.jp/gaiyo/objectives.html, 2014.10.8. 최종방문.
163) http://www.iip.or.jp/seminar/index2.html, 2014.10.8. 최종방문.

가) IIP지재학교(IIP 知財塾)

IIP 지재학교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변호사, 변리사, 기업의 지식재산실무자로, 지식재산권 제도·운용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원하는 사람, 혹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전문가로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행정관으로 특허심사·심판관, 옵저버로 현역 재판관 등의 참여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지재인재에 의한 그룹 토의 및 토론을 실시하고 있다.[164]

나) 세미나 및 심포지엄

세미나로는 지재연세미나, 지적재산세미나 및 국제세미나가 있다. 세미나 및 심포지엄의 수강자에는 특별한 자격조건이 없다.[165]

(3) 과목

| 커리큘럼 | 과목명 | | 강사 |
|---|---|---|---|
| IIP 지재학교 |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영업비밀의 개시와 보호 | | 변호사 |
| | 신흥국으로 기술이전 시 사전준비 | | 대학교수 |
| | 사업참가 등에 있어서 지재리스크의 예측성 제고 | | 행정관 |
| | 제조유통에서 공급자의 지적재산의 활용에 있어서 – 기술의 코모디(コモディ)화라는 불가피한 운명에서 | | 변호사 |
| 지재연 세미나 | 러시아 지적재산제도의 개요 및 운영현황 | | 변리사 |
| | 지적재산권소송에 있어서 소송진행의 실제 – 중간판결의 이용·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각하의 운용을 포함하여 | | 변호사 |
| | 인도의 지재권 라이선스와 영업비밀보호의 실태 | | 변리사 |
| 지적재산 세미나 | 특허청위탁 평성24년 도특별연구 원중간보고회 | 특허제도를 보완하는 바람직한 특허매절(買取り) 제도의 연구 | 지적재산 연구소 연구원 |
| | | 지역브랜드 육성에 있어서 상표법의 존재방식에 관한 고찰 | |
| | | 다양화되는 침해형태에 대응하는 해결법리의 구축을 위한 고찰 | |

164) http://www.iip.or.jp/juku/pdf/bosyu_info.pdf, 2014.10.8. 최종방문.
165) 一般財団法人 知的財産研究所, 我が国の知財人材育成制度の現状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平成２５年２月, 9頁.

| | | | |
|---|---|---|---|
| | | 지적재산담보의 준거법에 관한 조사 · 연구 | |
| | | 국제사회에서 근대일본의 산업재산정책-파리조약가입과 일신(日新) · 러일전쟁 | |
| | 특허청위탁 평성24년 도초빙연구원연구성과 보고회 | 상표는 왜 보호되어야 하는가? 유럽과 일본에 있어서 상표의 기능문제의 비교연구 | 지적재산 연구소 연구원 |
| | | 일본에서 특허활용 및 산업계에의 기술이전의 촉진의 경험과 일본과 베트남의 대학 및 산업계에 있어서 특허활용을 위한 적절한 조직의 정비 | |
| | 특허청위탁 평성23년 도산업재산 권전문가파 견연구성과 보고회 | 미국상표법에서 혼동개념의 확장에 대해 | |
| 국제 세미나 | 미국의 특허소송에서 손해배상 | | 변호사 |
| | 미국특허법의 현황 및 문제 - 작년9월 개정된 특허법: AIA(America Invents Act)를 중심으로 | | 대학교수 |
| 심포지엄 | 표준규격필수특허의 권리행사에 관한 심포지엄 | | 대학교수 등 |

<지적재산연구소 커리큘럼의 과목>[166]

나. 일본지재학회

(1) 개요

일본지재학회는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연구자나 이를 사용하는 기업의 경영자가 중심이 되어 이들의 요구를 지향하는 지식재산학을 진흥하기 위해 2002년 10월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과학기술 및 콘텐츠에 대한 창작, 보호 및 활용에 대해 법률, 경제, 경영, 국제관계 등 학제영역을 중심으로 연구활동을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67] 주요 활동으로는 학술연구발표대회 개최, 학술지 발행, 국내 및 국제 심포지엄 개최, 분과회를 통한 연구활동의 촉진, 연구지원, 학술장려 등을 통한 인재육성, 정책제언 등이 있으며,[168] 기업의 지식재산 관계자, 대학 관계자, 학생, 중고교 교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다.[169]

166) 2012.12.27.현재. 一般財団法人 知的財産研究所, 我が国の知財人材育成制度の現状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平成２５年２月, 10-11頁.
167) https://www.ipaj.org/aboutus/index.html, 2014.10.8. 최종방문
168) https://www.ipaj.org/aboutus/mokuteki.html, 2014.10.9. 최종방문
169) 2012.12.27.현재. 一般財団法人 知的財産研究所, 我が国の知財人材育成制度の現状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平成２５年２月, 11頁.

(2) 커리큘럼

가) 학술연구발표회

일본지재학회는 매년 학술연구발표회를 개최하여 지식재산 종사자의 연구 발표 및 최신 IP 주제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170]

나) 심포지엄

심포지엄에서는 일본 지재학회가 주목하는 분야에 대해 강사를 초청하여 강연과 패널 토론을 실시하고 있다. 1년에 2회 실시하며, 춘계심포지엄에서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실무와 학계의 접점이 되는 학제영역의 주제를 선정하고, 추계심포지엄에서는 학술연구발표회와 연계하여 지식재산전략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를 초빙하며, 기타 협력단체와 함께 인재육성 및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71]

다) 분과회

일본지재학회에는 주제별로 연구를 수행하는 분과회가 있다. 각 분과 연구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함과 동시에 학술연구발표회에서 분과회 세션도 기획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회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비회원도 참여할 수 있다.[172]

이 중 지재인재육성연구분과회와 지재교육분과회 등에서 지재교육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지재인재육성연구분과회는 기업과 특허사무소를 비롯한 광의의 지식재산 실무인력의 육성에 관한 학습과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173] 지재교육분과회에서는 초, 중등 교육단계를 포함하여 지재교육의 보급 추진을 목적으로 기술자교육, 산업교육, 기업교육, 교원양성 등 지재교육 시스템의 전반적인 자원이 될 수 있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174]

(3) 과목

| 커리큘럼 | 과목 | 강사 |
|---|---|---|

170) 2012.12.27.현재. 一般財団法人 知的財産研究所, 我が国の知財人材育成制度の現状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平成２５年２月, 12頁.
171) 2012.12.27.현재. 一般財団法人 知的財産研究所, 我が国の知財人材育成制度の現状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平成２５年２月, 12頁.
172) https://www.ipaj.org/bunkakai/, 2014.10.9. 최종방문.
173) https://www.ipaj.org/bunkakai/jinzai_ikusei/index.html, 2014.10.9. 최종방문.
174) https://www.ipaj.org/bunkakai/chizai_kyoiku/index.html, 2014.10.9. 최종방문.

| | | | |
|---|---|---|---|
| 학술 연구 발표회 | 일본 변리사회 협찬세션 | 삼극심사의 지원 요건에 관한 조사연구 | 변리사 |
| | | 더블트랙의 조사연구 | 변리사 |
| | 분과회 세션 | 지재인재육성연구분과회세션「“성장”의 측면에서 본 지재인재육성-평성24년춘계심포지움의 후속논의」 | 대학교수 등 |
| | | 생명과학분과회세션「바이오지적재산의 조류-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대학교수 변리사 등 |
| | | 산학협력혁신분과세션「산학협력의 새로운 평가지표에 대한 고찰」 | TLO직원 등 |
| | | 지재교육분과회세션「라운드테이블“지재교육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 대학교수 등 |
| | | 지재회계 · 경영분과회세션「캐릭터기축의 새로운 전개-빅데이터활용의 공과」 | 대학교수 등 |
| | | 지재학세미나「지적재산혁신연구의 전망- 향후 10년에 대해」 | 변리사 등 |
| | | 콘텐츠 · 매니지먼트 분과회 세션「리치사이트 및 스토리지사이트상 인터넷지적재산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보고서」 | 기업임원 등 |
| | | 디자인 · 브랜드전략분과회세션「글로벌경쟁과 디자인 · 브랜드전략」 | 대학교수 등 |
| | | 비즈니스 및 지적자산 · 지재법연구분과회세션「모방 및 창조의 관련성과 일본기업의 지적재산전략 · 경영전략의 기본방향」 | 대학교수 등 |
| | 기획세션 | 문과 · 이과의 대학의 전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재교육시스템의 고찰 | 기업등 |
| | | 아시아 특허정보의 최신동향 | 단체 |
| | | 중국의 지적재산전략과 발전예측, 일본기업의 대응 | 중국 변리사 등 |
| | | 멕시코의 지적재산실무현황 및 과제 | 변호사 |
| | | 학계에서 의료시즈의 실용화체계의 지적재산전략 및 전술-의료혁신5개년계획에서 학계의 역할 | 행정관 등 |
| | | 지적재산을 이용한 벤처기업육성 | 대학교수 등 |
| | 심포지엄 | 여러 사람이 관여하는 특허권의 권리행사상 문제 | 재판소 소장 |
| | | 도레이(東レ)의 연구 · 기술개발전략 및 지적재산전략 | 기업임원 |
| 심포지엄 | | 한중일 3단체 제휴기념 심포지엄「일중한의 지적재산제도의 현황과 미래」 | 행정관 등 |
| | | 일본의 미래를 짊어질 지재인재육성 | 행정관 |

| | | | |
|---|---|---|---|
| 분과회 | 지재인재 육성연구 분과회 | 지재매니지먼트인재의 차세대모델-출원인재에서 활용인재로, 국제인재에서 글로벌인재로 | 대학교수 등 |
| | 생명과학 분과회 | 바이오지재의 조류-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 변리사등 |
| | 지재 회계·경영 분과회 | 콘텐츠제작 금융 | 기업 |
| | 지재교육 분과회 | 일중 지재교육 국제 워크샵 개최 관련 | 중국 대학교수 |
| | 지재학 세미나 | 재생의료산업의 응용가능성 | 대학교수 |
| | 비즈니스 및 지재자산·지재법 분과회 | 상품/서비스의 변천에서 본 혁신 | 변리사 |
| | 콘텐츠·매니지먼트 분과회 | Linked Open Data(LOD)의 기본개념 및 문화·예술정보의 활용을 위해 | 예술정보 연구원 |
| | 3D 콘텐츠 분과회 | 차세대콘텐츠와 지적재산 | 학회이사 |
| | 디자인·브랜드 전략 분과회 | 이노베이터의 지적재산 매니지먼트 | 대학교수 |

<일본지재학회 커리큘럼의 과목>[175]

다. 일본지적재산협회 (JIPA)의 커리큘럼과 교육내용

일본지적재산협회는 지적재산에 관한 제도의 적정한 활용 및 개선을 도모하고, 건전한 기술의 발전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176] 동 협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지재기술직무연수, 기술자대상연수, 총합연수, 글로벌연수, 경영감각인재육성연수, 상시연수 등 다양한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177]

(1) 지재기술직원연수(기초~중견실무가, 상급자~전문가로 구분)

지재기술직무연수는 지재전문가로서의 지식, 기술을 제고하여 지재전문가를 육성

175) 2012.12.27.현재. 一般財団法人 知的財産研究所, 我が国の知財人材育成制度の現状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平成２５年２月, 14-15頁.
176) http://www.jipa.or.jp/syoukai/gaiyou.html, 2014.10.9. 최종방문
177) http://www.jipa.or.jp/kensyu/seminar/annai/teirei/pdf/all.pdf, 2014.10.9. 최종방문

하기위한 연수이다. 초심자~중견실무가에게는 법률의 필요지식을 학습케하고 상급자~전문가에게는 법률해석, 심판결 동향 등을 연구하는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178]

동 연수과정에는 「입문코스」, 「초급코스」, 「중급코스군」, 「상급코스군」, 「연구코스군」이 개설되어 있다.[179]

A) 입문코스[180]

입문코스는 지식재산부문 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기술부문을 포함하는 부문의 종사자가 주요한 지식재산권의 법제도를 광범위하게 이해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기업의 일상업무 중 지식재산권제도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하기 위한 것이다.[181]

| 과목명(시수) | 내용 | 강사 |
|---|---|---|
| 기업활동과 지적재산권 제도(3시간) | 지적재산에 관한 여러 제도가 기업에 어떻게 관련되고, 기업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제도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제도를 구체적인 기업활동과 관련시켜 강의함 | 기업 |
| 특허·실용신안제도 (7.5시간) | 자사권리취득의 시작인 일상업무 안에서 발명·고안의 인식과 신고방법을 습득하기 위해 특허법·실용신안법의 체계 중 특히 출원·심사절차의 개요를 구체적 발명을 예로 들어 강의함 | 변리사 |
| 특허정보 및 특허조사 (1.5시간) | 특허조사의 중요성, 각 조사방법, 특허정보의 활용방법에 대해 강의함 | 기업 |
| 의장제도 (3시간) | 디자인권을 취득, 행사에 이르기 까지 일련의 기초지식을 기업실무에 입각해서 알기 쉽게 강의함 | 기업 |
| 상표제도 (3시간) | 상표권에 대한 권리취득에서 행사에 이르는 일련의 기초지식을 기업실무에 맞체 알기 쉽게 강의함. | 기업 |
| 지적재산계약개요 (3시간) | 비밀유지계약, 공동연구계약을 중심으로 지적재산에 관려된 계약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예를 토대로 강의함 | 기업 |
| 외국특허제 |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미국을 중심으로 한 | 기업 |

178) 日本知的財産協會, 2014年度 研修案內, 2014.3., 1頁.
179) 日本知的財産協會, 2014年度 研修案內, 2014.3., 3頁.
180) 日本知的財産協會, 2014年度 研修案內, 2014.3., 10-12頁.
181) 日本知的財産協會, 2014年度 研修案內, 2014.3., 10頁.

| | | |
|---|---|---|
| 도(3시간) | 외국특허제도의 골자를 강의함 | |
| 저작권제도 (3시간) | 저작권법의 개요에 대해 기업활동의 예와 관련하여 강의함 | 기업 |
| 부정경쟁방지법·독점금지법(3시간) |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등)·독점금지법의 개요, 자사권리의 보호 및 타사 권리에 대한 대응의 사례를 바탕으로 강의함 | 기업 |

B) 초급코스[182]

초급코스는 입문코스를 수료한 자 및 그에 준하는 지식을 보유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부문 종사자 뿐 아니라 기술부문을 포함한 기업 내 각 부문의 종사자들이 지식재산에 수반되는 기초적인 실무 포인트 및 관련 법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적재산권의 본질,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체계, 취득방법, 유의점, 활용방안 및 관리실무 포인트, 또는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기초실무에 대해 강사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례를 토대로 강의한다.[183]

| 과목명(시수) | 내용 | 강사 |
|---|---|---|
|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취득과 활용(6시간) | 발명의 발굴·창조에서 출원, 심사, 심판, 권리화 과정에서 대응방법 및 유의점을 명세서 등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하여 강의함 | 변리사 |
| 의장의 권리취득과 활용(3시간) | 의장의 발굴·창조에서 출원, 심사, 심판, 권리화 과정에서 대응방법과 유의점을 구체적 사례를 포함하여 강의함 | 기업 |
| 상표의 권리취득과 활용(3시간) | 상표의 출원, 심사, 심판, 권리화 과정에서 대응방법이나 유의점을 구체적 사례를 포함하여 강의함 | 기업 |
| 외국특허의 취득 및 활용(6시간) | 기업이 외국에서 특허를 취득할 필요성, 각국의 특허취득을 위한 제도의 구조(외국특허출원절차의 원칙, 파리조약등에 기초한 우선권제도, 유럽특허조약(EPC), 특허협력조약(PCT) 및 미국특허제도의 특수성), 판례를 고려한 외국 특허출원용 명세서작성시 유의사항, 외국특허취득시 필요한 기업 내 업무의 골자를 강의함 | 변리사 |
| 법령입문 (3시간) | 법령구조, 읽는 법, 용어해설 등 초심자에 맞는 강의 | 변호사 |

182) 日本知的財産協會, 2014年度 研修案內, 2014.3., 13-14頁.
183) 日本知的財産協會, 2014年度 研修案內, 2014.3., 13頁.

| | | |
|---|---|---|
|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3시간) | 재판, 법원의 절차, 조직, 특히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에 관련된 신판 및 소송의 종류 및 심결취소소송, 침해소송의 진행방식에 대해 강의함 | 변호사 |
| 기업의 지적재산관리 (3시간) | 특허포트폴리오 구축(R&D프로젝트참여, 발명평가, 특허출원심사청구, 외국출원, 거절에 대한 대응, 권리유지 등), 특허클리어런스(타사특허조사,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지 검토, 무효자료조사), 라이선스·아웃, 경조장대응, 라이선스·인 등, 기업실무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개요를 강의함 | 기업 |
| 특허정보 및 특허조사 (3시간) | 특허조사방법 및 특허정보의 활용방법 강의, 특허조사의 기본지식으로 특허분류, 각국 특허청 데이터베이스의 사용방법 및 얻은 정보를 분석·정리하는 방법(특허맵) 등 강의 | 기업 |

C) 중급코스군[184]

중급코스군은 일류 변호사, 변리사, 대학교수, 기업에 소속된 전문가를 강사로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법의 각 코스 외에, 계약,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등 관련법제의 각 코스, 및 특허정보, 명세서 작성방법 코스로 구성된다. 이 코스 군은 입문코스 및 중급코스를 수료하여 기초지식을 습득한 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중견 실무자에게 필수적인 응용지식과 실무기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85]

ⅰ) 특허법·실용신안법

| 과목명 | 내용 | 강사 |
|---|---|---|
| 지적입국정책 및 지식재산권 | 강사저서 “실천특허법” 참고 | 변리사 |
| 발명이란 무엇인가 | | |
|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과 특허요건1 | | |
| 특허요건2 | | |
| 출원절차 실제 | | |
| 심판·심결취소소송 | | |
| 직무발명과 종업원에의 보상 | | |
| 특허권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 | |

184) 日本知的財産協會, 2014年度 研修案內, 2014.3., 15-29頁.
185) 日本知的財産協會, 2014年度 研修案內, 2014.3., 15頁.

| | | |
|---|---|---|
| 특허침해소송 | | |

ii) 의장법

| 과목명 | 내용 | 강사 |
|---|---|---|
| 의장법 | 출원절차, 등록요건, 심사, 심판, 권리침해(의장의 유사성), 소송 등 | 변리사 |
| 의장법 및 그 외 법률과의 관계 | 의장법과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등 그 외의 법률과의 관계 | |
| 외국의장제도 | 각국 의장제도의 특징, 유럽공동체의장규칙(OHIM), 의장의 국제등록제도(WIPO) 등 | |

iii) 상표법

| 과목명 | 내용 | 강사 |
|---|---|---|
| 상표제도·상표실무의 개설 | 상표법의 기초를 이해한 상표담당자가 실제로 상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무에 직결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변리사 |
| 등록요건(식별력) | | |
| 등록요건 | | |
| 상표의 유사성 | | |
| 상표조사·출원 실무 | | |
| 중간절차실무(의견서 등 사정계) | | |
| 이의·심판 등 실무(당사자계) | | |
| 상표권침해사건 실무 | | |

iv) 계약의 기초 및 실무

| 과목명 | 내용 | 강사 |
|---|---|---|
| 계약의 기초지식 | 계약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민법에 대해 강의함. 계약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계약법의 기본지식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강의함 | 변리사 |
| 라이선스 계약실무 | 기업에서 라이선스계약이행에 수반하는 업무에 댛 폭넓은 강의를 제공함 | 기업 |
| 각종계약 실무 | 비밀유지계약, 공동개발계약, 공동출원계약, 라이선스계약 등 기술관련 계약에 대해 작성전 고려사항, 유의점 등 실무적인 관점에서 사례와 함께 강의함. 또한 영문계약에 대해 실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적 구성과 읽는 방법을 강의함 | 기업 |

v) 민법개요

| 과목명 | 내용 | 강사 |
|---|---|---|
| 일상생활과 민법 | 민법(특히 재산법)의 개요에 대해 비전공자가 알기 쉽게 강의함. 교재로는 강사의 저서 我妻榮 · 良永和隆著『民法(第 9 版)』 勁草書房、2013을 사용함. | 변호사 |
| 계약의 성립·효력 | | |
| 매매·물건의 대차 | | |
| 금전의 대차·위임 및 도급 | | |
| 채무의 이행·불이행 | | |
| 채권의 담보 | | |
| 소유권·단체·시효 | | |
| 불법행위 | | |

vi) 민사소송법개요

| 과목명 | 내용 | 강사 |
|---|---|---|
| 민사재판·조정 | 민사소송법 이론의 기초개념과 민사소송실무에 관한 기본문제의 이해를 중심으로 함. 소송의 실무경험이 적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절차의 흐름을 중심으로 한 각 절차의 단계에 포함된 민사소송법의 기본개념 및 기초이론에 대해 강의함. | 대학 교수 |
| 재판소·당사자 | | |
| 소의 제기 | | |
| 증거수집의 절차 | | |
| 쟁점정리의 절차 | | |
| 증인신문·화해절차 | | |
| 공동소송·판결 | | |
| 상소·지재소송의 특징 | | |

vii) 명세서 작성방법

① 화학분야

| 과목명 | 내용 | 강사 |
|---|---|---|
| 특허(화학)명세서 작성방법 | 다양한 판례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명세서 작성에 대해 강의함. 침해소송에 강한 명세서 작성방법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변리사 |
| 심사기준, 판례에서 배우는 특허명세서 작성방법 | 화학분야 전반에 걸친 심사기준의 운용실태 및 구체적인 판례를 통해 명세서 작성상의 포인트를 강의함 | |

② 전기·기계분야

| 과목명 | 내용 | 강사 |
|---|---|---|
| 특허명세서 작성방법(총론) | 특허법에서 특허명세서가 가지는 의의, 특허명세서 작성에 있어서 발명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 및 이를 토대로 한 작성방법 등 문서기술의 이해를 목적으로 함. | 변리사 |
| 특허명세서 작성방법 (그룹토의) | | |
| 특허명세서 작성방법(발표회) | | |
| 특허명세서 작성방법 (전기, 소프트웨어) | 전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제도와의 관계, 실무에 필요한 노하우의 체득 등을 통해 권리행사를 고려한 전략적 특허명세서 작성에 대해 강의함. | |
| 특허명세서 작성방법(기계) | 기계분야 실무사례를 이용하여 권리행사를 고려한 전략적인 특허명세서 작성에 대해 강사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함. | |

viii) 특허정보

① 특허정보와 특허조사(기초)

| 과목명 | 내용 | 강사 |
|---|---|---|
| 특허조사의 목적과 특허정보 | 특허정보의 특징을 감안하여 기업활동에 필요한 특허조사를 설명하고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를 소개함 | 기업 |
| 특허조사·특허분류의 개요 및 법적정보의 입수 | 소급조사에 필요한 특허분류(IPC, FI·F-term, CPC 등)에 대한 개요와 조사도구, 그리고 SDI조사 시 필요한 법적정보 입수방법과 조사도구에 대해 강의함. | 단체 |
| 실무에 필요한 특허조사용어의 해설 및 조사실무의 흐름 | 검색실무에 필요한 용어를 중심으로 내용의 이해와 습득을 목적으로 함. 특허조사실무의 흐름 속에서 조사의 목적별로 필요한 포인트와 유의점을 강의함. | 기업 |
| 특허정보 아웃소싱 매니지먼트 및 정보활용 | 특허조사의 아웃소싱대상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비특허문헌과 함께 분석결과를 효과적으로 사내에 배포하는 방법을 강의함 | 기업 |

② 특허정보와 특허조사(실천)

| 과목명 | 내용 | 강사 |
|---|---|---|
| 특허조사실무 기초 | 특허조사 초심자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의 각 단계에서 수행할 다양한 목적의 특허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 조사실무에 필요한 검색식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항목(키워드, 특허분류 등)의 선정법 및 검색식 작성시 | 기업 |

| | | |
|---|---|---|
| | 유의사항 등을 강의 | |
| 출원전조사 및 권리침해조사 | 출원전 조사에 대한 전제가 되는 신규성·진보성을 고려해가면서, 사례를 들어 조사의 기본적 흐름을 설명함. 침해조사에 대한 저촉판단의 기초상위개념을 포함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을 수행하고, 공보를 읽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강의함. | |
| 특허무효자료 조사 | 특허무효자료조사의 진행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조사지점의 특정이나 이용할 수 있는 자료정리, 설문조사의 흐름 등을 강의함. | |
| 특허정보분석 및 사업에의 공헌 | 특허맵을 통해 지식재산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도록 특허정보분석방법을 성공사례를 통해 강의함 | |

③ 화학분야의 실천적 특허조사

| 과목명 | 내용 | 강사 |
|---|---|---|
| 화학분야조사 특징 일반 | 화학분야의 조사에서 검색식작성의 기본적 접근방법부터 목적으로 하는 결과를 효율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노하우를 실무경험을 기초로 강의함. | 기업 |
| 유기저분자 | 화학물질의 조사에 있어서 화합물명, 구조식 등 여러 관점에서 조사가 필요한 바, 이를 반영하여 검색하는 일반적 방법을 사례를 이용하여 강의함. | |
| 고분자 | 고분자검색에서는 화합물명과 함께 여러 분류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바, 이러한 분류를 이해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본을 강의함. | |
| 바이오 관련검색 | 바이오기술을 검색하는 것은 유전자나 세포 등 천연물의 특허심사를 고려한 적확한 파악이 필요한 바, 배열검색이나 생리기능에 기초하여 비특허문헌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폭넓은 조사가 필요함.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바이오 관련 검색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과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강의함. | |
| 비특허 문헌조사 | 무효화자료조사 등에서 비특허문헌을 조사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각종문헌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 위한 효율적 사용방법을 강의함. | |
| 특허정보 활용의 실제 | 특허정보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활동범위는 해마다 변하고 있으므로 특허정보활동의 다양한 측면을 강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함. | |

④ 특허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

| 과목명 | 내용 | 강사 |
|---|---|---|

| | | |
|---|---|---|
| 지재업무의 정보시스템화 | 지식재산업무의 효율화, 지식재산권정보의 활용 등을 위한 지재업무의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기초지식 및 정보시스템화 실시의 유의점을 강의함. | 기업 |
| 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운용 | 관리시스템의 도입기획부터 시스템 가동 후까지의 유의점에 대해 강의함. | |
| 검색시스템의 도입 및 운용 | 출원시 선행기술조사 뿐만 아니라 자사·타사사업의 현황파악 및 기업전략수립을 위한 매크로 분석 등 검색시스템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현재 사용가능한 상용서비스의 소개 및 이용예, 시스템선정-소개-운용시 유의점에 대해 강의함. | |
| 특허청 차기시스템을 고려한 미래의 지재시스템 | 특허청 업무·시스템 최적화 계획과 글로벌 도시로의 구상 등을 소개하고 지식재산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IT동향의 진전 등을 근거로 정보시스템의 미래상을 고찰 및 해설함. | |

ix) 부정경쟁방지법 및 독점금지법

| 과목명 | 내용 | 강사 |
|---|---|---|
| 부정경쟁방지법론1 | 연혁, 관련법규와의 관계, 구성을 개설한 후, 주지표시의 사용, 저명표시의 모용, 형태모방, 원산지의 부당표시등, 영업비밀을 제외한 부정경쟁행위유형에 대해 강의함. | 기업 |
| 부정경쟁방지법론2 및 영업비밀관련실무 | 영업비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유형 및 구제수단 등의 해설과 영업비밀의 기업내 관리, 노하우의 라이선스 등, 영업비밀에 관한 기업실무의 내용을 강의함. | |
| 독점금지법개론 | 주료 기술관련계약에 대한 독점금지법상 규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독점금지법 위반행위 유형, 지식재산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내용 등에 대해 강의함. | |

x) 저작권법(저작권법과 기업실무)

| 과목명 | 내용 | 강사 |
|---|---|---|
| 저작권법 개요 | 저작권의 기초부터 침해론, 소송수행, 계약, 타 지식재산권과의 관계 및 전형적인 판례를 강의함. | 변호사 |
| 권리의 구제, 저작권 주변 관할권(法域) 문제 | | |
| 저작권 기본판례 | | |
| 저작권계약과 | | |

| | | |
|---|---|---|
| 소프트웨어 거래 | | |
| 그래픽 관련 기업실무 | 기업에서 저작권의 관리방법 및 대책, 대응과 관련하여 기업실무의 관점에서 강의함. | 기업 |
|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실무 | | |
| 기업경영과 저작권관리 -기업의 저작권전략- | | |
| 기업경영과 저작권관리 -저작권을 둘러싼 동향- | | |

xi) 협상학(입문)

| 과목명 | 내용 | 강사 |
|---|---|---|
| 논리적으로 협상하기 위한 논리적사고력 | 협상에서 요구되는 논리력, 특히 이분법에 빠지지 않고 과도한 합의편견을 피하며 협상이라는 긴장상태속에서도 적절한 추론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함. | 대학 교수 |
| 사전준비의 방법론 | 인지과학 등을 기반으로 가장 효과적인 사전준비방법론에 대해 강의함. | |
| 창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전략 | 협상에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이해가 공평하게 조정된 합의를 목표로 해야 하는 바, 전략적인 합의형성의 방법론을 강의함. | |
| 사례·연구 | 수강생이 자료를 배부해 실제 협상사례에 근거하여 토론을 실시하고, 그 결과나 경위를 바탕으로 강사가 해설을 제공하며, 수강생과의 질의응답을 수행함. | |

D) 상급코스군[186]

상급코스군은 일류 전분가를 강사로 하고 쟁송, 심판, 판결을 다루며, 강의형식으로는 최고수준의 코스로서, 중급코스군을 종료한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실력을 보유한 자가 고도의 실력을 양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코스군은 「특허·실용신안, 심판·심결취소소송」, 「상표·부경법심판결례 및 기업의 대응」, 「국제계약」, 「특허침해소송」, 「협상학」, 「미국특허소송」등의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i ) 특허·실용신안, 심판·심결취소소송

| 과목명 | 내용 | 강사 |
|---|---|---|

186) 日本知的財産協會, 2014年度 研修案內, 2014.3., 30-34頁.

| | | |
|---|---|---|
| 심판제도와 실무 | 심판의 종류, 수행방법, 특허청의 심리 등 심판제도전반과 그 실무에 대해 강의함 | 변리사 |
| 심결취소소송의 법적문제 | 심결취소소송의 중요한 법적문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사례를 기초로 강의함 | |
| 심결취소소송의 이론 및 실무 | 재판제도에 있어서 특허 관련 소송 판례를 이용하여 심결취소송의 제기부터 종료까지 소송제도 전반 및 그 실무에 대해 강의함 | |
| 최근 심판결례해설 (전기) | 「전기」, 「기계」, 「화학」의 각 분야에서 최신 심판결례에 대해 여러 전문강사가 재판소의 판단 및 그 이유 등에 대해 해설함 | |
| 최근 심판결례해설 (기계) | | |
| 최근 심판결례해설 (화학) | | |

ii) 상표·부경법심판결례 및 기업의 대응

| 과목명 | 내용 | 강사 |
|---|---|---|
| 상표에 관한 심판결례 해설 | 상표실무에 필요한 유사판단 및 현저성 판단, 식별력의 강약에 차이가 있는 결합상표의 유사판단, 거래의 실정 및 유사판단, 및 유사 및 혼동의 관계등에 대해 최신 판례를 포함한 풍부한 사례의 소개를 통해 실무에 직결되는 강의를 제공함 | 변리사 |
| 상표권침해소송 및 부정경쟁방지법 판결례 해설 | 부정경쟁방비법이 규정하는 영업비밀, 도메인 네임 등에 관한 부정행위, 상품형태의 모방행위, 신용훼손행위, 기술적 제한수단에 대한 부정행위 등 지식재산법 및 관련분야에 대한 주요판례를 중심으로 강의함 | |
| 상표사건·부경법사건의 기업전략 및 실무대응 | 기업의 브랜드 및 명칭에 대한 권리취득상 문제와 모방사건 등에 대한 대응에 필요한 전략 및 실무에 대한 사례에 대해 강의함 | 기업 |

iii) 특허침해소송

| 과목명 | 내용 | 강사 |
|---|---|---|
| 특허권침해소송개론 | 기업이 특허분쟁 및 예방업무를 하고 있는 지식재산부문을 중심으로 요점 및 실무의 필요사항을 강의함. | 변호사 |
| 소송의 쟁점 정리 및 증거조사 | | |

| | | |
|---|---|---|
| 침해성부의 논점에 관한 실무 | 특허침해소송제기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강의 후, 중요판례 및 최신판례에 대해 해설함. | |
| 금지가처분 | | |
|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 | |
| 침해소송 및 특허심판제도 | | |

ⅳ) 협상학(응용)

| 과목명 | 내용 | 강사 |
|---|---|---|
| 협상학의 개요 및 지재비즈니스 협상의 관리 | - 협상학 소개<br>- 논리적 사고와 협상력<br>- 사전준비 방법론<br>- 협상관리<br>- 협상에 있어서 심리적 편견과 극복 | 대학교수 |
| 기본적인 거래협상(연습) | 기본적인 거래협상(모의협상1-일반비즈니스)<br>- 사전협상(케이스 정독 후 전략을 정함)<br>- 모의협상<br>- 협상과정 리마인드<br>- 질의응답 | |
| 사업제휴협상(연습) | 사업제휴협상(모의협상2-지식재산 관련 사례)<br>- 사전준비(케이스 정독 후 전략정함)<br>- 토의<br>- 모의협상<br>- 협상과정 리마인드<br>- 질의응답 | |

E) 연구코스군[187)]

연구코스군은 일류 전문가의 지도하에 주로 연습형식, 토론 형식의 자주적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심판결, 민사소송 등의 사례연구나 영문명세서의 작성연습 등, 상급코스군 수료자 또는 그에 준하는 실력을 보유한 자가 지식재산의 전문가로 불릴만한 실력을 연마하기에 적절한 과정이다.

이 코스군은 「특허·실용신안 판결례 연구(모의재판형식)」, 「특허사례연구(토론형식)」, 「영문명세서 작성(화학, 연습형식)」, 「영문명세서 작성(전기·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연습형식)」 및 「영문명세서 작성(기계를 중심으로, 연습형식)」등의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187) 日本知的財産協會, 2014年度 研修案內, 2014.3., 35-39頁.

| 과목명 | 내용 | 강사 |
|---|---|---|
| 특허·실용신안 판결례 연구(모의재판형식, 정원 42명) | 특허분쟁에 관한 판례를 소재로 모의재판형식에 따라 연구를 진행함. 수강생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교대로 원고, 피고, 판사 역할을 맡아 모의재판을 실시함.<br>사전에 그룹마다 자체 연수를 실시하고 판례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우 주장을 찾아 쟁점을 정리하고 소장, 답변서 등을 작성함.<br>모의재판이 종료되면 해설 및 질의응답을 통해 특허명세서를 읽는 방법 및 기술적 범위의 해석법을 배울 수 있음. | 변호사 |
| 특허판례연구(토론형식, 정원 40명) | - 지재소송의 개요<br>- 과제의 그룹토의<br>- 그룹별 발표<br>- 해설<br>실제 판결문을 소재로 당사자 주장의 관점, 법원의 입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판례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변호사 |
| 영문명세서 작성법(화학) (연습형식, 정원 40명) | 각 분야를 중심으로 영문명세서 구성의 해설, 작성 및 외국 출원실무에 대해 강의함.<br>수강생이 작성한 영문명세서를 강사가 첨삭하고 이를 교재로 청구항을 작성하는 방법 등 영문명세서 작성을 구체적으로 지도함.<br>또한 미국 특허청의 출원 관련 통보에 대한 대응연습과 실무에 도움이 되는 지식 및 사고방식을 강의함. | 변리사 |
| 영문명세서 작성법 (전기·소프트웨어) (연습형식, 정원 40명) | | 변리사 |
| 영문명세서 작성법(기계) (연습형식, 정원 40명) | | 변리사, 특허사무소 직원 |

(2) 기술자대상연수(신입사원에서 기술자리더까지 연대별 연수),

기술부문을 위한 코스군은 기술자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자 리더를 위한 지적재산강좌; G1」, 기술직 경험 5-10년차 기술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견기술자를 위한 지적재산 Advance 강좌; G2X)」, 기술직 경험 3-5년차 기술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견기술자를 위한 지적재산 Basic 강좌; G2」, 발명설명서작성경험 1-2건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본질을 생각하는 발명설명서의 작성연습; G3」, 기술계신입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계신입직원을 위한 IP매너강좌; G4」로 이루어져 있다.

A) 기술자 리더를 위한 지적재산강좌

이 과정의 수강대상자는 연구, 개발, 설계, 생산 등의 제일선에서 팀을 지도하고 있는 기술자 리더들로, 이 연수를 통해 개발의 성과를 사업의 성공에 연결하기 위해 기술자 리더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생각이나 평소 실천해야 할 사항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리더로서의 행동 및 팀원의 지도 방침 등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ⅰ) 기술자 리더를 위한 지적재산강좌(전기·기계)

| 과목명 | 내용 | 강사 |
|---|---|---|
| 사업과 지적재산 | 사업활동에서 지적재산의 역할을 알고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이끄는 방식을 이해하며, 지식재산활동에서의 기술자 리더의 기본역할을 이해함을 목적으로 함. 또한 사업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지식재산의 최근 동향을 배움. | 기업 |
| 특허정보의 활용 | 정보활용의 중요성 및 정보활용에 있어서 기술자가 행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강의함. | |
| 특허출원 | 특허출원의 목적 및 강한 권리가 가진 요건을 알고 기업 내 직원들의 발명을 촉구하는 지도에 대해 이해함. 또한 사업을 뒷받침하는 발명에 대해 이해하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출원에 연결하는 지식재산부문과의 연계의 필요성에 대해 강의함. | |
| 문제되는 타사특허에의 대응 | 타사특허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특허권의 본질과 판례를 통해 확인하고, 문제되는 타사 특허는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한 대응을 알며, 지식재산파트 및 법무파트와의 역할분담에 대해 강의함. | |
| 사업활동에서 자사특허를 유효하게 활용하는 법 | 사업활동을 우위에 두고 자사특허활용의 의미를 이해하며, 사업활동의 가치평가의 중요성 및 관점, 발명의 제1발견자로서 역할과 대응에 대해 강의함. | |
| 연구·개발활용 및 계약 | 연구개발활동에 관계되는 계약에 대해 그 역할, 체결 전 주의점, 계약 준수의 중요성 및 지식재산파트와 법무파트 간의 사전협의의 필요성에 대해 강의함. | |

ⅱ) 기술자 리더를 위한 지적재산강좌(화학)

| 과목명 | 내용 | 강사 |
|---|---|---|
| 지적자본경영 | 지식재산이 어떻게 기업이윤을 창출하는가 하는 본질적 의문에 대해 역사, 경제의 거시적 관점에서 해설하고 미래수요를 창조하기 위한 지적자본이라는 기 | 기업 |

| | | |
|---|---|---|
| | 업이 향해야 할 방향을 제안함. | |
| 특허정보의 활용 | 상기 기술자 리더를 위한 지식재산강좌(전기·기계)와 동일한 내용임. | |
| 특허출원 | | |
| 문제되는 타사특허에의 대응 | | 대학교수 |
| 사업활동에서 자사특허를 유효하게 활용하는 법 | | |
| 연구·개발활동과 계약 | | 기업 |

B) 중견기술자를 위한 지적재산강좌

ⅰ) 중견기술자를 위한 지적재산 선행강좌

이 과정은 중견기술자의 지식재산사업 업무확대를 위해 필요한 실무 및 고려사항에 대해 기술자의 관점에서 보는 사례 소개 및 실천적 대응방법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사업파트나 연구개발파트의 기술자로서 기술직 경험이 5-10년 정도로 가까운 장래에 기술자 리더로서 활약이 기대되는 사람들이 주 대상이다.[188]

| 과목명 | 내용 | 강사 |
|---|---|---|
| 기술제휴와 지재리스크 | 다양한 기술제휴에서 공동연구·공동개발에 따른 리스크, 위탁에 따른 리스크, 산학제휴에 관한 리스크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기술자의 입장에서 그 리스크를 회피하는 방법 등을 함께 고찰함. | 기업 |
| 특허 활용법 | 특허권을 이용하여 기술·제품·사업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 사고, 더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활용 방법, 지식재산파트와 함께 권리행사를 할 경우 발명자 및 그 리더에게 필요한 사항 등을 강의함. | |
| 외국특허취득 시 기본지식 | 기술자가 알아야 할 각국 특허출원에 관한 지식, 출원국가를 결정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 등을 강의함. | |

ⅱ) 중견기술자를 위한 지적재산 기본강좌

이 과정은 사업파트나 연구개발파트에서 3-5년의 기술직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식재산 기본사항을 연구개발의 흐름과 연관지어 강의하고 이를 통해 기술성과를 사업에 연결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실행해야 할 사항 및 주의사항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이다.[189]

188) 日本知的財産協會, 2014年度 研修案內, 2014.3., 43頁.
189) 日本知的財産協會, 2014年度 研修案內, 2014.3., 44頁.

| 과목명 | 내용 | 강사 |
|---|---|---|
| 연구개발 주제선정 시 지적재산정보의 활용 | 기술이나 동업자의 동향을 알고 적절한 연구개발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특허조사와 활용에 있어서, 조사목적에 따른 조사수단, 조사결과의 정리법, 지재정보의 호라용 및 공유화 등에 대해 강의함. | 기업 |
| 분쟁방지를 위한 타사특허의 존중 | 후에 사업에 방해가 될 타사의 특허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특허청구범위를 읽는 방법과 자체 기술과의 대비방법, 기술회피책을 취하는 방법, 지식재산파트와 상담하는 타이밍이나 방법 등을 강의함. | |
| 사업을 지원하는 특허출원과 권리취득 | 발명의 본질적인 파악을 강의형식으로 습득하고 출원이나 사어화의 관점을 파악하여 앞으로 출원을 어떻게 추진할지를 이해하고, 발명자로서는 출원된 발명의 중요성이나 기술변화를 지식재산파트에 적절하게 전달하고 권리화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위한 법 등을 강의함. | |

C) 본질을 고려한 발명명세서의 작성연습

| 과목명 | 내용 | 강사 |
|---|---|---|
| 본질을 고려한 발명명세서 작성연습(전기·기계 분야) | 발명의 기술사상, 발명의 상위개념, 필수조건 등 발명의 본질을 강의함.<br>또한 연습예제 및 질의응답을 이용하여 개인학습 및 그룹학습으로 지도함. | 특허사무소 직원 |
| 본질을 고려한 발명명세서 작성연습(화학 분야) | | |
| 본질을 고려한 발명명세서 작성연습(소프트웨어 분야) | | |

D) 기술계신입사원을 위한 IP매너(マナー)강좌

| 과목명 | 내용 | 강사 |
|---|---|---|
| 연구/개발에 있어서 지적재산활용의 실제(1.5) | 연구/개발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때 기술자는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문제나 고민을 갖고 해결하는지 등 실제 모습을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강의함. | 기업 |
| 기술자가 | 연구/개발에서의 기본원칙인 「발명의 발굴」이나 「타사 | |

| | | |
|---|---|---|
| 알아야 하는 IP매너(4.5) | 권리의 존중」, 「통상적인 특허조사」등 3가지를 중심으로 대학과 기어의 연구/개발의 차이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강의함. | |

(3) 종합연수

A) 지적재산권과 기업경영

이 과정은 주로 지식재산파트나 연구개발 파트의 관리직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자들이 기업경영에 기여하는 지식재산 관리의 개요 및 국제적인 기술교류의 유의점, 연구개발 관리 등에 대해 습득하기 위한 것이다.[190]

| 과목명 | 내용 | 강사 |
|---|---|---|
| 지적재산전략 | 권리취득, 라이선스 협상 등 실무적 사항 및 혁신과 지식재산권의 관계 등 다양한 각도에서 지식재산전략에 관한 강의를 제공함. | 기업 |
| 연구개발-먼지감소기술의 발상 및 상품화 | 디지털 SLR 카메라의 화질이 향상됨에 따라 촬상소자 부근의 먼지가 화상에 찍히는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소재로 하여, 기술개발에서 아이디어의 발상, 특허기술의 실용화, 상품화 등에서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 강의함. | 기업 |
| 기업경영과 영업비밀관리 |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구조, 영업비밀 관리상 중요한 포인트 및 분쟁대응방법에 대해 최근 판례를 이용하여 강의함. | 변리사 |
|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적 화제 | 미국, 유럽 및 아시아에서 최근 등장한 심, 판결례와 기업경영과의 관계에 대해 강의함. | 변리사 |
| 특허정보와 활용 | 특허정보의 특징 및 관리·활용방법과 특허정보의 분석·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현황 및 미래에 대해 강의함. | 기업 |
| 지적재산권관계 법률지식과 판례 해설 | 특허, 영업비밀, 부정경쟁, 독점금지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및 판례와 기업활동과의 관계에 대해 강의함. | 변호사 |
| 기업경영과 저작권 | 기업 경영에서 전략 수립과 위험 관리에서 저작권에 관련하여 알아 두어야 할 기본 지식과 유의 사항을 최근 법 개정 동향과 판례를 강의함. | 단체 |

(4) 글로벌연수(글로벌코스, 해외현지연수코스)

190) 日本知的財産協會, 2014年度 研修案內, 2014.3., 48頁.

이 과정은 세계 주요국 · 지역의 지적 재산 제도 관련법 조약 등의 개요 기초 지식을 배우고 국제적 시야에 서서 지재 문제를 생각하는 소지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 지재 실무에 종사하는 자 및 해외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191]

A) 중급

ⅰ) 국제 특허제도와 외국 특허기초

| 과목명 | 내용 | 강사 |
|---|---|---|
| 지적재산권제도의 체계 | TRIPS협정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제도, 각종 조약의 소개, 조약 및 일본·미국·유럽 삼국간에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 강의함. | 변리사 |
| 파리조약 | 파리협약의 삼대원칙을 중심으로 규정 전체에 대한 해설을 제공함. | |
| 특허협력조약 (PCT) | 최근 규칙 개정을 반영한 PCT의 개요 및 국제출원에서의 국제조사, 국제공개, 국제예비심사를 거쳐 국내단계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구조 및 실무에 유용한 노하우를 제공함. | |

ⅱ) 외국 상표법

입문 및 중급코스 등을 수료하여 상표 제도의 기초를 배운 자, 현재 또는 장래에 외국 상표 실무에 종사하기 위해 외국 상표 제도의 이해하고, 외국 상표 실무에 도움이 되는 응용 지식과 실무 기술을 습득하고 싶은 자를 수강 대상으로 한다.

| 과목명 | 내용 | 강사 |
|---|---|---|
| 외국 상표총론 | - 외국상표와 관련된 기업의 실무와 관리<br>- 미국·유럽·중국·한국·인도·인도네시아·러시아·브라질 등에서의 상표출원, 상표권 행사 및 비즈니스상 상표권 이용 시 유의점<br>- 외국 상표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이 되는 조약, 협정, 마드리드 협정의 활용법<br>- 주요 각국의 상표조사의 실천적 방법<br>- 그 외 최신 판례 소개 또는 사례 소개 및 해설 | 기업 |
| 중국상표제도와 실무 | | 변리사 |
| 조약, 협정, 미국상표, 유럽공동체상표(CTM), 마드리드협정 | | |
| 미국상표제도(주요국의 IPDL상표조사) | | |
|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브라질 상표제도와 실무, 기타 관련 주제 | | |

191) 日本知的財産協會, 2014年度 研修案內, 2014.3., 51頁.

iii) 미국 특허제도

| 과목명 | 내용 | 강사 |
|---|---|---|
| 미국 특허제도 및 실무 | 미국 특허제도 발전의 특징 및 특유사항의 설명 및 미국특허출원 및 특허관리에 관한 특허실무에 관해 강의함. | 변리사 |

iv) 유럽 특허제도

| 과목명 | 내용 | 강사 |
|---|---|---|
| 유럽특허조약(EPC) 및 유럽각국의 특허제도 | 유럽 특허 조약의 연혁, 기구, 주요 조문 및 권리 취득까지의 절차 및 유럽 각국의 특허 제도에 대해 강의함. | 변리사 |
| 유럽각국의 특허침해개론 | 유럽 특허 제도의 권리 취득까지의 절차에 따라 권리 취득 후의 절차인 유럽 각국의 침해 소송의 개요를 EPC조약과 각 지정 국가의 관계를 고려하여 강의함. 또한 영국·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각 지정 국가의 특허권의 권리 행사나 유럽 연합(EU)과 관련, 그리고 국경을 넘어선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각국의 특허권의 판단 기준과 판례를 들어 강의합니다. | |

v) 아시아 특허제도

| 과목명 | 내용 | 강사 |
|---|---|---|
| 중국 특허제도 | 중국, 한국, 대만, 인도에 대해서 예비 지식이 없는 수강생들도 이들 국가에서의 권리화 업무에 필요한 지식, 심지어 특허권 활용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사항부터 최신 정보까지 강의함. | 변리사 |
| 한국 특허제도 | | |
| 대만 특허제도 | | |
| 인도 특허제도 | | |
|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특허제도 | | |

B) 상급

i) 국제계약

| 과목명 | 내용 | 강사 |
|---|---|---|

| | | |
|---|---|---|
| 특허 관련 국제소송의 기초 | 특허라이선스계약의 주요내용 및 판례를 중심으로 국제계약의 기초실무에 대해 강의함. | 기업 |
| 국제라이선스계약 유의점 |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체결까지의 과정을 전략, 협상, 계약서작성의 3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단계에서 구체적인 대응방법 및 유의점을 강의함. | 기업 |
| 국제라이선스계약 실무 | 국제계약협상과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미국·중국에서의 실무경험을 가진 국제변호사가 필요한 법률 및 실무 포인트에 대해 강의함. | 변호사 |
| 지적재산에 관한 국제계약 작성 1 | 영문특허라이선스계약을 중심으로 국제계약의 실천적인 작성방법을 강의함. | 변호사 |
| 지적재산에 관한 국제계약 작성 2 | 지식재산에 관한 국제계약의 기초 및 실무에 대해 강의함. 특히 기술개발계약이나 기타 지식재산 관련 계약 사례, 국제계약에 특유한 사항 등을 해설함. | 기업 |

ii) 미국 특허소송

| 과목명 | 내용 | 강사 |
|---|---|---|
| 기업의 입장에서 본 미국특허침해소송실무 | 미국특허소송에 관한 일반지식에 더해, 소송과정에서 필수적인 디스커버리 절차, 각종 신청절차, 변호사를 만나는 방법, 배심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하는 방법 등 기업입장에서 본 실무상 지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강의함. | 미국 변호사 (NY, NJ) |
| 미국특허침해소송 절차의 개요 | 미국소송제도를 이해하고 관련 문제를 판단하기 위한 지식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또한 미국변호사와 모의재판을 진행함. | 미국 변호사 (NY) |
| 미국 판례 소개(1) | 미국 특허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판례를 기초로 하여 무효항변 및 손해배상 분야에서 최근 주요사례 등에 대해 해설함. | |
| 미국 판례 소개(2) | 미국에서 청구항 해석, 균등론 등에 관한 논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강의함. | 변호사 |

iii) 아시아의 지적재산

| 과목명 | 내용 | 강사 |
|---|---|---|
| 아시아의 지적재산제도의 동향 | - 아시아 전반 동향과 지적재산제도의 동향<br>- 아시아 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기 위한 유의점 등 강의 | 변리사 |
|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 중국에서의 법개정이나 판례 등 최신동향 및 권리행사시 유의점 등 강의함. | 변호사·변리사 |
| 동남아시아의 |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 | 기업 |

| | | |
|---|---|---|
| 현황 | 트남 등의 최신상황에 대해 강의함. | |
| 아시아에서의 기술이전의 법규제 및 대책 |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주요국 간의 기술이전, 라이선스계약에 관한 법규제 및 실무상 여러 문제를 중심으로 강의함. | 대학교수 |
| 기업의 아시아에서의 권리행사의 구체적 사례 소개 | 아시아에서의 지식재산보호활동, 특히 모방품 대책의 구체적 사례를 다룸. 법률규정 등을 바탕으로 문제점, 실무적 주요사항 및 참고 판례를 해설함. 또한 권리행사·모방제품 대책의 관점에서 기업의 자세, 전략과 권리행사의 구체적 사례에 대해 해설함. | 기업 |

(5) 해외현지연수코스군[192)]

A) 미국특허제도, 법규 및 모의재판의 연수

이 코스는 미국의 지식재산권제도 및 관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미국의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을 한다. 현지(워싱턴 D.C.)연수에서는 현지에서만 접할 수 있는 주요 소송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사에 의한 강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모의재판을 3주간 실시한다. 모의재판에서는 부실한 명세서가 권리행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체험함으로써 권리행사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권리취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에게도 도움이 되는 과정이다. 또한 수강자의 관심 과제를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학습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심도있는 연구를 할 수 있다.

B) 중국지적재산제도 및 법규의 연수

이 코스는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문제를 다룰 때 실무면에서 도움이 되는 연수이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전문가나 실제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재원에게 현지의 지식재산현황을 배움으로써 기업의 중국에서의 지식재산활동을 유사하게 체험하고 기업의 지식재산인력으로서 중국에 관련된 지식재산시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수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에서 약 2주간 실시한다.

C) 아시아 지적재산사정의 연수

이 과정은 아시아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심이 있는 실무인력을 대상으로 중국, 한국, 대만의 주요 도시에 소재한 지식재산기관을 약 2주간에 걸쳐 방문하고, 지식

192) 日本知的財産協會, 2014年度 研修案內, 2014.3., 126-127頁.

재산권 관련 정보, 각국의 문화에 관한 정보 등을 습득하여 아시아 관련 지식재산권 실무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코스는 연수참가자 스스로가 업무과제를 설정하고 학습한 후 스스로 방문지를 선정하고 현지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심화된 학습이 가능하다.

D) 유럽특허제도, 법규, 판례 및 모의이의신청심리 연수

이 과정은 유럽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관련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유럽의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지 연수(런던, 뮌헨)는 유럽 변호사 등 전문가에 의한 강의, 연수생에 의한 모의 실무 등을 약 2주간 실시한다.

모의 실무는 권리행사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권리취득 관련 업무에도 유용하다. 또한 수강생이 관심있는 주제를 직접 선택, 학습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함으로써 심도있는 학습이 가능하다.

E) 인도 지적재산제도 연수

이 과정은 인도의 델리와 뭄바이를 방문하여 약 10일간 현지 사정, 문화,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인도에 대한 지식재산정보의 수집 및 기업에서의 활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수는 현지 연수 이전에 국내에서 사전교육을 하고 연수 후 사후 교육이 더해져 약 7개월에 거쳐 이루어진다.

사전연수는 인도정보에 정통한 강사에 의한 지식재산권 제도 및 실무 등의 강의 외에 인도 정세에 대해 소개한다. 현지연수에서는 관련 기관을 방문하고 개별 기업 단위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현지 정부 관리, 전문가 및 특허사무소의 변호사나 변리사와 현지정보교류가 가능하다. 사후연수는 사전 및 현지연수에서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성과의 정리를 실시하여 인도 지식재산권에 관한 이해를 심화한다.

(6) 경영감각인재육성연수[193]

경영감각인재육성과정은 지재변혁리더육성연수, 지재전략인력육성연수, 기업의 신규지식재산요원육성연수로 구성된다. 여기서 말하는 지재변혁리더란 경영에 이바지하는 지식재산활동을 위한 장기적 비전과 컨셉을 만들 수 있는 '제안'형 인재로서, 직원을 통솔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바 지식재산권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193) 日本知的財産協會, 2014年度 研修案內, 2014.3., 128-133頁.

지재전략인력이란 리더를 지원하는 자로서 여러 전문영역을 이해할 수 있고 접근방식 및 도구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과제해결'형 인재로서, 여러 전문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창조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A) 지재변혁 리더 육성 연수

이 과정은 지적재산경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창출하는 위한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사회를 선도하는 지식재산전략을 구상하고 제안할 수 있는 능력,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지식재산경영시책을 구상하고 제한할 수 있는 능력, 고도의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주변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은 사업 성공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본질적 과제와 변화에 대한 대처를 주제로 하여 회사에 대한 제언서를 작성하고, 강의와 토의를 통해 연수생 간의 상호계발을 도모하며, 그 과정에서 기업과 대학, 지식재산협회에서 선임한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한 강사의 지도를 받는다.

연수는 6개월동안 진행되며 연수가 종료되면 회사에 지식재산혁신비전에 관한 제안서를 작성하며, 연수참여도, 제안서성과를 기준으로 평점합계가 기준점 이상이어야 수료할 수 있다.

B) 지재전략 스탭 육성 연수

이 과정은 지식재산부분의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 및 과제달성을 위한 창조적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지식재산부서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식과 도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창조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은 경영분석기법의 기초 및 분석도구의 기본을 학습하고, 연수생 간의 상호계발을 도모하며 이 과정에서 대학이나 기업출신의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한 강사의 지도를 받는다. 연수는 3단계에 걸쳐서 경영분석기법, 과제해결기법, 그룹토의를 통한 상호계발 등으로 실시되며, 과정에 종료된 후 6개월 후 연수에 따라 성과를 실전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C) 기업의 신규 지적재산 요원 육성 연수(企業若手知的財産要員育成研修)

이 과정은 기업의 신규 지식재산권 실무자로 3년 가량의 실무경험을 가진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조사·연구·발표를 통해 해당 주제를 습득함을 목

적으로 하며, 전문위원회에서 파견한 강사의 지도를 받는다. 첫 시간에는 지식재산인력의 과제와 요구되는 인재상에 대해 강의하고 그 이후에는 그룹간 과제의 발표, 토의 및 해설의 순서로 진행한다.

(7) 임시연수[194]

임시연수는 다음과 같이 개최되고 있다.

A) 2013년

- 지적재산권소송의 동향
- NPE 소송실무와 분쟁해결실무
- 협상학(입문)
- 중견기술자를 위한 지적재산심화강좌
- 국제지적재산소송에 대한 마음가짐과 이기기 위한 전술
- 협상학(응용)
- 유럽공통특허분류 CPC의 실태 및 조사실무에서의 유의점
-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관한 판례소개
- 지적재산계약과 세무
- 경영에 도움이 되는 지적재산활동의 실천 및 판례소개
- 본질을 고려한 지적재산활도의 실천 및 판례소개
- 지적재산·기술자를 위한 국내거절이유실무강좌

B) 2014년 예정

- 중국지적재산제도개요(입문)
- 중국특허제도
- 미국특허개정법안·최신판례의 동향
- 지적재산권소송에 대한 재판소의 운용동향
- 미국특허 취득방법
- 유럽특허 취득방법
- 사업활동에 있어서 지재관련법무
- 초급특허정보
- 지재기술스탭을 위한 국내중간처리업무 기초
- 특허판례읽는법
- 특허발명의 기술적범위

194) 日本知的財産協會, 2014年度 研修案內, 2014.3., 128-133頁.

- 권리자우위의 독일의 특허관련재판소와 유럽통일특허재판소의 도입의 영향
- 중국특허정보강좌
- 영문계약서작성강좌
- 외국특허중간처리연습(미국)
- 외국부정경쟁방지법
- 지재실무에 있어서 민법
- 중국특허클레임해석 실무강좌(입문)

라. 발명추진협회

(1) 개요

발명추진협회는 明治37년 설립된 이후 발명의 장려와 공업소유권 제도의 보급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의 진보·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이다.[195] 발명추진협회는 지적 재산 인재 육성 커리큘럼을 두어 장기 연수 및 단기 집중·공개강좌를 제공한다.[196]

(2) 커리큘럼[197]

가) 장기연수

장기연수는 기업의 지식재산업무에 도움이 될 즉시전력이 될 수 있는 지적재산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부터 실무까지 2개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42년간 2,000명 이상의 지재인재를 배출한 바 있다.[198] 주2일, 6개월에 걸친 과정으로 소규모로 운영하며 그룹연습, 보고서, 강사에 의한 첨삭지도 등으로 구성된다. 출석 및 평가에 의해 수료증을 교부하며, 체험연수도 실시한다.

나) 단기집중·공개강좌

단기집중·공개강좌는 반나절, 1일, 2일의 단발성 강좌를 제공한다.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법 개정 등 다양한 최신테마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매월 2~3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

195) http://www.jiii.or.jp/about/, 2014.10.9. 최종방문.
196) 一般財団法人 知的財産研究所, 我が国の知財人材育成制度の現状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平成２５年２月, 35頁.
197) http://www.jiii.or.jp/kenshu/chizaikenshu.html, 2014.10.11. 최종방문.
198) http://www.jiii.or.jp/kenshu/chizaikenshu_chouki.html, 2014.10.11. 최종방문.

다) 기타

그 외에도 발명추진협회 회원 또는 일반인을 위해 특별히 강좌를 개설하여 제공하는 특별기획강좌, 지재실무입문자가 통근 시간을 활용하여 공부할 수 있는 음성 다운로드 강좌,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연수과정 등이 있다.

(3) 과목

가) 장기연수[199]

| 과정 | 과목 | 강사 |
|---|---|---|
| 법률과정 | 법학개론(1), (2) | 대학교수 |
| | 지적재산권법(1) ~ (10) | 대학교수 |
| | 지적재산권과 민법(1), (2) | 변호사 |
| | 부정경쟁방지법 | 대학교수 |
| | 지적재산권과 민사소송법(1) ~ (3) | 대학교수 |
| |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체계(1), (2) | 변호사 |
| | 지적재산권과 독점금지법(1), (2) | 대학교수 |
| | 지적재산기본법과 일본의 지재전략 | 단체 |
| | 지적재산권법(중간연습) | 대학교수 |
| 실무과정 | 기업에서의 연구개발 및 특허관리 | 기업 |
| | 특허명세서작성실무(연습준비편) | 변리사 |
| | 특허심사기준(신규성·진보성) | 대학교수 |
| | 특허정보관리 | 기업 |
| | 중간절차(의견서·보정) | 변리사 |
| | 미국특허출원의 실무와 관리 | 변리사 |
| | 파리조약·PCT와 유럽 특허출원의 실무와 관리 | 변리사 |
| | 중국특허출원의 실무와 관리 | 변리사 |
| | 지적재산의 활용 | 기업 |
| | 라이선싱·비즈니스 | 대학교수 |
| | 특허명세서작성실무(성과강평편) | 변리사 |
| | 계약서작성 실무(1), (2) | 대학교수 |
| | 라이선스 계약과 독점금지법 | 대학교수 |
| | 지적재산권과 행정소송 | 대학교수 |
| | 특허관계소송의 기초이론 | 변호사 |
| | 특허권침해소송의 구조 및 이론 | 판사 |

199) http://www.jiii.or.jp/kenshu/chizaikenshu_chouki.html, 2014.10.12. 최종방문.

| | | |
|---|---|---|
| | 상표권침해 사례 및 대응 | 변호사 |
| | 의장권침해 사례 및 대응 | 변리사 |
| | 손해배상청구 | 변호사 |
| | 기술적범위와 이용관계 | 변호사 |
| | 미국특허침해소송의 개요 | 변호사 |
| | 총괄연수 | 대학교수 |

나) 단기집중·공개강좌(2014.4. ~ 2015.3.)[200]

- 미국출원 클레임 편집상 조언(ススメ)
- 지적재산권 초심자 강좌
- 지적재산권 기초 강좌
- 새로운 유형의 상표와 상표권 침해
- 출원에서 등록까지 지재절차실무 노하우 강좌
- 영문 지재라이선스 계약서의 작성과 협상의 핵심
- 지적재산 판례 강독 강좌
- 최신 제도개정을 반영한 해외특허제도와 실무상 유의점(미국·유럽(EPC)·중국)
- 법체계의 상위함에서 본 외국상표출원 입문
- 특허조사 실무 강좌(실천편)
- 미국 소프트웨어특허의 취득 및 권리범위해석상 주의사항과 중국소프트웨어 특허에 관한 문제
- 특허권 침해분쟁의 실무
- 지적재산을 경영에 활용하기 위한 전략분석 입문
- 침해예방 조사·무효화 조사 노하우
- 제품패키지 디자인, 상표의 보호와 최적의 권리취득
- USPTO양식을 이용하여 설명하는 미국 특허출원 실무
- 지적재산권 판례해설
- 부정경쟁방지법의 기초지식과 영업비밀관리에서 본 기업방어대책
- 일본·미국·유럽·중국에 대응하는 특허출원전략 및 심사대응실무
- 지식재산 라이선스계약 실무강좌(연습)
- 광고·프로모션과 상표권 침해
- 개정의장법성립·공포 – 의장의 국제등록제도「헤이그 협정」과 가맹국, 미국, 중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각국의 의장제도
- 매뉴얼에 의한 특허맵 작성강좌
- 지재국제라이선스 성공의 핵심

200) http://www.jiii.or.jp/kenshu/chizaikenshu_tanki.html, 2014.10.12. 최종방문.

-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체계적 이해 - 등록상표, 미등록상표, 주지·저명상표의 보호
- 특허 심사기준 해설
- 사업전략·특허출원전략을 위한 특허맵 활용강좌
- 상표권침해의 회피와 부정이론과 실무「상표의 유사」와 「상표의 변경」

마.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1) 개요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은 明治20년 특허청 서무부의 도서관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정보서비스 및 인재육성업무 등을 하고 있는 독립행정법인이다.[201]

이 기관은 지재 인재 육성 커리큘럼을 두어 조사업무 실시자를 양성하기 위한 연수(법정 교육), 조사업무 스킬 업 연수, 검색실무자를 위한 연수, 지식재산 전문인재(변리사 등)을 위한 연수, 중소 · 벤처 기업의 지식재산 인력에 대한 연수, 행정기관 · 연구기관 등의 지식재산 인력에 대한 연수, 지식재산관리기능사에 대한 연수(지식재산교육협회 연계) 및 특허청 직원에 대한 연수를 제공하고 있다.[202]

(2) 커리큘럼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인재를 위해 지식재산활용연수(활용검토과정), 지식재산활용연수(검색과정), 지식재산권연수(산학관연계), 특허침해경고모의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203]

가) 지식재산활용연수(활용검토과정)[204]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성공한 사례와 활용하지 못한 사례를 중소·벤처기업이 처한 경영환경 등과 함께 소개하고, 사례의 분석방법을 설명한다. 또한 모의사례에 대해 경영적 관점을 포함하여 어떻게 지식재산을 활용해야 할지 수강자들이 검토하여 지식재산권을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지적재산활용연수(검색과정)[205]

---

201) http://www.inpit.go.jp/about/index.html, 2014.10.12. 최종방문.
202) 一般財団法人 知的財産研究所, 我が国の知財人材育成制度の現状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平成２５年２月, 46頁.
203) http://www.inpit.go.jp/jinzai/kensyu/venture/index.html, 2014.10.12. 최종방문
204) http://www.inpit.go.jp/jinzai/kensyu/venture/katsuyo/260926kensyu_katsuyo.html, 2014.10.12. 최종방문
205) http://www.inpit.go.jp/jinzai/kensyu/venture/kensaku/26kenshu.cyu1.html, 2014.10.12. 최종방문.

중소기업의 경영자, 지식재산 담당자, 대학 등 연구기관 연구원 및 지식재산본부 또는 기술이전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연구테마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한 검색 및 특허출원·심사청구의 필요여부 등의 판단을 하기 위한 검색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다) 지식재산권 연수(산학관 연계)[206]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공익법인에서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중소·벤처기업의 인재로서 지식재산권 제도의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능력을 고도화 하고, 특히 지역의 산학관 연계를 보다 촉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3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됨).

라) 특허침해경고 모의훈련[207]

특허분쟁의 당사자 쌍방의 회사에 대한 배경과 제품개발 경위, 판매상황,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내 체계 등을 설정한 사례를 이용하여 강의한다. 참가자들은 가상의 경영자로서 경고 측 기업이 보내온 경고장에 대해 회답하는 한편, 해당 기업과 협상하기 까지 조사·확인해야 할 내용을 확인하며, 모조품을 발견했을 경우 대응에 대해서도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3) 과목

| 과정 | 과목 | 강사 |
|---|---|---|
| 지식재산활용연수<br>(활용검토과정) | 경영의 관점에서 본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활용사례 | 변리사<br>대학<br>기업 |
|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처 | |
| | 사례검토(그룹연습) | |
| 지적재산활용연수<br>(검색과정) | 특허법 및 특허문헌분류체계의 개요 | 대학교수 |
| | 선행기술문헌검색이론 | |
| | 선행기술조사연습 | 변리사 |

206) http://www.inpit.go.jp/jinzai/kensyu/gyosei/cyu/25chizai_ken_cyu.html, 2014.10.12. 최종방문.
207) http://www.inpit.go.jp/jinzai/kensyu/venture/mogikenshu/index.html, 2014.10.12. 최종방문.

| | | |
|---|---|---|
| | 그룹토의(조사결과토론) | |
| | 모범해답해설 | |
| 지적재산권 연수(산학관 연계) | 지식재산 관련 계약에 대해 | 단체 |
| | 연구개발 컨소시엄의 선진적 사례 및 지재프로듀서 | |
| | 지식재산과 표준화 | 공무원 |
| | 기업에서 본 산학관 제휴(진전과 향후의 과제) | 기업 |
| | 중소기업의 산학관 제휴 | 기업 |
| | 사업화를 의식한 제조·기술이전 | 변리사 |
| | 지식재산 국제권리화 전략추진사업 | 공무원 |
| | 지역진흥을 위한 특허활용 | 변리사 |
| | 대학의 산학제휴의 실제 | 대학 |
| | 제출과제의 검토 | |
| 특허침해경고 모의훈련 | 경고장에 대한 답변 | 변리사 |
| | 협상까지 조사·확인해야 할 사항 | |
| | 향후 대응 | |
| | 경고를 받지 않기 위한 예방책 | |

바. 특허청[208]

기업의 경영자 및 연구개발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경영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세미나”, “경영·기술 컨설턴트 및 지적재산권 취급 사업자의 ”전문가 양성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일반인을 위한 지식재산권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산업재산권에 대해 새로 배우고 싶은 사람이나 기업의 새로운 지식재산부서에 배치된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제도의 기초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초보자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일상적인 업무에서 지식재산권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특허심사의 운용기준과 국제출원과정에서의 실무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실무자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중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미나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자, 연구개발책임자

208) http://www.jpo.go.jp/shiryou/toushin/nenji/nenpou2011/honpen/3-5.pdf, 2014.11.10.최종방문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필요에 따라 기업경영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취득 및 권리활용방법 등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했고, 2010년 기준 실적이 306회 개최, 8,864명 참여에 달했다.

사. 일본변리사회 지재경영 아카데미[209]

(1) 개요

일본변리사회의 연수는 집합 외 e러닝 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기업의 실무인력과 관련한 연수는 지재경영아카데미에서의 연수과정으로 기업과 관련된 범위내에서 항목을 바꾸어 서술한다.[210]

(2) 기업의 지적재산전략 지원 세미나[211]

본 세미나는 지식재산전략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기업의 사업전략에 부합하는 지식재산전략을 구축할 때 필요한 업무를 위해 기획에서 제안까지 필요한 소양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업내용은 기업의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식재산전략에 대해 지식재산권의 사이클에 따라 구체적으로 학습하고, 국제표준화에 관해 기업의 지식재산전략(특허, 영업비밀, 노하우 전략)을 강의한다. 또한 기업의 사업강화와 지식재산전략을 위해 사업주기의 각 단계에서 사업전략에 부응하여 활용을 의식한 전략적 출원업무와 그 외에도 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지식재산활동업무에 관해 강의한다.

이에 따라 ⅰ) IP중심의 지식재산전략을 배우고 지식재산활동을 통해 중장기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업무, ⅱ) 사업강화를 위해 공격과 방어에 이용되는 특허는 무엇인지, 국내외 출원권리화전략, 블랙박스화전략, 라이선스전략, 소송전략 등에 응용하는 법, ⅲ) 현재 사업강화 뿐만 아니라 사업전략에 맞는 미래사업강화를 위한 제휴계약, 협상전략, 지식재산경영 시 지원해야 할 업무 등을 다룬다. 교재는 "知的財産戦略～技術で事業を強くするために～ (ダイヤモンド社)"를 주로 하되, 세미나 도중 지식재산전략에 관한 도서를 안내하며 그 외에도 핸드아웃을 배포한다.

(3) 경영기초과정[212]

본 과정은 지식재산의 관리, 활용을 위해 효율적인 지식재산보호, 비즈니스 리스

209) http://www.jpaa.or.jp/?cat=121
210) 一般財団法人 知的財産研究所, 我が国の知財人材育成制度の現状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平成２５年２月, 35頁.
211) http://www.jpaa.or.jp/activity/seminar_support/ipba/pdf/2014marushimazemi_zen.pdf, 2014.11.5..최종방문
212) http://www.jpaa.or.jp/pdf/20140502osakanew.pdf, 2014.11.5..최종방문.

크에 대한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에 관한 환경과 경영자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폭넓은 시야에서 기업에 가장 적합한 지식재산전략을 제안, 자문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커리큘럼으로는 논리적사고와 문제해결, 마케팅, 경영전략, 회계, 파이낸스, 이노베니션 창조방법, 리더쉽 등이 있다.

(4) 경영전략사례 세미나[213]

본 과정은 기업경영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포인트를 이해하고, 정보를 정리·분석하여 구체적 시책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에 있다. 상기 경영기초과정과 마찬가지의 지식재산·경험을 보유한 회원 또는 그 수준을 보유한 자, 또는 기업의 지식재산부서에 있어서 지식재산전략의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수준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커리큘럼으로는 “전략이란 무엇인가”, “전략의 책정수립과정”, “전략 옵션”, “경쟁우위”, 기술혁신과 전략“, ”비즈니스모델 캔버스“, ”외부성장전략/제휴~M&A", "논리적인 발표의 기본“에 대한 강의 및 ”EMI와 CT스캐너“, ”A123시스템“, ”휴렛팩커드“ 등에 대한 사례스터디가 있다. 참고도서로 『経営戦略１２の方程式』（レビックグローバル著、 池上重輔 監修）을 활용한다.

(5) 정보분석 세미나[214]

본 과정은 상기 경영기초코스의 수강자와 동일한 정도의 지식재산경험을 보유한 자 또는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진 자, 지적경영컨설턴트를 목표로 하는 변리사로 경영컨설턴트의 사고법 및 분석도구를 이해하고자 하는 자를 주요 수강대상으로 하며, 경영컨설턴트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보입수 및 정보해석에 관한 각종방법을 이해하고 기업지원에 있어서 그러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소양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경영컨설턴트의 사고법 및 정보수집, 분석방법을 학습하고 이를 이용하여 실제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검토한다. 또한 경영자의 시선에서 사업계획이나 상품기획에 대해 조언하는데 필요한 경영 및 고객에 대한 거시, 미시적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발표한 후 해설하는 시간을 갖는다.

본 강의는 두 단계로 구성되며 첫 번째 단계는 “경영컨설턴트의 관점과 생각”, “정보수집은 무엇인가”, “조사·분석방법“ 등에 대해 강의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강의한 내용을 활용하여 상품계획 및 사업개발방법을 연습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활

213) http://www.jpaa.or.jp/activity/seminar_support/ipba/pdf/syllabus-casestudy2014tokyo2.pdf, 2014.11.5..최종방문

214) http://www.jpaa.or.jp/pdf/syllabusforiaatosaka.pdf, 2014.11.5..최종방문.

용하여 발표, 토론, 해설한다.

(6) 지적재산권 계약실무 세미나[215]

본 과정은 지식재산을 활용하기 위해 계약실무에 관여하는자 또는 그와 유사한 수준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계약의 기초부터 협상기술, 지식재산계약의 분쟁유형과 대응, 계약서의 확인사항, 지식재산취득에 따른 과세, 섭외계약에 특유한 문제, 최근 정보를 통해 전략적으로 지식재산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알아야할 유의점 등을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계약개설”, “계약에 의한 비밀정보의 보호”, “타사특허를 둘러싼 실무”, “특허라이선스”, “지적재산권과 세무”, “섭외계약” 등에 대해 강의한다.

## 제4절 기업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교육프로그램의 제시

### I. 일본 민간영역 기업실무인력 교육현황 분석을 통한 설계방향

1. JIPA 교육 시스템 분석

JIPA의 전체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tr><td rowspan="9">지재기술직원연수</td><td rowspan="5">지식재산 관련 실무자를 위한 코스</td><td rowspan="3">기초</td><td>입문코스</td></tr>
<tr><td>초급코스</td></tr>
<tr><td>중급코스</td></tr>
<tr><td rowspan="2">전문</td><td>상급코스</td></tr>
<tr><td>연구코스</td></tr>
<tr><td rowspan="4">기술부서 직원을 위한 코스</td><td colspan="2">기술계 신입사원을 위한 코스</td></tr>
<tr><td colspan="2">중견기술자를 위한 코스</td></tr>
<tr><td colspan="2">기술자 지도자를 위한 코스</td></tr>
<tr><td colspan="2">기술적 특성을 고려한 명세서 작성</td></tr>
<tr><td>종합코스</td><td colspan="2"></td></tr>
<tr><td>글로벌코스</td><td colspan="2"></td></tr>
<tr><td>해외현지연수</td><td colspan="2"></td></tr>
<tr><td>경영감각인재육성연수</td><td colspan="3"></td></tr>
<tr><td>임시연수</td><td colspan="3"></td></tr>
</table>

우리나라 기업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교육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은 먼저 지재실무자, 개발기술자, 경영진과 같이 다른 교육수요를 가진 교육대상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교육의 수준도 단일하거나 기초와 심화

215) http://www.jpaa.or.jp/about_us/information/pdf/20141016tokyosyllabusn9.pdf, 2014.11.5..최종방문.

정도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쳐 고급 수준의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참조가 되는 JIPA의 교육 시스템의 강점은 무엇보다도 대상별, 수준별로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화되어있다는 점이다. 먼저 수요자가 지재관련 실무자인지 지재기발 기술자인지 경영직원인지에 따라 연수 코스가 달라지는데, 크게 지재기술직원연수와 경영감각인재육성연수로 나뉘고, 지재기술직원연수는 다시 지식재산 관련 실무자를 위한 코스, 기술자를 위한 코스, 지식재산권과 기업경영에 대해 교육하는 종합코스, 해외 지식재산제도를 교육하는 글로벌코스, 해외에서 관련 정보를 직접 전달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해외현지연수로 구성된다. 지식재산 실무자를 위한 코스에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의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은 지식재산권법 및 경쟁법, 해당 제도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고 방어하기 위한 특허출원, 심판 및 소송, 각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을 위한 실무사례에 걸쳐 매우 다양한 과목을 수준별로 개설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출원을 위해 해외 지식재산권제도, 해외의 분쟁사례 및 영문으로 명세서 등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강의도 개설하고 있었으며, 권리를 활용하기 위한 계약과 관련하여 민법, 계약법적 지식을 전달하고 교섭 시 활용할 수 있는 협상기술에 관한 강의도 이루어진다. 기술부서를 위한 코스에서는 해당 기술분야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법적 지식을 선택적으로 교육하고 있어 수요자의 특성을 파악한 교육과정의 설계가 이루어진다. 경영감각인재육성연수 역시 기업가를 대상으로 경영감각인재상을 설정하고 해당 인재상을 키워낼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이 수요자를 세분하고 각 수요자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점은 우리의 경우에도 크게 참조가 된다.

다음 수준별로 입문, 초급, 중급코스, 상급 및 연구코스로 세분화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점이 큰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식재산 실무자를 위한 코스는 다시 기초와 전문과정으로 나뉘며 기초과정은 입문, 초급, 중급코스, 전문과정은 상급 및 연구코스로 나뉜다. 기술부서를 위한 코스에서는 기술계 신입사원, 중견기술자, 기술자 지도자 등으로 나누어 각 단계의 수강자가 갖고 있는 커리어를 감안하여 해당 위치에서 가져야 할 지식재산적 소양을 함양하고, 해당 기술분야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법적 지식을 선택적으로 교육하고 있어 수요자의 특성을 파악한 교육과정의 설계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경영감각인재육성연수 역시 기업가를 대상으로 신입, 중간단계, 최종관리자로 나누어 해당 단계에서 필요한 경영감각인재상을 설정하고 해당 인재상이 갖추어야 할 능력을 상정한 후 신입단계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지식을 강의하고, 중간단계에서는 최고관리자를 지원하고 외부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문제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을 함양하며, 최고관리자 단계에서는 지식재산을 활용한 기업의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직원들을 독려

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 있는 인재의 육성을 위한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이 수준별로 세분화하여 각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점은 우리의 경우에도 크게 참조가 된다. 특히 연구코스군에서 수준높은 전문가의 지도하에 주로 심판결, 민사소송 등의 사례연구나 영문명세서의 작성연습 등과 같이 연습형식, 토론 형식의 자주적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은 고급 코스의 교육과정을 설계하는데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해외의 법제를 강의하면서도 동시에 현지연수를 실시하여 현지에서의 지식재산정보를 직접 듣고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의 법제를 국내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과 현지사정에 정통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위와 같은 JIPA 커리큘럼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수강대상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요자별로 특정한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인재상을 설정해두고 해당 인재상이 갖추어야 하는 능력을 과목화하여 단계별로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2. 설계방향

가.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

(1) 수요의 정확한 파악 - 인재상의 명확화·세분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업이 지식재산 실무인재에 원하는 것은 여러 분야의 지식을 깊이 습득하여, 융합적 사고에 기반한 복합 · 전문적인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기업에서 즉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의 습득을 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의미있는 통계를 보면, 현재 기업의 지식재산 실무인재의 핵심업무로 가장 비율이 높은 부분은 출원관리이지만, 향후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IP 조사 및 분석의 중요성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6)]
따라서 직무교육의 분야도 과거와는 달리 명세서 작성 등 출원 및 권리화에 관한 것에 집중하기 보다는 지식재산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와 관련 분야에 대한 동향, 정보분석 등을 토대로 기업경영에 적용될 수 있는 정보의 생산이 중시되고 있다.

| | 전체 | 대기업 | 일반중소기업 | 벤처기업 |
|---|---|---|---|---|
| 특허제도 | 48.9% | 52.7% | 46.0% | 50.0% |
| 특허명세서작성법 | 22.1% | 15.6% | 21.1% | 23.7% |

216)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2013, p.113.

| | | | | |
|---|---|---|---|---|
| 특허정보검색 | 41.2% | 34.3% | 38.4% | 44.1% |
| 특허분쟁(소송) | 36.6% | 51.3% | 38.8% | 32.3% |
| 특허정보분석(특허맵) | 33.0% | 39.7% | 26.7% | 36.0% |
| 특허라이선스 | 34.4% | 36.9% | 28.8% | 39.1% |
| 해외출원 및 소송 | 24.3% | 19.7% | 20.9% | 27.8% |
| 영업비밀 | 20.5% | 30.3% | 18.5% | 21.1% |
| IP금융 | 0.1% | 0.9% | 0.0% | 0.0% |

<기업이 원하는 직무교육 분야(복수응답)>[217]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적인 교육과정은 범위가 매우 방대하며, 이러한 범위를 커버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단시간에 가능한 것이 아니다. 또한 실무인재가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업무와 병행해서 교육을 수행하려면 교육목표가 매우 분명한 단기간의 교육과정을 지속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육목표를 명확화하는 것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세분화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표현해야 가능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 인재상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지표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218]

(2) 온디맨드 프로그램의 활성화

기업의 규모나 산업적 특성에 따라 원하는 지식재산 교육의 분야가 다를 것이므로 교육대상 및 소속 기업의 특성에 맞는 유동적인 교육과정의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한 영역에서 필요한 인재상 및 이에 부합하는 세부적인 능력을 설정하고 그를 함양할 수 있는 기본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유닛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다수의 교육기관에서 기초 - 심화과정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지만, 각 기업에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그보다 더 세분화된 수준별 프로그램의 설계가 필요하다.

나. 교육과정 이수의 실효성 제고

(1) 교재개발

기업의 지식재산 실무인재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의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살피자면 지식재산 실무인재 교육을 위한 강

217) 특허청 · 무역위원회, 2013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2013, p.26.
218) 예컨대 가나자와공업대학, 「知財人材のスキルの明確化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平成19年2月에서 주장하는 지재스킬표준과 같은 지표를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의교재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한국발명진흥회의 자료에 따르면 모든 강좌의 교재를 담당 강사가 제작하는 PPT 등의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특허청이 제공하는 이러닝의 경우에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같은 문제가 있고, 지역지식재산센터나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강사는 물론 교육내용에 대한 전문가이지만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므로, 이러한 현상은 비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소모적이다. 따라서 해당 강좌의 목표달성을 돕는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기본단위프로그램에 대응되는 세분화된 교재를 다양하게 개발하다면, 단일과목에서도 여러 개의 교재를 조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 생각된다.

(2) 성능측정도구 개발

다음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강조되어야 할 것은 성과측정도구이다.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은 일방적인 정보전달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강생의 집중도가 저하될 수 있다. 이 경우 강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교육이 종료된다면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교육의 효과로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당초 교육프로그램이 설정한 목표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시험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 II. 기업의 지재인재 양성 프로그램 제안

### 1. 개요

기업의 지식재산 실무인력은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고 방어하는 업무, 권리를 활용하는 업무와 더불어 지식재산, 기술, 경영을 함께 고려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하며 그에 따라 갖추어야 할 능력도 다양하다.

이에 따라 특허청이나 발명진흥회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는 기업의 지식재산 실무인력에게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지식재산제도 자체에 대한 정보제공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업의 지식재산 실무인력은 사업운영에 대한 실무적 감각을 토대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자신이 소속된 기업의 고유한 특성이나 문화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외부에서 양성된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외부 단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육프로그램의 이수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실무과정에서 OJT과정을 활용하여 실무인력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일본의 사례는 캐논과 JIPA이다. 캐논은 입사경력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OJT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JIPA에서는 실무인력의 경력이나 업무배경에 따라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에서도 이 같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경력별, 업무별 커리큘럼을 OJT화하여 실무감각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갖출 필요가 있다.

2. 단계별 교육모델의 제안

1) 기초과정

(1) 개요

본 단계는 입사 1~2년차의 인력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이 맡은 실무에 대해 이해하여 그에 따라 갖추어야 할 능력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삼는다.

(2) 법무부서

이 과정에서 권장되는 커리큘럼은 기업활동과 지식재산권제도, 특허·실용신안제도, 특허정보 및 조사, 디자인제도, 상표제도, 저작권제도, 지식재산계약, 외국특허제도, 부정경쟁방지법·독점금지법, 법률용어의 이해 등 각 분야에 걸쳐 개요를 설명하는 기초강의과정이다.

이와 더불어 실무적 관점에서는 모방상품에 대한 대책, 기술계약의 기초, OA의 기초 등의 과목을 개설하여 선배들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사례를 소개하고 필요한 경우 참관 등을 통해 그에 관한 직무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예시)[219]

| 과목명 | 내용 |
|---|---|
| 기업활동과 지적재산권제도 | 지식재산에 관한 여러 제도가 기업에 어떻게 관련되고, 기업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제도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제도를 구체적인 기업활동과 관련시켜 강의함 |
| 특허·실용신안제도 | 자사권리취득의 시작인 일상업무 안에서 발명·고안의 인식과 신고방법을 습득하기 위해 특허법·실용신안법의 체계 중 특히 |

219) JIPA의 입문코스, 日本知的財産協會, 2014年度 研修案內, 2014.3., 10-12頁.

| | |
|---|---|
| | 출원·심사절차의 개요를 구체적 발명을 예로 들어 강의함 |
| 특허정보 및 특허조사 | 특허조사의 중요성, 각 조사방법, 특허정보의 활용방법에 대해 강의함 |
| 의장제도 | 디자인권을 취득, 행사에 이르기 까지 일련의 기초지식을 기업실무에 입각해서 알기 쉽게 강의함 |
| 상표제도 | 상표권에 대한 권리취득에서 행사에 이르는 일련의 기초지식을 기업실무에 맞체 알기 쉽게 강의함. |
| 지적재산계약 개요 | 비밀유지계약, 공동연구계약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에 관려된 계약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예를 토대로 강의함 |
| 외국특허제도 |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특허제도의 골자를 강의함 |
| 저작권제도 | 저작권법의 개요에 대해 기업활동의 예와 관련하여 강의함 |
| 부정경쟁방지법·독점금지법 |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등)·독점금지법의 개요, 자사권리의 보호 및 타사 권리에 대한 대응의 사례를 바탕으로 강의함 |

(3) 기술부서

기술부서의 신입직원을 위한 지식재산교육은 기록이나 참관 등을 통해 연구/개발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이 활용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지식재산에 대한 마인드를 기르고 자신의 업무와 지식재산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권장되는 커리큘럼은 법무부서의 기초강의과정 중 기술과 관련된 부분 및 “연구/개발에 있어서 지식재산활용”, “기술자가 알아야 하는 IP지식” 등의 과목으로 연구/개발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활용하고 개발된 기술은 어떻게 지식재산화 되는지, 그 과정에서 기술자는 어떤 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의 고민 및 과제해결방법 등을 선배기술자의 강의 및 업무참관 등을 통해 학습한다.

예시)[220]

220) JIPA의 기술계신입사원을 위한 IP매너강좌, 日本知的財産協會, 2014年度 研修案內, 2014.3, 47頁.

| 과목명 | 내용 |
|---|---|
| 연구/개발에 있어서 지적재산활용의 실제 | 연구/개발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때 기술자는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문제나 고민을 갖고 해결하는지 등 실제 모습을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강의함. |
| 기술자가 알아야 하는 IP매너 | 연구/개발에서의 기본원칙인 「발명의 발굴」이나 「타사권리의 존중」, 「통상적인 특허조사」등 3가지를 중심으로 대학과 기어의 연구/개발의 차이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강의함. |

(4) 경영부서

경영부서의 신입직원을 위한 지식재산교육은 법무부서의 기초강의과정과 유사하고 이와 더불어 기업 내 지식재산법무를 총괄하는 임원 및 기술센터장 등 사내 지식재산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관리자를 초빙하여 지식재산이 기업의 운영방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듣고, 기업의 거점기술, 해당 기술의 사업화 등에 관한 사례연수를 실시하여 지식재산, 기술 및 기업의 관계에 대해 거시적인 관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예시)[221]

| 과목명 | 내용 |
|---|---|
| 지적재산전략 | 권리취득, 라이선스 협상 등 실무적 사항 및 혁신과 지식재산권의 관계 등 다양한 각도에서 지식재산전략에 관한 강의를 제공함. |
| 연구개발-먼지감소기술의 발상 및 상품화 | 디지털 SLR 카메라의 화질이 향상됨에 따라 촬상소자 부근의 먼지가 화상에 찍히는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소재로 하여, 기술개발에서 아이디어의 발상, 특허기술의 실용화, 상품화 등에서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 강의함. |
| 기업경영과 영업비밀관리 |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구조, 영업비밀 관리상 중요한 포인트 및 분쟁대응방법에 대해 최근 판례를 이용하여 강의함. |
|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적 화제 | 미국, 유럽 및 아시아에서 최근 등장한 심, 판결례와 기업경영과의 관계에 대해 강의함. |
| 특허정보와 활용 | 특허정보의 특징 및 관리·활용방법과 특허정보의 분석·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현황 및 미래에 대해 강의함. |
| 지적재산권관계 법률지식과 판례 | 특허, 영업비밀, 부정경쟁, 독점금지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및 판례와 기업활동과의 관계에 대해 |

221) JIPA의 종합연수 중 지적재산권과 기업경영, 日本知的財産協會, 2014年度 研修案內, 2014.3., 48頁.

| 해설 | 강의함. |
|---|---|
| 기업경영과 저작권 | 기업 경영에서 전략 수립과 위험 관리에서 저작권에 관련하여 알아 두어야 할 기본 지식과 유의 사항을 최근 법 개정 동향과 판례를 강의함. |

2) 심화과정

(1) 개요

본 단계는 3~5년차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론적으로는 깊이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실무적으로는 선배직원의 지도를 받아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 내는 연습을 하는 과정으로, 다른 부서의 업무를 참관하거나 업무보고회 등에 참석하여 각 분야의 지식 및 기술을 입체적으로 학습하도록 한다.

(2) 법무부서

이 과정에서 권장되는 커리큘럼은 지식재산권의 본질, 법률체계, 권리취득방법 및 활용방안, 실무에서의 유의점, 소송의 기초실무 등의 과목이다.

예시)[222]

| 과목명 | 내용 |
|---|---|
|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취득과 활용 | 발명의 발굴·창조에서 출원, 심사, 심판, 권리화 과정에서 대응방법 및 유의점을 명세서 등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하여 강의함 |
| 의장의 권리취득과 활용 | 의장의 발굴·창조에서 출원, 심사, 심판, 권리화 과정에서 대응방법과 유의점을 구체적 사례를 포함하여 강의함 |
| 상표의 권리취득과 활용 | 상표의 출원, 심사, 심판, 권리화 과정에서 대응방법이나 유의점을 구체적 사례를 포함하여 강의함 |
| 외국특허의 취득 및 활용 | 기업이 외국에서 특허를 취득할 필요성, 각국의 특허취득을 위한 제도의 구조(외국특허출원절차의 원칙, 파리조약등에 기초한 우선권제도, 유럽특허조약(EPC), 특허협력조약(PCT) 및 미국특허제도의 특수성), 판례를 고려한 외국 특허출원용 명세서작성시 유의사항, 외국특허취득시 필요한 기업 내 업무의 골자를 강의함 |
| 법령입문 | 법령구조, 읽는 법, 용어해설 등 초심자에 맞는 강의 |
| 지적재산권 | 재판, 법원의 절차, 조직, 특히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에 |

| | |
|---|---|
| 관련 소송 | 관련된 신판 및 소송의 종류 및 심결취소소송, 침해소송의 진행방식에 대해 강의함 |
| 기업의 지적재산관리 | 특허포트폴리오 구축(R&D프로젝트참여, 발명평가, 특허출원심사청구, 외국출원, 거절에 대한 대응, 권리유지 등), 특허클리어런스(타사특허조사,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지 검토, 무효자료조사), 라이선스·아웃, 경조장대응, 라이선스·인 등, 기업실무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개요를 강의함 |
| 특허정보 및 특허조사 | 특허조사방법 및 특허정보의 활용방법 강의, 특허조사의 기본지식으로 특허분류, 각국 특허청 데이터베이스의 사용방법 및 얻은 정보를 분석·정리하는 방법(특허맵) 등 강의 |
| 민법개요 | 일상생활과 민법, 계약의 성립·효력, 매매·물건의 대차, 금전의 대차·위임 및 도급, 채무의 이행·불이행, 채권의 , 담보, 소유권·단체·시효, 불법행위 |
| 민사소송법개요 | 민사재판·조정, 재판소·당사자, 소의 제기, 증거수집의 절차, 쟁점정리의 절차, 증인신문·화해절차, 공동소송·판결, 상소·지재소송의 특징 |

(3) 기술부서

이 과정에서 권장되는 커리큘럼은 지식재산을 연구개발의 흐름과 연관지어 강의하고 이를 통한 기술성과를 사업에 연결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행해야 할 업무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개발 주제선정시 지식재산정보의 활용”, “분쟁방지를 위한 타사 특허의 조사”, “사업수행과 관련된 특허권 취득전략”, “기술제휴와 지적재산의 취급” 등의 과목을 개설하여 특허정보 분석을 통해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기업이 개발해야 할 기술분야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시)[223]

| 과목명 | 내용 |
|---|---|
| 기술제휴와 지재리스크 | 다양한 기술제휴에서 공동연구·공동개발에 따른 리스크, 위탁에 따른 리스크, 산학제휴에 관한 리스크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기술자의 입장에서 그 리스크를 회피하는 방법 등을 함께 고찰함. |
| 특허 활용법 | 특허권을 이용하여 기술·제품·사업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 사고, 더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활용방법, 지식재산파트와 함께 권리행사를 할 경우 발명자 및 그 리더에게 필요한 사항 등을 강의함. |
| 외국특허취득 시 기본지식 | 기술자가 알아야 할 각국 특허출원에 관한 지식, 출원국가를 결정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 등을 강의함. |
| 연구개발 주제선정 시 | 기술이나 동업자의 동향을 알고 적절한 연구개발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특허조사와 활용에 있어서, 조사목적에 따른 조사수단, |

222) JIPA의 초급코스 및 중급코스, 日本知的財産協會, 2014年度 研修案內, 2014.3., 13-29頁.

| | |
|---|---|
| 지적재산정보의 활용 | 조사결과의 정리법, 지재정보의 활용 및 공유화 등에 대해 강의함. |
| 분쟁방지를 위한 타사특허의 존중 | 후에 사업에 방해가 될 타사의 특허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특허청구범위를 읽는 방법과 자체 기술과의 대비방법, 기술회피책을 취하는 방법, 지식재산파트와 상담하는 타이밍이나 방법 등을 강의함. |
| 사업을 지원하는 특허출원과 권리취득 | 발명의 본질적인 파악을 강의형식으로 습득하고 출원이나 사어화의 관점을 파악하여 앞으로 출원을 어떻게 추진할 지를 이해하고, 발명자로서는 출원된 발명의 중요성이나 기술변화를 지식재산파트에 적절하게 전달하고 권리화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위한 법 등을 강의함. |

(4) 경영부서

이 과정은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찾아내고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경영분석기법의 기초를 학습하고 과제해결기법을 익혀 이를 통해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숙련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경영전략 및 정보분석에 관한 커리큘럼을 설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략을 수립하는 연습을 하고 이를 활용하여 실무에 응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

예시)[224]

| 분야 | 내용 |
|---|---|
| 경영기초 | 논리적 사고와 문제해결<br>마케팅<br>경영전략<br>회계<br>파이낸스<br>이노베이션 창조방법<br>리더십 |
| 경영전략사례 | 전략이란 무엇인가<br>전략의 수립과정<br>경쟁과 전략<br>기술혁신과 전략<br>비즈니스모델<br>외부성장전략으로서 제휴와 M&A |
| 정보분석 | 경영컨설턴트의 관점 및 사고<br>정보수집이란 무엇인가<br>조사·분석방법<br>상품계획수립방법<br>사업개발방법 |

223) JIPA의 중견기술자를 위한 지적재산강좌, 日本知的財産協會, 2014年度 研修案內, 2014.3., 43頁.

224) 일본변리사회 경영기초과정 http://www.jpaa.or.jp/pdf/20140502osakanew.pdf; 경영전략사례세미나 http://www.jpaa.or.jp/activity/seminar_support/ipba/pdf/syllabus-casestudy2014tokyo2.pdf; 정보분석 세미나 http://www.jpaa.or.jp/pdf/syllabusforiaatosaka.pdf.

3) 전문과정

(1) 개요

본 과정은 입사 6년차 이상으로 업무에 익숙함을 느끼는 실무인력에게 심도 있는 지식과 효율적인 지식재산업무 추진을 위한 실무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경력을 쌓은 후 리더로 성장시키는 단계로 삼는다. 이 단계의 실무인력은 자신의 일을 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과 업무과제를 찾아내고 다른 사람과 함께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획력·창의력·실행력을 습득하여 후배를 지도하는 능력도 육성하도록 한다.

또한 회의 및 협의체 등을 참관케 하여 넓은 시야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연마하고, 법무, 기술, 경영부서 담당자와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지식과 사고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2) 법무부서

이 과정에서 권장되는 커리큘럼은 특허법·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계약실무, 민법개요, 민사소송법개요, 명세서작성방법, 특허정보, 부정경쟁방지법 및 독점금지법, 저작권법, 협상학 등의 과목을 개설하고 기업의 법률전문가를 초빙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본 해당 법률의 분쟁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한 실무감각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심판 및 판결에 관한 소송실무와 최결 심결례 등을 강의하여 실무인력이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그에 따른 실무기술을 익히도록 할 수 있다.

예시)[225]

| 과목 | 내용 |
|---|---|
| 특허법·실용신안법 | 지적입국정책 및 지식재산권 |
| | 발명이란 무엇인가 |
| |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과 특허요건1 |
| | 특허요건2 |
| | 출원절차 실제 |
| | 심판·심결취소소송 |
| | 직무발명과 종업원에의 보상 |
| | 특허권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
| | 특허침해소송 |
| 의장법 | 출원절차, 등록요건, 심사, 심판, 권리침해(의장의 유사성), 소송 등 |
| | 의장법과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등 그 외의 법률과의 관계 |
| | 각국 의장제도의 특징, 유럽공동체의장규칙(OHIM), 의장의 국제등록제도(WIPO) 등 |
| 상표법 | 상표제도·상표실무의 개설 |
| | 등록요건(식별력) |

| | |
|---|---|
| | 등록요건 |
| | 상표의 유사성 |
| | 상표조사·출원 실무 |
| | 중간절차실무(의견서 등 사정계) |
| | 이의·심판 등 실무(당사자계) |
| | 상표권침해사건 실무 |
| 계약의 기초 및 실무 | 계약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민법에 대해 강의함. 계약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계약법의 기본지식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강의함 |
| | 기업에서 라이선스계약이행에 수반하는 업무에 댛 폭넓은 강의를 제공함 |
| | 비밀유지계약, 공동개발계약, 공동출원계약, 라이선스계약 등 기술관련 계약에 대해 작성전 고려사항, 유의점 등 실무적인 관점에서 사례와 함께 강의함. 또한 영문계약에 대해 실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적 구성과 읽는 방법을 강의함 |
| 명세서작성방법 | 화학분야 |
| | 전기·기계분야 |
| 특허정보 | 특허정보와 특허조사 |
| | 화학분야의 특허조사 |
| | 특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
| 부정경쟁방지법 및 독점금지법 | 부정경쟁방지법 |
| | 영업비밀관련실무 |
| | 독점금지법 |
| 저작권법 | 저작권법 개요 |
| | 권리의 구제, 저작권 주변 관할권(法域) 문제 |
| | 저작권 기본판례 |
| | 저작권계약과 소프트웨어 거래 |
| | 그래픽 관련 기업실무 |
| |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실무 |
| | 기업경영과 저작권관리 -기업의 저작권전략- |
| | 기업경영과 저작권관리 -저작권을 둘러싼 동향- |
| 협상학 | 논리적으로 협상하기 위한 논리적사고력 |
| | 사전준비의 방법론 |
| | 창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전략 |
| | 사례·연구 |
| | 협상학의 개요 및 지재비즈니스 협상의 관리 |
| | 기본적인 거래협상(연습) |
| | 사업제휴협상(연습) |
| 특허·실용신안, 심판·심결취소소송 | 심판제도와 실무 |
| | 심결취소소송의 법적문제 |
| | 심결취소소송의 이론 및 실무 |
| | 최근 심판결례해설 |

| | |
|---|---|
| 상표·부경법심판 결례 및 기업의 대응 | 상표에 관한 심판결례 해설 |
| | 상표권침해소송 및 부정경쟁방지법판결례 해설 |
| | 상표사건·부경법사건의 기업전략 및 실무대응 |
| 특허침해소송 | 특허권침해소송개론 |
| | 소송의 쟁점 정리 및 증거조사 |
| | 침해성부의 논점에 관한 실무 |
| | 금지가처분 |
| |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
| | 침해소송 및 특허심판제도 |

(3) 기술부서

이 과정에서 권장되는 커리큘럼은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직원들과 함께 협업하여 또는 팀원들을 지도하면서 기술과 사업을 연결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사업과 지식재산,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특허출원전략,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계약 등에 걸친 과목을 개설하고 기술과 지식재산부서의 연계를 통한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업무를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예시)[226]

| 과목명 | 내용 | 강사 |
|---|---|---|
| 사업과 지적재산 | 사업활동에서 지식재산의 역할을 알고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이끄는 방식을 이해하며, 지식재산 활동에서의 기술자 리더의 기본역할을 이해함을 목적으로 함. 또한 사업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지식재산의 최근 동향을 배움. | 기업 |
| 특허정보의 활용 | 정보활용의 중요성 및 정보활용에 있어서 기술자가 행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강의함. | |
| 특허출원 | 특허출원의 목적 및 강한 권리가 가진 요건을 알고 기업 내 직원들의 발명을 촉구하는 지도에 대해 이해함. 또한 사업을 뒷받침하는 발명에 대해 이해하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출원에 연결하는 지식재산부문과의 연계의 필요성에 대해 강의함. | |
| 문제되는 타사특허에의 대응 | 타사특허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특허권의 본질과 판례를 통해 확인하고, 문제되는 타사 특허는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한 대응을 알며, 지식재산파트 및 법무파트와의 역할분담에 대해 강의함. | |
| 사업활동에서 자사특허를 유효하게 활용하는 법 | 사업활동을 우위에 두고 자사특허활용의 의미를 이해하며, 사업활동의 가치평가의 중요성 및 관점, 발명의 제1발견자로서 역할과 대응에 대해 강의함. | |

225) JIPA의 중급 및 상급코스, 日本知的財産協會, 2014年度 研修案內, 2014.3., 15-34頁.
226) JIPA의 기술자 리더를 위한 지적재산강좌, 日本知的財産協會, 2014年度 研修案內, 2014.3., 46頁.

| | | |
|---|---|---|
| 연구·개발활용 및 계약 | 연구개발활동에 관계되는 계약에 대해 그 역할, 체결 전 주의점, 계약 준수의 중요성 및 지식재산파트와 법무파트 간의 사전협의의 필요성에 대해 강의함. | |

(4) 경영부서

이 과정은 지식재산경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지식재산전략 및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경영시책을 구상하고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권장되는 커리큘럼은 “IP중심의 지식재산전략”, “사업강화를 위해 공격 및 방어에 이용되는 특허”, “국내외 출원권리화전략”, “미래사업강화를 위한 제휴계약”, “협상전략” 등의 과목을 개설하고 지식재산전략에 관한 도서를 활용하여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식재산전략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예시)[227]

| 커리큘럼 |
|---|
| 기업의 지재전략<br>-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지적재산전략 |
| 연구개발, 사업지원전략<br>- IP중시환경, 조직구축 |
| 연구개발, 사업지원전략<br>- IP, 기술, 경영이 일체화된 활동전략에 기한 연구개발, 사업지원 |
| 권리화·활용전략<br>- 공격과 방어의 특허전략, 지식재산강화전략, 상대적 지식재산강화전략 |
| 권리화·활용전략<br>- 글로벌권리화, 표준화, 블랙박스화 |
| 제휴계약, 협상전략 |

3. 보론

이 같은 교육프로그램 모델은 인적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내부교육과정의 설치가 어렵다고 하여 위탁교육에만 의존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어렵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역시도 내부 교육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 상기 프로그램 중 일부를 축소편성하고 외부 지재서비스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어려움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227) 일본변리사회 지재경영아카데미, 기업의 지적재산전략 세미나 참조, http://www.jpaa.or.jp/activity/seminar_support/ipba/pdf/2014marushimazemi_zen.pdf, 2014.11.5..최종방문

한편 전문적인 기술의 이해가 필요한 분야나 여러 분야의 융합적 지식이 필요한 과목의 경우 커리큘럼을 운영할 강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학교 및 전문자격사 교육모델과 연계하여 기업에서 원하는 과목을 강의할 수 있는 교육인력을 양성해내는 것도 후속과제가 될 것이다.

# 제5장 지식재산 금융 및 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

## 제1절 서론

### Ⅰ. 지식재산 금융의 의의

#### 1. 지식재산 금융의 필요성

세계경제는 자산기반경제(asset-based economy)에서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산업구조도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게 되었다.[228] 실제로 미국의 경우, 지식재산집약 산업(IP-intensive industries)은 2010년에 5조 600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으며,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4.8%를 차지한다.[229] 이와 같이 지식재산기반산업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과 같은 기술집약형 기업들이 미래가치 지향적인 무형자산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현재 가치가 있는 유형고정자산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서 투자처,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유입하는데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230] 기술집약형 기업들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이 사업화되어 고용이 창출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지식재산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2. 지식재산 금융의 개념

지식재산금융은 지식재산(권)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지식재산에 기초하여 금융기능을 제공하는 제반 활동으로서, 지식재산(권)을 기초로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 간 자금중개 기능을 수행하거나 유동화, 위험관리 등 금융기능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31] 즉, 지식재산금융은 기술·지식재산을 담보로 금융권이 융·투자할 수 있는 지식재산 활용 생태계를 의미한다.[232]

지식재산금융은 지원대상에 따라 지식재산금융은 “지식재산 기업에 대한 지원(벤처캐피털형)”과 “지식재산 자체에 대한 투자・대출(창의자본형)”로 구분 할 수 있다. “벤처캐피탈형”은 지식재산 보유기업에 대한 지원으로서 가치평가에 있어서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 보유기업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며, 기존의 기술평가기반 금융모델과 유사하다. 반면, “창의자본형”은 지식재산 자체에 대한 투자 및 대출 등의 금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기업평가 등을 제외한 형태로 추진되는 모델을 말한다.

---

228) 조경선·임재용, 「지식재산금융과 가치평가실무」, 한국금융연수원, 2014, 99면.
229) U.S. Department of Commerce,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U.S. Economy: Industries in Focus, March 2012, p.7.
230) 조경선·임재용, 「지식재산금융과 가치평가실무」, 한국금융연수원, 2014, 99면.
231) 관계부처합동,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 2013.7, 2면.
232) 전자신문, “IP금융 활성화, 민간시장에 초점 맞출 것”, 2014.3.4 보도기사 (http://www.etnews.com/20140304000066 2014년 10월 11일 최종방문).

또한 금융성격과 전문성(지식재산평가, 기업과 지식재산의 구분, 기업평가)에 따라 “지식재산 기반 기술금융”, “지식재산 자산금융”, “지식재산 비즈니스 금융”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지식재산 기반 기술금융”은 기술(지식재산)평가 대출, 기술(지식재산)평가 보증, 창업투자 조합 등을 통한 기술(지식재산)기업 투자 등이 해당된다. “지식재산 자산금융”은 지식재산 Sales & License Back[233], 지식재산 담보대출과 자산유동화가 있으며, “지식재산 비즈니스 금융”은 NPE(Non-Practicing Entity) 수익창출사업에 대한 펀드 투자(라이선싱 사업 등)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가에 따라 “지식재산 담보대출”, “지식재산 기반 벤처투자”, “지식재산 Sales & License Back”, “지식재산 유동화”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지식재산 담보대출”이란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를 통해 담보로 설정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기업의 부실발생시 담보 지식재산권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지식재산 기반 벤처투자”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 자산의 가치를 투자결정의 가장 중심요소로 보는 벤처투자기법이다. “지식재산 Sales & License Back”이란 투자자가 대상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매입한 후 사용권을 부여하고 일정기간 매출액 일부를 로열티로 지급받으며, 만기에 투자자가 지식재산권을 대상기업에 재매각하여 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지식재산 유동화”란 지식재산이 가지는 로열티 수익 등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증권(자산유동화증권, ABS)을 발행하여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234]

지식재산금융은 물적금융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물적금융은 부동산이나 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235] 유사 개념으로는 기술금융이 있다. 기술금융은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기업에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으로,[236] 권리화되었거나 권리화가 가능한 기술의 창출과 창출된 기술의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해 기업이 필요한 전반적인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금융의 범위와 중복되기도 한다.[237]

## Ⅱ. 지식재산 금융의 역할

233) Sales & License Back은 물적담보 및 신용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매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대신 상환기간 동안 실시료를 지불하여 자금상환시 소유권을 찾아오는 방식으로 지식재산권 유동화의 한 형태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조달 수단의 일환인 Sales & Leaseback을 지식재산시장의 개념에 맞게 변형한 개념이다(조경선·임재용, 「지식재산금융과 가치평가실무」, 한국금융연수원, 2014, 177면).

234) 한창희, 「지식재산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분석을 통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연구」,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논문, 2014, 16-17면.

235) 조경선·임재용, 「지식재산금융과 가치평가실무」, 한국금융연수원, 2014, 110면.

236) 관계부처합동,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 2013.7, 3면.

237) 국가지식재산위원회·주식회사 펜타노바, 「지식재산 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2012, 24면.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는 펀드판매 업무, 수탁업무, 자문업무 등의 업무수요를 창출하고, 양질의 고용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관리, 평가, 거래 등 지식재산 서비스 부문에도 다양한 업무 수요를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대출, 예금, 주식, 채권 등의 금융상품에 발전된 금융기법을 결합함으로써 다양한 금융 파생상품이 개발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금융상품 선택 폭이 넓어졌듯이 지식재산 금융에 있어서도 기존의 기술평가보증, 기술평가인증서를 바탕으로 한 기업 신용대출 등의 방법과 함께 투자신탁 등을 활용한 양도담보 형태(IP Sales & Licenses Back 등), 질권설정을 통한 담보 금융, 로열티 계약인수, 지식재산 유동화 등 다양한 지식재산 금융 기법 및 투자상품이 개발된다면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이 다양화될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선택의 폭도 증가할 것이다.[238]

## Ⅲ. 우리나라 지식재산금융의 현황

### 1. 지식재산금융의 법적 근거

#### 가. 지식재산기본법

지식재산기본법은 지식재산의 유동화 및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 융자, 신탁, 보증, 보험 등의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정부가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5조).

#### 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이라 함)」은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및 기술자산 유동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정부가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조 제1항).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기술진흥원이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알선 지원 및 유동화증권의 매입 등 기술자산유동화사업 등의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5조 및 제15조의2). 그리고 동법 제27조는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을, 동법 제28조는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기술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동법 시행령 제34조)을 충족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하고 있으며, 동법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신탁사무의 방법,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8까지).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38) 이성상,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제8권 제3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지식재산학회, 2013, 153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동법은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신탁재산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동법 제103조), ① 금전, ② 증권, ③ 금전채권, ④ 동산, ⑤ 부동산, ⑥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⑦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의 재산 이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무체재산권을 신탁업자가 신탁 가능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식재산기본법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 또한 지식재산을 기본으로 하는 구조화증권이나 파생금융상품의 발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적 근거는 아니다.[239] 다만, 자본시장법은 신탁의 방법을 통하여 지식재산을 기초로 하는 금융상품을 설계, 개발, 판매하는 활동을 별도로 제약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기존의 부동산이나 금전채권 이외에 지식재산을 기초로 하는 신상품의 개발가능성을 허용하고 있다.[240]

### 라. 동산·채권 등이 담보에 관한 법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이라 함)」은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동법 제1조) 지난 2012년 6월 11일 시행되었다.[241] 동법에 말하는 “지식재산권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등 지식재산권[법률에 따라 질권(質權)을 설

239) 국가지식재산위원회·주식회사 펜타노바, 「지식재산 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2012, 43면.

240) 국가지식재산위원회·주식회사 펜타노바, 「지식재산 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2012, 44면.

241) 국제적 금융거래가 활발해지고 다양한 형태의 금융거래가 발달하면서 “국제적인 동산·채권 등에 대한 감보제도” 마련에 관심이 높아지고, 2008년 개최된 유엔총회에서 회원국들이 담보법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국제연합 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가 마련한 입법지침을 호의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하는 취지의 결의를 채택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들이 자산의 건전성과 신용위험을 크게 의식하고 채권회수가 확실한 담보대출의 비중을 높여 왔으며, 이에 따라 경제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동산과 채권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현행 민법에서는 동산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인 질권설정은 담보권자에게 담보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이 자금조달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실무에서 관행상 이루어져 온 양도담보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공시함으로써 그 공시방법이 불명확하고 불완전하여 이중양도담보에 따른 분쟁발생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채권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민법에서 채무자에 대한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대항요건으로 함에 따라 채권담보권을 효율적으로 공시하는데 한계가 있고, 장래의 다수 채권을 일괄하여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위와 같은 국제적 금융거래의 증가, UN의 담보법제 통일노력 등 대외적인 요인과 국내 담보제도를 개선해 원자재, 재고자산 등의 동산이나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경제계, 학계의 요구 등 대내적인 요인이 축적되면서 동법이 제정되었다(법무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해설서」, 2010, 3-4면).

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목적으로 그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담보권을 말하고(동법 제2조 제4호), 지식재산권담보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즉, 지식재산권자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특허원부, 저작권등록부 등 그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공적(公的) 장부에 동법에 따른 담보권을 등록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에 근담보를 설정한 경우에도 동법에 따른 담보권을 등록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였다. 현행 민법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인 권리질권은 근질이나 공동질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식재산권에 대한 근담보, 공동담보를 통한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242]

동법이 시행됨으로써, 기술이전법상 신탁회사 이외에 특허신탁관리기관,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모두 수탁받은 지식재산을 담보로 하는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243]

### 마. 자산유동화법 및 상법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이 가능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는 근거법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함)」과 상법이다.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자금조달방식은 ①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을 통하여 수행하는 방식과 ② 신탁을 통하여 수행하는 방식 두 가지이다.[244]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유동화자산은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이며(동법 제2조 제3호), ① 현재 또는 장래의 재산적 가치를 보유할 것, ② 매매 및 파산재단으로부터 분리가능할 것, ③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회수 및 지급이 분리되어 잇을 것 , ④ 정기적인 원금상환에 충분한 현금흐름을 갖추고 있을 것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45] 또한 자산보유자의 요건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으로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2호).[246] 따라서 신용도가

---

242) 법무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해설서」, 2010, 13면

243) 국가지식재산위원회·주식회사 펜타노바, 「지식재산 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2012, 44면.

244) 국가지식재산위원회·주식회사 펜타노바, 「지식재산 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2012, 45면.
자산유동화법 제2조 제1호.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다. 신탁업자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245) 국가지식재산위원회·주식회사 펜타노바, 「지식재산 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2012, 46면.

246) 자산유동화법 제2조 제2호.

낮은 일반 비상장기업, 대학교, 국공립연구소 등은 직접 지식재산의 자산보유자로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 지식재산금융의 현황

가. 지식재산 담보대출

지식재산 담보대출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평가금액 이내에서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수차례 시도가 있었으나, 가치평가모델의 부재, 높은 부실율, 담보 특허권 매각을 위한 시장의 부재 등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였다가 최근에 다시 활발하게 추진 및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247]

특허청(KIPO)은 물적 담보 및 신용이 부족한 초기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과 협력하여 2013년 9월부터 IP 담보대출을 통해 2014년 8월까지 76개 기업에 700억 원 이상의 대출을 시행하였다. 특히 2014년에는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은행(5월 29일)·신한은행(6월 26일)·KB국민은행(9월 16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품개발에 협력하고 있다.[248] 한편, 중소기업청은 2013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특허담보대출을 시행하여 총 50억 원을 대출할 예정이다.

나. 지식재산기반 벤처투자

지식재산기반 벤처투자는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회사가 지식재산 보유기업의 사업화단계에 투자하는 것이다. 특허청은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특허사업화 펀드가 지식재산기반 벤처투자로서 기능을 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모태펀드에 총 1,430억 원을 출자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013년 현재 총 25개 특허계정 투자조합(자펀드)이 결성되었으며, 2012년 지식재산 기반의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수행하는 아이디벤처스(주)가 설립되었으며 약 150억 원 규모의 “IBKC-IDV IP 전문조합 1호“ 펀드를 결성하였다.

<특허청의 모태조합 출자를 통한 사업화자금 지원 절차>

247) 국가지식재산위원회·주식회사 펜타노바, 「지식재산 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2012, 171면.
248) 특허청, “특허청-KB국민은행,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4년 9월 17일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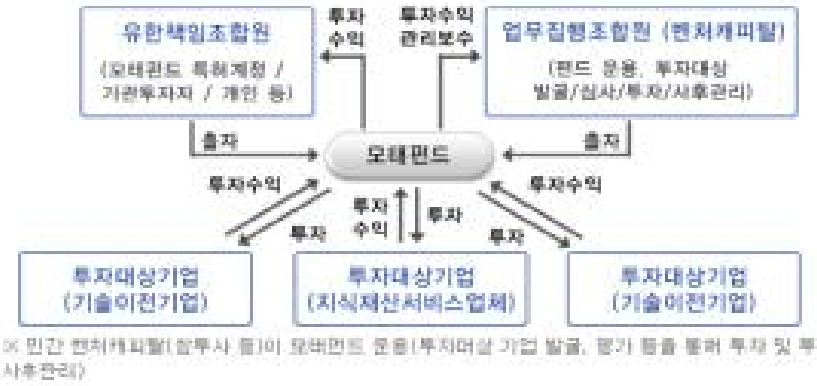


※ 출처 :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5063&catmenu=m03_02_02_07)

다. IP Sales & Licenses Back

2012년 지식재산권을 자산으로 운영하는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주)이 설립되고, 산업은행이 IP Sales & Licenses Back 펀드에 출자(1,000억 원)하여 2014년 9월, 팬택社가 보유한 통신 표준특허를 250억 원에 매입하고, 연간 6.6%의 로열티를 받고 팬택社에 라이선스하여 국내 최초의 IP Sales & Licenses Back방식의 금융을 시행하였다..[249] 이는 물적담보 및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250]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주)의 IP Sales & Licenses Back 구조>

※ 출처 :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주) 홈페이지(http://ibridgefund.com/page/sub4_01.php)

이와 같은 IP Sales & Licenses Back은 재무적 투자자(산업은행), 펀드운용사(아

249) 한창희, 「지식재산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분석을 통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연구」,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논문, 2014, 20면.
250) 국가지식재산위원회·주식회사 펜타노바, 「지식재산 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2012, 177면.

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 지식재산권 평가비용지원(특허청), 지식재산권 평가기관(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 등 4자의 협업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주)의 IP Sales & Licenses Back 실적(2013년)>

| 구분 | 특허권 | 상표권 | 합계 |
|---|---|---|---|
| 2013년 | 210억 원(6개 기업) | 100억 원(1개 기업) | 310억 원(7개 기업) |

※ 출처 :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주)

라. 지식재산 유동화

2002년 당시 한국기술거래소(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통합)는 기술유동화 증권(Technology Backed Security, TBS)의 발행을 적극 검토하였으나 보증기관을 중심으로 한 참여기관의 합의 도출에 실패하여 중단한 사례가 있다. 2005년에 제정된 기술이전법 상에서도 정부가 기술자산의 유동화를 촉진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특허를 받지 않은 보유 기술”은 물론이고 “특허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기술”에 대해서조차 유동화 증권 발행에 성공한 사례는 전무함. 다양한 지식재산 중에서 상표권의 유동화에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이랜드 사례) 외에, 기술, 저작권 등에 대한 유동화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251]

3. 현행 지식재산금융의 문제점

가. 지식재산 활용 관련 인식부족

지식재산권 활용에 대한 인식부족과 금융회사의 리스크 회피 성향 등으로 지식재산금융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기술기업은 지식재산 보호와 기업 내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외부화를 통해 현금화 하려는 인식과 노력이 부족하다. 반면, 금융회사는 평가 능력 부족과 리스크 회피 성향으로 가치평가가 용이한 유형자산에 기초한 담보 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 금융기관 차입시 부동산 및 예적금 담보, 신용보증서 비율이 73.1% 수준이다.[252]

나. 다양한 금융수단 부족

미국 등 지식재산 강국은 지식재산 기반 담보대출 이외에 지식재산 유동화, 매각 후 재임대와 보험등 다양한 수단 활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다양한 기술·지식재산금융을 제공하지 못하고 기술평가보증에 기초한 보증형・대출형 지원이 일반

251) 국가지식재산위원회·주식회사 펜타노바, 「지식재산 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2012, 47면.
252) 관계부처합동,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 2013.7, 5면.

적이다. 현재 기술평가에 기초한 보증형 지원에 집중되어 지식재산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기법이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담보 또는 보증은 금융기관과 기업 간의 정보비대칭에 따른 신용위험을 보완함으로써 공개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는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한다.[253]

다. 인프라 및 지식재산가치평가의 전문성 부족

지식재산 관련 전문성・인프라 부족은 지식재산을 분리하여 거래・평가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식 재산을 기업에서 분리할 수 없는 기업의 일체로 보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지식재산 분리와 거래가 비활성화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의 (특허)기술가치연계보증의 경우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보증한도를 결정하지만, 기업자체의 신용도도 평가하여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도 지식재산을 자체 평가・분석하는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는 지식재산가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재의 부재 및 인재의 전문성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라.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미흡

정책금융기관이 투자·유동화 등 지식재산금융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장 조성자 역할이 다소 부족하다. 지식재산 자체의 창출·인수에 대한 우대금융이 부족하고 지식재산을 별도 구분하지 않고 기술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마. 민간을 통한 지식재산금융 활용 저조

지식재산 금융의 제공 주체는 주로 정부에 의한 정책자금(중소기업청, 기술보증기금 등)의 형태로 지원되며, 민간자금은 주로 창의자본형 펀드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정책금융을 통한 기술 또는 지식재산(권)에 기초하여 기술가치 보증과 정책금융공사의 기술기반온렌딩과 중소기업청 융자가 대표적이다. 민간을 통한 지식재산 금융 공급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전체 지식재산 금융의 12% 수준 차지하고 있다.

<지식재산 금융규모('12년 기준)>

253) 이재연, "금융기관 대출관행의 영향 및 시사점", 「주간금융브리프」 제23권 w제4호, 한국금융연구원, 2014, 6면.

| 구분 | 유형 | 형 태 | 금액(원) | 비중(%) |
|---|---|---|---|---|
| 공공 | 보증 | 기보 (특허)기술가치연계보증 | 667억 | 10.1 |
| | 융자 | 정금공 기술기반온렌딩제도 | 309억 | 4.7 |
|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3,000억 | 45.3 |
| | 투자 | 정금공/산은캐피탈 특허기술사업화펀드 | 300억 | 4.5 |
| | | 산은 테크노뱅킹('13년) | 1,500억 | 22.6 |
| 민간 | 투자 | 특허 관련 펀드 | 250억 | 3.8 |
| | | 컨텐츠 관련 펀드 | 600억 | 9.0 |
| 지식재산금융 합계 | | | 6,626억 | 100 |

※ 출처 : 관계부처합동,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 2013.7, 4면.

## 제2절 지식재산 금융 및 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및 과정

### I. 서론

#### 1.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의의

##### 가.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필요성

투자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의 문제는 가장 중요하다. 원론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고유한 가치평가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이러한 가치평가에 대한 의사결정이라는 정보들이 시장에서 수집되고 이를 바탕으로 균형가격이 결정되게 된다. 이는 지식재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지식재산에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지식재산과 관련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만일 시장 참여자들 간에 가치평가 결과들의 편차가 크게 나타날수록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을 유동화하여 회사채를 발행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작업은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회사채 발행의 경우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을 담보로 하는 융자나 지식재산·기술의 이전과 매각에 대한 의사결정의 경우에도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데, 지식재산은 특성상 지식재산 보유자와 투자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매우 크고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가치평가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정보비대칭성의 문제 이외에도, 기술의 진보나 권리의 강도나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주체나 시장환경 변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의 정도가 높기 때문에 지식재산의 적절한 가치평가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에서 자율적으로 지식재산금융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례들과 창조기업들에게 지식재산을 통해 자본조달이 가능하도록 기업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당위적 목적을 고려한다면 효과적인 지식재산의 가치평가가 필수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254]

나.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개념

기술이 지식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한다면, 이는 영업비밀 또는 기타 미등록 지식재산권에 의해 보호를 받지 않는 한 공적 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술을 평가한다는 것은 결국 화폐적인 가치평가에 기초한 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술가치는 지식재산으로부터 나오므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는 결국 기술가치평가[255]로 보는 견해도 있다.[256] 그러나 지식재산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257]을 의미하므로 기술에만 한정되지는 않으므로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개념을 확대하고 기술 가치평가와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기술평가와 지식재산평가의 구분】**

254) 국가지식재산위원회·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생태계 조성방안」, 2013, 10-11면.

255) "기술평가"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평가는 평가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타당성평가", "종합기술평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기술가치평가"란 사업화하려는 기술이나 사업화된 기술이 그 사업을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기술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 원칙과 방법론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평가의 유형】

| 구분 | 정의 | 세부평가종류 |
|---|---|---|
| 기술가치평가 | 당해 기술에 의하여 현재 시현되고 있거나 장래에 시현될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금액으로 표시 | -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br>- 외국인 출자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br>- 기술의 담보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평가<br>- 기술이전·거래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br>- 기술사업의 이전·양수, 양도를 위한 평가 등 |
| 기술사업 타당성평가 | 기업이 특정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신규로 사업화하거나 현재 추진 중인 기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때에 당해 사업의 기술성 및 사업타당성을 평가 | - 벤처기업 확인, INNO-BIZ 선정평가<br>- 발명의 사업성평가<br>- 정부, 지자체 또는 금융기관 등의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br>- 금융기관 등의 여신심사용 기술평가<br>- 기술이전·거래 등을 위한 평가<br>- R&D 평가<br>- 보증지원을 위한 평가 등 |
| 종합기술평가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술을 경영환경, 사업전망 등 기업의 실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 금융기관, 벤처캐피탈 또는 엔젤투자자 등의 투자용 평가<br>-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평가<br>- 주식가치평가 등 |

※ 출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256) 최승재,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와 경쟁법", 「산업재산권」 통권 39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12, 11면.

257)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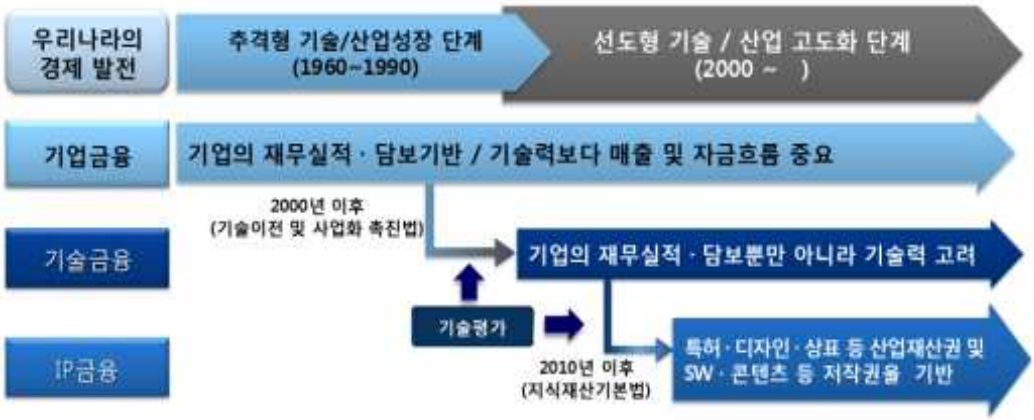


※ 출처 : 산업은행 기술평가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방안」, 2013, 9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식재산·기술에 대한 평가 동향과 금융권의 수요를 감안해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97호, 2014년 6월 18일 시행)」을 전면 개정하였다. 즉, 동 운영지침 "제3절 지식재산권 평가의 특칙"을 신설하여 IP 분쟁 등과 관련된 권리성의 심층 평가기준 및 지식재산 자체의 거래시장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즉,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지식재산 비즈니스 등이 증가함에 따라 독립된 재산권으로서 IP 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특칙규정을 마련했다.[258]

동 운영지침에서 지식재산권 평가란 "지식재산권이 기술사업화 주체와 분리되어 거래될 수 있는 독립된 거래객체로서의 재산권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기술평가 내지 기술가치평가와 그 개념상 구분하였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평가는 ① 금융기관에 대한 지식재산권 담보, ② 지식재산비즈니스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매매 또는 라이선스, ③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액의 산정, ④ 기타 지식재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259]

## 2.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 인력 육성의 필요성

2013년은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금융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과 함께 아직 한국의 지식재산금융이 태동하는 단계로 민간 금융기관들의 자율적인 시장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현실적 상황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지식재산금융은 대출과 보증 중심의 금융지

25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거래기반팀, 「수요자 맞춤형 기술평가체계 수립」, 2014년 6월 24일자 보도자료.
259)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26조.

원이라는 것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는 데 특징이 있다.[260]

이와 같이 공공부문에서 많은 금융상품들이 제공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 기반 금융상품들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자금조달의 목적과 경영전략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을 기대하기 힘든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무엇보다 지식재산에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상품을 기획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기관차원에서도 지식재산 금융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해 조직의 역량을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261]

**【공공부문의 지식재산 금융 관련 사업현황】**

| 기관 | 구분 | 주요 지원내용 | 규모(억원) | 실적(억원) |
|---|---|---|---|---|
| 신용보증기금 | 보증 | 지식재산창출 보증 프로그램 | 3,000 | 357 |
| | | 혁신형 창업기업 보증 | - | - |
| 기술보증기금 | 보증 | R&D과제 수행 성공기업 특례보증 | 500 | - |
| | |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 | - |
| | | 청년창업 특례보증 | | - |
| | |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 | | - |
| 산업은행 | 펀드 | KDB Pionner 지식재산권(IP) 펀드 | 1,000 | 200 |
| | 투자&대출 | 창조경제 특별자금 | 30,000 | 2,000 |
| | 대출 |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 3,000 | 9개기업, 108 |
| 기업은행 | 투자 | IBK 캐피탈 IP투자펀드 | 1,000 | 14개기업, 190 |
| | 대출 | IBK창업섬김대출 | 10,000 | 2,382 |
| | | IBK청년전용창업대출 | 400 | - |
| | | IP보유기업 보증부대출 | 2,000 | - |
| 수출입은행 | 대출 | 기술개발용 수출자금대출 | 390 | - |
| | | 히든챔피언 원스톱 패키지 지원 | 40,000 | - |
| 한국정책 | 투자 | R&D-Biz Creation 펀드 | 1,000 | - |

260) 국가지식재산위원회·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생태계 조성방안」, 2013, 12면.
261) 국가지식재산위원회·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생태계 조성방안」, 2013, 21면.

| | | | | |
|---|---|---|---|---|
| **금융공사** | | 벤처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 700 | - |
| | 대출 | 온렌딩 대출 | - | - |
| **중소기업 진흥공단** | 대출 | 청년창업지원센터 | 700 | - |
| | | IP담보대출 | 50 | 11 |

※ 출처 : 국가지식재산위원회・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생태계 조성방안」, 2013, 13면.

따라서 지식재산 금융이 활성화되기에는 신뢰성 있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기술보증기금과 한국발명진흥회를 비롯해 다수의 공공기관들과 민간의 지식재산서비스업체들이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조직 내부의 사업 목적을 위해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치평가 결과에 대한 기관 간 교류가 거의 없으며 실제로 지식재산 거래시에 가치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전문적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 지식재산 가치평가 인재는 지식재산 서비스인력에 속한다. 따라서 지식재산 가치평가 인재는 법률·경영·금융·교육 등 고도의 분야별 전문서비스 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일 것이 요구된다. 즉, 지식재산평가가 적용되는 경우가 ① 금융기관에 대한 지식재산권 담보, ② 지식재산 비즈니스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매매 또는 라이선스, ③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액의 산정, ④ 기타 지식재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활용하는 경우이므로 각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가치평가에 대한 정보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실거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활용체계의 기반이 취약하다. 또한 현재 평가기관의 내부에서만 인력을 양성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262] 따라서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지식재산 가치평가 인재육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현행 지식재산 가치평가 인재 육성 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인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확대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3. 한국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 인력 육성 현황 개관

한국의 자격 제도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크게 국가자격(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과 민간자격(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으로 구분된다.[263] 지식재산과 관련된 국가자격으로는 변리사와 변호사 자격제도가 있으며, 민간자격으로는 민간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업·기술가치평가사, 특허정보

262) 국가지식재산위원회·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생태계 조성방안」, 2013, 23면.
263) 자격기본법 제2조.

검색사·특허정보분석사, 저작권 관리사, 브랜드 관리사 등이 있다.[264] 현재 지식재산 가치평가와 직접 관련된 국가자격은 없고, 민간자격으로는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의 기업·기술가치 평가사, 한국기업평가원의 기업가치평가사,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의 기술평가사, 유비쿼터스미디어콘텐츠연합·대한온라인산업진흥회의 저작권관리사,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 한국브랜드마케팅협회의 브랜드관리사 등이 있다. 이들 기관에서는 자격증 취득 관련 시험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자격기관 이외에도 지식재산 가치평가기관 및 금융기관에서도 지식재산 가치평가 관련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와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가치평가원이 있다. 특히, 기술보증기금은 기관 내 자격제도인 기술평가사 제도를 운영하여 내부평가인력을 대상으로 기술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지식 습득 및 수행능력 향상과 직원의 자기계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14년 3월 21일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방안에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과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 가치평가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기술가치평가 전문인력도 양성해 나갈 계획을 밝힌 바, 정부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 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에도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 교육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행 지식재산 관련 주요 교육기관의 가치평가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 인력 육성현황에 대해 민간자격기관, 지식재산 가치평가기관 및 금융기관, 기타 교육기관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현행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 인력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II. 한국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관련 민간자격의 유형과 현황

### 1. 기업·기술가치 평가사(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 가. 개요

기업・기술가치평가사(Korea Certified Valuation Analyst, KCVA)는 국제가치평가사협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ultants, Valuators and Analysts, IACVA)의 한국 설립회원(Charter Member)인 (사)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KVA)[265]에서 인증하는 가치평가 자격이다. 2000년 기술가치평가사로 처음 시행되었으나 현재의 명칭인 기업・기술가치평가사로 변경 되었으며, 미국 IACVA

26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효율적 양성방안 연구」, 2012, 209면.

265)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에서는 국내법규 및 국제적 호환성을 지닌 기업・기술가치평가기준을 제정하고, 가치평가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인력(기업・기술가치평가사)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기업・기술가치평가사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동 협회의 홈페이지는 www.valuation.or.kr임.

및 미국가치평가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Certified Valuation Analysts, NACVA)에서 인정하는 가치평가 전문가 자격인 국제가치평가사(International Certified Valuation Specialist, ICVS)의 한국 내 사전자격(pre-qualification) 중 하나이다. 지정된 교육 및 주·객관식 시험을 통해 자격이 주어지며, 평균 합격률은 35%정도이다.

나. 기능 및 역할

기업·기술가치평가사는 기술 및 기술에 기반한 기업가치평가, 벤처기업 경영 및 투자에 대한 컨설팅, M&A의 기업가치평가 참여, 특허침해에 대한 가치평가 산정 등 소송의 전문가로서 참여, 기업의 경영전략 및 가치향상 방안에 참여, 국제적인 투자 및 M&A 전문가로 참여한다.

다. 자격요건 및 자격시험

기업·기술가치평가사 자격증은 동 협회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교육을 참석하고 필기시험,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한 자에 한하여 부여된다.

**【기업·기술가치평가 자격 발급절차】**

동 협회에서는 무분별한 자격증 발급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여 응시자의 자격을 ①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②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③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④ 관련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경험이 5년 이상인 자, ⑤ 고졸 이상으로서 실무 경험이 7년 이상인 자, ⑥ 관련 국가자격(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기술거래사,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소지자, ⑦ 협회장이 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 협회의 교육과정(기업·기술가치평가사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

시험은 1차 시험은 5지선다 4과목, 2차 시험은 서술형 및 계산식으로 출제되며 각

2시간씩 시험이 진행된다. 자격증 시험은 년 6회 실시된다.

**【기업·기술 가치평가사 시험내용】**

| 시험 | 시험과목 | 주요내용 | 배점기준 | 시간 | 유형 |
|---|---|---|---|---|---|
| 1차 필기시험 (Part Ⅰ) | (1)가치평가 일반이론 | ①가치평가 개론<br>②가치평가 기준<br>③가치평가 체크리스트 | 100점 (5점*20문항) | 120분 | 5지 선택 객관식 |
| | (2)재무·회계 기초 | ④가치평가를 위한 재무회계 (매출액 및 현금흐름 추정포함)<br>⑤할인율 | 100점 (5점*20문항) | | |
| | (3)가치평가 접근법 및 요소별평가 | ⑥가치평가 방법론<br>⑦기술성 평가<br>⑧시장성 평가<br>⑨사업역량 평가 | 100점 (5점*20문항) | | |
| | (4)사례연구 및 보고서 작성 | ⑩가치산정<br>⑪사례 연구 및 실습<br>⑫보고서 작성법 | 100점 (5점*20문항) | | |
| 2차 실무시험 (Part Ⅱ) | (5)가치평가 종합 | 기업 및 기술가치평가 관련 종합적 사고 능력 및 계산 능력 검증 | 200점 (10문항) ※난이도에 따라 문제배점 차등 | 120분 | 주관식 및 계산식 |

※ 출처 :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홈페이지(www.valuation.or.kr).

**【합격기준】**

| 시험 | 시험과목 | 주요내용 |
|---|---|---|
| 1차 필기시험 (Part Ⅰ) | Part Ⅰ,Ⅱ 합계 60% 이상 득점시 합격(총점 360점 이상) | ◦과목별 과락(40점 미만)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함<br>◦4과목 중 1과목이라도 과락해당시 불합격처리 |
| 2차 실무시험 (Part Ⅱ) | | ◦40%(80점)미만 득점시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 |

※ 출처 :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홈페이지(www.valuation.or.kr).

라. 교육 프로그램

①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②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③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④ 관련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경험이 5년 이상인 자, ⑤ 고졸 이상으로서 실무 경험이 7년 이상인 자, ⑥ 관련 국가자격(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기술거래사,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소지자, ⑦ 협회장이 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동 협회의 기업·기술가치평가 전문가 양성교육은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거래 촉진, 기업가치평가를 통한 벤처기업의 건전한 투자유도와 M&A 지원, 기술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기술·기업가치평가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기업·기술가치평가 전문가 양성교육은 5일간 총 40시간 교육으로 진행된다. 지난 2001년부터 기업·기술가치평가사(KCVA) 제도를 운영하며 배출한 인력은 2013년 5월 기준 교육생만 4100명, 자격 보유자는 1900여명에 이른다.[266]

가치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가치평가 관련 배경지식 및 구체적인 방법론, Case Study 및 회계기준을 포함한 법령 검토 등의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가치평가 관련 쟁점 및 신규이론의 소개를 위하여 보수교육이 별도로 진행된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가치평가 관련 컨퍼런스, 포럼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기업·기술가치평가사 양성교육 프로그램】

| 교육 프로그램 | 주요내용 |
|---|---|
| **가치평가 관련 일반** | ◦기업·기술가치평가사 기능 및 역할<br>◦가치평가 개론<br>◦행위규범 및 보고기준<br>◦가치평가 기준<br>◦가치평가 준칙 및 지침 |
| **기술 관련 기초** | ◦기술성 분석<br>◦기술 흐름 및 동향<br>◦기술정보 검색 |
| **사업성 관련 기초** | ◦산업시장 분석<br>◦수요예측<br>◦경영역량 분석<br>◦지식재산권과 특허전략 |

266) 전자신문, “기업·기술가치평가사 올해 말 국가공인될까”, 2013년 6월 10일 보도기사 (http://www.etnews.com/201306100372 2014. 9. 6. 최종 방문).

| | |
|---|---|
| 재무관련 기초 | ◦회계와 가치평가의 관계<br>◦현금 흐름표와 가치평가 기법<br>◦각종 재무비율 분석 |
| M&A 관련 기초 | ◦M&A 방법론<br>◦M&A 사례 |
| 사례 및 Case Study | ◦기업가치 평가사례<br>◦벤처기업 평가사례<br>◦기술가치 평가사례<br>◦해외 가치평가 사례분석<br>◦가치평가 실무연습 |

※ 출처 :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홈페이지(www.valuation.or.kr).

2. 기업가치평가사(한국기업평가원)

가. 개요

기업가치평가사(Enterprise Value Evalutor, EVE)는 (사)한국기업평가원(Korea Institute of Valuation, KIV)에서 수여하는 자격으로, 독립적으로 기업 또는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그 가치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기업 가치에 관한 정보를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자이다.

한국기업평가원은 2002년 10월에 기업가치평가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였다. 2003년 7월부터 기술거래전문인력 과정개발 및 위탁교육(산업자원부, 한국기술거래소)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37기에 걸친 기업가치평가사 자격시험을 진행하였다.

나. 기능 및 역할

기업가치평가사는 기업가치평가 및 가치경영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계획·조사·연구·진단·평가·지도 또는 이에 관한 상담·자문·서류의 작성·확인·대행·대리 및 기타 기업평가와 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즉, 기업가치평가, 기술가치평가, 기술거래, 사업가치평가, R&D 프로젝트 가치평가, 자산의 가치평가, 가치경영컨설팅, 투자자에게 무형자산을 포함한 기업가치평가 및 정보제공, M&A, 기업과 관련된 기타 가치평가 등 업무를 수행한다.

다. 자격요건 및 자격시험

기업가치평가사의 자격요건은 ① 금융, 증권 기업심사 관련 부서 종사자, ② 자금, 기획, 재경, 예산, 정보, 계약, 투자분석 담당자, ③ 구조조정, 경영혁신, 워크아웃 부서 담당자, ④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 ⑤ 경영

지도사, 기술지도사 및 컨설턴트 등 전문가, ⑥ 회계학, 경영학 전공자 및 실무경력자, ⑦ 기업평가 전문가로 활동할 자이다.

자격시험은 1차 객관식 필기시험(5지선다형) 및 실제평가중심의 2차 시험(계산문제, 단답형, 중형논술)으로 진행된다. 1차 시험은 1교시(회계이론, 재무이론과 가치평가), 2교시(가치평가론)로 180분간 진행되며, 2차 시험은 1차 객관식 전 분야가 시험범위로 5~10문항이 출제되며 120분간 진행된다.

**【기업가치평가사 시험내용】**

| 시험 | 시험과목 | 주요내용 | 배점기준 (소수점이하 반올림) | 시간 | 유형 |
|---|---|---|---|---|---|
| 1차 시험 | 회계이론 | 재무제표론 및 회계이론, 세무회계, 관리회계, 원가회계 등 가치평가를 중심으로 한 회계과목 내용 | 100점 (3.3점*30문항) | 140분 | 5지 선택 객관식 |
| | 재무이론 | 재무분석, 경영분석, 자본예산, 화폐의 시간가치, 가치평가방법론 | 100점 (2.5점*40문항) | | |
| | 산업분석론/ 기업가치평가론 | 산업분석, 무형자산평가, 신용평가, 감정평가 이론, 상장/등록관련 평가 실무, 평가사례 및 보고 | 100점 (2.5점*40문항) | | |
| | 관계법규/ 컨설팅론 | 관계법규(M&A 및 평가관련법 포함), VBM-가치경영전략 개요, 경영진단, 조직/인사론, 평가윤리 | 100점 (3.3점*30문항) | | |
| 2차 시험 | 1차시험 전 분야 | 실제 평가중심의 문제 | 100점 (5-10문항) | 120분 | 계산문제, 단답형, 중형논술 |

※ 출처 :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홈페이지(www.valuation.or.kr).

라. 교육 프로그램

(사)한국기업평가원은 ① 기업가치평가기법/ 사례연구, 적용을 통한 실무능력 배양, ② DCF, 옵션 등 다양한 기업기술가치평가 방법 습득, ③ 실전대비를 위한 완벽한 실무중심의 강의와 실전사례 중심의 살아있는 강의, ④ 기업기술가치평가보고서 작성방법 습득, ⑤ 기술가치평가의 다양한 방법, ⑥ 실전 Case Exercise를 통한 강의내용 완벽 이해 및 체득화를 목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대상은 ① 금융, 증권 기업심사 관련부서 종사자, ② 중소·벤처기업 전문 CEO/CFO, 자금, 기획, 재경, 예산, 정보, 계약 투자분석 담당자, ③ 공공 및 민간기업, 연구소 R&D 사업 실무 담당자, ④ 기술 및 기업평가 해당분야의 경력자, ⑤ 기술거래, 기술이전 전문가, 기술거래전문인력양성과정 수료자, ⑥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기술거래사, ⑦ 구조조정, 경영혁신, 워크아웃 부서 담당자, ⑧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 ⑨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및 컨설턴트 등 전문가, ⑩ 회계학, 경영학 전공자 및 실무경력자, ⑪ 기업평가 전문가로 활동할 일반인이다. 2000년 이후 약 1000명이 교육을 이수(연 2~3회)하였다(2012년 기준).

교육은 총 4일(32시간)동안 진행되며, 회계와 기업가치평가, 기수가치평가, 법률제도 등을 배우게 된다.

**[기업가치평가사 양성과정 교육 프로그램]**

| 교육 프로그램 | 주요 내용 |
|---|---|
| **회계와 기업가치평가** | ◦기업가치평가를 위한 기본적 회계이론<br>◦재무제표 쓰는 법 & 읽는 법<br>◦가치평가에 사용되는 회계 툴 |
| **기업가치평가 개요** | ◦원가접근법,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
| **재무이론과 기업가치평가** | ◦기업가치평가를 위한 재무이론 |
| **기업가치평가** | ◦기업가치평가개요 및 방법론<br>◦주가배수모형<br>◦현금흐름할인모형(DCF)<br>◦본질가치평가, 기타의 가치평가<br>◦분야별 가치평가<br>◦기업가치평가사례 및 실전연습 |
| **기술가치평가** | ◦기술가치평가 개요 및 절차 |

| | |
|---|---|
| | ◦기술가치평가 절차 및 방법론<br>◦기술가치평가사례, 보고서 작성 |
| **법률제도** | ◦특허관계법, 저작권, 민법 등 관련 법규<br>◦M&A 계약 및 실무사례, 신용평가, IPO 평가 |
| **가치평가 실무실습** | 엑셀툴에 의한 재무추정 및 평가 |

※ 출처 : 한국기업평가원 홈페이지(www.kiv.or.kr).

3. 기술평가사(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가. 개요

기술평가사란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분석하고, 기술의 경제적 가치와 미래에 가져올 효익에 대한 현재 가치를 분석하고, 기술가치를 정량적으로 도출하여 기술 라이선싱, 사업확장, 시장개척 및 활성화, 성장동력 확보 등을 할 수 있는 무형의 기술가치 평가능력을 가진 자를 말한다. (사)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Korea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ssociation, KTCA)는 2009년부터 기술사업화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 기능 및 역할

기술평가사는 정부출연연구원 및 대기업 연구소 등 전문 R&D기관, 중소벤처기업부설연구소, 제조업체의 기술개발 및 경영기획 분야, 변리사 사무소, 특허관련 로펌, 기술거래, 이전 등 기술사업화 관련 기관, 기술사업화 관련 기업컨설팅 전문기업,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 및 테크노파크, 정부출연연구원 및 각 대학의 TLO 등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한다.

다. 자격요건 및 자격시험

자격요건은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의 기술사업화 전문가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시험은 1, 2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 시험은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2차 시험은 1차 시험을 합격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40점 미만은 과락이며,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할 수 있다.

시험범위는 수업내용을 위주로 교육 전 과목(기술사업화개론, 가치평가개론, 기술이전거래일반, 기술경영일반, 가치창출구조, 기술가치 평가방법, 사례분석, 경제성분석, 회계와 가치평가)을 통합하여 40~50문제를 출제한다(객관식, 주관식, 단답형, OX문제). 2014년 6월까지 총 94회 자격검정을 실시하였다.

라. 교육 프로그램

① 연구소 및 중소벤처기업 임직원, ② 연구개발자, 국가 및 유관기관 연구개발 종사자, ③ TLO 및 기술사업화 관련 실무자, 벤처창업자, ④ 기술창업예정자, 대학관계자 등을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육은 5일(35시간) 동안 실시된다. 2014년 6월 기준으로 총 84회 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기술평가사 교육프로그램】

| 교육 프로그램 | 주요 내용 |
|---|---|
| 기술평가일반론 | ◦기술가치평가의 개요<br>◦기술가치평가방법 |
| R&D관리 기술기획 | ◦기술로드맵, 기술트리 작성법<br>- 창의적 문제해결 기법<br>◦R&D 포트폴리오 전략 |
| 지식재산권과 특허분석 | ◦지식재산권 및 특허분석, 선행연구 조사 |
| 기술가치평가 1 | ◦수익접근법에 의한 기술가치평가<br>-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분석<br>◦경제적 수명 추정방법<br>- 여유현금흐름의 산출 |
| 가치창출구조 (IT융합산업) | ◦IT 융합산업 동향<br>◦기술혁신 현황과 방안<br>◦IT 융합기술 사업화 전략 |
| 기술가치평가 2 | ◦매출액 추정<br>◦할인율추정<br>◦기술기여도 추정<br>◦평가사례 |
| 회계와 가치평가 | ◦가치평가를 위한 회계<br>- 회계와 재무제표<br>- 알기쉬운 재무제표<br>- 가치평가에 필요한 회계 |
| 기술사업화 특강 | ◦한미 FTA 이후 기업혁신 생태계 변화와 대응과제 |

※ 출처 :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홈페이지(www.ktca.or.kr), 제16회 기술사업화 전문가 양성교육(서울, 수도권) 교육일정 기준.

## Ⅲ. 한국의 지식재산 가치평가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문 인력 육성 프로그램

### 1.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의 프로그램

#### 가. 개요

특허청은 2014년 1월 창조경제 하의 지식재산 평가 및 거래를 활성화하여 지식재산 금융과 지식재산 기반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한국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Evaluation & Transaction, KIPET)를 설립하였다. 동 센터는 2001년 한국발명진흥회 내에 특허기술평가실로 설치되어 대내외적으로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던 지식재산평가거래팀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지식재산 평가업무·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 운영 및 마케팅 업무·지식재산 거래 지원업무 등 지식재산의 평가 및 거래를 전문적으로 수행·지원하여 지식재산 평가 및 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지식재산 금융의 생태계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센터는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에 대해 지식재산에 대한 평가 및 거래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자금조달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용이하게 받아 사업화에 성공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지식재산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창출된 가치로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있다.[267]

**【평가기관으로서의 한국발명진흥회】**

※ 출처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 나. 조직 및 인력

267)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특허청, 한국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 설립」, 2014년 1월 15일자 보도자료.

2013년 기준 총 27명(IP 평가 12명, 분석평가시스템 운영 2명, IP거래지원 13명)으로 2014년 총 인원 31명으로 증원을 추진 중이다. 27명 중 전문위원 15명으로 전문인력 비율이 높은 수준(공학박사 8인, 경영학박사 2인, 변리사 4인, 기술사 1인)이다.

**【한국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의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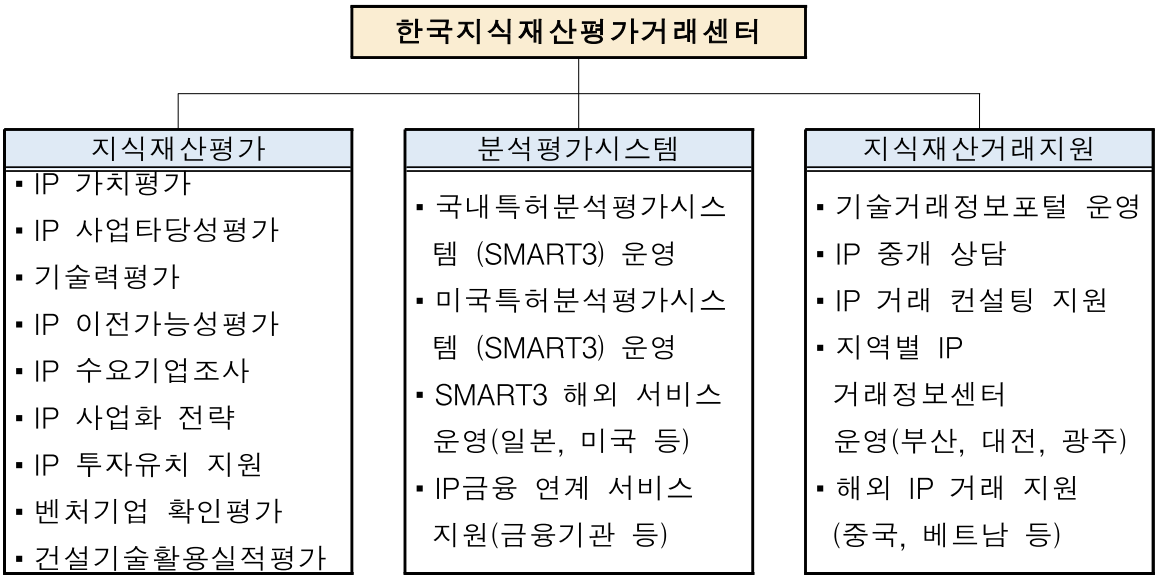


* (기존조직) 한국발명진흥회 사업지원본부 내 지식재산평가거래팀

※ 출처 :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특허청, 한국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 설립」, 2014년 1월 15일자 보도자료.

다. 교육프로그램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인력양성 교육 중 기술평가교육 부분】**

| 사업구분 | 교육과정 | 주요내용 |
|---|---|---|
| **지식재산캠퍼스(IP CAMPUS) 오프라인 교육** | IP Campus | ◦운영목적 : 지식재산관련 현안을 비롯 지식재산 분야의 실무능력 향상<br>◦교육내용 : 집중교육(**특허기술가치평가 실무(3일)**, 미국특허출원 등 25개 과목개설), 특별교육(중국진출 기업의 IP 사례, 특허법원 최신판례동향 등 14개 과목 개설), 전문교육(특허엔지니어 양성교육), 지식재산 강사 양성교육, 지식재산 국제교육(해외연수) |

※ 출처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이러닝 운영 콘텐츠 중 기술평가교육관련 부분】**

| 대분류 | 중분류 | 운영콘텐츠 | |
|---|---|---|---|
| | | 기초 | 심화 |
| 특허관리 및 활용과정 (18) | 특허활용 전략 | ◦표준특허 이론과 사례(7시간)<br>**◦지식재산경영과 특허전략(5시간)**<br>◦연구자를 위한 특허관리(5시간)<br>◦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3시간)<br>◦(현장특강) 중소기업 IP경영 시스템 구축 전략(1시간)<br>◦(현장특강) IP 스토리 페스티벌 2012(6시간) | ◦특허침해 대응방안(4시간)<br>◦(현장특강)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소송실무(2시간)<br>◦성공적인 특허풀 결성 및 운영 관리(5시간)<br>**◦(현장특강) 기술평가 및 기술이전(2시간)**<br>◦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략 (10시간)<br>◦표준특허 심화(5시간)<br>◦(현장특강) 중소기업의 라이센스 협상전략<br>◦(현장특강) 특허괴물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전략<br>◦(현장특강) 연구계약의 이론과 실제<br>◦(현장특강) IP비즈니스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특허경영전략<br>◦(현장특강)GPL의 쟁점과 향후 전망 (1시간)<br>◦(현장특강) 특허라이센스 계약의 쟁점과 협상전략(1시간) |

※ 출처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2.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가치평가원의 프로그램

가. 개요

대한변리사회는 부설기관으로 지식재산가치평가원을 두고, 산업재산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관련분야에 대한 공정한 감정 및 가치평가, 제조물품 등에 있어서의 지식재산권 적용 여부의 확인 또는 인증, 업무와 관련된 교육·연수를 수행하고 있다.[268] 또한 지식산가치평가원은 지식재산 가치평가 감정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지식재산 가치평가 감정업무는 ①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에 관한 가치평가감정, ②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포함)에 관한 가치평가감정, ③ 기술적 노하우,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는 기술 등에 관한 가치평가감정, ④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무형자산에 관한 가치평가감정을 말한다.[269] 지식재산가치평가원은 2012년

268) 대한변리사회 부설 지식재산가치평가원 운영규정(2013.11.27. 제정) 제2조.
269) 지식재산권 관련 가치평가업무처리 규정(2001.7.6. 제정, 2012.9.12. 전부개정) 제3조.

말 지식재산 가치평가감정[270] 독자모델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으며, 30시간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 변리사만 변리사회 인증으로 감정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우수한 변리사 인력을 평가인단으로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 결과의 품질과 신뢰성을 더욱 발전시켜 관련 분야 최고 평가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허가치평가 감정은 감정인 선정, 기술성·권리성·활용성에 대한 개략적 검토를 수행하는 예비평가와 조사·분석 및 가치평가 감정, 위원회 검증, 최종보고서 작성을 포함한 본평가 등 두 절차로 진행된다.[271]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감정절차】**

| 수행절차 | | 주요 업무수행 내용 |
|---|---|---|
| 예비평가 | | 평가대상 지식재산권에 대한 예비적 평가-감정을 위한 기초자료 접수 및 감정인 선정-기술성, 권리성 및 활용성에 관한 개략적 사항 검토-본 평가 수행여부 사전검토 |
| 본평가 | 조사, 분석 및 가치평가 감정 | 기술성, 권리성, 활용성 평가를 통한 가치산정-평가목적에 따른 평가방법 결정-평가대상특허 기술의 기술분석 및 기술적용 시장의 파악-회계 및 재무자료 수집-평가 대상특허의 유효성 및 권리성 분석-평가 대상특허기술 관련시장 등 활용성 분석-사업위험분석 할인율, 기술 기여도 측정 |
| | 위원회 검증 | 지식재산권 가치평가감정위원회 검증-기술의 권리성, 기술성, 활용성 등 분석내용 적절성 심의-평가방법적용의 적절성 심의-기술수명, 할인율, 원가분석 등 적절성 심의 |
| | 최종보고서 작성 | 지식재산권 가치평가감정 보고서 작성-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종합적 검토-최종보고서 제출 |

※ 출처 : 전자신문 2013년 1월 21일 보도기사(http://www.etnews.com/201301180335).

【대한변리사회의 공인감정】

270) "가치평가감정"이란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감정을 말한다(지식재산권 관련 가치평가업무처리 규정(2001.7.6. 제정, 2012.9.12. 전부개정) 제2조).

271) 전자신문, "변리사회, 독자적 특허 감정 평가 시스템 구축", 2013년 1월 21일 보도기사 (http://www.etnews.com/201301180335, 2014. 9. 9. 최종 방문).

나. 조직 및 인력

지식재산가치평가원에는 평가원장 1인과 부원장 1인을 포함하여, 가치평가감정위원회, 가치평가감정인단 및 별도의 전담조직(사무국)과 사무직원을 둔다.[272]

가치평가감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273] 특허 권리성, 기술성 등 분석내용이 적절한가를 심의하기 위한 기구이다. 변리사가 평가한 특허 가치를 다시 필터링해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위원회에는 변리사 외에도 교수·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두고 있다.

가치평가감정인은 대한변리사회가 실시하는 소정의 가치평가감정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가치평가감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회원을 말하며,[274] 대한변리사회가 실시하는 가치평가감정에 관한 연 3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275]

또한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2014년 7월, "지식재산가치평가 특별위원회"[276]를 구성하였다. 동 특별위원회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서는 변리사의 전문성 있는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향후 동 특별위원회는 지식재산가치평가원의 업무 활성화와 지식재산가치평가 분야에서의 변리사 역할 강화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다. 교육 프로그램

대한변리사회는 온·오프라인 연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종 컨퍼런스나 특허·법무법인 세미나 등[277] 참여시 변리사 의무연수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2014년도 변리사 의무연수 교육과정 중 비즈니스 과정에서 "가치평가감정"과목을 개설한 바와 같이 가치평가감정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272) 대한변리사회 부설 지식재산가치평가원 운영규정(2013.11.27. 제정) 제4조.
273) 대한변리사회 부설 지식재산가치평가원 운영규정(2013.11.27. 제정) 제6조.
274) 지식재산권 관련 가치평가업무처리 규정(2001.7.6. 제정, 2012.9.12. 전부개정) 제2조.
275) 지식재산권 관련 가치평가업무처리 규정(2001.7.6. 제정, 2012.9.12. 전부개정) 제13조.
276) 동 특별위원회는 이은우 위원장을 중심으로 김용식, 이상용, 나성곤, 강훈모 위원 등으로 구성됨.
277) 예를 들어, PATINEX 2014(전문연수 총 9시간 인정), IP 금융 국제컨퍼런스(전문연수 4시간 인정), 2014년도 특허제도 통합설명회 및 간담회(전문연수 2시간 인정) 등.

【2014년도 변리사 의무연수 교육 과정 중 가치평가교육】

| 과목구분 | 교과목명 |
|---|---|
| 비즈니스과정 | 가치평가감정 3,4기(기초, 심화) |

※ 출처 :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kpaa.willbes.net).

온라인 연수 교육과정 강의에 가치평가에 관한 내용은 “특허가치평가의 이해(강의시간 총 43분, 0.5시간 인정)” 1과목만 개설되어 있다(2014.9. 기준).

3. 기술보증기금의 프로그램

가. 개요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을 통하여 신기술 사업자의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고 기술평가를 통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역량과 기술금융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 성장동력 확충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설립된 기술금융전문기관“으로 1997년 2월 한국 최초로 기술평가센터 및 기술평가업무를 도입한 이후, 기술평가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1년도에 기술이전사업화 촉진법에 의한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연간 23,000여건의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있다.[278] 기술보증기금에서는 기술가치평가를 ”대상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타당성 등을 분석하고 결과를 금액, 등급, 의견 등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기술사업화등급평가, 기술력평가, 기술가치평가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술평가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나. 조직 및 인력

기술보증기금은 기술 비중이 큰 기술력 우수기업의 미래 성장가능성에 중점을 둔 원활한 기술금융지원을 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업무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본부・기술평가센터는 기술평가보증, 기술력 인증평가(벤처・INNO-BIZ) 등 정형화된 평가와 개별기업과의 계약에 의한 기술사업타당성 평가를 수행하는 조직이고, 중앙기술평가원은 특허기술평가, 기술이전용 및 현물출자용 기술가치평가, 계약평가 위주의 전문 기술사업타당성 평가, 주식가치평가와 기술관련 컨설팅 및 용역사업 등 전문적인 기술평가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이다.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조직도】

278)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기술평가 전문자격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2010, 13면.

※ 출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또한 기술보증기금은 전담조직 뿐만 아니라 기술평가 전반에 대한 이론과 지식을 습득하고 평가실무를 통해 일정자격과 평가역량을 갖춘 기술평가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 내부 기술평가인력】

| 구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
| 기금전체직원수 | 1,066 | 1,066 | 1,056 | 1,072 | 1,068 | 1,066 | 1,085 |
| 기술평가전담인력 | 441 | 568 | 586 | 578 | 559 | 532 | 578 |
| 박사급 전문인력 | 107 | 109 | 116 | 126 | 131 | 134 | 147 |

※ 출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또한 내부평가인력을 대상으로 기술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지식 습득 및 수행능력 향상과 직원의 자기계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술평가사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기술평가사 현황】

| 구분 | 기계 | 정보통신 | 전기전자 | 재료금속 | 화공 | 섬유 | 바이오 | 환경 | 계 |
|---|---|---|---|---|---|---|---|---|---|
| 평가사 1급 | 12 | 17 | 6 | 9 | 2 | 2 | 1 | 1 | 50 |
| 평가사 2급 | 136 | 204 | 20 | 25 | 13 | 50 | 25 | 26 | 497 |
| 평가사 3급 | 89 | 97 | 18 | 13 | 8 | 21 | 38 | 27 | 311 |
| 총합계 | 235 | 318 | 44 | 47 | 23 | 73 | 64 | 54 | 858 |

※ 출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다. 교육 프로그램

기술보증기금은 2001년부터 기술가치평가 관련 실무능력향상을 위한 기술보증기금의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술평가사 1~3급으로 자격증을 구별하며 교육과정에 차별화(양성교육과 교육연수 등으로 구성)를 두고 있다.[279] 기술평가사 3급(호칭: 양성과정 수료자)은 선수과목으로 신용분석, 여신심사 과목을 이수하고 기술평가사 3급 시험에 합격한 경우 주어지며, 2급은 기술평가사 3급 자격시험 합격 후 기술평가사 2급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급에서 1급 기술평가사로의 승급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과 1급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결정된다. 각 단계별 자격부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사 3급 양성과정 교과과목 및 배점】**

| 구분 | 교과과목 | 배점 | 주요내용 | 면제자 |
|---|---|---|---|---|
| 기술평가 소양지식 | 기술가치평가 기초 | 50 | 경영컨설팅일반<br>-컨설팅 개요, 절차<br>- M&A기초·기술거래·이전 | • 상경계열 및 산업공학, 기술경영학 박사학위 취득자<br>• CPA<br>• 경영지도사<br>• 기술지도사<br>• 기술분야 복수지원자 |
| | | 50 | 산업재산권일반<br>-"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포함 | • 법학계열 박사학위취득자<br>• 변호사<br>• 변리사<br>• 기술분야 복수지원자 |
| 기술평가 전공지식 | 기술평가이론 제규정 및 실무 | 100 | -기술가치평가이론 및 제규정<br>-평가기법 및 평가모형<br>-기술평가 실무사례<br>-벤처투자 기업론 | • 기술분야 복수지원자 |
| | 분야별 선택과목 | 100 |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재료·금속, 화공, 섬유, 환경, 생명 분야중 택일(개론수준) | 해당분야<br>①박사학위 소지자<br>②기술사<br>③변리사 |

주) 합격기준: 응시과목 총 배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단, 어느 한 과목의 득점이 배점의 40%이하인 자는 과락으로 불합격처리. 단, 기술평가사 3급의 경우, 선수과목으로 신용분석, 여신심사 과목이 필수
※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기술평가 전문자격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2010, 25면.

279)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기술평가 전문자격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2010, 22면.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사 2급 자격시험 평가과목 및 배점】

| 과목명 | 배점 | 면제 | 가산점부여 |
|---|---|---|---|
|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재료·금속, 화공, 섬유, 환경, 생명 분야 중 택일 | 200 | 해당분야<br>①박사학위 소지자<br>②기술사<br>③변리사 | 기사자격증 취득자 |
| 기업·기술가치평가이론 및 기술평가 실무사례(고급이론 및 평가서 작성 실무) | 100 | 기술분야 복수지원자 | |

주) 합격기준: 응시과목 총 배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단, 어느 한 과목의 득점이 배점의 40%이하인 자는 과락으로 불합격처리

※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기술평가 전문자격증제도 도입 방안 연구」, 2010, 25면.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사 1급 심사기준】

| 분류 | | | 평가기준 | 비고 |
|---|---|---|---|---|
| 1차 심사 기준 | 일반 기준 | 지식마일리지 | 200점 이상(단, 이공계 석사이상 150점) | 기술평가사 2급 자격취득이후 |
| | | 기술평가 수행실적 | 300건 이상(단, 이공계 석사이상 200건) | |
| 2차 심사 기준 | 계량항목 | | 지식마일리지 | 20% |
| | | | 기술평가수행실적 | 40% |
| | | | 고수익평가건수 | 25% |
| | | | 기술평가료 수입금액 | 10% |
| | | | 보증취급 건전도(최근3년 기준) | 5% |
| | 비계량항목 | | 기술평가관련 업무종사 경험, 기술평가기관 연수이수 내역, 우수기술평가서[280] 선정여부, 평가자의 자질, 활동성, 도덕성 등 | |

※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기술평가 전문자격증제도 도입 방안 연구」, 2010, 26면.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다른 기관의 기술가치평가사 자격증과는 달리 기술성 분야에 대한 평가와 자격검증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술성 평가에서도 다양한 기술 분야별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계, 정보통신, 전기·전자, 재료·금속, 화공, 섬유, 생명(바이오), 환경의 8개 분야에 대해 기술평가사 1~3급 자격증을 취득 후 기술분야별 기술동향보고서 작성과 보수교육(3년에 1회)을 의무화하고 있다.

280) 기술보증기금의 우수기술평가서는 기술가치평가의 내용의 논리성 등의 부분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되어 선정

4. 기타 금융기관의 프로그램

한국산업은행은 2004년 7월 “산은 아카데미”를 개원, 현장 경험 및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금융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과목당 교육시간은 3일이며, 1년에 7∽8과목 정도 개설하고 있다. 교육대상은 산업은행 내부직원에게만 개방한 과목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과목은 산업은행 내부직원 이외에도 개방하고 있다.

**【2014년도 산은 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 강좌명 | 교육내용 |
|---|---|
| M&A와 PEF | M&A를 총한 기업의 성장전략<br>Due Diligence와 가치평가<br>M&A와 PEF 시장전망 사례연구 등 |
| 기업가치평가 | 기업가치평가 이론 및 기법<br>재무분석 및 재무추정<br>기업가치평가의 적용 |
| Project Finance | Project Finance 시장동향, Project 사업성 평가<br>PF사업 금융구조 및 재원조달<br>PF이슈와 사례, 워크샵 등 |
| 기업구조조정과정 | 기업구조조정시장 현황 및 전망<br>기업구조조정절차 및 사례<br>구조조정을 통한 Value-up 사례<br>기업가치평가와 구조조정전략<br>M&A를 통한 기업의 성장전략 등 |
| PF와 지역개발금융 | 건설시장전망<br>부동산개발사업의 위험분석과 사업성 검토<br>부동산 PF관련 법률<br>주거시설 개발사업 케이스 스터디 |
| 기업가치평가과정<br>(산업은행 직원만) | 재무제표의 이해<br>재무제표와 기업가치<br>재무제표와 기업분석<br>재무추정 및 실전사례<br>기업가치 활용사례 |
| 자금조달과<br>운용전략 과정 | 최근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과 전망<br>회사채 발행실무<br>구조화 금융사례<br>채권운용 등 |
| 국제금융과<br>파생상품 실무 | 외화자금조달, 구조화 금융<br>파생상품 리스크관리와 회계 |

※ 출처 : KDB산업은행 홈페이지(www.kdb.co.kr).

신한은행은 2013년 7월 기술력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기술평가 전담부서인 산업기술평가팀을 신설했다. 이공계 전공 내부직원 3명과 팀장급 외부전문가 1명을 포함 총 10명으로 운영 중으로, 기업여신심사부 내 23명의 기술전담심

사역을 지정해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여신 심사도 지원해 왔다. 산업기술평가팀 내 전문가를 통한 기술가치평가 실무교육으로 기술금융에 대한 직원 역량을 높이고 있으며, 기술력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위해 지식재산권 및 기술평가 관련 외부기관과의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281]

## Ⅳ. 일본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 인력 육성 현황

### 1. 일본의 지식재산 인력구분

일본은 2002년 지적재산기본법을 입법화하여 그 이후 매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을 수립, 이에 따라 지식재산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06년 「지적재산 인재 육성 종합전략」 이후 2012년 「지적재산인재 육성플랜」을 수립하여 정부 차원에서 지식재산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데, 기업의 지재경영인재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경영, 금융, 지식재산의 3가지 영역의 전문성을 가지는 경영활동과 지식재산활동을 결부시키는 인재,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

### 2. 지식재산 분석사(특허·콘텐츠) 제도

#### 가. 개요

지적재산교육협회는 2012년부터 “지적재산 애널리스트”라는 자격을 창설해, 인정·양성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지적재산 애널리스트란 기업경영·금융·지적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국내외의 타사·자사의 각종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평가·가공, 지식재산 또는 기업의 가치평가 등을 통해 기업의 전략적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가직 직종을 말한다.

지적재산 애널리스트 교육강좌는 아래 표와 같이 총 7과목으로 구성되면, 매년 수차례 실시되고 있다. 강사진은 지적재산교육협회 인증 지적재산 애널리스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변호사, 대학교수, 산업계 지식재산 전략관련 실무자, 금융권 담당자 등이다.[282]

**【지적재산 애널리스트 커리큘럼 전체(2012년 11월 12일 기준)】**

281) 충청투데이, “신한은행, 기술형 창업지원 출시 1년 만에 대출 잔액 4682억원 기록”, 2014년 6월 23일자 보도기사(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1321, 2014. 9. 7. 최종 방문).
282) 자세한 내용은 http://ip-edu.org/ipa_koushi#kobayashi 참고.

| 구분 | 강의명 | 강사 |
|---|---|---|
| 정기연수 | 사업활동(경영)에 있어서 의장권의 활용 | 변리사 |
| | 디지털시대의 저작권제도의 과제 | 변호사 |
| | 보통명칭과 기술적표시 실무에 도움이 되는 논점정리 | 대학교수 |
| | 2011 개정특허법 시행에 따른 실무 포인트 | 변호사 |
| | 미국특허법 개정(2011년 미국 발명법)의 개요 | 변호사 |
| | 개정 특허법의 해설, 실무에의 영향, 향후 과제 | 변호사 |
| | 지재입국의 동향과 그 장래상 | 대학교수 |
| 특별연수 | 판례연구의 전문가에 관해 - 지재판례의 해석 | 대학교수 |
| | 2012년 저작권법 일부개정과 동향 | 행정관 |
| | 특허심사실무 : 신규성, 진보성을 중심으로 한 심사기준의 해설 | 변리사 |
| 지적재산 애널리스트 인정강좌 | 기업전략 | 기업임원 |
| | 지적재산전략 | 변호사 |
| | 지적재산법 | 변호사 |
| | 지적재산조사 | 기업간부 |
| | 지적재산정보전략 | 변리사 |
| | 지적재산 파이낸스 | 공인회계사 |
| | 정리(케이스스터디) | 기업 |
| 지적재산 애널리스트 육성강좌 (콘텐츠) | 기업전략 | 기업임원 |
| | 지적재산전략 | 변리사 |
| | 지적재산법 1 | 변호사 |
| | 지적재산법 2 | 변호사 |
| | 마케팅 1 | 기업 |
| | 마케팅 2 | 기업 |
| | 콘텐츠 파이낸스 1 | 공인회계사 |
| | 콘텐츠 파이낸스 2 | 기업임원 |
| | 콘텐츠 가치평가 해석 | 기업 |

| | 정리(워크숍) | 기업 |
|---|---|---|
| **계속연수** | 실전에서 사용하는 특허조사와 지적재산정보전략 | 기업 등 |

※ 출처 : 一般財団法人 知的財産研究所, 我が國の知財人材育成制度の現狀に關する調査研究報告書, 平成２５年２月, 5頁.

**【지적재산 애널리스트 인정강좌 프로그램(2013년 1월 개설 강좌)】**

| | | |
|---|---|---|
| **과목 1<br>기업전략** | 2.5시간 | 경영과제를 기인한 지식재산활동의 중요성을 중소・벤처기업의 사례를 섞어, 지적활동의 경영상의 효과를 설명한다. |
| **과목 2<br>지적재산전략** | 2시간 | 지재가 사업경쟁력과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하는지, 필수특허 포트폴리오이론, 지적경영이론 등을 기본으로 설명한다. |
| **과목 3<br>지적재산법** | 1.5시간 | 특허, 저작권, 의장, 상표,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알아야할 사항을 해설하고, 사례를 통해 실천적인 능력을 양성한다. |
| **과목 4<br>지적재산조사** | 4.5시간 | 정보분석을 하기위한 기초데이터 작성을 염두하고,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선정, 조사포인트의 설정, 검색식 작성시의 유의점 등에 대해 설명한다. |
| **과목 5<br>지적재산<br>정보전략** | 6시간 | 지재애널리스트의 역할・요구, 지재정보전략의 개관<br>기업활동과 각종 정보의 관계 개관<br>지재정보해석의 기초개관(각종 특허맵의 특징이나 유의점, 특허맵의 착안점 등)<br>특허정보검색→분석 |
| **과목 6<br>지적재산<br>파이낸스** | 3.5시간 | 기업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 기업의 업적(성과)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캐쉬플로(cash flow)에 대해 해설하고, 지식재산가치평가에 필요한 현금흐름할인법(DCF법)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한다.<br>지식재산(무형자산)에 대해서, 가치평가방법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 및 세무상 취급사항을 해설한다. |
| **과목 7<br>정리(사례연구)** | 4.5시간 | M&A와 지식재산 적정 평가 절차(due diligence)의 실무<br>지식재산을 목적으로 한 매수 사례를 통해 본 강의에서 취득한 지식의 활용한다. |

※ 출처 : 一般社団法人知的財産教育協會, 「知的財産管理技能檢定を中心とする知的財産教育協會の知財人材育成の取り組みについて」, 『特許研究』 vol.55, 工業所有權情報・研修館特許研究室, 2013, 90頁.

나. 지적재산 애널리스트 시험제도

지적재산 애널리스트 인정 강좌에서는 강좌 종료 후에 실시하는 인증 시험(학과 시험·실기 시험)에 합격 한 사람을 지적재산 애널리스트로 자격을 인정한다. 또한 인증 시험응시료(학과·실기 각 1 회)는 수강료에 포함되어 있다. 지적재산 애널리스트 인정강좌는 지적재산관리 기능사(1급, 2급), 변리사, 변호사, 기술사, 중소기업 진단사, 증권 분석가, 공인 회계사, 세무사, 은행 검정합격자, 미국공인회계사만이 수강할 수 있다.[283] 동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자들은 지적재산교육협회가 정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청강인증시험을 치러 합격하면 지식재산 애널리스트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지적재산 애널리스트 시험안내】**

| 시험유형 | 학과시험 | 실기시험 |
|---|---|---|
| 내용 | 각 과목의 지식의 확인 시험 | 보고서 과제 |
| 실시형식 | 출제 범위 : 인증 강좌의 강의 범위<br>문제 수 : 40 문항 (택일 식)<br>시험 형식 : Web 홈페이지 입력<br>※ 면제 과목에 대해서도 해답의 필요 | 과제 : 2 과제<br>과제 내용 : 과목 7 강의에서 지정<br>제출 형식 : 전자 파일 형식 |
| 수험자격 | 본 강좌의 전과목 (면제 과목 제외)을 수강 한 자 | |
| 제출기한 | 과목 7 강의에서 지정 | |
| 결과통지 | 소정의 발표일 (※)에 제출자 전원에게 "합격 결과 통지」를 전자 메일로 보냅니다.<br>합격자는 당일에 「인정증」를 우송합니다.<br>※ 기간마다 설정. 제출 기한 약 1 개월 후. | |

다. 지적재산 애널리스트 활용현황

기업의 M&A에서는 상대방의 장래 수익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특허 등 지식재산이 창출하는 이익 평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식재산 애널리스트는 인수대상 기업이 가진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경영분석, 인수에 필요한 자금 조달, 인수 후의 사업전략 등을 폭넓게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기업의 경영기획부서나 지

283) http://ip-edu.org/ipa_nintei 참고.

식재산부서, 금융기관의 융자·투자 부서 등의 직원 외에도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자격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경영이나 자금 조달, 지식재산에 관한 강의를 수강한 후, 이러한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협회에서 인정하는 자격 보유자가 된다. 그동안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지식재산 관리 능력을 인정하는 국가 자격은 있지만, 동 자격은 기업 현장에서 M&A 등 경영전략은 고려하지 않는다. 지식재산 애널리스트는 시장이나 기업을 분석하는 증권분석가와 같은 전문직으로서 기업이나 컨설팅 회사 등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적재산 애널리스트 자격자 수는 특허 265명(2014년 9월 기준), 콘텐츠 73명(2014년 7월 기준)이다.[284]

라. 지적재산 애널리스트 계속연수제도

계속연수제도는 지적재산 애널리스트 자격을 취득하신 자를 대상으로 지적재산 애널리스트에 요구되는 스킬에 대해 더 실용적인 기술을 습득 해 주시기 위해서 고급 과정으로 실시하는 연수이다. 지난 2012년 9월 5일(도쿄) “실전에서 사용하는 특허조사 및 지적재산정보전략”을 주제로 2013년 11월 7일(도쿄) “실전에서 사용할 지적재산정보전략”을 주제로 2회 개최한 바 있다.[285]

3. 지적재산 관리기능사(IP 기능사)의 육성 프로그램

가. 개요

지적재산관리기능 검정은 기능검정제도 하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적재산관리”직종에 관련되는 국가시험이다. 지적재산관리직종이란, 지적재산(저작물, 발명, 의장, 상표, 영업비밀 등)의 창작, 보호 또는 활용을 목적으로서, 자기 또는 소속 기업·단체 등을 위한 업무를 실시하는 직종이다. 구체적으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뿐만 아니라, 창작단계에서의 개발전략, 마케팅 등, 보호단계에서의 전략, 절차 관리 등, 활용단계에서의 라이선스 계약, 침해품 배제 등 매니지먼트를 하는 직종이다. 지적재산관리기능 검정은 위와 같은 기능 및 관련 지식의 정도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지적재산관리기능 검정은 일반사단법인 지적재산교육협회가 2004년에서 실시한 “지적재산검정”이 전면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2008년 7월에 제1회 검정을 실시한 이후 연 3회 실시하고 있다. 즉, 기업, 단체 등에서 발명, 실용신안, 의장,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또는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효과

284) http://ip-edu.org/ipa_info.
285) http://ip-edu.org/ipa_follow-up 참고.

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력양성을 위해 2008년 7월 전면적으로 도입되었다.

**【지적재산관리기능검정의 경과】**

| | | |
|---|---|---|
| **지적재산검정 (민간검정)** | 2004.3. | 제1회 지적재산검정실시(2급만) |
| | 2004.11. | 제3회 1급(특허) 개시 |
| | 2008.3. | 제12회 지적재산검정(최종회) 실시 |
| **지적재산관리기능검정 (국가시험)** | 2008.7. | 제1회 지적재산관리기능검정 실시 |
| | 2010.11. | 제7회 1급(콘텐츠 전문업무) 개시 |

※ 출처 : 一般社団法人知的財産教育協會, 「知的財産管理技能檢定を中心とする知的財産教育協會の知財人材育成の取り組みについて」, 『特許研究』 vol.55, 工業所有權情報・研修館特許研究室, 2013, 84頁.

나. 지적재산관리기능검정의 시험제도

지적재산교육협회(知的財産教育協会)는 지적재산 관리기능검정 인증 강좌를 수시로 개설 중이다. 또한 지적재산교육협회는 동 협회가 편찬한 지적재산관리기능사 시험을 위한 추천도서 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급수별로 공식 교재가 별도로 있으며, 기출문제와 해설을 따로 학습교재로 출판하기도 한다.[286]

지적재산관리기능 검정은 1급(특허전문업무·콘텐츠 전문업무), 2급(관리업무), 3급(관리업무)으로 되어 있다. 각 급으로 나누어있지만 학과시험·실기시험이 있고, 둘다 합격하면 지적재산관리기능사(IP 기능사)가 된다.

이중 1급 특허 전문업무 지적재산관리 기능사와 1급 콘텐츠 전문업무 지적재산관리 기능사 자격 시험에서는 가치평가·자금조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테스트한다.

**【지적재산관리기능검정의 시험과목 및 그 범위】**

| | | | |
|---|---|---|---|
| **1급** | **특허 전문업무** | 학과시험 | 1. 리스크 매니지먼트<br>2. 계약<br>3. 권리집행<br>4. 자금조달<br>5 가치평가<br>6. 관계법규 |

286) 자세한 내용은 http://ip-edu.org/suisentosho 및 http://www.upload-j.com/information_1Q 차고.

| | | | |
|---|---|---|---|
| | | | 7. 특허 전문업무(①특허전략, ②법무, ③정보·조사, ④국내 특허권리화, ⑤외국 특허권리화, ⑥특허관계법규) |
| | | 실기시험 | 1. 특허전문업무(①특허전략, ②법무, ③리스크 매니지먼트, ④정보·조사, ⑤국내 특허권리화, ⑥외국 특허권리화, ⑦계약, ⑧권리집행, ⑨자금조달, ⑩가치평가) |
| | 콘텐츠 전문업무 | 학과시험 | 1. 리스크매니지먼트<br>2. 계약<br>3. 권리집행<br>4. 자금조달<br>5. 가치평가<br>6. 관계법규<br>7. 콘텐츠 전문업무(①콘텐츠 전문업무, ②콘텐츠 개발전략, ③콘텐츠 보호, ④콘텐츠 관계법규) |
| | | 실기시험 | 1. 콘텐츠 전문업무(①콘텐츠 개발전략, ②리스크 매니지먼트, ③콘텐츠 창작지원, ④콘텐츠 보호, ⑤계약, ⑥권리집행, ⑦자금조달, ⑧가치평가) |

※ 출처 : 一般社団法人知的財産教育協會, 「知的財産管理技能檢定を中心とする知的財産教育協會の知財人材育成の取り組みについて」, 『特許研究』 vol.55, 工業所有權情報・研修館特許研究室, 2013, 85-86頁.

**【지적재산관리기능검정의 시험형식】**

| 등급 | 시험종류 | 시험형식 | 문제수 | 제한시간 |
|---|---|---|---|---|
| 1급 | 학과시험 | 필기시험(마크시트 형식 4지 택일) | 45문 | 100분 |
| | 실기시험 | 필기시험 및 구두시험 | 5문 | 약 30분 |

※ 출처 : 一般社団法人知的財産教育協會, 「知的財産管理技能檢定を中心とする知的財産教育協會の知財人材育成の取り組みについて」, 『特許研究』 vol.55, 工業所有權情報・研修館特許研究室, 2013, 86頁.

**【지적재산관리기능검정시험의 응시자격】**

| 등급 | 시험구분 | 선택 | 응시자격 |
|---|---|---|---|
| 1급 | 학과시험 | 특허 전문업무/ 콘텐츠 전문업무 |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에 4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br>◦2급 기능검정의 합격자로서, 지적재산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

| | | | |
|---|---|---|---|
| | | | 자<br>◦3급 기능검정의 합격자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br>◦학교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검정직종(1급)에 관한 과목을 10단위 이상을 수강한 자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br>◦비즈니스 저작권검정 상급의 합격자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
| | 실기시험 | 특허 전문업무 | ◦1급 기능검정(특허 전문업무) 학과시험의 합격자(※1)<br>◦1급 지식재산관리기능사(콘텐츠 전문업무) |
| | | 콘텐츠 전문업무 | ◦1급 기능검정(콘텐츠 전문업무) 학과시험의 합격자(※1)<br>◦1급 지식재산관리기능사(특허 전문업무) |

※1 합격일이 시험일이 속한 년도 및 그 전년도 및 전전년도에 속한 것에 한함.
※2 비즈니스 저작권 검정이란, 사티화이 저작권검정위원회(サーティファイ著作權檢定委員會)가 실시하는 “비즈니스저작권검정”을 뜻함. 합격일은 기능검정이 실시된 날이 속한 년도 및 그 전년도 및 전전년도에 속한 것에 한함.
※3 당해 합격한 것의 시험이 행해진 날의 다다음 년도까지 실시된 검정에 한함.
※ 출처 : 一般社団法人知的財産教育協會, 「知的財産管理技能檢定を中心とする知的財産教育協會の知財人材育成の取り組みについて」, 『特許研究』 vol.55, 工業所有權情報・研修館特許研究室, 2013, 86頁.

다. 지적재산관리기능 검정의 활용현황

지적재산관리기능 검정의 총 시험 신청자 수는 146,965명이며, 이 중 합격한 지적재산관리 기능사는 총 46,548명이다(제13회 시험까지의 인원수). 이 중 1급 지적재산권리 기능사의 수는 1,477명이다.

【지적재산관리기능사 수(제13회 시험까지)】

| 국가자격명칭 | 유자격자 수(명) |
|---|---|
| 1급 지적재산관리 기능사(특허 전문업무) | 1,368 |
| 1급 지적재산관리 기능사(콘텐츠 전문업무) | 109 |
| 합계 | 1,477 |

※ 출처 : 一般社団法人知的財産教育協會, 「知的財産管理技能檢定を中心とする知的財産教育協會の知財人材育成の取り組みについて」, 『特許研究』 vol.55, 工業所有權情報・研修館特許研究室, 2013, 88頁.

라. 지적재산관리 기능사의 계속연수제도

지적재산관리 기능사(IP 기능사)는 지적재산관리기능 검점의 합격자만이 그 호칭이 부여되는 명칭독점자격이다. 그러나 매년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변화가 많은 현대에 있어, “지적재산 매니지먼트”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국가에 의해 명칭의 독점이 인정받은 국가자격보유자가 자격취득 후에도 다양한 연수를 수강하는 등 계속적으로 지식·스킬을 유지하고, 가능한 한 향상하는 것은, 그 능력을 공적으로 증명된 지적재산관리 기능사의 책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교육협회에서는 국가에 의해 공적으로 능력이 증명된 지적재산 전문가로서의 지적재산관리 기능사가 집단으로 교류·공동으로 지식의 제공(연수), 지식의 수집·분석(연구), 및 지식의 공유(기관지 발행)를 하는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1) 정기연수 및 특별연수

지적재산 매니지먼트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를 강사로 하여 정기연수를 개최하고 있다(연 4회, 정기연수는 집에서 동영상으로도 가능함). 또한 시기에 따라 특별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2) 연구회 활동

지적재산 매니지먼트에 관여하는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를 하기 위해, 지적재산관리 기능사로 구성된 연구회를 조직하였다. 동 연구회에서는 정기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연 1회, 연구성과를 연구보고서로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3) 기관지 발행

연구회 활동의 보고를 포함하여 기관지인 「IP 매니지먼트 리뷰(IPマネジメントレビュー)」를 발행한다. 지적재산관리 기능사의 지식 향상에 유용한 국내외의 정보를 독자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기관지는 연 4회(3, 6, 9, 12월) 발행한다.

### 4. 지식재산 가치평가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문 인력 육성 프로그램

#### 가. 개요

일본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사업단이 연계하여 일본공업진흥협회 내에 기술평가센터를 설립하여 사업화를 위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거래를 위한 기술평가는 공공기술이전 관련기관에서 동시에 수행하는 체제로 정부부처별 및 지방자치단체별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형태로 설치된 기술이전기관이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기술이전 기관은 대체로 등급평가위주로 평가를 실시하며 가치평가만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없다.

일본의 주요 평가기관으로 일본공업기술진흥협회의 기술평가센터(CTA)[287], 일본특허정보기구(JAPIO)[288] 등이 있다. 그 외에 가나가와 고도 기술지원재단(KTF)에서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활용하기 위한 평가를 수행하고 일본정책투자은행, 다이니치강쿄 은행(第一勤業銀行), 스미토모(住友銀行) 등 금융기관과 변리사들을 중심으로 담보대출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289]

#### 나. 일본변리사회 지적재산권 가치평가 추진센터

일본변리사회는 2005년 4월 1일에 지적재산권 가치평가 추진센터[290]를 설립하여 변리사를 통한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를 실시해왔다. 또한 연수를 통해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변리사의 육성도 하고 있다. 실제로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변리사의 수가 적어서 활성화되지는 않았는데 2013년부터 동 센터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대상이 될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가치평가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변리사에 의한 지식재산 가치평가체계를 소개하는 책자를 제작하여 일본 전국의 변리사회 지부, 상공회의소 등에서 배포하고 전국의 변리사 및 변리사그룹을 소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287) 홈페이지는 www.jttas.or.jp. 기술평가정보센터는 연구·개발, 시작, 상품화 및 판매 등의 단계마다 심사·조사, 기획 및 컨설팅 지원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5년에 설치되었다. 기술정보센터는 평가위원회와 기술 정보를 수집·정리·분석·평가, 시장조사·정리·분석·평가 등을 수행하는 기술정보조사 기획실, 신기술 사업의 타당성 조사·분석·평가, 지식재산화 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기반정비 지원실로 구성되어있다. 기술평가정보센터가 시행하는 기술 평가는 구체적으로 신규성 기술 경쟁력, 기술 우위, 타당성 기술의 신뢰성 기술의 확립도, 시장성 시장 규모, 수요의 안정성, 기술의 수명, 시장의 성장 등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 A~E의 5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288) 홈페이지는 www.japio.or.jp. 1985년 특허정보사업 일원화를 위해 일본 경제산업성(METI)와 일본 특허청(JPO)의 관리하에 일본특허정보센터(Japatic)와 사단법인 발명협회(JIII)의 특허정보서비스 부문을 통합하여 종합특허정보서비스 기관으로 탄생함.

289) 한국발명진흥회, 「IP담보대출을 위한 IP가치평가 모델연구」, 2013, 35면.

290) 일본변리사회 홈페이지 참조(http://www.jpaa.or.jp/?p=456 2014. 9. 5. 최종 방문).

【지적재산권 가치평가 추진센터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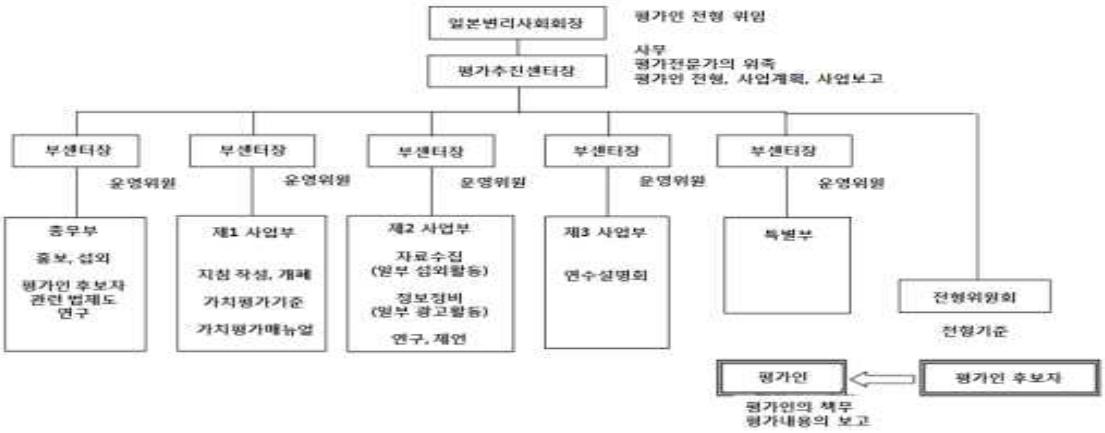


※ 출처 : 일본변리사회 홈페이지(www.jpaa.or.jp)

(1) 가치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작성

지적재산권 가치평가 추진센터는 2006년 이후 순차적으로, 「지적재산 가치평가 가이드라인(제1호)」, 「지적재산 가치평가 지침Ⅰ(경제평가편)과 별책」, 「지적재산 활용 목적에 따른 지적재산 가치평가 방법에 대해 - 특히, 지적재산력 평가를 중시한 가치 평가-」, 「지적재산 경영 평가지침」을 작성해왔다.[291]

「지적재산 가치평가 가이드라인(제1호)」는 변리사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가치평가 업무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지침으로, 변리사에 의한 가치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작성되었다.[292] 이는 지적재산의 본질적 가치를 파악하고, 그것이 재무·자산에 얼마나 기여하고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따라 실적 평가뿐 아니라, 장래 예측도 감안한 지적재산의 가치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293]

지적재산권 가치평가 추진센터가 작성한 가이드라인, 지침들은 변리사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지적재산 가치평가에는 지적재산의 본질에 근거한 평가가 필요한데, 변리사가 지적재산의 본질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정성적 평가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등 고도의 판단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294] 또한 지적재산권의 권리화 업무를

291) 森　泰比古, 「附属機関の部-知的財産価値評価推進センターの活動」, 『パテント』 Vol.63 No.4, 2010, 7頁.
292) 丸島儀一, 「知的財産権価値評価ガイドライン（第１号）の公表と知的財産価値評価推進センターの活動紹介」, 『パテント』 Vol.60 No.1, 2007, 10頁.
293) LEC東京リーガルマインド, 「2011 士業最前線レポート 弁理士編」, 2011, 23頁.
294) パテント 2007,「特集≪知的財産の価値評価≫ 第1部 知的財産価値評価推進センター」, Vol.60 No.1, 6頁.

하기 때문에 출원 전에 지적재산권의 등록 가능성과 다른 경쟁기업의 지적재산력 비교 등도 감안한 지적재산권의 가치 평가가 가능하다고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295]

지적재산 가치평가는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일정한 절차를 따른다. 일반적으로 감정 평가의 기본적 사항 확정, 처리 계획 수립, 대상 지적재산권의 확인, 자료수집 및 정리, 자료 검토 및 가격 형성요인 분석, 가치평가 방식 적용, 시산가격[296]의 조정, 감정 평가액 결정, 감정 평가서 작성 작업으로 이루어진다.[297] 크게 5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지적재산 가치평가 작업 단계】

※ 출처 : 知的財産価値評価推進センター, 「弁理士が行う新たな鑑定業務(知的財産権価値評価業務)−特許権評価事例, 商標権評価事例等への係わり方−(4)」, 『パテント』 Vol.63 No.10, 2010, 60頁.

○ 1단계(평가대상이 되는 지식재산 특정) : 평가대상이 되는 지식재산의 특정은 평가작업의 대전제며, 보통 제일 처음하는 작업이다.

○ 2단계(평가목적 특정) : 이후 3~5단계 작업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작업 단계다. 타인(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의뢰 내용에 따라 평가목적이 설정된다. 평가의 전제조건도 이 단계에서 대체로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3단계(평가자료) : 2단계에서 특정한 평가목적에 따라 수집범위를 제한하고, 그 수집범위 내에서 평가자료를 수집한다.

295) LEC東京リーガルマインド, 「2011 士業最前線レポート 弁理士編」, 2011, 23頁.
296) 최종결론인 감정평가액 산출의 중간과정, 어림잡기 위한 가격.
297) 丸島儀一, 「知的財産権価値評価ガイドライン（第１号）の公表と知的財産価値評価推進センターの活動紹介」, パテント Vol.60 No.1, 2007, 17頁.

○ 4단계(평가방법 결정) : 2단계에서 특정한 평가목적에 따라 진행하지만, 채용 가능한 평가방법은 3단계에서 어떤 평가자료를 수집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제한된다. 3단계 결과도 고려하여 평가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 5단계(평가작업) : 1단계에서 특정한 지식재산에 대해, 2단계에서 특정된 평가목적에 적합하게, 3단계에서 수집한 평가자료를 이용해서, 4단계에서 결정한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결과를 도출하는 작업이다.[298]

1~5단계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단계에서 지식재산의 특성에 대한 전문적 지식, 법률적 지식 등 폭넓은 전문적 지식을 갖춘 변리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평가자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 그 작업결과가 달라진다.[299] 가치평가에 발휘해야할 변리사의 전문성으로는 지식재산권법의 해석에 관한 지식 경험, 출원 절차 및 등록 제도에 관한 지식 경험, 선행 문헌(관련 지식재산권)과의 대비에 대한 지식 경험, 판례 분석에 대한 지식 경험, 출원 대리 업무에 따른 지식 경험, 감정 업무에 따른 지식 경험, 지적 재산권에 관한 지식 경험 등이 있다.[300]

변리사는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할 때 권리분석을 특히 중시해야한다. 의뢰자로서도 변리사의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구하려고 의뢰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는 변리사가 통상 업무로 하고 있는 특허권, 상표권 등에 대한 무효이유 유무 분석·평가와 실제 이익을 만들어내는 제품·서비스 등과 권리범위와의 대비분석·평가가 변리사가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또, 변리사는 법률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적 측면에도 정통하기 때문에, 미실시·미사용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적 실시가능성에 대해 분석·평가하는 경우에도, 변리사의 전문성이 기대되고 있다. 변리사는, 평소,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발명자·창작자, 그리고 네이밍(브랜드)을 만들어내는 기획자 등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창작의 배경과 향후 사업 전망, 혹은 선행하는 기술·브랜드 등과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전문성을 살려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적극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01] 이 외에도 지식재산 가치평가 할 때, 일반적으로 법 영역별 권리의 특징, 기준 시점, 당사자 등을 유의하여야 한다.

---

298) 知的財産価値評価推進センター, 「弁理士が行う新たな鑑定業務(知的財産権価値評価業務)−特許権評価事例, 商標権評価事例等への係わり方−(4)」, パテント Vol.63 No.10, 2010, 60頁.

299) 知的財産価値評価推進センター, 「弁理士が行う新たな鑑定業務(知的財産権価値評価業務)−特許権評価事例, 商標権評価事例等への係わり方−(4)」, パテント Vol.63 No.10, 2010, 60頁.

300) 丸島儀一, 「知的財産権価値評価ガイドライン（第１号）の公表と知的財産価値評価推進センターの活動紹介」, 『パテント』 Vol.60 No.1, 2007, 13頁.

301) 知的財産価値評価推進センター, 「弁理士が行う新たな鑑定業務(知的財産権価値評価業務)−特許権評価事例, 商標権評価事例等への係わり方−(4)」, 『パテント』 Vol.63 No.10, 2010, 62頁.

(2) 일반 회원을 위한 연수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추진센터에서는 일반 회원을 위한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인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변리사는 지식재산 가치 평가 측면에서 우위에 선다는 점에서 재무·회계의 기초를 배우는 연수, 일본공인회계사협회와 합동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다.[302] 2010년도의 경우, 연수원과 공동으로 3월에 도쿄, 오사카, 나고야 3개소에서 실시하였다.[303]

(3) 평가인 후보 등록제도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추진센터는 지식재산권의 금전적 가치평가에 대한 법원의 감정 평가인 추천 의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방면에서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인 후보자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평가인 후보자는 법원, 그 밖의 추천 의뢰에 따른 가치평가 업무에 대해 수임할 의지가 있는 변리사이며, 평가인 후보자 등록부에 등록을 받은 자를 말한다. 평가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반 변리사를 위한 연수 외에 평가인 후보자 한정 연수가 실시되고, 평가인의 조기 육성이 이루어진다.[304] 연수 내용은 가치평가를 위한 회계 지식에 대한 강의에서 실질적인 연습까지 일관된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한 평가인 후보자는 법원 등의 요청에 따른 평가인 후보자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서 작성 실무를 배울 수 있다.[305]

## V.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 인력 육성 프로그램 개선방안

### 1. 현행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의 한계

#### 가. 일반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 인력 육성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관련 자격제도를 비교하자면, 크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될 것이다.

#### 나. 종합적 지식재산 가치평가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부존재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전문 자격이

302) LEC東京リーガルマインド, 「2011 士業最前線レポート 弁理士編」, 2011, 23頁.
303) 森 泰比古, 「附属機関の部-知的財産価値評価推進センターの活動」, 『パテント』 Vol.63 No.4, 2010, 7頁.
304) https://www.jpaa.or.jp/about_us/organization/affiliation/ipvepc/dayori.html
305) http://ipfbiz.com/archives/2112531.html

나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특허뿐만 아니라, 디자인, 상표 등 다양한 지식재산을 대상으로 한 가치평가 전문가 양성과정이 존재한다. 또한 개별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교육 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활동이나 제품과 관련된 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을 교육과정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전문 교육과정은 기술가치평가에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뚜렷하다. 일부 교육과정에서 다른 지식재산을 대상으로 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특허와 기술에 치중되어 있다. 따라서 특허나 기술 뿐 아니라 디자인, 상표, 컨텐츠 등 다양한 지식재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기술이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하나의 제품이나 사업에 복수의 특허기술이 결합되어 있고, 특허뿐만 아니라 디자인, 상표 등, 다수의 지식재산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따라서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각각의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의 육성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사업 활동이나 제품과 관련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재도 육성해야 할 것이다.

다. 전문적 지식재산 가치평가 인재 양성프로그램의 부존재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낮다. 일본의 경우 민간차원의 교육프로그램 외에도 정부주도의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교육 프로그램의 대다수는 민간에서 실시되는 '자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초적인 소양교육만을 실시할 뿐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기에 미흡한 수준이다. 현재 민간자격증은 기업·기술가치 평가사(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를 제외하고는 일반인들도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응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므로, 교육 프로그램 및 자격시험의 전문성이 해당 민간자격증의 전문성을 반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현재 교육 프로그램 및 자격시험은 "소양자격" 수준의 난이도와 전문성을 갖춘 것이 사실이다. 기술가치평가사, 기업가치평가사 또는 브랜드관리사 등의 과정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많으나, 대부분의 교육프로그램은 단기간에 걸친 강의중심이다. 물론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소양자격 함양만으로도 지식재산시장에 공헌하는 부분이 존재하겠지만, 현재의 소양자격 수준의 인력을 공급하는 현 자격증 제도 하에서는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고급 인력을 공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 차별적 프로그램의 부존재

차별화된 지식재산 가치평가 인재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즉, 기관별 교육프로그램 내용의 차별성이 적어 대부분 유사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현

재 개설된 기업·기술가치평가 관련한 대부분의 민간기관은 가치평가 일반, 지식재산 법제도, 강의 중심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사례 소개, 가치평가에 필요한 회계·재무이론 등 공통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유사한 민간 교육프로그램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현재 개설된 교육프로그램들은 개별 프로그램들 간의 차별화가 부족하여 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차별성과 전문화된 평가영역에서의 업무수행능력을 검증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평가 업무능력을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교육프로그램 이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자격증 소지자의 실질적 기여를 저하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같이 정부주도의 개별의 전문적인 교육 및 융합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업·기술가치평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유사성】

| 교육내용 | 기관 | | | | | |
|---|---|---|---|---|---|---|
| |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 한국기업평가원 |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 발명진흥회 | 대한변리사회 | 기술보증기금 |
| 가치평가 일반 | ○ | ○ | ○ | ○ | ○ | ○ |
| 회계이론 | | ○ | ○ | | | ○ |
| 재무이론 | | ○ | | | | ○ |
| 지식재산 법제도 | ○ | ○ | ○ | ○ | | ○ |
| 사업성 관련 | ○ | | ○ | ○ | | ○ |
| M&A관련 | ○ | | | | | ○ |
| 사례·실무 | ○ | ○ | | ○ | | ○ |

※ 출처 : 자체 제작.

마. 자격제도의 전문성과 공신력 미약

지식재산 가치평가와 관련된 자격제도의 전문성과 공신력이 떨어진다. 앞서 살펴본 민간자격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이외에도 지식재산 가치평가와 관련된 민간자격이 존재한다. 심지어는 동일한 교육기관 내에서도 유사하거나 비슷한 내용의 자격이 혼재하고, 자격시험의 내용과 합격요건도 일정치 않으므로,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중요성에 비해 자격제도의 공신력 자체가 미약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시험으로서의 자격증 취득에 그치고 있으며, 실제 기술평가 사례 적용 관련 기회나 보수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가 부족하여 지속적인 전문성과 공신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바. 보수교육의 미비

민간에서 운영되는 자격제도의 경우 보수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자격증의 질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지적재산교육협회는 정기연수 및 특별연수를 통해 자격자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고, 연구회 활동을 통해 자격자들 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간행물 발간을 통해 외부로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점이 참조가 된다.

2.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 인력 육성 교육의 개선방안

가. 지식재산 가치평가 자격제도의 일원화

지식재산 가치평가 자격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 자격제도를 일원화하고, 일본의 지적재산교육협회의 지적재산관리기능 관리사와 같이 각 급수별로 역할의 차등을 두어 전문성을 세분화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시장에서의 고급 전문인력의 확충과 가치평가 관련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급 인력양성과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 관련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난립하고 있는 민간자격에 대해 일정한 교육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자격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급의 지식재산가치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전문변리사제도와 연계하여 5년 이상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식재산서비스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리사에게 지식재산서비스전문변리사(지식재산가치평가전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시장에서의 고급 전문인력의 확충과 가치평가 관련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급 인력양성과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 관련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나. 전문교육기관의 설립 등

먼저,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즉, 정부, 금융기관, 가치평가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 인력을 육성할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문교육기관에서는 지식재산 관련 법률·경영·금융 등 고도의

전문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라이선싱, 기술가치평가, 분쟁대응 관련 과정 및 동 분야의 국제전문가 교과목의 심화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즉, 지식재산 가치평가가 적용되는 경우는 ① 금융기관에 대한 지식재산권 담보, ② 지식재산비즈니스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매매 또는 라이선스, ③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액의 산정, ④ 기타 지식재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활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므로 각 항목별 전문성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만,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하는 방법도 기업가치평가나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와 그 방법에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306] 가치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아울러 MIP과정에 별도의 가치평가전공을 두어 가치평가 인력과 지재금융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좀더 거시적으로는 지식재산서비스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그중 지식재산가치평가 세부전공을 설치하여 교육하는 방법이 좀더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다. 자격자들에 대한 사후관리

현재 자격증 제도에 의해 기술평가 자격증을 부여받은 경우, 자격증 부여 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기술평가사 자격증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실제 평가 업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가치평가시장에 연계시키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재 기술평가 전문자격증을 부여받은 인력은 개인단위의 전문 인력이 대부분이다. 이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술평가 관련 기술·시장동향 및 기술평가기법 등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에 사후 보수교육 및 분야별 심화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 Ⅵ. 소결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법, 경제, 금융, 회계, 투자 등 여러 학문 분야가 관련된 학제간 연구이므로,[307]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학문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 인력의 양성은 민간자격기관 및 금융기관, 가치평가 관련 기관에서 단기간에 걸친 기초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관련 자격증은 민간자격으로 지식재산 분야별로 존재하며, 자격시험의 기준도 다르므로 각 민간 자격증 소지자의 능력을 일괄적으로 신뢰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민간 자격증 소지자의 능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사후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각 기관의 노력도 부족하다. 즉, 현행 민간자격기관 및 금융기

306) 최승재,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와 경쟁법", 「산업재산권」 통권 39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12, 6면.
307) European Commission, *Final Report from the Expert Group on Intellectual Property Valuation,* 2014.3, p.12.

관 등의 민간 주도 방식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인력 육성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가 주도하고 금융기관 및 가치평가기관이 협력하여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 인력을 육성할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 인력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 제3절 가치평가인력 및 평가결과에 대한 품질관리체계 및 품질관리

### Ⅰ. 개설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한다 하여도, 전문인력에 대한 지속적·정기적인 후속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신뢰성 있는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가치평가 결과에 대한 품질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먼저 지식재산 가치평가방법에 필요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정보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구축된 지식재산 가치평가 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수집, 조사하여 운용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지식재산가치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 가치평가 감시조직이 필수적인 바, 이러한 조직을 운용하고 있는지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도록 하겠다.

### Ⅱ. 지식재산의 가치평가에 사용되는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가치평가방법으로는 시장접근법[308], 수익접근법[309], 원가접근법[310]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로열티공제법[311]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가치평가시 특별한

---

308) 시장접근법은 시장과 거래사례가 왜곡되지 않았을 것을 전제로, 실제 시장에서의 거래사례에 근거하여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실제 시장에서의 거래사례란 독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거래로서 비교 가능하거나 또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산업통상자원부,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해설서」, 2014, 28-29).

309) 수익접근법은 가치평가 대상의 경제적 수명기간 동안 사업화로 인하여 발생될 미래 경제적 이익을 적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수익접근법을 통한 가치산정시에는 경제적 수명, 현금흐름, 할인율, 기술기여도(지식재산기여도) 등의 추정이 필요하다. 경제적 수명은 경제적 요인과 법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데, 경제적 요인은 가치평가 대상에 의하여 미래의 경제적 수익이 발생되는 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법적 요인은 그 수익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기간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수명은 두 요인에 의해 결정된 기간 중 짧은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산업통상자원부,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해설서」, 2014, 30-31면).

310) 원가접근법은 대상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입된 비용을 기초로 기술의 가치를 산정하거나 대체의 경제원리에 기초를 두고 동일한 경제적 효익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구입하는 원가를 추정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역사적 원가법, 재생산원가법, 대체원가법 등이 있다. 원가접근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원가, 재생산원가, 대체원가 등 상세한 원가 정보가 필요하며, 완성시점과 평가시점 사이에서 발생된 물리적 마모, 기능적 진부화, 기술적 진부화, 경제적 진부화와 같이 물리적인 용도나 유효성이 약화되어 가는 것 등의 진부화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39조).

311) 로열티공제법은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 되었다면 지급하여야 하는 로열티를 기술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절감된 로열티 지불액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비교 가능한 기술이 존재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다. 로열티공제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상기술과 비교할 만한 투자위험과 수익성을 가지는 유사

이유가 없는 한 대상기술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 세 가지 평가접근법 중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단독 또는 로열티공제법 등 다양한 방법이 혼합된 형태로 적용할 수도 있는데 어느 방법을 적용할지는 평가목적, 대상기술, 평가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312]

【가치평가 방법론】

| 시장(시장비교사례)접근법 | 수익(이익)접근법 | 원가(비용)접근법 |
|---|---|---|
| 거래사례비교법 | | |
| 산업표준법 | 현금흐름할인법 | |
| (Industry Standards) | 기술요소법 | 대체원가 |
| 경매(Auctions) | 경험측(25% Rule) | 재생산원가 |
| 로열티공제법 | 로열티공제법 | |
| (Relief from Royalty) | | |

※ 출처 : 한국발명진흥회, 「IP담보대출을 위한 IP가치평가 모델 연구」, 2013, 9면.

따라서 이하에서는 지식재산 가치평가방법론에 따라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대상기술 및 로열티율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하였다.

1. 일본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관련 데이터베이스

가. 지식재산 거래 및 특허기술·라이센스 정보 데이터베이스

(1) 일본 특허 정보 플랫폼(J-PlatPat)

지난 2014년 9월 1일, 일본 특허청(JPO)은 오는 2015년 3월 23일부터 새로운 특허정보서비스인 「특허정보 플랫폼(Japan Platform for Patent Information, J-PlatPat)」을 개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터넷 이용을 통해 특허정보를 특허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은 중요한 지식재산정책의 하나이다(지적재산기본법 제20조). 특히 「지적재산추진계획 2014」에서는 기술정보의 집적인 특허정보에 대해서 일본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중점화나 해외에서의 원활한 사업 활동 등, 중소·벤처기업에 이바지하는 「특허전자도서관」을 개편하여 새로운 지식재산권 정보제공 서비

---

기술의 라이선스 거래를 선택하여 그 로열티에 대상기술과 유사기술과의 차이를 반영하여 로열티를 산정한다. 유사기술의 거래사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업종별 로열티 통계 또는 상관행법 로열티 통계를 거래사례의 추정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업종별 로열티 통계 또는 상관행법 로열티 통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로열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여 최종 로열티를 산출할 수 있다.

지식재산 담보가치평가의 경우 로열티 공제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허청과 산업은행은 지식재산 담보대출의 시행을 위하여, 일본 경제산업성의 국유 특허권 실시료 산정 모델을 기반으로 개선된 로열티 공제법의 평가모델을 개발하였다. 기본적으로는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통해 발생되는 매출액의 추정에 기반하여, 지식재산 수명 동안의 로열티 현금흐름을 계산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도출되는 모델로 로열티 공제법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때 기준이 되는 로열티율로 구 기술거래소의 2005년 산업업종별 로열티율 등이 이용된다(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40조; 한국발명진흥회, 「IP담보대출을 위한 IP가치평가 모델 연구」, 2013, 13면).

312)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36조.

스를 구축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특허정보 플랫폼은 그 약칭 J-Plat(ぷらっと) Pat(ぱっと)에도 나타나 있듯이 특허 이용자가 「불쑥」 들러서, 정보를 「딱」 찾을 수 있는 유저에게 친숙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특허정보 플랫폼은 검색서비스 기능의 충실화, 유저 인터페이스의 개선, 외부 서비스와의 연계, 「색채」나 「소리」 등의 새로운 형태의 상표에 대한 대응 및 특허공보 등의 정보의 일괄 다운로드 서비스(민간정보 제공서비스 사업자용)의 개시 등을 통해 의장 및 상표를 포함한 특허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정보기반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보다 폭넓게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의 신속화, 특허 패밀리 정보의 참조, 외국 특허청 서비스와의 연계 등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313]

【특허 정보 플랫폼 홈페이지 화면】

※ 출처 : 일본 특허청 (http://www.jpo.go.jp/torikumi/chouhoyu/chouhoyu2/tokkyo_platform.htm).

(2) 리서치 도구 특허 DB

생명 과학 분야의 연구를 위한 리서치 도구의 특허는 범용성이 높고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연구 추진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리서치 도구 특허의 사용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연구 개발에 지장이 생기는 사례가 있다. 생명 과학 분야의 연구 개발 촉진은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리서치 도구 특허 사용을 원활히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일본은 2007년 종합 과학 기술 회의에서 「생명 과학 분야의 연구 도구 특허의 사용 촉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지침에는 “대학과 민간 기업이 소유하고 제공 가능한 리서치 도구 특허 및 특허에 관련된 유체물 등에 대해서는 그 사용 촉진과

313) 일본 특허청, “特許情報プラットフォームの開始について”, 2014.09.01.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일괄적으로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명시했다. 그로 인해 리서치 도구 특허 DB가 구축되었다. 리서치 도구 특허 DB는 대학과 민간 기업이 소유한 리서치 도구 특허 및 라이선스 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리서치 도구 특허 사용의 원활화와 특허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14]

(3) 개방 특허 정보 데이터베이스

기업, 대학, 연구 기관 등의 개방 특허를 검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로서, 키워드, 문장, DB 등록자, 상세 검색을 통해 원하는 특허 검색이 가능하며, 새로 등록된 라이센스 정보나 미공개 정보, 패키지 정보 등도 알 수 있다.

【개방 특허 데이터베이스의 라이센스 등록 건수】

| 기관 | 등록건수 | 미공개안건수 |
|---|---|---|
| 기업 | 7,641 | 4 |
| 개인 | 1,712 | 6 |
| 학술연구 | 18,009 | 485 |
| 대학·TLO | 8,239 | 171 |
| 총합 | 35,601 | 666 |

※ 출처 : 開放特許情報データベース (http://plidb.inpit.go.jp/PDDB/Service/Jsp/patent_db_newli.jsp).

(4) Japan Patent Data Service(JPDS)

Japan Patent Data Service(JPDS)는 포괄적인 IP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JP-NET 서비스는 일본의 특허/실용신안(공개·등록·공고·공표)와 심사경과 정보, 해외특허, 해외 상표, 공개·국제 상표, 심의공보, 심의 받은 데이터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해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미국 특허, 유럽특허, 유럽 특허발행의 국제공개공보(WO)을 비롯하여 전 79개국의 정보를 제공한다.

【JP-NET 수록 데이터】

| 종류 | 기간 |
|---|---|
| 공개 | 1971년 1월 - 최신 데이터<br>(1971년 1월 - 1982년 12월은 서지+제목) |
| 공표 | 1979년 1월 - 최신 데이터<br>(1979년 1월 - 1982년 12월(실용신안은 1985년까지)는 |

314) 리서치 도구 특허 데이터베이스(http://plidb.inpit.go.jp/PDDB/Service/RTPatents/index.jsp)

| | |
|---|---|
| | 서지+제목) |
| 특허·공고 | 1971년 1월 - 최신 데이터(공고의 경우 1971년 1월 - 1985 년12월까지는 서지+제목) |
| 심사 경과 (특허, 실용신안, 의장) | 1964년 출원분 - 최신 데이터 |
| 심사 경과(상표) | 상표 제1호 - 최신 데이터 |
| 의장 | 1964년 1월 - 최신 데이터 |
| 상표 | 등록 제1호 - 최신 데이터 |
| 공개·국제상표 | 2000년 1월 - 최신 데이터 |
| 심결 | 2000년 1월 - 최신 데이터 |
| 해외특허(79개국) | 미국 특허 : 1985년 1월 - 최신 데이터<br>미국 공개 특허 : 2001년 1월 - 최신 데이터<br>유럽·국제공개공보(WO) : 1978년 1월 - 최신 데이터 |

※ 출처 : 日本パテントデータサービス (http://www.jpds.co.jp/jp-net/various_functions.html).

나. 분야별 로열티 정보

중소기업 등 지식재산에 대하여 전문부서를 가지지 않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라이센스에 관한 협상·계약, 특히 적정한 로열티율의 설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로열티 정보를 필요로 했으며, 지식재산대출과 사법·행정분야에서 지식재산의 활용·촉진 등의 관점에서도 로열티료율 정보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315]

이에 제국정보은행(帝国データバンク)은 2007년에 일본에서 특허 출원을 한 기업·단체 중 총 출원 건수가 상위에 있는 기업·단체를 포함한 총 3,006건을 조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복합적으로 추출, 중복 데이터 제거하여 분야별 로열티율을 정리하였다. 이 때 기술 분류는 WIPO (세계 지식 재산권기구)가 설정한 IPC (국제특허 분류) 및 동 기관이 작성한 「IPC AND TECHNOLOGY CONCORDANCE TABLE」에 따라 정리하였다.[316] 설문조사를 통해 정리된 분야별 로열리율 외에도 발명협회 연구센터에서 발간한 「실시료율」제5판(実施料率 (第5版) )에서 산업별 데이터를 수집하여 로열티율을 정리하였다.

【일본 설문조사를 통한 분야별 로열티율】

(단위 : %)

| 분야 | 평균 | 표준편 | 최대 | 최소 | 건수 |
|---|---|---|---|---|---|

315) 帝國データバンク, 「知的財産の価値評価を踏まえた特許等の活用の在り方に關する調査研究報告書～知的財産(資産)価値及びロイヤルティ料率に關する實態把握～」, 2010, 47頁.

316) 帝國データバンク, 「知的財産の価値評価を踏まえた特許等の活用の在り方に關する調査研究報告書～知的財産(資産)価値及びロイヤルティ料率に關する實態把握～」, 2010, 48頁.

| | | 차 | | | |
|---|---|---|---|---|---|
| 농업 | 3.0 | 1.4 | 4.5 | 0.5 | 10 |
| 식료품, 담배 | 3.8 | 1.7 | 5.5 | 1.5 | 4 |
| 개인용품, 가정용품 | 3.5 | 1.6 | 7.5 | 0.5 | 13 |
| 건강, 인명구조, 오락 | 5.3 | 3.2 | 14.5 | 0.5 | 54 |
| 분리, 혼합 | 3.2 | 1.7 | 9.5 | 1.5 | 23 |
| 성형 | 3.4 | 1.7 | 9.5 | 0.5 | 76 |
| 인쇄 | 3.3 | 1.0 | 4.5 | 1.5 | 10 |
| 교통 | 3.7 | 1.2 | 6.5 | 0.5 | 49 |
| 마이크로 구조기술, 나노기술 | 4.1 | 2.4 | 9.5 | 1.5 | 14 |
| 화학 | 4.3 | 3.5 | 32.5 | 0.5 | 103 |
| 야금 | 3.2 | 1.6 | 5.5 | 0.5 | 26 |
| 조합기술 | 4.5 | - | 4.5 | 4.5 | 1 |
| 섬유 또는 그 밖에 분류되지 않는 가용성 재료 | 3.3 | 1.9 | 5.5 | 0.5 | 5 |
| 종이 | 3.2 | 2.1 | 5.5 | 1.5 | 3 |
| 건조물 | 3.8 | 2.7 | 15.5 | 0.5 | 55 |
| 지중 또는 암석의 삭공(削孔), 채광 | 1.8 | 1.3 | 3.5 | 0.5 | 4 |
| 기관 또는 펌프 | 3.1 | 1.4 | 5.5 | 0.5 | 16 |
| 공학 일반 | 3.3 | 2.0 | 9.5 | 0.5 | 17 |
| 조명, 가열 | 3.9 | 2.2 | 9.5 | 1.5 | 16 |
| 무기, 폭파 | - | - | - | - | 0 |
| 기계 | 3.5 | 1.9 | 9.5 | 0.5 | 63 |
| 원자핵 공학 | 2.5 | - | 2.5 | 2.5 | 1 |
| 전기 | 2.9 | 1.5 | 9.5 | 0.5 | 97 |
| 컴퓨터 기술 | 3.1 | 2.0 | 7.5 | 0.5 | 12 |
| 정밀기기 | 3.5 | 1.9 | 9.5 | 0.5 | 37 |
| 바이오·제약 | 6.0 | 4.6 | 32.5 | 0.5 | 64 |

※ 출처 : 帝國データバンク, 「知的財産の価値評価を踏まえた特許等の活用の在り方に關する調査研究報告書～知的財産(資産)価値及びロイヤルティ料率に關する實態把握～」, 2010, 52頁.

【일본 사단법인 발명협회 연구센터 로열티율】

(단위 : %)

| 분야 | 평균 | 최빈값 | 중앙값 | 건수 |
|---|---|---|---|---|
| 산업용 전기 | 3.5 | 1.0/3.0/5.0 | 3.0 | 12 |
| 민생용 전기 | 4.6 | 4.0 | 4.0 | 8 |
| 라디오·TV | 5.7 | 1.0 | 2.0 | 70 |
| 전기 계측기 | 4.6 | 5.0 | 4.0 | 11 |
| 전자·통신부품 | 3.3 | 1.0 | 3.0 | 84 |
| 전자계산기 | 33.2 | 50.0 | 40.0 | 719 |
| 식료품·담배 | 3.7 | 2.0 | 3.0 | 58 |
| 유리·시멘트 | 4.8 | 3.0 | 4.5 | 36 |
| 섬유제품 | 6.1 | 5.0 | 5.0 | 878 |

| | | | | |
|---|---|---|---|---|
| 플라스틱 | 3.9 | 1.0 | 3.0 | 63 |
| 고무 | 6.5 | 6.0 | 6.0 | 21 |
| 펄프·종이·인쇄 | 5.3 | 3.0 | 4.0 | 23 |
| 나무제품·가죽제품 | 5.9 | 5.0 | 5.0 | 303 |
| 건설기술 | 3.5 | 3.0 | 3.0 | 15 |
| 기타 | 8.6 | 5.0 | 5.0 | 206 |
| 무기화학 | 4.0 | 5.0 | 5.0 | 3 |
| 유기화학 | 5.5 | 3.0 | 4.0 | 32 |
| 화학섬유 | 5.2 | 4.0 | 4.5 | 6 |
| 섬유·석탄 | 4.0 | 4.0 | 4.0 | 1 |
| 의약품·화장품 | 7.1 | 3.0 | 5.0 | 205 |
| 철강·비철 | 3.3 | 1.0 | 2.5 | 14 |
| 금속 | 3.7 | 1.0/5.0 | 4.0 | 76 |
| 원동기·보일러 | 3.9 | 2.0 | 3.0 | 15 |
| 농업·건설기계 | 3.3 | 2.0/4.0 | 3.0 | 13 |
| 금속가공기계 | 3.3 | 3.0 | 3.0 | 22 |
| 섬유기계 | 9.3 | 3.0/5.0/20 | 5.0 | 3 |
| 특수산업기계 | 6.5 | 2.0 | 4.0 | 45 |
| 수송기계 | 4.3 | 1.0 | 3.0 | 50 |
| 정밀기계 | 6.8 | 5.0 | 6.0 | 176 |
| 일반산업기계 | 4.2 | 5.0 | 4.0 | 71 |
| 그 외 기계 | 4.4 | 2.0 | 4.0 | 31 |

※ 출처 : 社団法人發明協會研究センター,「實施料率(第5版)」, 2003(帝國データバンク, 「知的財産の価値評価を踏まえた特許等の活用の在り方に關する調査研究報告書～知的財産(資産)価値及びロイヤルティ料率に關する實態把握～」, 2010, 93頁. 재인용.).

2. 한국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관련 데이터베이스

지식재산의 신뢰성 있는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내 공공기관·민간기업들은 각각 지식재산의 가치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DB)를 구축·운영 중이다.

가. 지식재산 거래 및 특허기술·라이선스 정보 데이터베이스

(1) 지식재산 거래정보 센터(IP-Market)

발명진흥회는 「지식재산 수집→수요기업 발굴→지식재산 이전·사업화」의 선순환 구조를 지원,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본의 '개방특허정보DB'와 유사한 지식재산 거래정보 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전국 4개권역(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에 지식재산 거래정보센터를 두고 지식재산 기술이전을 위해 지식재산 평가정보제공, 시장가격제공, 지식재산 협상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금융정보 제공하는 등 지식재산 거래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의 유형으로는 거래희

망 특허기술, 사업화를 희망하는 아이디어, 특허기술정보 및 도입을 희망하는 기술, 법률 및 마케팅 등 컨설팅 지원정보, 특허기술이전을 위한 제도, 방법 및 자금지원 관련 정보 등이 있다.[317]

【지식재산 거래정보 센터 DB 구축】

| 연도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
| DB 누계(건) | 35,000 | 42,000 | 50,000 | 55,000 | 60,000 | 64,569 | 68,575 | 74,680 | 86,320 | 104,710 | 132,135 |

※ 출처 : 특허청(http://goo.gl/AgRIkl).

(2)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NTB)

산업기술진흥원은 국가기술자산(공공·민간의 R&D성과물 등) 활용도를 제고하고 산업계로의 확산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NTB)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은 「기술발굴·수집→우수기술선별→DB화→이전·사업화」의 전 과정에서 통합적·종합적인 국가의 기술사업화 정보관리 체계로서, 국가 R&D 성과기술 및 민간 보유기술의 정보 DB구축을 통해 국가기술자원의 확산을 위한 정보제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수요기업, 기술거래·평가기관, 기술공급자, 기술투자자간 정보 이용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기술이전·평가정보 등 종합정보망 구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318]

(3)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그동안 기술 기반 금융 활성화와 정확한 기술신용평가를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기술평가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은행·TCB 각 기관별로 기술정보 DB를 구축할 경우 발생하는 막대한 노력과 비용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기술신용평가 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7월 21일부터 전국은행연합회가 기술정보를 수집해 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신용평가기관에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를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하였다.[319]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 및 TCB의 기술신용평가시 필요한 기술동향 및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자체생산 보고서와 32개 민·관 협약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기술시장정보 약 400만건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속적으로 DB 수집기관을 늘려 약 1000만건 이상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재

317) 특허청,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MART) 사업안내", 2000.
318)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 홈페이지, https://www.ntb.kr/
319) 금융위원회,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방안」, 2014, 27-28면.

정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이 개발한 기술 위주로 정보를 모아 수요자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DB와 차별화를 두고 있다.[320] 해당 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 사원기관 은행, 정책금융공사와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인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KED), 나이스평가정보에 제공된다.[321]

【TDB 시스템 구성】

※ 출처 : 금융위원회, “기술정보 DB (TDB; Tech Data Base) 서비스 제공 개시- 기술금융 토대 구축 완료,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정부 3.0 결실 맺어”, 2014, 4면.

【TDB 구축 정보의 종류】

| 구분 | 항목 |
|---|---|
| 기술정보 | 기술개요 (기술의 정의, 특성, 구성, 내용, 활용 현황) |
| | 기술 동향 (국내외 기술동향, 발전방향·진보 속도) |
| | 기술수준 (상용화 단계, 혁신성, 차별성, 첨단성, 파급성) |
| 특허정보 | 특허개요 (특허의 요지, 특징, 권리범위) |
| | 선행특허 (특허동향, 선행, 특허와의 비교 분석) |
| | 권리분석 (권리의 안정성 분석, 법적 보호강도 분석) |
| 시장정보 | 시장개요 (시장의 정의, 산업특성, 산업환경) |
| | 시장동향 (국내외 시장동향, 동업계 현황, 시장점유율 등) |
| | 시장규모 및 특성 (경쟁상황 등) |
| | 수요전망 (국내외 시장 전망, 시장의 기회/위협요인, 발전전망) |
| 평가정보 | 식별정보 (상호, 법인번호) |
| | 평가정보 (평가일자, 평가기관, 평가등급) |

※ 출처 : 금융위원회,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방안」,

320) 금융위원회, “기술정보 DB (TDB; Tech Data Base) 서비스 제공 개시- 기술금융 토대 구축 완료,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정부 3.0 결실 맺어”, 2014, 2면.

321) 조선비즈, “'기술금융 본궤도' 은행聯, 기술평가정보 한 곳에서 보는 서비스 제공”, 2014.07.20. 기사. (최종 방문일 2014.10.27.).

2014, 17면.

(4) 지식재산정보통합서비스(IPIS)

지식재산정보통합서비스(IPIS)는 특허청 산하 각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전산화된 지식재산 관련 정보들을 분야별(창출/보호/활용/교육)로 사용자에게 통합하여 제공하는 검색시스템으로서 11년도 7개 지식재산정보시스템 통합 DB를 시작으로 14년 현재 25개 지식재산정보시스템 통합DB를 구축하고 있다.

【지식재산정보시스템 통합 DB】

| 연도(단계) | 분야 | 항목 |
|---|---|---|
| 2011(1단계) | 창출 | e-특허나라, 지식재산정책정보, 표준특허 |
| | 보호 | KIPRIS plus, 대용량데이터 DB, 전통지식, 지재권 판례 |
| 2012(2단계) | 창출 | e-특허나라, 지식재산정책정보, 표준특허, 정부R&D특허성과관리, 지식재산취업포털 |
| | 보호 | KIPRIS plus(국내특허실용정보), 전통지식, 국제지재권분쟁정보, 디자인맵 |
| | 활용 | 인터넷특허기술장터 |
| | 교육 |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지식재산전문도서관 |
| 2013(3단계) | 창출 | e-특허나라, 지식재산정책정보, 표준특허, 정부R&D특허성과관리, 지식재산취업포털, NDSL-동향, NDSL-표준 |
| | 보호 | KIPRIS plus(국내특허실용정보), 전통지식, 국제지재권분쟁정보, 디자인맵, KIPRIS plus(상표정보), KIPRIS plus(디자인정보), KIPRIS plus(해외특허), NDSL-논문, NDSL-보고서, NDSL-저널 |
| | 활용 | 인터넷특허기술장터, 국가기록원 |
| | 교육 |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지식재산전문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NDSL-과학향기 |
| 2014(4단계) | 창출 | e-특허나라, 지식재산정책정보, 표준특허, 정부R&D특허성과관리, 지식재산취업포털, NDSL-동향, NDSL-표준 |
| | 보호 | KIPRIS plus(국내특허실용정보), 전통지식, 국제지재권분쟁정보, 디자인맵, KIPRIS plus(상표정보), KIPRIS plus(디자인정보), KIPRIS plus(해외특허), NDSL-논문, NDSL-보고서, NDSL-저널, 저작권등록정보서비스 |
| | 활용 | 인터넷특허기술장터, 국가기록원 |
| | 교육 |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지식재산전문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NDSL-과학향기 |

※ 출처 : 지식재산정보통합서비스(http://www.ipis.or.kr/).

(5)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거래장터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거래장터(Kibo Tech-Bridge)는 대학 및 연구소가 보유한 공급기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요기술정보, 이전성사정보, 기술등급평가정보, 기술가치평가정보 DB를 구축,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순히 검색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KTMS(Kibo Technology Matching System)을 통해 대학 및 연구소가 보유한 공급기술과 기업의 수요기술을 매칭하여 후보군을 추천하는 기술이전 중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도 기술이전에 따른 이전자금, 개발자금, 양산화자금 등을 지원한다.[322]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가치평가 검색】

| 번호 | 가치금액구간 (백만원) | 평가일 | 평가센터 | 평가기술 | 평가목적 |
|---|---|---|---|---|---|
| 1 | 201 ~ 250 | 2014-11-06 | 안산지점 | 분리형 타입의 식품가공 작업장의 양압 유지형 공기조화기 | IP협약보증_일반IP사업화기업 |
| 2 | 301 ~ 350 | 2014-11-06 | 창원지점 | 용버룩 배양장치 |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
| 3 | 401 ~ 450 | 2014-10-30 | 성남지점 | 배오존이 적은 고효율 오존 용해 장치 | IP협약보증_일반IP사업화기업 |
| 4 | 351 ~ 400 | 2014-10-29 | 종로지점 | 스마트 스트레스 큐어장치 | IP협약보증_일반IP사업화기업 |
| 5 | 851 ~ 900 | 2014-10-28 | 부산지점 | 영유 시추선용 자유낙하식 구명정 | IP협약보증_일반IP사업화기업 |
| 6 | 251 ~ 300 | 2014-10-28 | 김해지점 | 이당 방지형 교량 디스크 받침 | IP협약보증_일반IP사업화기업 |
| 7 | 501 ~ 550 | 2014-10-27 | 인천지점 | 타이어와 타이어 휠의 조립방법 | IP협약보증_일반IP사업화기업 |
| 8 | 1,801 ~ 1,850 | 2014-10-27 | 송파지점 | 폴리비닐 알코올로 제조된 방오용품 처분방법 외 3건 | IP협약보증_우수IP사업화기업 |
| 9 | 301 ~ 350 | 2014-10-23 | 김해지점 | 결석유 필터링 장치 | IP협약보증_일반IP사업화기업 |
| 10 | 301 ~ 350 | 2014-10-23 | 안양지점 | 고주파 의료수술용 전극 | IP협약보증_일반IP사업화기업 |

※ 출처 :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

(6) 기타 민간기업

민간기업에서도 다양한 가치평가 및 거래 사례에 대한 DB를 축적하고 있다. 델타텍코리아에서는 약 1,200여 건의 기술거래 사례에 대한 정보를 DB화하고 있으며, 비전밸류컨설팅도 약 635여 건의 실제 거래계약이 체결된 사례정보를 DB로서 구축하고 있다.[323]

나. 분야별 로열티 정보

가치평가의 방법에는 시장(시장비교사례)접근법, 수익(이익)접근법, 원가(비용)접근법, 로열티 공제법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에는 로열티 공제법(Relief-from-Royalty, RFR)이 사용되며, 로열티 공제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한다.[324] 로열티 공제법은 제3자로부터 라이센스 되었다면 지

322) https://tb.kibo.or.kr/
32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 생태계 조성방안」, 2013, 172면.
324) 특허청, 「지식재산권 담보를 위한 지식재산가치평가 실무 가이드(특허·실용신안)」, 2013, 1면.

급하여야 하는 로열티를 기술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절감된 로열티 지불액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서, 로열티 공제법을 적용할 경우 평가대상 기술과 비교할 만한 투자위험과 수익성을 가지는 라이센스 거래를 선택하여 그 로열티율을 반영하여야 한다.[325]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기술거래소의 산업업종별 로열티율 DB가 마련되어 있다.

【구 한국기술거래소 분야별 로열티율】

(단위 : %)

| 분야 | 평균 | 중앙값 | 최대 | 최소 | 건수 |
|---|---|---|---|---|---|
| 음·식료품 제조업 | 3.18 | 2 | 10 | 1 | 11 |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5.51 | 5 | 15 | 1 | 78 |
|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 3.13 | 3 | 4 | 2.5 | 4 |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2.88 | 2.5 | 5.25 | 2 | 6 |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3.82 | 3 | 8 | 1.75 | 10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97 | 3 | 7 | 0.2 | 48 |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 2.28 | 1.5 | 5 | 0.9 | 5 |
|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3.03 | 3 | 8 | 1 | 32 |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3.41 | 3 | 12.5 | 0.1 | 57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5.13 | 5 | 9 | 3 | 13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2.99 | 3 | 10 | 1.5 | 62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43 | 2.75 | 5.3 | 2 | 10 |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 12.51 | 10 | 30 | 0.5 | 26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2.84 | 3 | 5 | 0.2 | 5 |

※ 출처 : 한국기술거래소, 기술거래사례 구축을 통한 시장접근법 연구, 2005(특허청, 「IP담보대출을 위한 IP가치평가 모델연구」, 2013, 18면. 재인용.).

325)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26조.

## Ⅲ. 지식재산평가실무를 감시하는 조직 등

### 1. 일본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감시조직

일본은 지식재산 가치평가 관련 필요한 정보들이 각 데이터베이스별로 산재되어 있다. 특허정보(개방 특허정보), 리서치 도구, 라이선스 조건, 분야별 로열티율 등 각각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또한 일본특허정보기구(日本特許情報機構,Japio)는 세계특허정보검색서비스(Japio-GPG), 중소기업특허선행기술 지원서비스, 출원서류 등 복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 3월 17일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ISO 9001을 취득한 바 있다(등록 번호 : JQA-QMA12718).[326] 일본특허정보기구에서 획득한 품질경영시스템은 가치평가 품질관리에 관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즉, ISO 9001은 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QMS, Quality Management System)에 관한 국제표준으로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실현 체계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음을 제3자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2000년 12월 15일자로 ISO 9000패밀리 표준이 보다 고객 지향적인 내용과 프로세스 접근방법 도입으로 개정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품질보증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국가 간 기술장벽을 제거하고 상호 인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세계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품질에 대한 신뢰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SO 9000 시리즈는 9000과 9001~9004의 5가지 규격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9001은 제품의 설계에서 서비스까지를 다루는 가장 종합적인 품질 보증 시스템 모델을 제공(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QMS)에 관한 국제규격)이다.

그 외 일본에 지식재산 가치평가 감시조직에 관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다.

### 2. 한국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감시조직

우리나라의 경우 가치평가의 대상이 대부분 기술로서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기관들이 기관 고유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침이 상이한 형태로 규정되고 있다.[327]

【관계법령에 의한 국내 기술평가기관 현황】

| 평가제도 | 근거법령 | 평가기관 | 평가내용 | 평가목적 | 소관부처 |
|---|---|---|---|---|---|
| 기술가치평 | 기술의 이전 | 관계중앙행 | 기술이전거 | 기술이전 및 | 산업통상자 |

326) 일본특허정보기구 홈페이지 http://www.japio.or.jp/profile/profile05.html 참고.
32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 생태계 조성방안」, 2013, 32면.

| | | | | | |
|---|---|---|---|---|---|
| 가(기술이전·거래) | 및 사업화 촉진법(제35조) | 정기관 지정 기술평가기관 | 래용기술가치평가 | 사업화 촉진 | 원부 |
| 기술가치평가(현물출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 | 대통령령 지정 기술평가기관 |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결정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 중소기업청 |
| 기술평가(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제28조) | 기술보증기금 | 당해기술과 관련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평가 | 정책수행 및 금융지원 | 금융위원회 |
| 기술평가(벤처기업확인)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재18조의3)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 벤처기업의 육성·지원 | 중소기업청 |
| 기술평가(발명의 사업화) | 발명진흥법(제28조) | 특허청장 지정 기술평가기관 | 발명 사업화를 위한 기술성·사업성 평가 | 발명기술의 사업화촉진 | 특허청 |
|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평가 | 과학기술기본법(제20조)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기술의 파급효과, 기술수준 평가 | 연구기획에 반영 | 교육과학부 |

※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기술평가 전문자격증 제도 도입 방안 연구」, 2010(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 생태계 조성방안」, 2013, 34면 재인용).

위의 표와 같이 가치평가기관은 각자의 목적에 따라 지정·운영되며 각자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가치평가의 절차나 방법론에 대해 시장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부재하여 가치평가 결과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이 저조한 실정이며, 각 가치평가기관의 감시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 Ⅳ. 일본과의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 1.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 관리방안

#### 가. 지식재산 가치평가 관련 정보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필요한 정보는 특허정보, 기술정보, 콘텐츠 정보 뿐만 아니라 가치평가를 위한 관련 정보도 포함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공히 가치평가 관련 정보는 그 종류와 내용에 따라 각 데이터베이스별로 산재되어 제공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2014년 7월 시행된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서비스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관련 정보의 통

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일정 부분 가능케 하였다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동 데이터베이스는 기술정보, 특허정보, 시장정보, 평가정보 등 4가지 종류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는데, 기술과 특허정보에 치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일본의 특허 정보 플랫폼의 경우, 색채와 소리 등 새로운 형태의 상표에까지 대응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출할 계획에 있으며, 특허공보 및 특허 패밀리, 외국 특허청 서비스의 연계 등 그 콘텐츠를 다양화 하고 있다. 또한 리서치 도구 특허 DB는 생명공학 등 특정한 분야의 가치 관련 정보를 일괄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사용을 원활하게 하고, 특허분쟁을 방지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서도, 기존의 기술과 특허정보 위주의 정보 제공에서 탈피하여 브랜드 정보 및 콘텐츠 정보와 신지식재산의 일종인 생물유전자원 정보[328] 및 관련 바이오 기술 정보 등 동 데이터베이스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기타 정보에 관해서도 수집·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종합적인 정보제공뿐 아니라, 특정한 개별 지식재산영역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검색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지식재산 가치평가 관련 품질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 획득

가치평가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은 평가결과에 기인한 기술이전·거래와 담보대출과 같은 금융지원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나아가 가치평가 관련 민간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반이다.[329] 따라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 가치평가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뢰성이 저조한 것은 전담기관이 없어 통일된 형태의 가치평가 표준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이 하나의 원인이다. 시장에서 합의된 가치평가 표준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는 지속적 평가결과 검증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운영해야한다.[330]

둘째,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는 것과 함께 가치평가 표준체계를 지속·보완 및 고도화해나갈 수 있도록 체계에 대한 검증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331]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관계부처(미래부, 산업부, 금융위, 특허청 등)는 합동으로 「지식재산(IP) 및 기술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방안」을 마련하였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금융·거래기관 등 시장 전문가가 직접 평가에 참여하는 개방형 평가를 운용하고, 가치평

328)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당사국 총회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고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됨에 따라, 자국의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이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32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 생태계 조성방안」, 2013, 39-40면.

33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 생태계 조성방안」, 2013, 40면.

33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 생태계 조성방안」, 2013, 43면.

가 결과에 대해 평가기관들이 스스로 사후관리하고 피드백하는 평가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해 민간부문까지 확산을 계획 중이다.[332]

이와 관련하여 일본특허정보기구(Japio)는 세계특허정보검색서비스(Japio-GPG), 중소기업특허선행기술 지원서비스, 출원서류 등 복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 3월 17일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ISO 9001을 취득한 바 있다(등록 번호 : JQA-QMA12718).[333] 일본특허정보기구에서 획득한 품질경영시스템은 직접적인 가치평가 품질관리에 관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신뢰성 확보와 표준체계의 지속적 보완 및 고도화를 가능케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난립하고 있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감시조직을 정비하여, 일원화된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그 신뢰성을 담보해야 한다. 또한 일본의 경우처럼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동 제도에 대해 국제표준을 획득하여, 지식재산 가치평가 공급자, 중개자, 수요자 모두에게 보다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2. 지식재산 가치평가 인력 관리방안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 인력의 양성은 민간자격기관 및 금융기관, 가치평가 관련 기관에서 단기간에 걸친 기초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자격제도도 민간자격으로 공신력이 떨어진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지적재산관리 기능사(IP 기능사) 또는 지적재산 애널리스트와 같이 특허, 콘텐츠 나아가 브랜드 분야로 전문 분야를 세분화하여 가치평가 전문인력을 구분하여 분야에 따른 전문적인 가치평가인력양성을 꾀하고 있다. 또한 민간자격외 정부참여의 공신력 있는 자격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정부가 주도하고 금융기관 및 가치평가기관이 협력하여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 인력을 육성할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 인력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양성된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담기관에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인력 풀 형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효율적인 인력풀 형성을 위해 지식재산 가치평가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들은 의무적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담기관에 등록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격취득자들이 스스로 등록하는 방법과 전문교육기관에서 일괄적으로 합격자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33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기술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방안」, 2013, 2면.
333) 일본특허정보기구 홈페이지 http://www.japio.or.jp/profile/profile05.html 참고.

# 제6장 결론

앞에서 융합적 지식재산 인재양성방안을 대학의 융합적 지식재산 인재양성방안,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자격사제도 정비방안, 기업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안, 지식재산 금융활성화 및 지식재산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2장의 대학의 융합적 지식재산 인재양성방안에서는 대학에서의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의 문제점과 MIP, MOT, TBP, 법무대학원, 대학의 지식재산전공학과의 지재교육에 대한 평가를 한후, 대학의 융합적 지식재산인재양성제도 개선방안으로서 법학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넘어서서 융합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융합형 내지 종합형 교육을 위하여 학제간의 교류를 통해 공통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의 교재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공계대학에서의 융합형 지재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연구개발(R & D)에 종사할 이공계생에게 지식재산법과 지재경영을 교육하여 단순한 지재 창출을 넘어 강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그 활용을 가능하게 하며 연구개발을 넘어 초보적 지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도록 교과를 재편하여 운영하는 방향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이공학부에 있는 현재 지재담당교수 외에 지재경영전담교수를 채용하게 하고 신규채용의 여유가 없는 대학의 경우 현재 지재교수에게 지재경영교육을 하여 학생들에게 지재경영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지식재산학과에서의 융합형 지재교육과 관련해서는 지식재산법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과 경영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법학일반, 기술일반, 경영학일반, 지재권법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기술과 관련해서는 기술 트렌드, 경영학 일반에서는 기초경영학과 지재경영학을 가르치도록 한다.

경영학과, 나아가 기술경영학과와 MOT과정에서도 지재권법 과목과 기술 과목을 개설하여 강의할 것을 권장 내지 강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MOT 과정에서는 기술분야별로 그에 적절한 지재법, 지재실무 및 지재경영을 교육하는 커리큘럼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는 이공계학생을 위한 지식재산법 과목과 지재경영 과목의 개별 교재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경영학도에 필요한 지식재산권법과 지재경영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를 개발하여야 하고, 지식재산학과에 있어서도 그에 맞는 법학일반 과목, 기술과목, 지재경영과목 및 지식재산법 과목 교재를 개발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MIP과정을 융합적 지재전문가 양성을 위한 핵심프로그램으로 개혁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은 직장인을 위한 야간 또는 주말 교육과 잡탕식 교육으로는 융합적 지재전문가를 양성할 수 없다. (i) MIP과정을 원칙적으로 전일제 학생을 상대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융합적 지재인재가 필요한 대기업의 경우에는 국내유학프로그램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기업이 전일제로 학생을 파견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므로 직원을 전일제 학생으로 파견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등록금에 대한 조세지원을 하거나 특허청에서 등록금의 전부( 중소기업의 경우)나 일부(중견기업의 경우)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ii) MIP과정에 필수과목을 부과한다. 필수과목으로는 민법, 지재법, 지재경영, 지재분석, 지재가치평가 과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iii) 학생들에게 전공별로 전문화된 지재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MIP과정을 학교별로 전문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홍익대 MIP는 상표와 디자인에 특화하고, 고려대 MIP는 이공계 전공자만을 학생으로 선발하여 이공계 전공분야를 예컨대 기계, 전자, 화학, 생물 전공별로 특화된 지재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교과목 강의를 위한 교재를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v) MIP프로그램을 이수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예컨대 MIP를 마치면 간단한 시험 통해 지식재산서비스 전문 자격사 자격을 부여거나 MIP프로그램에서 변리사시험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변리사시험 1차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MIP과정에서 지재분석이나 지재가치평가 심화과정까지 이수한 졸업생에게는 지재분석사나 지재가치평가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의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자격사제도 정비방안에서는 지식정보사회에서 필요한 변리사는 지식재산과 법학, 기술, 경영분야의 융합 인재이며,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과 관련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인 바, 이를 위하여 변리사의 직역확대, 지식재산서비스 전문변리사제도 도입, 보수교육 강화 등의 변리사제도 개선과 지식재산 융합인재들이 합격할 수 있는 변리사시험제도 개선과 면제제도 확충, 시험전후 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변리사교육제도와 관련한 당면한 과제인바,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보다 먼저 변리사법 개정으로 연수제도를 크게 보강한 일본의 경우를 소개하고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변리사교육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양성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지식재산권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으로서 클리닉의 운영에 지식재산권법 분야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e교과서(e-text book)의 이용 개발 활성화와 표준교재 개발 및 보급 방안을 제시하였다.

로스쿨과 관련한 융합형 지재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우선 상위 레벨 로스쿨에서의 지재권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지식재산에 대한 계속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의 경우처럼 변호사협회 내에 지식재산권 연구모임을 만들고 변호사협회 차원에서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신규 변호사들이나 기존 변호사들을 위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제4장의 기업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안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i) 지재실무자, 개발기술자, 경영진과 같이 다른 교육수요를 가진 교육대상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ii)교육의 수준도 단일하거나 기초와 심화 정도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쳐 고급 수준의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상별, 수준별(입문, 초급, 중급코스, 상급 및 연구코스)로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화되어있는 일본 지적재산협회 등의 교육 시스템을 모델로 하여 기업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제5장의 지식재산 금융활성화 및 지식재산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에서는 현행 민간자격기관 및 금융기관 등의 민간 주도 방식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인력 육성에는 한계가 존재하는바, 정부가 주도하고 금융기관 및 가치평가기관이 협력하여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 인력을 육성할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특히 고급의 지식재산가치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전문변리사제도와 연계하여 5년 이상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식재산서비스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리사에게 지식재산서비스전문변리사(지식재산가치평가전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함께 제안하였다. 또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담기관에 대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자격취득자 의무등록제를 시행하고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인력 풀 형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함과 아울러, 지식재산 가치평가 관련 정보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동 제도에 대한 국제표준을 획득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지재가치평가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먼저 적절하고 신뢰성을 높이는 평가기법을 개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지재가치평가 전문교육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MIP과정에 별도로 가치평가전공을 두어 가치평가 인력과 지재금융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가치평가인력 교육에 있어서는 동일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지재권 침해, 지재매매, 라이센스, 지재기업 M&A 등에 있어서 지재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재금융전문가양성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위에서 언급한 지재가치평가인력양성 프로그램에서 함께 양성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재거래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서 지재금융전문가의 양성을 포함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지재인재양성의 궁극목표는 지재의 전주기를 아우르는 융합적 지재인재양성이며 이러한 인재 양성은 지적재산의 각 주기에 따른 권리분석능력의 배양, 기술적·사업적 트렌드의 파악능력 배양, 전 주기적 관점의 학습, 학제적 관점의 학습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융합적 지재인재 양성을 위하여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나아가 대학원 교육에 있어 교육프로그램의 연계가 매우 필요하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MIP프로그램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 때문에 이를 교육기관의 자율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프로그램 간의 조정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변리사 등 지적재산전문가 선발시험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선수과목 제도나 시험과목 선정에 있어 융합적 지재전문가가 되기 위한 학습을 한 사람이 합격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지재의 창출, 관리, 보호 활용의 전(全)단계에 있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전주기적 지재서비스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재 창출을 위한 인재의 양성방안이다. 엔지니어 등 지재 그 자체를 창출하는 인력에 대한 지재 소양의 배양도 중요하지만 그와 별도로 엔지니어들의 지재 창출환경을 조성하여 주고 창출되는 지재의 현황을 파악, 분석하여 그 권리화 여부를 판단하는 등 지재창출 환경의 조성 및 전략의 수립을 할 수 있는 지재서비스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재 창출에 관련하여서는 연구개발의 기본적 방향 설정, 기존 지재의 존부, 기존 지재의 극복방안, 양수, 라이선스 취득, 단독 연구개발, 공동연구개발, 위탁연구개발 중의 선택, 관련 지재의 처리 방안, 지재창출과정에 있어서 연구노트 작성, 클린 룸 메소드(clean room method)의 채용, 영업비밀로서의 취급, 지재 보호방안의 결정, 특허 출원시기의 결정, 특허청구범위의 작성, 권리취득의 완급 결정 등 지재 창출에 관련한 일련의 지재 관리 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 지재 관리·활용을 위한 인재의 양성방안이다. 일단 창출하거나 획득한 지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창출하거나 획득한 지재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최소한 유지하고, 지재 가치의 변동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며, 지재를 이용하여 사업화를 하거나 최소한 보유한 지재를 양도, 라이선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 만약 보유 지재를 라이선스하여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라이선시

의 선택, 라이선스 조건의 결정, 라이선스기간의 설정, 라이선스에 따른 재라이선스, 상호라이선스의 가부 등 결정, 라이선스 대상 지재권이 무효로 되는 경우의 처리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 만약 지재를 활용하여 사업화를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독자 경영, 공동 경영, 위탁 경영, 자금조달 방법의 결정, 지재담보, 기술신용보증, 지적재산유동화 등 지재금융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야 하며 지재 양수도, 라이선스, 금융 담보제공 등 제반 거래에 있어서 지적재산의 가치를 적정히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지재 보호를 위한 인재의 양성방안이다. 먼저 지재 보호를 담당하는 인력은 지재보호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지재침해 모니터링 방법, 샘플 채취 검사, 침해 보고 시스템, 침해에 대한 경고와 방어, 침해 중지를 위한 협상, 피침해 지재권의 특정, 제소, 제소 이외의 보호방법 강구, 지재소송능력, 지재침해소송 중 증거조사능력, 지재침해소송 중 협상 능력 등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융합적 지재인재를 양성할 수 있으려면 그 인재를 양성하는 교수 요원이 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자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재 실무의 일부만을 담당하여 본 사람이 대부분이므로 지재 전반에 걸쳐 법적, 기술적 그리고 경영적으로 융합적인 사고를 하여 대처할 수 있는 자는 희소하다. 따라서 지재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수 요원을 먼저 배출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요원들이 라운드 테이블 방식의 토론과 자체 학습을 통하여 융합적인 교원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연마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수요원들을 교육할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지재인재양성시스템, 특히 교원의 자질과 능력은 개선·발전의 여지가 크다 하겠다.

##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 전략연구센터 및 정책대학원육성·지원방안연구」, 201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3~2017][안](요약)」, 2012.12.12.

국가지식재산위원회·주식회사 펜타노바, 「지식재산 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2012

국가지식재산위원회·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생태계 조성방안」, 2013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013년 지식재산교육통계연보」, 2014.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014년도 교육훈련계획」, 2014.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의무연수 가이드」, 2014.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규칙」, 2014.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변호사백서」, 2011..

목성호, "지식재산 인재양성 및 활용방안에 관한 소고", 「지적재산권」, 제20권, 2007.

박성택, 김영기, “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특허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0권 제11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2

박준석 外, 「대학의 지식재산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시스템 혁신방안 연구보고서」, 서울대학교, 2010.

배대헌,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논의”, 「산업재산권」, 제27호, 2008.

법무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해설서」, 2010

설성수, 오세경, 박현우, 「기술가치평가론」, 법문사, 2012

손경한 外,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방안연구 보고서」, 특허청, 2013.

손수정, "지식재산 인프라의 글로벌 진단과 경쟁력 제고방안", 「STEPI Insight」, 135호, 2014.

손수정, "창조경제 관점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수급전망", 「과학기술정책」, 제23권 제4호, 2013.

신지연·이주연·고유흠,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효율적 양성방안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왕미심, “대만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증권화”, 「상사판례연구」제25권 제3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12

윤선희,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지적재산권 교육현황", 「지적재산과 정보법연구」, 제5권 제2호, 2013.

이규녀·박기문,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인식에 기반한 지식재산 이러닝 발전방안", 「지식재산연구」, 제8권 제2호, 2013.

이만섭, "지식재산전문학위과정 도입, 전문인력 양성 등", 「기계저널」, 제49권 제6호, 2009.
이병규, “지적재산권 교육의 현황과 전망”, 「명지대학교 법학연구」, 제7호, 2008.
이병민, 이기호, “기술가치평가사의 기능 및 역할”, 「기술혁신학회지」제3권 제2호, 한국기술혁신학회, 2000
이병욱·김태훈·류병구, "특성화고에서 양성할 지식재산 실무인력의 인재상에 대한 기업체 인식 조사", 「직업교육연구」, 제30권 제3호, 2011.
이병욱·최유현·육소영·이규녀, "기업의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설립 및 교육요구 조사", 「직업교육연구」, 제27권 제4호, 2008.
이성상,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제8권 제3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지식재산학회, 2013
이수진, "대학지식재산 교육사례 분석을 통한 인력양성 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이익희,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 「대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11.
이재연, “금융기관 대출관행의 영향 및 시사점”, 「주간금융브리프」제23권 제4호, 한국금융연구원, 2014
조경선·임재용, 「지식재산금융과 가치평가실무」, 한국금융연수원, 2014
최공필, 이지언, 「창조경제구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의 역할」, 한국금융연수원, 2014
최승재,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와 경쟁법”, 「산업재산권」 통권 39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12
특허청, 「국내기업의 상표관리활동 실태 조사 · 분석」, 2013.
특허청, 「기업의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2006.
특허청, 「제1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보고서」, 2008.
특허청,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안)」, 2013.
특허청, 「지식재산 전문 인재상 연구 및 수요조사」, 2007.
특허청, 「국내기업의 상표관리활동 실태 조사 · 분석」, 2013.
특허청, 「기업의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2006.
특허청, 「지식재산 전문 인재상 연구 및 수요조사」, 2007.
특허청·무역위원회, 「2013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2013.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 2013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인력 수급 현황 및 전망 조사」, 2011
한국발명진흥회, 「"기업 지식재산 교육과정 운영 및 인프라 구축”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서」, 국회 제출자료, 2014.
한국발명진흥회, 「IP담보대출을 위한 IP가치평가 모델연구」, 2013
한국발명진흥회, 「기업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고용실태 및 수요조사」, 2009.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기술평가 전문자격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201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인력양성 교육현황과 개선과제", 「ISSUE&FUCUS on IP」,

제2013-28호, 201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시재산 전문인력양성 교육체계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20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인력수급 현황 및 전망조사」, 특허청, 2011.
한창희, 「지식재산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분석을 통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연구」,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논문, 2014

European Commission, Final Report from the Expert Group on Intellectual Property Valuation, 2014.3
U.S. Department of Commerce,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U.S. Economy: Industries in Focus, March 2012

JPO, 各士業の研修制度について, 2006.
今堀 克彦 , 石原 啓策 , 笹原 敏司 [他], 「弁理士が行う新たな鑑定業務(知的財産権価値評価業務)--特許権評価事例,商標権評価事例等への係わり方(1)(2)(3)(4)」, 『パテント 』vol.63 no.7,8,9,10, 日本弁理士会, 2010
今堀 克彦 , 石原 啓策 , 笹原 敏司 [他], 「弁理士が行う新たな鑑定業務(知的財産権価値評価業務)--特許権評価事例,商標権評価事例等への係わり方(1)」, 『パテント 』vol.63, 日本弁理士会, 2011
吉井剛, “継続研修未受講”, 「パテン」, Vol. 64 No. 8, 2011.
金沢工業大学, 「知財人材のスキルの明確化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平成19年2月.
福田 隆 , 澤田 吉裕 , 鎌田 元彦, 「知的財産管理技能士資格の活用事例 : 全国の知財技能士を訪ねて(Case.2)三菱マテリアル株式会社 三菱マテリアル株式会社の知的財産室発 · 「全社知財教育」への取り組み : 技術系、事務系すべての社員に知財教育を」, 『IPマネジメントレビュー』 vol. 10, 知的財産教育協会, 2013
福田 隆 , 澤田 吉裕 , 鎌田 元彦, 「知的財産管理技能士資格の活用事例 : 全国の知財技能士を訪ねて(Case.2)三菱マテリアル株式会社 三菱マテリアル株式会社の知的財産室発 · 「全社知財教育」への取り組み : 技術系、事務系すべての社員に知財教育を」, 『IPマネジメントレビュー』 vol. 10, 知的財産教育協会, 2013
社団法人日本知財学会 政策提言, 2007.
小倉 正明, 「知的財産価値評価」, 『Evaluation』 vol.43, プログレス, 2011
小倉 正明, 「知的財産価値評価」, 『Evaluation』 vol.43, プログレス, 2011
一般社団法人知的財産教育協会, 「知的財産管理技能検定を中心とする知的財産教育協会の知財人材育成の取り組みについて」, 『特許研究』 vol.55, 工業所有権情報 · 研修館特許研究室, 2013
一般社団法人知的財産教育協会,「知的財産管理技能検定を中心とする知的財産教育協

会の知財人材育成の取り組みについて」，『特許研究』 vol.55，工業所有権情報・研修館特許研究室，2013
知的財産戦略本部，「知的財産政策ビジョン」，2013
知的財産戦略本部，「知的財産政策ビジョン」，2013
澤井英久 & 杉田禎浩，"2012 年 4 月から継続研修制度が変わります"，東京弁護士會.
特許庁，『金融機関等から見た企業の知的財産を活用した資金調達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2013. 2
丸島儀一，「知的財産権価値評価ガイドライン（第 1 号）の公表と知的財産価値評価推進センターの活動紹介」，『パテント』 Vol.60 No.1，2007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홈페이지 iipti.kipo.go.kr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www.kipa.org
KAIST MIP 홈페이지 http://ip.kaist.ac.kr/v2012/
홍익대학교 MIP 홈페이지 http://mip.hongik.ac.kr/
윕스 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edu.wips.co.kr/process/Schedule.jsp#
KAIST 지식재산대학원 홈페이지 http://ip.kaist.ac.kr/v2012/class_info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홈페이지 iipti.kipo.go.kr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www.kipa.org

장혜진, “변리사 의무연수 싸고 변호사, 변리사단체 또 마찰”, 법률신문, 2013. 9. 17.
아이뉴스, “‘特許戰대비’ LG전자 사내 특허교육 확대”, 2013.6.21.자,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53631&g_menu=022100&rrf=nv
서울경제, “기업들 ”특허 전문인력 키우자“”, 2010.3.3.자,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1003/e2010030317283347580.htm